발간등록번호
57-3720018-000001-11

의정백서

제 9 집 [제5대 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9 집

의 정 백 서

– 제5대 후반기 –

(2012. 7. 1 ~ 2014. 6.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북구 상징물

| 마크 및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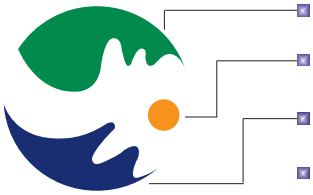

- **녹색부분** : 산, 육지 – 자연
- **주황색원** :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공단
- **파랑부분** : 바다 – 자연
- **의　　미** :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 중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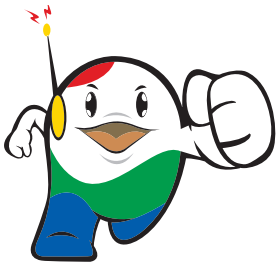

- **컨　　셉** :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 **형　　태** : 돌고래
- **의　　미** :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

| 구 상징물

구화(區花) / 참나리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구목(區木) / 느티나무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구조(區鳥) / 산까치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발 간 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 수 선

존경하는 19만 구민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달려온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간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께서 성원 해주신 만큼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온 제5대 울산광역시 후반기 북구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제9집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는 구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정, 발로 뛰는 현장의정, 연찬하고 공부하는 전문의정, 정책의정 등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더불어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의정활동 실적을 가감 없이 기록으로 남긴 의정백서가 우리지역의 중요한 사료로서의 역할은 물론 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의회운영모델을 정립하는데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다 이루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 드리며, 금번 의정백서 발간에 수고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축 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성과를 집대성한 제5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을 19만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 7월 개원한 이래 제5대 북구의회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왕성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구정에 정확히 반영하는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기록된 성과에도 확인되듯이 이러한 북구의회의 노력과 땀방울이 주민의 행복한 생활과 지역발전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며, 그 간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북구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민선 5기 집행부는 제6대 북구의회와 협력하여 우리 구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도시,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도시, 환경 · 사람 · 문화가 풍요로운 도시, 노사민정이 화합하여 상생하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의 아낌없는 협조와 전문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2년 동안의 소중한 기록이 주민의 행복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축 사

국회의원
박 대 동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국회의원 박대동입니다.

‘의정백서’ 출간을 모든 북구 주민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먼저,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이수선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북구는 지난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지역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수출효자 품목의 생산기지가 우리 북구에 자리 잡고 있어 명실공이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GRDP 도시로 울산의 명성을 높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도로 등 SOC 시설, 학교 및 각종 편의시설 등 주민이 만족하며 살고 싶은 북구가 되기에는 부족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청장, 시 · 구의원 등과 함께 오토밸리로 개설사업, 국도7호선 확장사업,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사업, 동해남부선 이설사업 등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성공을 통해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구를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언제나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백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의원 현황

의 장 단

(재임기간 : 2012. 7. 1 ~ 2014. 6. 30)

의 장	부 의 장
윤 치 용	이 수 선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2012. 7. 2)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의원 현황

(임기 2010. 7. 1 – 2014. 6. 30)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안 승 찬 **가 선거구** (농소1동·강동동·송정동)	■ **학 력** • 연산초 · 동래중 · 브니엘고 졸업 •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대 졸업 ■ **경 력** • 울산새날여는청년회(현, 울산청년회) 회장 역임 •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역임 •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 • 북구주민회 창립 초대회장 역임 •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 역임 • 울산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역임 • 송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역임 • 호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역임 •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역임 •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현) 북구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 • 현) 북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 • 현) 북구 주민회 줌마행복대학 학장 • 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정치위원 • 현) 가족봉사단 8기 '마중물' 회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65 103동 205호 (화봉동, 대우아파트) (E-mail) asc1963@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 an-janggun/ HP : 010-6587-1287
 이 홍 걸 **가 선거구** (농소1동 · 강동동 · 송정동)	■ **학 력** • 송정초 · 제일중 · 학성고 졸업 •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 력** • 송정동새마을협의회회장 역임 • 송정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역임 • 송정초등학교총동창회사무차장 역임 • 송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역임 • 화봉중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이사 역임 • 울산광역시핸드볼협회장 역임 • 울산처용로타리클럽회장 역임 • 새누리당 울산북구당협 운영위원 역임 • 현) 북구종합사회복지관운영자문위원장 • 현) 화봉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 학성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현) 울산광역시아파트연합회 북구지회 자문위원 • 현) 농소농협 운영평가 자문위원 •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 10길 4 ☎ 289-3388 (E-mail) sselc3388@hanmail.net HP : 010-2950-3763
 윤 치 용 **나 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 **학 력** • 화랑초 · 경주중 · 경주공고 졸업 • 서라벌대학 졸업 ■ **경 력**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상무집행위원 역임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 역임 • 동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천곡중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초대회장 역임 • 쌍용아진 2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역임 • 통합진보당 창당발기인 및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현) 동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 북구주민회 운영위원 • 현) 농소3동 자율방범대원 자문위원,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회원 • 현)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고문 • 현) 전국아파트연합회 울산지부 북구지회 자문 • 현)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5 214동 702호 (상안동, 쌍용아진아파트) ☎ 933-7209 (E-mail) ycy7321@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 ycy7321 HP : 010-5231-7321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의원 현황

(임기 2010. 7. 1 – 2014.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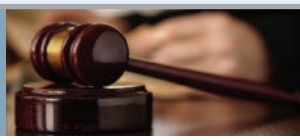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이 수 선 **나 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 **학 력** • 농서초 · 농소중 · 울산고 졸업 • 울산과학대학 토목과 졸업 ■ **경 력** • 천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초대 단장 역임 • 달천고등학교 초대 · 2대 운영위원장 역임 • 농소농협이사 역임 • 새누리당 울산광역시 사회봉사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 • 현) 농소중학교 · 울산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현) 북구문화정책 위원 • 현) 북구노인복지관 운영위원 • 현) 다문화 가족 자문위원 • 현) 북구 인권증진위원 • 현) 북구 안전관리위원 • 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37 106동 2103호 (천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 295-1929 FAX. 282-1166 (E-mail) lss1929@yahoo.co.kr **HP : 010-2833-1929**
 강 진 희 **다 선거구** (효문동 · 양정동 · 염포동)	■ **학 력** • 수암초 · 태화여중 · 울산여고 졸업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경 력** • 현) 염포 · 양정 여성회 회장 • 현) '명촌을 사랑하는 사람들' 운영위원 • 현) 염포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 • 현) 울산한부모가족센터 자문위원 • 현)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 현) 북구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장 • 현)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부위원장 • 현) 통합진보당 울산북구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 106동 401호 (염포동, 성원상떼빌아파트) ☎ 288-4745 (E-mail) greenjin70@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 greenjin70 **HP : 010-8610-4748**
 정 윤 석 **다 선거구** (효문동 · 양정동 · 염포동)	■ **학 력** • 수성초 · 동아중 · 경남공고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기계과 졸업 ■ **경 력** • 현대자동차 근무 • 연암초,명촌초,학성여고 운영위원장 역임 • 강북교육청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역임 • (주)동양기기 대표이사 역임 • 북구생활체육회 이사, 감사, 부회장 역임 • 선진국민연대 북구네트워크팀장 역임 • 현) 무룡산 보존회(산악회) 회장 • 현) 동행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장 • 현) 강북교육지원청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 현) 북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현) 울산광역시 장애인 학부모회 후원위원 • 현) 연암자율방범대 자문위원장 • 현) 진장 · 명촌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현) 노동부 고용평등위원 •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 • 현) 새누리당 지방특별위원회 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18-12(진장동) ☎ 287-4385 (E-mail) dongyangjung@ hanmail.net **HP : 011-835-6035**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의원 현황

(임기 2010. 7. 1 – 2014. 6. 30)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이 혜 경 비례대표	■ 학 력 • 대현초 · 중앙여중 · 학성여고 졸업 ●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졸업 ■ 경 력 •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장 역임 ● 울산상담소 · 시설협의회 부회장 역임 ● 울산시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 활동 ● 북구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역임 ● 현) 연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현) 전국지방여성의원네트워크 운영위원 ● 현) 사단법인 행복발전소 운영위원 ● 현) 사단법인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운영위원 ● 현) 울산 한부모 가족센터 자문위원 ● 현)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 부위원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60 115동 204호 (연암동, 벽산늘푸른아파트) (E-mail) 86lhk@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86lhk HP : 010-9448-1364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5대 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원구성(2012.7.2)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상황 점검 현장활동(2012.8.2.)

제135회 임시회 개회(2012.9.10)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문주석앞 기념촬영(2012.9.12.)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상황 점검 현장활동(2012.9.17)

제135회 임시회 현장활동-당사낚시공원 (2012.9.17)

제135회 임시회 현장활동-울산외고 (2012.9.17)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장애인보호 작업장 (2012.9.24)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회 강동사랑길 걷기대회(2012.10.7)

제13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2012.10.14)

4분기 동천하천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활동(2012.10.15)

신규직원 가족 초청 간담회, 북구의회 방문(본회의장) (2012.10.15)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36회 임시회 현장활동 – 송정호수공원 (2012.10.16)

북구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2021.11.26)

제6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2012.12.20)

2012년도 북구의회 종무식(2012.12.26)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3년 신년 인사회(2013.1.8)

천곡문화센터 개관식(2013.1.22)

지방의정봉사대상(2013.2.26)

무룡산 환경정비(2013.2.27)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주도 연수(2013.3.6)

선진지견학(장흥, 순천)(2013.5.2)

중국 비성시 국제교류대표단 방문(2013.5.10)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후 재활용선별체험(2013.6.20)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고래바다 여행선 현장견학(2013.6.2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식(2013.7.24)

당사해양낚시공원 개장식(2013.7.26)

청소년 모의의회(2013.8.27)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삼척영덕 견학(2013.8.28)

오토밸리2공구 기공식(2013.9.12)

뉴질랜드, 호주 공무 국외연수(2013.9.30)

사랑의 김장담그기, 적십자봉사회(2013.12.2)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개청식(2013.12.11)

세대공감참의놀이터 기공식 (2013.12.27)

속초연수(2014.1.15)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2014.1.27)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식(2014.2.12)

AI초소 현장확인(2014.2.28)

북구 새마을회 방청(2014.4.14)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2014.4.25)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준공식 및 걷기대회(2014.4.26.)

제5대 북구의회 송별회(2014.6.24)

목 차

■ 발간사
■ 축간사
■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의원 일람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43

제2절 의회연혁 ····· 45

제3절 의회일반현황 ····· 47
1. 제5대(후반기)의회 원구성 ····· 47
2. 의회기구 ····· 48
3. 의원현황(직업,학력,연령,성별) ····· 48
4. 의회예산(당초)현황 ····· 49
5. 의사당 시설현황 ····· 50
6. 사무과 직원현황 ····· 50
7. 의회의 권한 ····· 51
8. 의회의 역할 ····· 52

제4절 구정기본현황 ····· 53
1. 지역여건 ····· 53
2. 구정현황 ····· 53
3. 구민생활지표 ····· 54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 56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 57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 61
1. 의회역대 집회현황 ····· 61
2. 연도별 집회현황 ····· 62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 63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 64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 65

제3장 제5대 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34회 제1차 정례회 ····· 71
1. 개회이유 ····· 71
2. 개회사 ····· 72
3. 의사일정 ····· 7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76

제2절 제135회 임시회 ····· 87
1. 개회이유 ····· 87
2. 개 회 사 ····· 88
3. 의사일정 ····· 9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97

제3절 제136회 임시회 ····· 109
1. 개회이유 ····· 109
2. 개 회 사 ····· 109
3. 의사일정 ····· 11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11

제4절 제137회 제2차 정례회 ····· 124
1. 개회이유 ····· 124
2. 개 회 사 ····· 125
3. 의사일정 ····· 127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35

제5절 제138회 임시회 ····· 155
1. 개회이유 ····· 155
2. 개 회 사 ····· 156
3. 의사일정 ····· 15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62

제6절 제139회 임시회 ····· 179
1. 개회이유 ····· 179
2. 개 회 사 ····· 180
3. 의사일정 ····· 18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86

제7절 제140회 제1차 정례회 ····· 211
1. 개회이유 ····· 211
2. 개 회 사 ····· 211
3. 의사일정 ····· 21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15

제8절 제141회 임시회 ····· 223
1. 개회이유 ····· 223
2. 개 회 사 ····· 223
3. 의사일정 ····· 22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23

제9절 제142회 임시회 ····· 226
1. 개회이유 ····· 226
2. 개 회 사 ····· 226
3. 의사일정 ····· 227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30

제10절 제143회 임시회 ····· 238
1. 개회이유 ····· 238
2. 개 회 사 ····· 238
3. 의사일정 ····· 23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40

제11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 249
1. 개회이유 ····· 249
2. 개 회 사 ····· 250
3. 의사일정 ····· 25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57

제12절 제145회 임시회 ····· 271
1. 개회이유 ····· 271
2. 개 회 사 ····· 271
3. 의사일정 ····· 27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74

제13절 제146회 임시회 ····· 278
1. 개회이유 ····· 278
2. 개 회 사 ····· 278
3. 의사일정 ····· 28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82

제4장 예산·결산심의사항

제 1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295
제 2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98
제 3절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00
제 4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08
제 5절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13
제 6절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17
제 7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321
제 8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24
제 9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26
제10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30
제11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36
제12절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40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347
1. 감사개요 ····· 347
2. 감사실시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348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350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350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351
6. 증인 선서 방식 ····· 351
7. 행정사항 ····· 351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352

제2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392
1. 감사의 목적 ····· 392
2. 근거 ····· 392
3. 감사기간 ····· 392
4. 감사실시기관 ····· 392
5. 감사실시 경과 ····· 392
6. 감사결과 ····· 395

제3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443

제4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45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 445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44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527
1. 감사의 개요 ····· 527
2.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528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530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531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531

6. 증인 선서 방식 ····· 531
7. 행정사항 ····· 532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533

제6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573
1. 감사의 목적 ····· 573
2. 근거 ····· 573
3. 감사기간 ····· 573
4. 감사실시기관 ····· 573
5. 감사실시 경과 ····· 573
6. 감사결과 ····· 576

제7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611

제8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613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 613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614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 673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 691

제3절 5분 자유발언 ····· 709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 741

제5절 주요의정활동사항 ····· 749

제6절 의정활동일지 ····· 771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 799
2. 초대의원 명단 ····· 801
3. 초대의원 사진 ····· 802
4. 제2대의원 명단 ····· 803
5. 제2대의원 사진 ····· 804
6. 제3대의원 명단 ····· 805
7. 제3대의원 사진 ····· 806
8. 제4대의원 명단 ····· 807
9. 제4대의원 사진 ····· 808
10. 제5대의원 명단 ····· 809
11. 제5대의원 사진 ····· 810
12.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이전) ····· 811
13. 역대 구청장 명단 ····· 812
14.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 812
15. 역대 전문위원 명단 ····· 813

제 1 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2절 의회연혁
제3절 의회일반 현황
제4절 구정기본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 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 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8개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지침>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임기 : '91. 4. 15 ~ '95. 6. 30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97. 7. 15 ~ '98. 6. 30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06. 7. 1 ~ 2010. 6. 30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 제5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제3절 의회일반현황

1. 제5대<후반기>의회 원구성

○ 의장단 선거

2012년 6월 29일 10:00에 개회된 제1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안승찬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윤치용의원, 부의장에 이수선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7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 총 투표수 7표 중 윤치용의원이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
- 총 투표수 7표 중 기권이 1표 있었으며, 이수선의원이 6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

2. 의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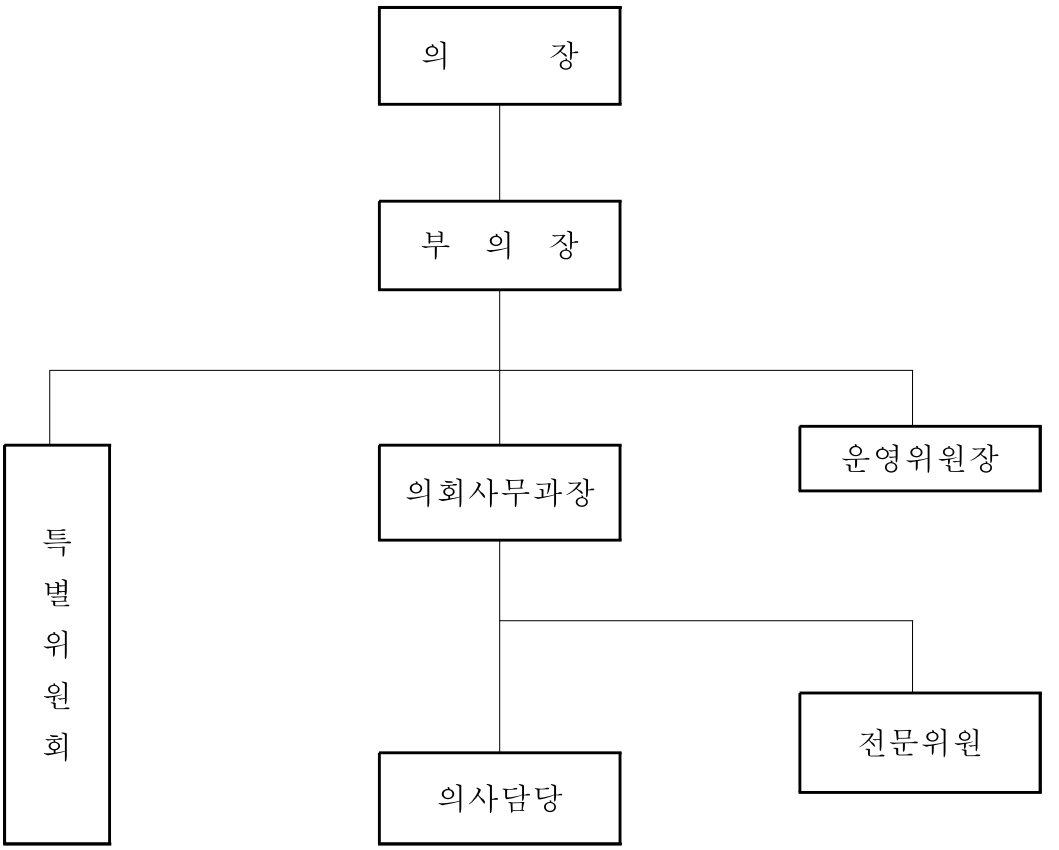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3동	효문·양정·염포동	
7	2	2	2	1

□ 직업별

직업별 / 의원수	농 업	상 업	회사원	기 타	비 고
7		1		6	

□ 학력별

학력별 / 의원수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졸	기타
7					7		

□ 연령별

연령별 / 의원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			4	3	

□ 성 별

의 원 수	계	남	여	비고
7	7	5	2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지방의회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2007년도	949,808	315,442 (의정활동)	634,366 (의사운영)
2008년도	1,190,896	579,370	611,526
2009년도	1,287,155	664,987	622,168
2010년도	1,227,266	596,134	631,132
2011년도	1,125,438	499,923	625,515
2012년도	1,183,542	505,561	677,981
2013년도	1,200,978	501,063	699,915
2014년도	1,249,983	545,085	704,898

5.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 면적 : 북구청 5층 1,174.55㎡ (355.30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평)	비 고
본 회 의 장	211.23(63.90)	
방 청 객 실	60.23(18.22)	
소 회 의 실	108.00((32.67)	
의 장 실	70.47(21.32)	
부 의 장 실	60.70(18.36)	
의 원 사 무 실	129.05(39.04)	2인1실 3개
다 목 적 실	129.00(39.02)	
의 정 자 료 실	72.00(21.78)	
의 회 사 무 과	102.85(31.11)	
전 문 위 원 실	51.43(15.56)	
방 송 실 등 6 실	179.59(54.33)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3	13	
5급(과 장)	1	1	
5급(전문위원)	1	1	
6급(의사담당)	1	1	
6급(전문위원)	1	1	
7급(행 정 직)	2	3	
8급(행 정 직)	1	1	
9급(행 정 직)	1	0	
기 능 직	5	5	사무보조2, 속기사2, 운전원1

7.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
(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8.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어촌적 요소 공존

○ 도·농 복합적 지역특성에 따른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존재

2. 구정현황(2014. 6. 30.현재)

□ 면 적

○ 행정구역 ------- 157.32㎢

○ 도시계획구역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보전	생산	계획	
157.32	120.54	12.75	1.08	11.01	95.70	6.66	4.01	1.49	1.16	30.12

※ 개발제한구역 76.32㎢(48.51%)

□ 인 구

가 구	총 인 구 수			외 국 인 등 록 수
	계	남	여	
64,663세대	187,572명	96,908명	90,664명	2,383명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현 황	3국 1실 17과	1과 1전문위원	1과	8개동

○ 공 무 원

(정원/현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534명/503명	403명/375명	13명/12명	37명/36명	81명/80명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10년도	132,099	127,312	4,787	35.5%
2011년도	140,108	135,140	4,968	41.2%
2012년도	169,220	164,200	5,020	36.2%

3. 구민생활지표(2014. 6. 30.현재)

□ 보건복지

식품접객	공중위생	의료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명)					생활폐기물 발생량(일평균)		1일분뇨수거량
		기관	병상수	소계	일반	시설	조건부	특례	1인1일 발생량	총발생량	
2,204개소	468개소	146	819	1,108개소 / 1,974	1,007 / 1,649	8개소 / 171	79 / 126	14 / 28	0.6kg	113ton	56ton

□ 지역경제

경 지 면 적				기 업 체		노조설립업체	
소 계	전	답	과수원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조합원수
2,008ha	774ha	1,145ha	89ha	967개	42,754명	18개	37,932명

□ 도시건설

도 로				주 택	상 수 도			하 수 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544㎞	13.03%	205㎞	97.09%	56,055 111.1%	51,091 ton/일	283ℓ	98.92%	182,504명	181,475명	99.4%

□ 교 통

자 동 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78,532대	65,458대	3,020대	9,621대	433대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43개소 31,038명	20 13,691	12 8,696	9 8,332	0 0	2 319

4. 동별 인구·면적현황(2014. 6. 30.현재)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명)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32	27	187,572	
농소1동	14.91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신천동 (2개동중복)	30,579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 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경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재래시장 및 신개발주거지역임**
농소2동	11.42	중산동 매곡동 신천동 (2개동중복)	32,804	
농소3동	31.07	가대동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시례동	42,978	
강동동	60.71	무룡동 구유동 정자동 신명동 대안동 당사동 신현동 산하동 어물동	5,359	강동지역은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1	명촌동 진장동 연암동 효문동	29,338	효문은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많은 **준공업지역**임
송정동	10.78	화봉동 송정동	21,158	송정은 큰 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임**
양정동	6.68	양정동	12,602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소재해 있고, **7,800여평의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있음.
염포동	5.54	염포동	12,754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군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음.

5. 울산광역시구·군 일반현황(2014. 6. 30.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7.32	1,161,019	597,879	563,140	23,863
중 구	37.00	234,603	120,009	114,594	2,434
남 구	72.20	349,271	177,957	171,314	5,244
동 구	35.80	177,853	94,031	83,822	6,218
북 구	157.32	187,572	96,908	90,664	2,383
울주군	755.00	211,720	108,974	102,746	7,584

□ 재정규모현황(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2,785,106	2,035,263	749,843	53.3%
중 구	225,837	219,391	6,446	14.8%
남 구	331.421	313,001	18,420	34.5%
동 구	186,020	181,052	4,968	25.4%
북 구	206,236	204,616	1,620	30.1%
울 주 군	502,455	491,416	11,039	39.9%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제1절 집회현황

1. 의회역대 집회현황

구 분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초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제3대	계	8	152	29	168	37	320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2	34	8	46	10	80
	2005	2	48	5	29	7	77
	2006			3	21	3	21
제4대	계	8	184	22	170	30	354
	2006	2	40	3	12	5	52
	2007	2	44	5	31	7	75
	2008	2	50	6	50	8	100
	2009	2	50	6	51	8	101
	2010			2	26	2	26
제5대	계	4	100	12	102	16	202
	2010	2	50	5	46	7	96
	2011	2	50	3	32	5	82
	2012	2	50	6	45	8	95
	2013	2	47	5	46	7	93
	2014			2	22	2	22

2. 연도별 집회현황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31	708	115	712	146	1,420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 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 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35	7	45	9	80	〃
2003	2	35	8	45	10	80	〃
2004	2	34	8	46	10	80	〃
2005	2	48	5	29	7	77	연 80일
2006	2	40	6	33	8	73	정례회 45일 이내, 임시회 매회기 15일 이내
2007	2	44	5	31	7	75	연 11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08	2	50	6	50	8	100	〃
2009	2	50	6	51	8	101	〃
2010	2	50	5	46	7	96	〃
2011	2	50	3	32	5	82	〃
2012	2	50	6	45	8	95	연 10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13	2	47	5	46	7	93	〃
2014			2	22	2	22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회 기	회 별	소 집 요 구 인	집 회 기 간	일수
제134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2. 7. 2 ~ 7. 16	15
제135회	임시회	정윤석의원 외 2명	2012. 9. 10 ~ 9. 24	15
제136회	임시회	이혜경의원 외 2명	2012. 10. 15 ~ 10. 19	5
제137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2. 11. 20 ~ 12. 24	35
제138회	임시회	안승찬의원 외 2명	2013. 2. 19 ~ 3. 4	14
제139회	임시회	이홍걸의원 외 2명	2013. 4. 23 ~ 5. 6	14
제140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3. 6. 20 ~ 7. 2	13
제141회	임시회	이수선의원 외 2명	2013. 7. 26	1
제142회	임시회	강진희의원 외 2명	2013. 9. 3 ~ 9. 16	14
제143회	임시회	정윤석의원 외 2명	2013. 10. 22 ~ 10. 24	3
제144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3. 11. 20~ 12. 23	34
제145회	임시회	이혜경의원 외 2명	2014. 2. 18 ~ 2. 28	11
제146회	임시회	안승찬의원 외 2명	2014. 4. 11 ~ 4, 21	11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2010.7.1~2014.6.30) 2012~2014년도

회수	기 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 계		185	208	8	2	106	13		8		6	7	58
소 계	2012년도	70	66	3	1	30	4		4		2	2	20
제134회	2012. 7. 2~7. 16	15	15		1	6	1		1				6
제135회	2012. 9. 10~9. 24	15	20	1		12			2			2	3
제136회	2012. 10. 15~10. 19	5	11			5	1				1		4
제137회	2012. 11. 20~12. 24	35	20	2		7	2		1		1		7
소 계	2013년도	93	121	4	1	65	9		3		3	5	31
제138회	2013. 2. 19~3. 4	14	20			12	1		1		1		5
제139회	2013. 4. 23~5. 6	14	27	1		22	1					1	2
제140회	2013. 6. 20~7. 2	13	16		1	6	1		1		1	2	4
제141회	2013. 7. 26	1	5			2							3
제142회	2013. 9. 3~9. 16	14	12	1		4	2					2	3
제143회	2013. 10. 22~10. 24	3	16			8	1		1				6
제144회	2013. 11. 20~12. 23	34	25	2		11	3				1		8
소 계	2014년도	22	21	1		11			1		1		7
제145회	2014. 2. 18~2. 28	11	7			3					1		3
제146회	2014. 4. 11~4, 21	11	14	1		8			1				4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회 별	집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34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 ~ 7. 16	15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조례안 6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
제135회	의원	2012. 9. 10 ~ 9. 24	15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조례안 1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제136회	의원	2012. 10. 15 ~ 10. 19	5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조례안 5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5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11.20 ~ 12.24	35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례안 7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38회	의원	2013.2.19 ~3.4	14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 조례안 1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제139회	의원	2013.4.23 ~5.6	14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조례안 2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2건) ○ 구정질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관련)
제140회	제1차 정례회	2013.6.20 ~7.2	13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 조례안 6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 구정질문 2건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관련 등 2건) ○결의안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
제141회	의원	2013.7.26	1	○ 조례안 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42회	의원	2013.9.3 ~9.16	14	○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조례안 4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구정질문(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 관련) ○ 터키 이즈미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제143회	의원	2013.10.22 ~10.24	3	○ 조례안 8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 결의안(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제144회	제2차 정례회	2013.11.20 ~12.23	34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례안 1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제145회	의원	2014.2.18 ~2.28	11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3건)
제146회	의원	2014.4.11 ~4.21	11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 조례안 8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제3장

제5대 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2절 제135회 임시회
제3절 제136회 임시회
제4절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5절 제138회 임시회
제6절 제139회 임시회
제7절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제8절 제141회 임시회
제9절 제142회 임시회
제10절 제143회 임시회
제11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12절 제145회 임시회
제13절 제146회 임시회

제1절 제134회 제1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2. 7. 2 (월) 10:00

다. 회 기 : 2012. 7. 2 ~ 7. 16 (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윤석의원 외 3인 발의)

○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 대표위원)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안승찬의원)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29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에는 저를 비롯하여 부의장에 이수선의원이 당선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5대 후반기 우리 의회가 더욱더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제5대 북구의회를 개원하였고, 7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표로서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의 결과로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5대 북구의회 후반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난 1년간 활동을 뒤돌아보며, 2011 회계연도 결산과 각종 의안 처리를 통해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써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 속에서도 상호 존중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반기 의정 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치 용

3. 의사일정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 7. 16(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 7. 2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75호) 4.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정윤석의원) 5.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3(화) 10:00	2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7. 4(수) 10:00	3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7. 5(목) 10:00	4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7. 6(금) 10:00	5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	
7. 7(토)		휴 회	
7. 8(일)		휴 회	
7. 9(월) 10:00	6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7. 10(화) 10:00	7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74호, 기획홍보실, 총무과, 회계과, 건설방재과, 농수산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1(수) 10:00	8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이혜경의원 발의-복지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7. 12(목)		<선진지 견학> ○ 2012 여수세계박람회	
7. 13(금)		<선진지 견학> ○ 2012 여수세계박람회	
7. 14(토)		휴 회	
7. 15(일)		휴 회	
7. 16(월) 10:00	9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당일 의사일정 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6(월) 10:00	9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6(월) 10:00	9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1.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안(의안번호 제177호, 안승찬의원)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7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7. 2 (제134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90,289,865,430원
- 세출결산액 : 152,444,017,008원
- 세계잉여금 : 37,845,848,422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523,710,435,136원
  - 부 채 : 4,967,531,696원
  - 순 자 산 : 518,742,903,440원
- 재정운영
  - 수 익 : 163,593,621,685원
  - 비 용 : 137,745,585,170원
  - 운영차액 : 25,848,036,515원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7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2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7. 10 (제134회 제1차정례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5건	562,350,000		531,659,848	30,690,152	
일반 회계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318,474,000	09. 15	318,473,150	850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지급	26,181,000	12. 21	26,180,700	300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정자동 278-1, 822㎡) 손실보상 청구 소송결과 울산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15,030,000	03. 22	15,030,000	0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지급
〃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7,043,000	06. 03	7,042,608	392	어물동 41, 41-2번지 무단점용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195,622,000	01. 27	164,933,390	30,688,610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초소, 공동 방제단 운영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2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7. 11 (제134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증원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일부전환,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확충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0%이내	17%이내	28%이내	45%이내	11%이내	20%이내	33%이내	36%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09명 ⇒ 513명(증 4명)

• 일반직 계 : 452명 ⇒ 464명(증 12명)

- 6급 이하 계 : 417명 ⇒ 429명(증 12명)

• 기능직 계 : 54명 ⇒ 46명(감 8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보완 지침」(2012. 4.)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4명 증원 및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2011. 9. 2.)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일부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54명에서 46명으로 하고, 감한 8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증원하였음.

• 일반직 6급 이하의 경우 직렬별로 늘어나는 인원의 세부적

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 본 개정 조례안에 정하고자 하는 정원의 총수에 대하여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2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7. 11 (제134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세 제증명 교부 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표준지방세정 보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인증기 날인 과정 없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전자수입증지」및「전자서명」적용 안내”(2012.2.28)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 수수료 납부 수단인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 불편 해소와 수입증지 위조·변조를 방지함은 물론 지방세 제증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2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7. 11 (제1회 제134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 그 밖에 법령 및 각종 용어를 실정에 맞도록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제1항제1호,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구성되는 지역연대 인원을 당초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여성·아동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 그 밖에 관계 법령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
2. ~ 6. (생략)	2. ~ 6. (생략)
④ (생략)	④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2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7. 11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문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안 제6조제2항)

○ 그 밖에 법령 및 각종 용어를 실정에 맞도록 정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제3항제6호, 제7조2항,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2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7. 11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2013년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와 운영, 시설이용, 운영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범위 (안 제4조)

- 청소년 진로탐색, 진로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청소년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시설의 이용(안 제5조)

- 울산광역시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북구 청소년 우선 이용 가능

-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일반인도 이용 가능

○ 운영의 위탁 (안 제7조)

-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
- 2년의 위탁기간과 2년 단위로 위탁기간 연장

○ 시설의 운영 및 휴관 (안 제8조 ~제9조)

○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지도감독 등 (안 제10조~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구의 열악한 청소년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

- 다만, 제5조제1항에서 “청소년은 누구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특정시설에 대해 일정시간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냉방·난방시설 등 사용,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고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관련)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일반인(기관·단체 포함)에게도 시설 이용을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로로 할 때에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범위는 어느 시설까지로 할 것인지(예, 다목적실 등)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떤 내용으로 명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의원 간 충분한 논의와 조례안 보완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에 대하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우리 구 주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안의 표지(참고사항 등)에 이런 사항이 적시(摘示)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6.25 (이혜경의원)

○ 심의일자 : 2012. 7. 11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생활환경의 보호와 유해환경을 배제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안 제3조~안 제11조)

○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임무, 임기, 필요경비 등의 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안 제12조~안 제17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회의 등 (안 제18조~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을,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두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12년 2월 1일 전부개정되어 2012년 8월 2일 시행예정인바, 붙임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대비표와 같이 종전 법 제13조에서의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 법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변경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고, 종전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던 “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청소년 선도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포함)” 에 관한 사항이 개정법 제19조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므로 인하여, 2012년 8월 2일까지 대통령령이나 여성가족부령이 개정될 것임.

  따라서 조례안 제11조(기능 대행)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개정되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본 조례안의 내용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2절 제13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정윤석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2. 9. 10 (월) 10:00

다. 회　　기 : 2012. 9. 10~9.24 (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혜경의원 외 2인 발의)

○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구정 질문의 건(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이홍걸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이홍걸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 구정 질문의 건(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관련, 강진희의원)

○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 (안승찬의원)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 이후 각계각층의 주민을 만나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5호 태풍 볼라벤 등 풍수해 대비와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추경 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구민들을 위해 성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에 접어드는 9월 중순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좋지 못한 가운데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더욱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보람된 결실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치 용

3. 의사일정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2. 9. 10~9.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9.10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0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5. 구정 질문의 건(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이홍걸의원)	
9. 11(화) 10:00	2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9. 12(수) 10:00	3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9. 13(목) 10:00	4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9. 14(금) 10:00	5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5(토)		휴 회	
9. 16(일)		휴 회	
9. 17(월) 10:00	6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9. 18(화) 10:00	7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9. 19(수) 10:00	8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보 건 소	원안가결
9. 20(목) 10:00	9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 조정	
9. 21(금) 10:00	10	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이혜경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보건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강진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안승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심의보류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21(금) 10:00	10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이홍걸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이수선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이혜경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안승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10.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정윤석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11.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안승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9. 22(토)		휴 회	
9. 23(일)		휴 회	
9. 24(월) 10:00	11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4(금) 10:00	5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9. 18(화) 10:00	7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9. 19(수) 10:00	8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보 건 소	
9.21(금) 10:00	10	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이혜경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보건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강진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안승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이홍걸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이수선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이혜경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안승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10.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정윤석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11.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안승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4(금) 10:00	5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91호, 안승찬의원)	
9. 18(화) 10:00	7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 보 건 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9(수) 10:00		<현장방문활동>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복구 보강공사(주민참여과) ○ 당사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농수산과)	
9. 21(금)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이혜경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보건소)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강진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안승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이홍걸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이수선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이혜경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안승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강진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정윤석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12.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안승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24(월) 10:00	10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24(월) 10:00	10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원안가결
		2. 구정 질문의 건(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관련, 강진희 의원)	
		3.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93호, 안승찬의원)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8. 27 (이혜경·윤치용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인체조직 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3조~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촉 해제, 임기, 운영 등 (안 제5조~안 제10조)

○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안 제11조)

○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인체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함과 아울러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를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를 감면(부칙 제2조 참조)하여 이를 보다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인체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8. 31 (강진희・윤치용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애와 상해의 기준(안 제3조~안 제5조)

○ 보상금의 청구, 지급결정, 지급방법(안 제6조~안 제8조)

○ 상해등보상심의회의 설치, 구성, 의원의 임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과 여비(안 제9조~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8. 31 (강진희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안 제1조~안 제4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등(안 제5조~안 제7조)

○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방법, 증인의 보호 및 실제비용보상 등(안 제5조~안 제11조)

○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공개의 원칙, 제척과 회피 등(안 제12조~안 제15조)

○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의 보고, 보고에 대한 처리, 징계 등(안 제13조~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3 (안승찬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종류, 특수공인(안 제1조~안 제2조의2)

○ 인영의 내용, 규격, 등록, 인영의 보존(안 제3조~안 제5조의2)

○ 날인 위치, 재등록 및 폐기, 공고(안 제7조~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3 (이홍걸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관계공무원의 범위(안 제2조)

•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 안 제2조제2항에서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3 (안승찬·윤치용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특별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위원장, 위원, 위원장의 직무(안 제3조~안 제5조)

○ 간사, 소위원회 등(안 제6조～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3 (이수선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회의 총일수,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안 제2조～안 제4조)

- 연간 회의 총일수 : “110일”→“100일 이내”(단서신설)
- 제1차 정례회 : 매년 7월 1일→6월 20일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0일

○ 심의, 회의 운영(안 제5조～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11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일에서 6월 20일로 조정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아울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3 (이혜경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2조)

○ 허가권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안 제4조)

○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안 제5조~ 안 제7조)

○ 여행계획서의 제출, 여행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안 제8조~안 제10조)

-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의 제출 기한 : 출국 15일 전→ 출국 30일 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 안 제2조제6항에서 집행기관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에 의원이 참가할 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였음.

-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조정하고,
- 안 제8조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적절성과 시기성을 감안하여여 행계획서 제출시기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으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3 (안승찬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비용, 비용 지급의 예외(안 제2조～안 제3조)

○ 비용의 지급기준, 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비용지급의 제한 (안 제4조～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11 (강진희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여비 지급 등(안 제2조~안 제4조)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 : 본문→별표 1

※ 2013년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동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2013년도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동결하기로 논의된 바가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3 (정윤석의원)

○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절차(안 제2조~안 제3조)

○ 위원선임 대상자격, 위촉기관, 겸임금지 및 결격, 대표위원(안 제4조~안 제7조)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협조, 검사의견서 제출(안 제8조~안 제10조)

○ 수당의 지급, 수당의 계산, 여비의 지급, 지급기준 등(안 제11조~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3 (안승찬의원)

○심의일자 : 2012. 9. 21 (제13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등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구청장 재량권 부여 (안 제17조의2제1항)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공익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와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정조례안 발의 시 집행기관(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지역 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울산북구점과 롯데마트 진장점, 그리고 북구지역 대형마트 입점 소상인들의 의견이 붙임과 같이 접수 되었으므로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외에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인 9. 10.(월) 이후에 제출된 사항으로 붙임자료에는 첨부하지 않았음.

○ 한편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재량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려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기준이 법률과 동일한 경우에도「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 등 영업제한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영업제한기준을 다시 한번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등 우리 지역 내에서도 현안문제로 거론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의원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제13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혜경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2. 10. 15 (월) 10:00

다. 회　　기 : 2012. 10. 15~10.19 (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 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혜경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2. 개회사 (생략)

3. 의사일정

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2. 10.15~10.19(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10.15. (월) 10:00	1	1. 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 16(화) 10:00		<현장방문활동> ○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도시녹지과) ○ 중산목욕장 건립(회계과, 환경미화과) ○ 천곡저수지 편의시설 조성사업(농수산과) ○ 천곡문화센터 건립(회계과, 문화체육과)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문화체육과)	
10. 17(수) 10:00		<현장방문활동>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건설방재과) ○ 농소하수처리장 건립(건설방재과) ○ 옥동 ~ 농소2 도로 개설(건설방재과) ○ 제전마을 진입도로 개설(건설방재과)	
10. 18(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이혜경의원 발의-복지경제국)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이혜경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6.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197호, 기획홍보실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19(금) 10:00	3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5호)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96호)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0. 8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0. 18 (제1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재원(안 제3조)

-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 출연금
-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보급
-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 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안 제5조)

○ 기금 운용계획(안 제7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위원회의 기능(안 제11조)

-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 문화예술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문화예술 담당국장
-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 담당과장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임기 : 2년, 연임가능 (당연직은 보직기간)

○ 위원회 회의(안 제14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위원회 간사 및 서기(안 제15조)

- 간사 : 문화예술 담당
- 서기 : 문화예술 담당자

○ 회계공무원(안 제16조)

-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 담당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부터(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조례의 체계나 그 구성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서 규정하 는 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례안을 장이나 절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조의 제목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 제11조의 제목을 “위원회 설치”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로 하고,
- 제15조제3항은 같은 조 제2항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또한 담당의 호칭이나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당초 계제 폐지 시 “담당제 운영 지침”(1998, 행정안전부)에 의거 운영되어오다 현재는「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훈령 제171호, 2011. 8. 5.) 제4조에 대외직명의 선정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서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에서는 “6급”을 “지방행정주사” 등으로 적시(摘示)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 중 “문화예술 담당”을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 표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그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검토 자료인 붙임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문화예술 담당 ② (생 략)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 ② (원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설치) (생 략)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원안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4. (생 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 ---------- ---------- ----------. 1. (원안과 같음) 2. 구의회 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4. (원안과 같음) ③ ----------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 ----------. ④ (현행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 ① ~ ② (원안과 같음) <삭 제>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가 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원안과 같음) ② ---------문화예술 업무담----------.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호, 총무국)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0. 8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0. 18 (제1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신규 체육시설물 이관에 따른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추가

○ 체육시설(다목적미니구장) 사용료가 울산시 및 관내 타 구·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타 구·군 다목적미니구장 이용자에 대한 민원해소와 구·군간 형평성에 맞게 조정

○ 현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에서 헬스·수영 동시 신청자에 대한 2강좌 할인 혜택을 전 강좌로 확대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신규 체육시설물 이관에 따른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추가 (안 제3조)

○ 추가 관리대상 주요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 지정(안 제9조)

○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에서 2강좌 신청 시 강습 사용료는 2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 할인 적용(안 제10조)

○ 체육시설 중 다목적미니구장(풋살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울산시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10,000원/시간)으로 인상(안 제10조)

○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LH공사로부터 이관 받은 가람다목적구장과 울산광역시로부터 이관 받은 효문다목적구장의 신규 체육시설물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을 조례로 추가 정비하고, 추가 관리대상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지정하려는 것임.
- 또한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의 2강좌 신청 시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 할인을 적용하고, 다목적미니구장(풋살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울산광역시와 타 구·군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며,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 이용자의 사용료를 100분의 5 감면하려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구분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000(3,000)	3,000(4,000)
기타	1. 1회(1시간), 1,000원 미만은 절사하며,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성인은 50% 가산한다. <신 설>	

개 정 안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구분	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10,000(15,000)	15,000(20,000)
기타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성인은 50% 가산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 감면	

수 정 안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구분	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10,000(15,000)	15,000(20,000)
기타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 감면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0. 8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0. 18 (제1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

기 위해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제3조)

○ 센터의 운영 및 조직(안 제4조, 제5조)

- 위탁기간 : 2년
- 운영협의회 설치
- 센터 조직 구성 : 센터장 1명, 운영실장 1명, 상담원 1명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 조례의 체계나 그 구성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례안을 장이나 절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조의 제목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 제2조의 제목을 “센터의 설치”에서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로 하며,
  - 제4조제3항의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로 하고,
  - 제12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일자리지원위원 회의 설치”로, 같은 조 제1항의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지원위원회”로 각각 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제6조제2항은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제6조제2항에서의 공유재산이 센터를 말한다면 “공유재산”을 “센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검토 자료인 붙임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원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센터의 설치) (생 략)	**제2조(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원안과 같음)
제4조(운영방법) ① ~ ② (생 략)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센터를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 (생 략)	**제4조(운영방법)**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④ (원안과 같음)
제6조(센터지원) ① 취업알선 상담창구, 이용자 편의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센터지원)** 취업알선 상담창구, 이용자 편의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제12조(일자리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지원위원회---------- 1. ~ 4.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2. (생 략)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직업 관련단체·사업주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④ ~ ⑤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1. ~ 2. (원안과 같음) 3. ----------사업주·노동단체---------- ④ ~ ⑤ (원안과 같음)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회의 등) ① ----------출석위원----------. ② ~ ③ (원안과 같음)
제16조(지도감독) (생 략)	제16조(지도 감독) (원안과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10. 11 (이혜경의원)

○ 심의일자 : 2012. 10. 18 (제1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2조～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안 제6조)

○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간사 등(안 제7조～안 제9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의 제척 등(안 제10조～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조례에 해당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10. 11 (이혜경의원)

○ 심의일자 : 2012. 10. 18 (제1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사업의 종류 및 지원, 자립생활지원 신청 등, 추가지원(안 제4조~안 제7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운영(안 제8조~안 제9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안 제10조)

○ 지도 감독, 조치(안 제11조~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함에 있음.
-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자립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새로운 정책 개발, 지역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자립생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95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10. 5 (북구의회의장)

○ 심의일자 : 2012. 10. 19 (제13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감사기간 : 제13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 11. 21 ~ 2012. 11. 29(예정)]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및 대상사무 현장

○ 감사주체 : 본회의(전의원 7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 감사 요구자료 : 【붙임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96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10. 5 (북구의회의장)

○ 심의일자 : 2012. 10. 19 (제13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 요구 : “붙임”

제4절 제137회 제2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2. 11. 20 (화) 10:00

다. 회 기 : 2012. 11. 20 ~ 12. 24 (3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홍걸의원 외 2인 발의)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 상안테니스장 조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5분 자유발언(이수선의원)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설계하는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느 의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직접 구민을 찾아가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 곳곳을 두루 살피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변화의 격랑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해마다 고물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발생한 태풍은 오토밸리로 옹벽 붕괴 사고와 더불어 전국에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으며, 재난 대비 태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살기 좋은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 발전만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어느 회기보다 바쁘고 중요한 회기로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큰 틀의 정책 감사로 주민들을 위한 감사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 내년 한 해 동안의 우리 구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편성 되었는지,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은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겨울나기가 더 힘들고 겨울바람은 더욱 차갑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의 마음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치 용

3. 의사일정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2. 11. 20~12. 24(3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20 (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수정가결
	1	1.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11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홍보실장) 5.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현장방문활동> ○ 월성원자력발전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21(수) ~ 11. 29(목)		행 정 사 무 감 사 (세부일정 붙임 참조)	
11. 30 (금) 10:00		개별 현장방문	
12. 1 (토)		휴 회	
12. 2 (일)		휴 회	
12. 3 (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보건소) 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보건소) 6.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보건소)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12. 4 (화) ~ 12. 14 (금)	3~11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4호, 총무국)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 상안테니스장 조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2호, 기획홍보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세부일정 붙임 참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15 (토)		휴 회	
12. 16 (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7 (월) 10:00	1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12. 18 (화) 09:30	13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12. 19 (수)		휴 회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12. 20 (목) 14:00	14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12. 21 (금) 10:00	15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총 무 국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12. 22 (토)		휴 회	
12. 23 (일)		휴 회	
12. 24 (월) 10:00	16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11. 21 ~ 11. 29, 9일간>

일 시 /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2. 11. 2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기획홍보실 ○ 보건소	
2012. 11. 22(목)	10:00	〃	○ 총무국 • 총무과 • 주민참여과 • 회계과	
2012. 11. 23(금)	10:00	〃	○ 총무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2. 11. 24(토)			휴회	
2012. 11. 25(일)			휴회	
2012. 11. 26(월)	10:00	〃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2012. 11. 27(화)	10:00	〃	○ 복지경제국 • 경제일자리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2. 11. 28(수)	10:00	〃	○ 건설도시국 • 건설방재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2. 11. 29(목)	10:00	〃	○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 해당 부서 감사 종료 후 재확인 등 필요시 해당부서 추가 감사할 수 있음.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일정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2. 4~12. 17(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4 (화) 10:00	3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4호, 총무국)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 상안테니스장 조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2호, 기획홍보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12. 5 (수) 10:00	4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12. 6 (목) 10:00	5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2. 7 (금) 10:00	6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12. 8(토)		휴 회	
12. 9(일)		휴 회	
12. 10 (월) 10:00	7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2. 11 (화) 10:00	8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12. 12 (수) 10:00	9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12. 13 (목) 10:00	10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 기타 안건	
12. 14 (금) 10:00	11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안 (3건)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3(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보건소) 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보건소) 6.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보건소)	
12. 4(화) 10:00	3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4호, 총무국)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 상안테니스장 조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2호, 기획홍보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12. 5(수) 10:00	4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12. 6(목) 10:00	5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3(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보건소) 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보건소) 6.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보건소)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12. 4(화) 10:00	3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4호, 총무국)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 상안테니스장 조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12. 5(수) 10:00	4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2. 6(목) 10:00	5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2호, 기획홍보실)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7(월) 10:00	1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7(월) 10:00	12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5분 자유발언(이수선의원)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5.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15호, 강진희의원)	원안가결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0(목) 14:00	14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12. 21(금) 10:00	15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0(목) 13:00	14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12. 21(금) 15:00	15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1. 20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2. 3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자연하천(동천)을 기준으로 설정한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이 하천 직강화 사업 등으로 현재의 하천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조정

나) 주요내용

○ 개정연혁표 【별표 2】 개정

• 【별표 2】 동별 경계변경 개정연혁 주요내용

- 중산동 20필지 28,336㎡를 천곡동으로 편입
- 신천동 12필지 38,535㎡를 천곡동으로 편입
- 창평동 33필지 35,433㎡를 상안동으로 편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동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중산동 20필지 28,336㎡를 천곡동으로, 신천동 12필지 38,535㎡를 천곡동으로, 창평동 33필지 35,433㎡를 상안동으로 각각 편입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

4조의2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을 현재의 자연하천(동천)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2. 3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 지원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안 제2조)

○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범위 완화(안 제3조)

- 신청일 현재 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인상(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 월 2만원 → 월 3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 2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6·25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함은 물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65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등에 있어 울산광역시 구·군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 제기와 민원이 발생 되고 있으며, 지난 2012. 8. 29. 참전명예수당 지급 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와 구·군별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붙임 구·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실태를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2. 3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환경부「폐금속자원 재활용지침」시행에 따른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처리 실정에 맞추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

로 배출 가능케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중 무상으로 수거하는 폐가전제품 24개 품목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조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기준 변경(조례 안 제2조제3호, 별표 4)

○ 폐형광 전구 및 파손 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거리청소폐기물 등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의무 예외 규정 삭제(조례 안 제9조제1항)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의무 세대수 20세대로 조정(조례 안 제10조제4항제4호)

○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kg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가능하도록 조정(조례 안 제12조제2항)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5조, 제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4에서 무상수거 가능한 24개 품목에 대하여 삭제 조치 및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함은 물론 대형폐기물 품목의 구성에서 일반 주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열하였음.

- 또한 안 제10조제4항제4호 중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주택법」제16조와「주택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1.10.)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2. 3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2011.12.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기금(독립채산제)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운영하게 되어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기존 :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 변경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온 보건진료소를 일반회계로 전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서 보건진료소를 추가한 사항임.

- 안 제3조에서 진료비의 적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별표의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2011.12.16.)로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를 추가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2. 3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폐지(2011. 12. 16.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관(안 제3조)

-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 운영협의회 기능을 명시함(안 제4조)

-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 운영협의회 운영위원 수 15명 이내로 조정, 사무장 폐지(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재 우리 구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2개소(신명, 어물)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보건진료소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3년도부터는 보건소에 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함과 아울러 보건진료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를 살펴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조를 비롯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따른 일부조문에 대해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검토 자료인 붙임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그 협의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 안	수 정 안
	1.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3조(정관)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정관)** ① 협의회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운영위원의 회비 등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원 안	수 정 안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제2조에 따른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 협의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협의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 운영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된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2. 3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포괄적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목적 (안 제1조)

• 예방중심의 포괄적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절차 (안 제4조~제6조)

•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정함

○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환수조치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은 붙임 자료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아동에 대해 어릴 때부터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같이 구강건강의 예방과 치료 등 각종 시책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부서 간의 협조를 통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안

○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별지 제목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청구서”를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청구서”로 하고, 내용 중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2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12. 3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변경)에 따른 일반직 전환 및 별정직과 일반직 정수상계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1)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6%이상	13%이내	1%이내	**90%이상**	**9%이내**	**1%이내**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이내	20%이내	33%이내	36%이상	13%이내	20%이내	20%이내	47%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이내	25%이내	25%이상	-	-	100%	-	-	-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13명
- 일반직 계 : 464명 ⇒ 469명(증 5명)
- 6급이하 계 : 429명 ⇒ 434명(증 5명)
- 별정직 계 : 2명 ⇒ 1명(감 1명)
- 기능직 계 : 46명 ⇒ 42명(감 4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므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

- 행정안전부 예규 제423호(2012. 9. 24)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변경)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일부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46명에서 42명으로 하고, 감한 4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증원하고, 별정직 정원 1명을 감하여 일반직과 정수 상계하였음.
- 이는 기능직에서 4명, 별정직에서 1명, 총 5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에서 5명을 증원한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2. 4(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4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무상귀속) : 2건 / 15필지 / 11,395㎡
- 건물신·증축 : 4건 / 4개동 / 4,220㎡
- 기 타 : 1건 / 5,344㎡ (테니스장 1면당 668㎡, 8면 기준)

• 추정가격 : 11,268백만원 (토지매입 3,293, 건물신·증축 7,468, 기타 507)

• 취득사유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토지, 건물신축)
- 상안테니스장 조성 (토지, 건물신축 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건물신축)
- 세대공감 창의 놀이터 건립 (건축 증·개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 먼저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있어 본 시설이 입지하고자 하는 농소1동 지역은 호계구획정리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호계동

423-1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1,480㎡, 건물 1개동(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60㎡를 신축하려는 것임.

- 농소1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므로, 실내체육관과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토지매입비 증가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총사업비가 49억에 달하는 만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8억7천만원)과 시비(10억1천5백만원)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체육관과 소규모 공연장 등 주요시설의 입지 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상안테니스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안동 212번지 일원에 토지 11필지, 9,915㎡를 취득하여 건물 1개동(지상 1층), 연면적 100㎡를 신축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 농소3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북구의 신흥주거지역으로서, 우리 구 대표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유치와 구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근 근로자 및 주민의 늘어나는 체육복지 수요에 부응될 것으로 판단됨.
-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GB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부지면적 9,915㎡ 중 사유토지가 75.7%인 7,51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 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 구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부지(공공청사) 연암동 1083번지에 지상 2층의 연면적 860㎡ 규모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임.

- 검토 결과, 현재 농소농협에 임차하고 있는 센터를 구청 인근에 신축해 친환경 급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식에 참여하는 농민과 학부모의 동참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2012년도 제1회 추경 시 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9억8천6백만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예산 승인 시 건립계획에 없던 퇴직예정자 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추가하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바, 주요시설의 변경 사유와 건물의 사용 목적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을 토대로 본 건물의 주요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용도에 대하여 의원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산동 829번지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을 증·개축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00㎡ 규모로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를 건립하려는 것임.

- 검토 결과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 선호시설인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로 재탄생시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이미지를 쇄신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이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방안 용역 결과에 대하여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 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동천강 자전거도로, 농소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중산 문화센터 등 주변 여건과 연계성을 가진 시설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사전 절차이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사업명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상안테니스장 조성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세대공감 창의 놀이터 건립	비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10. 31. 심의 (p.198)	2012. 10. 31. 심의 (p.197)	2012. 10. 31. 심의 (p.331)	2012. 10. 31. 심의 (p.328)	
투·융자사업심사	적정 (2012. 10. 31.)	-	-	적정 (2012. 10. 31.)	
공유재산심의회 (구정조정위원회 대행)	원안가결 (2012. 9. 27)	원안가결 (2012. 9. 27)	원안가결 (2012. 11. 7)	원안가결 (2012. 11. 14)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2. 12. 6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2,484,290	385,806	45,000	1,842,760	57,724	153,000	2,484,290	161,480	110,000	20,870	2,155,940	36,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2,600	100,000	0	0	2,600	0	102,600	0	0	0	102,600	0
사회복지기 금	652,449	0	45,000	592,058	15,391	0	652,449	4,000	110,000	750	537,699	0
식품진흥기 금	391,049	0	0	294,029	7,020	90,000	391,049	7,480	0	20,120	327,449	36,000
재난관리기 금	1,004,820	285,806	0	693,551	25,463	0	1,004,820	150,000	0	0	854,820	0
옥외광고정비기금	333,372	0	0	263,122	7,250	63,000	333,372	0	0	0	333,372	0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15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12. 10 (강진희의원)

○ 심의일자 : 2012. 12. 17 (제137회 제2차정례회 제1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1차 판결하였고, 이 사건은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을 거쳐 8년 만인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2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에 판정서를

송달하였으나 현대자동차(주)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병승 씨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현재 목숨을 건 고공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음.

○ 현대자동차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 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불법 파견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절 제138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3. 2. 19(화) 10:00

다. 회　　기 : 2013. 2. 19 ~ 3. 4(14일간)

라. 부의안건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진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강진희 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들어 오늘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7월 개원한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그동안 초선 의원의 뜨거운 열정으로 생활 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대안 모색과 함께 주민자치와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로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와 제4기 민선 구정이 함께 4년차

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구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종오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밝히신 역점 시책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구정의 과제입니다.

또한 광역시, 중앙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여러 현안사업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열악하더라도 1,870억 원의 2013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여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시스템의 발전적 운영과 구정에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생활 곳곳에 뿌리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할 사항은 적극 지원토록 하여 주민을 위한 의회, 열린 의회로 거듭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 등 당면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은 주요 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단위 사업별 문제점과 대책 등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부서별 업무 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19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북구가 날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치 용

3. 의사일정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3. 2. 19.~3. 4.(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3.2.19. (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1.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 (수) 10:00	2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5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총무국)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7호, 총무국)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9호, 총무국)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8호,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수정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21. (목) 10:00	3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총 무 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2. 22. (금) 10:00	4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총 무 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 23. (토)		휴 회	
2. 24. (일)		휴 회	
2. 25. (월)		휴 회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2. 26. (화) 10:00	5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2. 27. (수) 10:00	6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28. (목) 10:00	7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3. 1. (금)		휴 회	
3. 2. (토)		휴 회	
3. 3. (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4. (월) 10:00	8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강진희의원 발의-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2호, 안승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4호, 안승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강진희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강진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3호, 안승찬의원 발의 - 총무국)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16호, 총무국)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원안가결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4. (월) 10:00	8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강진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안승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안승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강진희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강진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3호, 안승찬의원 발의 - 총무국)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16호, 총무국)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4. (월) 10:00	8	◆ 5분 자유발언(정윤석의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강진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안승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4호, 안승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강진희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강진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3호, 안승찬의원 발의 - 총무국)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16호, 총무국)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8.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30호, 강진희의원)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2. 20 (제13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미적용, 사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 위임사항을 일제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이 다른 사무 조정

-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등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위임하여서는 안될 사무의 삭제

- 기록물(문서 등)의 보존 및 이관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무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 발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2. 20 (제13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상설화에 따른 규정과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 추진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조례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쇠부리축제 사무국의 상설화에 따른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 용어 및 약칭 정리 <안 제1~4조, 제7~10조, 제12~13조>

- 축제명 : 울산 쇠부리축제 → 울산쇠부리축제
- 약 칭 : 위원회 → 추진위원회

○ 위원에 관한 조항 정리 <안 제3조 등>

- 축제명 : 울산 쇠부리축제 → 울산쇠부리축제
- 문화예술 담당과장, 쇠부리놀이보존회 등 추가

○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간사 분리 <안 제9~10조>

- 추진위원회 간사: 위원장 위촉 →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

- 집행위원회 간사 : 추진위원회 간사 겸임 →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조례 시행규칙 조항 신설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법령에 조례제정권의 직접 위임은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울산쇠부리축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2. 20 (제13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명촌어린이도서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에 명촌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마련 (안 제2조)

○ 도로명주소 정비에 따른 도로명주소 재부여로 주소변경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명촌문화센터 4층에 명촌어린이도서관이 연면적 371.48㎡ 규모

로 건립어 2012년 12월 27일 개관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 기적의도서관 등 도로명주소 재부여에 따른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명촌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근거 마련과 구립도서관 도로명주소의 정비,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2. 20 (제13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 일부 개정되어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별표 1)

- 별표 중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농수산관계, 건설관계, 문화공보관계, 교통관계, 동력자원관계, 환경관계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 33개 신설
- 별표 중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연안어업),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근해어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신고 등 수수료 중 유기장업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 3개 삭제

- 별표 중 그 밖의 제증명 명칭 정비 및 수수료액 변경

○ 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안 제7조제1항)

- 제1항 중 제3호 중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를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로 하고,
- 제1항 중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 대통령령 제24111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12년 9월 21일 개정)이 2012년 9월 22일 시행됨.
- 다만,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고는 하나,「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붙임과 같이 일부 달리 정하고자 하는 수수료가 있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한 집행부 의견청취와 의원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2. 20 (제13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11. 3. 29)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2. 7. 9)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 등 시·도로 환원된 조항을 삭제하고

○ 주민협의회 운영,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지정, 수수료 감면 등 옥외 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미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방법 등을 삭제함(구 ⇒ 시 이관)

- 울산광역시 조례로 규정(시 조례 제2조 ~ 제20조)

○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를 지정함(안 제6조)

○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정함(안 제12조)

○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사이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8항)

○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법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2. 10. 11., 조례 제1304호)에 반영되었고, 우리 구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었음.

-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과 표시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광역단위로 통합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 도시미관 개

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2. 8 (강진희·윤치용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3. 2. 20 (제13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적용범위 조정과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우선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 조정 (안 제2조제1항)

•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

○ 조례의 정의 추가 (안 제2조의2)

○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추가 (안 제4조제3항)

•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우선지원 대상 추가 (안 제5조제3항)

•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

○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주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관련 단체로 확대 (안 제9조의2)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조정 (안 별표)

• 19세대 이하 : 1,000만원

- 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 : 3,000만원
-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 300만원 → 50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적용범위 조정과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우선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그 적용범위와 보조금 지원 상한액 등이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의원간 논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4조(지원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별표 제1호의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4조(지원기준 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table>
<tr><th>원 안</th><th>수 정 안</th></tr>
<tr><td>④ (생 략)

제9조의2(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및 교부) ① ~ ② (생략)
③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u>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u></td><td>④ (원안과 같음)

제9조의2(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및 교부)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u>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그 단체의 자체 의결을 거친다.</u></td></tr>
<tr><td>【별표】
<u>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u>
(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단위 : 원)
<table>
<tr><th>세대수</th><th>지급비율</th><th>지원 상한액</th><th>비고</th></tr>
<tr><td>19세대 이하</td><td>80% 이하</td><td>10,000,000</td><td></td></tr>
<tr><td><u>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u></td><td>80% 이하</td><td>30,000,000</td><td></td></tr>
<tr><td>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td><td>70% 이하</td><td>40,000,000</td><td></td></tr>
<tr><td>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td><td>60% 이하</td><td>60,000,000</td><td></td></tr>
<tr><td>1,000세대 초과</td><td>50% 이하</td><td>80,000,000</td><td></td></tr>
<tr><td>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td><td>80% 이하</td><td>5,000,000</td><td></td></tr>
</table>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td><td>【별표】
<u>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u>
(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단위 : 원)
<table>
<tr><th>세대수</th><th>지급비율</th><th>지원 상한액</th><th>비고</th></tr>
<tr><td>19세대 이하</td><td>80% 이하</td><td>10,000,000</td><td></td></tr>
<tr><td><u>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u></td><td>80% 이하</td><td>30,000,000</td><td></td></tr>
<tr><td>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td><td>70% 이하</td><td>40,000,000</td><td></td></tr>
<tr><td>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td><td>60% 이하</td><td>60,000,000</td><td></td></tr>
<tr><td>1,000세대 초과</td><td>50% 이하</td><td>80,000,000</td><td></td></tr>
<tr><td>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td><td>80% 이하</td><td>5,000,000</td><td></td></tr>
</table>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2. 총 사업비 300만원 이하의 공용시설 유자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td></tr>
</table>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8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2. 8 (강진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3. 3. 4 (제13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10조제2항)

• 9인 이내 → 12명 이내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2. 8 (안승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3. 3. 4 (제13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가) 제안이유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

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이념 등(안 제1조~안 제6조)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안 제7조~안 제18조)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안 제19조~안 제23조)

○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4조~안 제25조)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안 제26조~안 제28조)

○ 재정 및 실무지원 등(안 제29조~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4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2. 8 (안승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3. 3. 4 (제13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있으나 각 동에도 주민복

지협의회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발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정비(안 제1조)

○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등(안 제3조의2,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20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2. 8 (강진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3. 3. 4 (제13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안 제3조)

○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안 제4조～안 제5조)

○ 교육, 우수사례 발굴 등(안 제6조～안 제7조)

○ 보조금의 지원, 준용 규정 등(안 제8조～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지역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 특히, 귀농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단순한 먹을거리를 충족하는 수준을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건강을 향상시키고, 생활농업으로서의 의미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21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2. 8 (강진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3. 3. 4 (제13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안 제1조～안 제3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안 제4조～안 제7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안 제8조～안 제12조)

○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안 제13조～안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안 제19조～안 제20조)

○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안 제21조～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이 2010. 11. 2. 개정되어 2011. 2. 3.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를 거쳐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정하고자 하나, 의원 개개인의 권익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의원간 논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3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2. 8 (안승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3. 3. 4 (제13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추가 및 주민자치위원 구성, 연임 규정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지역공동체기능 추가(안 제5조제1항제7호)
○ 위원 구성 및 연임 규정 조정(안 제17조제7항)
○ 위원 위촉 시 위촉 기준, 방법 등을 위원회와 사전 협의 및 우선 위촉 규정 신설(안 제17조제8항 및 제9항)
○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0조제3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 지역공동체기능을 추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연임 규정 조정 및 위원 위촉 시 위촉 기준, 방법 등을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 제한과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사전 협의 규정 등이 신설되는 사항이므로, 의원간 논의후 의결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2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2. 6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3. 4 (제13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과「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면적 조정 및 사업비 증

액)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취득가액(백만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1,731	13,660	증 1,929(16.4%)	8,000	13,000	증 5,000(증 62.5%)
토 지	9,781 (7필지)	9,660 (7필지)	감 121(1.24%)	3,000 (679)	3,000 (647)	-
건 물 (연면적)	1,950	4,000	증 2,050(105%)	5,000	10,000	증 5,000(100%)

○ 변경사유

-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시 해제권자(울산광역시 농축산과)의 의견 반영으로 토지면적 조정·변경 (9,781㎡ ⇒ 9,660㎡)
- 건축비 산정 시 통상 연면적(4,000㎡)을 기준하여 산정하나, 기존 건축면적(1,950㎡) 기준 산정하여, 연면적 기준 건축비 산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건축연면적 조정 (1,950㎡ ⇒ 4,000㎡ / 5,000백만원 ⇒ 10,0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69-1번지외 6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1. 12. 5.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시 해제권자인 울산광역시 의견 반영으로 토지면적 9,781㎡를 9,660㎡로 조정·변경하고, 건축비에 있어 건축연면적 기준 공사비 재

산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30%이상 증가하였음.

○ 본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4,000㎡에 해당되며, 당초 건축비 보다 50억이 증가한 상태로서 토지를 포함한 총 사업비용 측면에서는 당초 보다 62.5%가 증가한 130억임. 사업비의 재원비율을 볼 때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85억으로 총 사업비의 65.3%에 달하고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사업비 증가 부분이므로 전체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 재산정에 따른 계획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원안번호 230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2. 25 (강진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3. 3. 4 (제13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은 51년 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근대화의 눈부신 성장을 주도해 왔고, 국내 최대 공업도시로 발전해왔고 우리나라 산업전진기지에서 살아온 울산시민은 조국 근대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음.

○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의 메카인 울산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함.

○ 산업수도 울산의 과거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극적 전환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 유치 촉구를 결의함.

제6절 제13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홍걸의원 외 2명 발의

나. 개회일시 : 2013. 4. 23 (화) 10:00

다. 회　　기 : 2013. 4. 23 ~ 5. 6 (14일간)

라. 부의안건

○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선의원·이혜경의원 발의)
○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구청장 제출)
○ 구정 질문의 건(강진희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관련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13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민들의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등 우리의 안보 상황마저 날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구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대변자 역할 수행은 물론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 각종 숙원사업, 복지업무 추진 등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구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오늘부터 14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여러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의 추경예산안 심의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지역을 보다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한 해 계획한 업무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확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치 용

3. 의사일정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3. 4. 23.~5. 6(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3.4.23.(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원안가결
	1	1.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3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4.(수) 10:00	2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254호, 기획홍보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총무과,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원안가결
4. 25.(목) 10:00	3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4. 26.(금) 10:00	4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27. (토)		휴 회	
4. 28. (일)		휴 회	
4. 29. (월) 10:00	5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4. 30. (화) 10:00	6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계수 조정	
5. 1. (수) 10:00	7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안승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4.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231호,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36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이혜경의원 발의 - 총무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심의보류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이혜경의원 발의 - 총무국)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호, 이혜경의원 발의 - 총무국)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7호, 총무국)	원안가결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총무국)	원안가결
		13.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총무국)	원안가결
		14.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7호, 이수선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15.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안승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이혜경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17.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강진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1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19.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2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안승찬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1.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건설도시국) 22.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이수선의원·이혜경의원 발의 - 보건소)	원안가결 원안가결
5. 2. (목)		<선진지 견학> ○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5. 3. (금)		<선진지 견학> ○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5. 4. (토)		휴 회	
5. 5. (일)		휴 회	
5. 6. (월) 10:00	8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55호)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원안가결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6. (월) 10:00	8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55호)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6. (월) 10:00	8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55호)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구정 질문의 건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관련, 강진희의원)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2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4. 23 (제13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5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4. 24 (제13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조성규모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3년도 말 조성액(당초) ⓐ	기금운용계획변경		2013년도말 조성액(변경)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2,155,940	202,916	0	2,358,856	202,916
남북교류협력기금	102,600	0	0	102,60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202,916	0	202,916	202,916
사 회 복 지 기 금	537,699	0	0	537,699	0
식 품 진 흥 기 금	327,449	0	0	327,449	0
재 난 관 리 기 금	854,820	0	0	854,820	0
옥외광고정비기금	333,372	0	0	333,372	0

○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이자수입	계	예치금
문화예술진흥기금	**202,916**	200,000	2,916	**202,916**	202,91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2. 11. 9. 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려 하는 바,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금조성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조성된 기금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주민참여과 업무에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과 업무 중 문화의집 지원을 삭제하여 동행정업무 총괄에 포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과 업무 추가(부서업무 명확화)

- 추가 명시업무 :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 조정 사유 : 문화의집 지원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동행정업무 총괄을 신설하여 포함하고, 세대공감 창의 놀이터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부서업무를 명확화

○ 문화체육과 업무 중 일부 삭제
- 삭제 업무 : 문화의집 지원
- 조정 사유 : 문화의집 지원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주민참여과에 동행정업무 총괄을 신설하여 포함하고 문화체육과 업무에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과 업무에 동 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 놀이터 운영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과 업무 중 문화의 집 지원을 삭제하여 동 행정업무에 포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과별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자연감소인력을 일반직(사회복지직)으로 증원하고,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13명 ⇒ 518명 (증 5명)
- 일반직 계 : 469명 ⇒ 474명 (증 5명)
- 6급이하 계 : 434명 ⇒ 439명 (증 5명)
- 별정직 계 : 1명 ⇒ 1명 (변동없음)
- 기능직 계 : 42명 ⇒ 42명 (변동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내용으로 정원총수를 518명으로 5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이 434명에서 439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업무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3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안승찬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안 제7조제3항제2호)

○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9조)

○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 기능, 직무 조정(안 제20조~안 제22조)

○ 지역위원회 회의 운영 조정(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구성대상을 조정하고, 주민참여

예산 동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원과 구성대상, 기능 등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위원회와 동 지역위원회 관련 규정이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함.

○ 조례에는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 경우,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임사무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의 개정으로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보건진료소 관리규정」폐지(2011.12.16.)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 회기금에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지급 중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3.01.09)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수당 보전

나)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 (현행) 간호직렬에 준하는 월 5만원 지급
- (개정) 월 25만원 지급

※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23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3. 2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 2013년 3월 5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이송된『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는 동 고유사무이며, 동마다 여건의 차이와 자치 역량을 고려해야 하는 조례이므로 조례안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전동에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일부동에는 무리가 있는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 동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만 규정하고, 각 동의 여건과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23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지역주민들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욕탕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1-5 (중산동)
- 명 칭 : 중산행복샘

○ 목욕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9조 내지 12조)

-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 가능

○ 목욕탕의 개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개방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 목욕탕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목욕탕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목욕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9조 내지 제12조)
  -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운영

-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

• 목욕탕의 개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

• 목욕탕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규모가 유사한 농소권역 민간목욕탕과의 평균 요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4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이혜경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및 독서진흥 등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정의(안 제1조~안 제3조)

○ 구립도서관의 기능(안 제4조)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안 제5조~안 제10조)

○ 구립도서관 사용허가, 사용료 등,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변상책임, 출입의 제한, 관외대출(안 제11조~안 제16조)

○ 도서관자료의 구입, 위탁자료, 기증자료, 자원봉사자 운영 등 (안 제17조~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각 도서관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이 조정되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기능 등이 추가되는 사항이므로, 의원 간 논의 후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이혜경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작은도서관 운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 추가(안 제7조제2항)

○ 자치운영위원회 근거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6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이혜경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 북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통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독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울산 북구의 책” 배부를 통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활성화(안 제13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울산 북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의 주민 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2013. 1. 1.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종전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변경(안 제12조 및 제13조)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안 제14조)

○ 세율에 관한 인용 법령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안 제5조 및 제10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3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및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나)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위원회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5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3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경계

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나) 주요내용

○ 경계결정위원회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조)

○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 경계결정위원회 의견청취,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47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이수선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 책무, 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효의 달(안 제4조~안 제6조)

○ 표창,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안 제7조~안 제9조)

○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0조~안 제11조)

○ 지도감독, 준용 등(안 제12조~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하도록 함은 물론 효행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의안번호 248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안승찬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책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견 수렴

(안 제3조～안 제5조)

○ 어린이 안전 교육, 어린이 안전 민간단체 등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6조～안 제8조)

○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안 제9조)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와 관리(안 제10조～안 제12조)

○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등 (안 제13조～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9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이혜경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등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 대상 추가(안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 대상을 추가 하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강진희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2012.2.3)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관련 별표 정비(안 별표 제2조제1항)

- 위탁기간 변경 : 3년 → 5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서 정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 유통업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 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안 제16조)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변경할 경우도 같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점포의 변경등록 범위를 확대함.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화 (안 제17조의2)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1조제2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조례제목을「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6조의 2)
-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요건 강화(안 제16조)
-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화(안 제17조의 2)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적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외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가능하고,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던 간이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 내용은「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관리 조례」폐지임.

○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51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안승찬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3조)

○ 어린이공원등의 관리·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공원등의 행위제한(안 제5조)

○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 등, 조치 및 협조 요청(안 제6조~안 제7조)

○ 자원봉사활동 등, 예산 확보 및 지원(안 제8조~안 제9조)

○ 업무의 분담, 표창(안 제10조~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어린이공원등에서의 행위 제한과 적절한 조치 또는 해당 관리주체가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

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나) 주요내용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안 제3조~제4조)

○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4조)

○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4조)

- 로컬푸드의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
-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농어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 매점 설치에 관한 사항
- 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의 활성화, 로컬푸드의 날 지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개정 내용은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안 제3조~ 제4조)
-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안 제5조)
- 로커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안 제18조)
-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안 제20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는 외래합성어이나 국어 번역할 동일한 국어 단어가 없어 그대로 사용함이 무방할 것이며, 조례 제정이나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52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이수선·이혜경의원)

○ 심의일자 : 2013. 5. 1 (제139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전용주차구역 설치, 자동차표지 발급 등(안 제3조~안 제4조)

○ 주차안내 표지 설치, 위반차량 조치 등(안 제5조~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공시설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마트와 병원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적극 권장하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25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4. 16 (북구의회의장)

○ 심의일자 : 2013. 5. 6 (제139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201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따른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대상자격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선임인원 : 3명(의원 1, 공인회계사 2)

○ 선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북구의회 의원	안승찬	'63. 05. 29.	결산검사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강성태	'67. 5. 7.	
공인회계사	김진현	'72. 11. 1.	

○ 위촉기간 : 2013. 5. 20. ~ 6. 8.(20일간)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 재무보고서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제140회 제1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3. 6. 20 (목) 10:00

다. 회 기 : 2013. 6. 20 ~ 7. 2 (13일간)

라. 부의안건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 구정 질문의 건(이수선의원)

-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5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의 결과로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북구의회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간 활동을 뒤돌아보며, 2012 회계연도 결산과 각종 의안 처리를 통해 구민의 대변자 역할

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써 집행기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주시고, 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 속에서도 상호 존중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치 용

3. 의사일정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3. 6. 20 ~ 7. 2(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3.6.20 (목)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64호) - 제 안 설 명(총무국장)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안승찬의원) 5.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구정 질문의 건(옥동농소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 관련, 이수선의원)	
6. 21.(금) 10:00	2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총 무 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6. 22.(토)		휴 회	
6. 23.(일)		휴 회	
6. 24.(월) 10:00	3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 무 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의회사무과	
6. 25.(화) 10:00	4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6. 26.(수) 10:00	5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	
6. 27.(목)		<현장 방문>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28.(금) 10:30	6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이수선의원·이홍걸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강진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안번호 제262호, 안승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 이혜경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심의보류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6. 29.(토)		휴 회	
6. 30.(일)		휴 회	
7. 1.(월) 10:00	7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65호, 기획홍보실, 경제일자리과, 건설방재과, 농수산과)	
7. 2.(화) 10:00	8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2.(화) 10:00	8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2.(화) 10:00	8	◆ 5분 자유발언(정윤석의원)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구정 질문의 건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이혜경의원) 4.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66호, 안승찬의원)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6. 1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6. 28 (제140회 제1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부서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

- 조정 사유 :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안전총괄 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

○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업무를 추가

- 조정 사유 : 안전총괄부서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 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부서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안전행정부「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현행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에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6. 1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6. 28 (제140회 제1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제3조)

-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위원회 설치

○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 지역구 의원 당연직
- 동장 추천, 구청장 위촉

○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 사항 (안 제5조~제8조)

-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위원은 임무 수행 시 대상자 인격 존중, 비밀누설 금지

○ 회의개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제13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2회 개최
-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 “동 단위 복지위

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음.

- 다만, 본 조례안은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는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6. 13 (이수선의원 외 4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6. 28 (제140회 제1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신고의무 등(안 제1조~안 제4조)

○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구성, 기능(안 제5조~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실비보상(안 제8조~안 제11조)

○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2조~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6. 13 (강진희의원 외 4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6. 28 (제140회 제1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적극적 조치(안 제4조~제5조)

○ 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성평등 의식의 제고, 경제활동의 지원 등(안 제6조~안 제11조)

○ 여성주간행사, 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안 제12조~안 제18조)

○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등(안 제19조~안 제21조)

○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안

제22조～안 제30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안 제31조～안 제3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기존 “여성발전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구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6. 13 (안승찬의원 외 4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6. 28 (제140회 제1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임(안 제1조～안 제3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위촉 해제, 수당등(안 제4조～안 제11조)

○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구성, 운영위탁, 위탁의 취소 등(안 제12조～안 제18조)

○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9조)

○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위탁, 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운영위탁의 취소 등(안 제20조～안 제25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안 제26조～안 제28조)

○ 지도 및 감독, 보고와 검사(안 제29조～안 제30조)

○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 등(안 제31조～안 제33조)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6. 13 (이혜경의원 외 3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6. 28 (제140회 제1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친환경농업 육성, 품질보증(안 제4조～

안 제6조)

○ 교육・훈련 및 교류협력, 친환경농업의 홍보, 소비촉진, 학교급식(안 제7조～안 제10조)

○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평가, 자료제출 구 등(안 제11조～안 제14조)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능,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안 제15조～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다만, 본 조례안은 품질우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자체 친환경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14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수선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3. 7. 26 (금) 10:00

다. 회　　기 : 2013. 7. 26 (1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생략)

3. 의사일정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3. 7.26(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3.7.26. (금) 10:00	1	1.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8호,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 (의안번호 제26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7. 2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7. 26 (제14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8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농소3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위원의 자격,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농소3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7. 17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7. 26 (제14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원안과 같음) ③ ~ ④ (원안과 같음)

제9절 제14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3. 9. 3 (화) 10:00

다. 회　　기 : 2013. 9. 3 ~ 9. 16 (14일간)

라. 부의안건

○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구정 질문의 건

-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 관련(이홍걸의원)
- 농소2·3동 주민센터의 주차난 해소 관련(이수선의원)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여름은 유례없는 전력 대란의 우려 속에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만 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을 만나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 청취는 물론 민원 해결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적조 피해 예방과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1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추경 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구민들을 위해 성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보람된 결실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치 용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안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3. 9. 3~9. 16(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3.9.3.(화)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274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구정 질문의 건 ○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 관련(이홍걸의원) ○ 농소2·3동 주민센터의 주차난 해소 관련(이수선의원)	
9. 4.(수) 10:00	2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강진희의원 발의 - 총무국) 3.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의안번호 제271호)	원안가결 원안가결
9. 5.(목) 10:00	3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계속> ○ 총 무 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대상현장)
9. 6.(금) 10:00	4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275호, 기획홍보실) 2.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9. 7.(토)		휴 회	
9. 8.(일)		휴 회	
9. 9.(월) 10:00	5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0.(화) 10:00	6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9. 11.(수) 10:00	7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9. 12.(목) 10:00	8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계수 조정	
9. 13.(금)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9. 16.(월) 10:00	10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당일의사일정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3.(금)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3.(금)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안번호 제27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27 (강진희의원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9. 4 (제14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들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8조제2항)

○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 및 비율 등 정비(안 별표 2, 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13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2013. 5. 1.)에서 의결되어 2013. 5. 24.부터 시행되었음.
- 목욕시설인 중산행복샘의 본격 운영에 앞서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인근 지역시설의 사용료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발의 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음.
- 다만, 본 조례안은 사용료 부분과 감면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이므로,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의안번호 제27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2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9. 4 (제14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이즈미트시에서 터키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 우리구와 자매결연 의지를 표명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이즈미트시는 터키 산업의 중심지로서 현대자동차 터키공장이 진출해 있고, 항만공업도시로서 지역특성이 우리구와 비슷하며,

○ 터키는 우리나라와 전통 우방국으로서 양도시의 상호이익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그간 추진상황

- 2012. 4. 23.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으로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대상국가로 선정
- 2012. 5월 ~ 11월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사)터-한 문화 교류협회장을 통한 이즈미트시와 교류의사 타진
- 2012. 12. 6. : 교류의향 서한문 발송
- 2013. 8. 12. : 이즈미트시에서 자매결연 및 방문제안

○ 향후 계획

- 터키 코자엘리주 이즈미트시 방문 : 2013. 10. 28. ~ 11. 4. (6박 8일)
-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 : 2013. 10. 30.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터키 이즈미트시와 우리 구가 재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으로서 터키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 우방국임.

○ 특히, 이즈미트시에는 1998년 10월부터 현대자동차 터키법인 공장이 건설되어, 현재는 연 20만대 생산 규모로 가동 중에 있으며, 주요 자동차업체 공장이 많아 차량 부품을 40% 가까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상황임.

○ 항만공업도시인 이즈미트시와의 자매결연 시 지역 특성이 우리 구와 비슷하므로 국제교류의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하여 양도시의 상호이익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2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9. 13 (제14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제정(2011. 9. 30.시행)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고,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최적의 인터넷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전자정부법」및「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안 제3조)

○ 개인정보 보호 및 각종 시스템 안전대책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및「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와 개인정보 보호, 각종 시스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조

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인터넷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암호화하고, 시스템의 안전대책 보완, 비밀번호 관리 등을 추가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전자정부법」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2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9. 13 (제14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2013. 3. 23. 시행) 개정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고, 또한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09. 9월)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상황에 맞게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2013. 3. 23. 시행)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역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
-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27 (안승찬.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9. 13 (제14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안 제1조～안 제3조)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안 제4조～안 제7조)

○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등(안 제8조～안 제10조)

○ 우선구매 촉진, 민간기업 등 참여, 홍보 등 (안 제11조～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구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6. 1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9. 13 (제14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제3조)

○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 사항 (안 제5조～제8조)

○ 회의개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13. 6. 28.) 시 의안번호 제259호로 안건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된 바가 있음.
- 본 조례안의 재심의에 있어,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및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제14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홍걸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3. 10. 22 (화) 10:00

다. 회　　기 : 2013. 10. 22 ~ 10. 24 (3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2. 개회사 (생략)

3. 의사일정

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3. 10. 22~10. 24(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3.10.22. (화) 10:00	1	1. 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 23.(수) 10:00		<현장방문활동>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안전건설과) ○ 옥동~농소2 도로 개설(안전건설과) ○ 송정호수공원 조성사업(도시녹지과)	
10. 24.(목) 10:00	2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 이수선의원 발의 -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6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3호, 이혜경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 이혜경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이수선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79호)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80호) 11.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89호, 강진희의원)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15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0. 24 (제1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과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2014년도 계획인력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별표1에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하고,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99% 이상**	**1% 이내**

○ 안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하며,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비율	13%이내	20%이내	20%이내	47%이상	**(삭 제)**

- 별정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	100%	-	-	-

○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 총 계 : 518명 ⇒ 521명(증 3명)
- 일반직 계 : 474명 ⇒ 519명(증 45명)
  - 6급 이하 계 : 439명 ⇒ 484명(증 45명)
- 기능직 계 : 42명 ⇒ 0명(감 4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정원 총 수를 518명에서 521명으로 3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이 439명에서 484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종류별, 직급별, 기관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15 (이수선의원 외 3명 발의)

○ 심의일자 : 2013. 10. 24 (제1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

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 안 제3조부터 안 제5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등에 대하여,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명부관리, 선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성실 납세자 중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므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15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0. 24 (제1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정 목적, 기능을,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위촉 해제를 규정하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회의, 수당,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15 (이혜경의원 외 3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10. 24 (제1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기능, 운영,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을,

○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과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대안 교육 지원 등 후견인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제정은 가능하며,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15 (이혜경의원 외 3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10. 24 (제1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7조제2항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기간(연장)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탁기간(연장)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15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0. 24 (제1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대행계약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2013. 6. 17.)에 따른 법령상 개선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폐기물관리법」및「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민 명예감시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에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 정의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 안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를 쓰레기봉투 및 판매가격 중 수집·운반비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6장 보칙에서 구민참여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대행계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구민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 27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0. 24 (제1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법률 제10389호, 2011. 7. 24.)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사항을,

○ 안 제6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 작성에 대하여,

○ 안 제8조에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 평가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 현장평가단 구성 등에 대하여,

○ 안 제12조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대상, 지침,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15 (이수선의원 외 4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10. 24 (제1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10일”로 조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10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1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3. 11. 20 (수) 10:00

다. 회　　기 : 2013. 11. 20 ~ 12. 23 (34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설계하는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느 의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직접 구민을 찾아가서 경청하고 지역 곳곳을 두루 살피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중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행복샘 건립과 당사해양낚시공원 준공, 염포동주민센터를 건립 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및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개최된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의 성과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주민 참여 열기로 우리 지역의 성장하는 변모를 전국에 알리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구가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500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실시한 기초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강진희의원은 2년 연속, 이혜경의원은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우리 의회가 2013년 울산광역시 장애인정책 우수의회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함은 물론 날로 발전하는 우리 북구의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 북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살기 좋은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여야 하고,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만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큰 틀의 정책 감사와 주민들을 위한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당초예산안의 경우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편성 되었는지,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모든 안건이 원활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3. 11. 20～12. 23(3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20.(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1.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302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5.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 21.(목) 11. 29.(금)		행 정 사 무 감 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소회의실 (대상현장)
11. 30.(토)		휴 회	
12. 1.(일)		휴 회	
12. 2.(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7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이수선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심의보류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정윤석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건설도시국)	수정가결
		8.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건설도시국)	심의보류
		9.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 강진희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수정가결
12. 3.(화) 10:00	3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95호, 총무국)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96호, 총무국)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03호, 기획홍보실)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12. 4.(수) 10:00	4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12. 5.(목) 10:00	5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2. 6.(금) 10:00	6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12. 7.(토)		휴 회	
12. 8.(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9.(월) 10:00	7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2. 10.(화) 10:00	8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12. 11.(수) 10:00	9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12. 12.(목) 10:00	10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12. 13.(금) 10:00	11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14.(토)		휴 회	
12. 15.(일)		휴 회	
12. 16.(월) 10:00	1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12. 17.(화) 10:00	13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건설도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8.(수) 10:00	14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 보 건 소	
12. 19.(목) 10:00	15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 의회사무과	
12. 20.(금)	16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21.(토)		휴 회	
12. 22.(일)		휴 회	
12. 23.(월) 10:00	17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당일의사일정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7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총무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이수선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정윤석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건설도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 강진희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12. 11.(수) 10:00	9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7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총무국)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이수선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정윤석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 강진희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12. 11.(수) 14:00	9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하여,「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 2013.07.29) 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을 규정에 맞게 설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2조에서 월액여비 지급 한도 설정

- (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액여비 월지급한도액을 자치단체장이 정함.
- (개정) 월 138,000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50%까지 가산 허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상시 출장공무원의 월 지급한도액을 설정하고 50%까지 가산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의안번호 제30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3. 10. 31.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사항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지식함양 기회를 위한 학습휴가를 신설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4조제13항에서 학습휴가 실시 조항을 신설함.

- 최초 임용일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실시 할 수 있고,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식함양을 위한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염포동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별표에서 염포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현 소재지	변경 소재지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염포동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염포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를 신설하

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연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을,

○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당 등을,

○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포상 등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직접적인 법률 위임은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형식이 적절하고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 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환경보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 안 제2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기본원칙,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위치, 사업을,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탁 운영, 위탁·수탁 등에 대하여,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여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동역사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2 (정윤석의원 외 1인 발의)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내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또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내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또는 거치대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내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내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또는 거치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관련 적용 법규를 조정하고,「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공영주차장 적용 법률을 조정하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규 조정

○ 안 제6조제4항제11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조항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나, 제5조제1항2호중 법률 근거를 명시한 사항에서 “제5조”는 “제9조”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 제5조----------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 제9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 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제도'를 시행하고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0조의2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안 별표 1에서 보상금 지급기준 및 보상금 신청요건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3. 12. 2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교육과 홍보 등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 및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친환경 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 할 수 있다.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기관 대표 6.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 7.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8.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9.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원 안	수 정 안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생 략)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과 홍보) (생 략)	제8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생 략)	제9조(교육과 홍보)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12절 제14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4. 2. 18 (화) 10:00

다. 회　　기 : 2014. 2. 18 ~ 2. 28. (11일간)

라. 부의안건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개회되는 첫 임시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 전입오신 곽상희 부구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 3년 7개월 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쉴 새 없이 생활현장을 달려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이면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만큼 더욱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윤종오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9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은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단위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등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부서별 업무 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500여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예방활동과 유래 없는 강설로 인한 제설 작업 등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치 용

3. 의사일정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4. 2. 18~2. 28(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4. 2. 18. (화)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 19. (수) 10:00	2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21. (금) 10:00	4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총 무 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 24. (월) 10:00	5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2. 25. (화) 10:00	6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 26. (수) 10:00	7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2. 27. (목) 10:00	8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28. (금)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8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 총 무 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복지경제국)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2. 10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2. 28 (제14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조직관리 기준 범위 내 인력을 증원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하고, 공무원 직종개편 후 현원 기준 직급 불·부합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 총 계 : 521명 ⇒ 534명(증 13명)
- 일반직 계 : 519명 ⇒ 532명(증 13명)
  - 5급 : 30명 ⇒ 31명(증 1명)
  - 6급 이하 : 484명 ⇒ 496명(증 1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관리 기준범위 안에서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정원총수를 521명에서 534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을 30명에서 31명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을 484명에서 496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직급별, 기관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2. 10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2. 28 (제14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역의 유휴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 예술 창작소의 위치를,

○ 안 제5조에서 예술 창작소의 추진 사업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예술 창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예술 창작소 설치 근거와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예술 창작소의 추진 사업, 예술 창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2. 10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2. 28 (제14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전입자의 수당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였고,

- 월 30천원 → 월 50천원(시비보조금 20천원 인상)

○ 안 제6조제4항에서 전입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음.

- 수당 지급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나, 신청일 기준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달을 제외하고 수당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전입자의 수당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고, 전입자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에 따라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3절 제14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개회일시 : 2014. 4. 11 (금) 10:00

나. 회　　기 : 2014. 4. 11 ~ 4. 21 (11일간)

다. 부의안건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설해 등으로 분주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완연한 봄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 500여 공직자 및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도 화창한 봄을 기대해 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 및 저소득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능동적인 복지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항상 해 오셨듯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모로 바쁘시리라 짐작되지만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는 7월 제6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잘 마무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9만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치용

3. 의사일정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4. 4. 11~ 4. 21(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4. 4. 11. (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17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4. 12. (토)		휴 회	
4. 13. (일)		휴 회	
4. 14. (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311호, 총무국)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12호, 총무국) 수정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 총무국)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강진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이혜경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9.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4. 15. (화) 10:00	3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4. 16 (수) 10:00	4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4. 17. (목) 10:00	5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4. 18. (금) 10:00	6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 조정	
4. 19. (토)		휴 회	
4. 20. (일)		휴 회	
4. 21. (월) 10:00	7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21호)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4. 14 (제1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이 2013. 12. 12. 자로 직종을 개편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 관련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 관련 자구 수정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일반・전문)계약직공무원 →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은「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임기제공무원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임기제공무원 도입과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4. 14 (제1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를,

○ 안 제3조에서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사업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를,

○ 안 제5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등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새마을사업의 지원, 지원 절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제정은 가능하며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안 조문 대비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사기진작 등) (생 략) 1. ---------- ---------- ----------기념일 ---------- 2. (생 략)	**제5조(사기진작 등)** (현행과 같음) 1. ---------- ---------- ----------새마을의 날 ---------- 2.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4. 14 (제1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조정(인하)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8조에서 사립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5의 대부료율을 적용하고,

○ 안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6조에서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금반환가산금을 인하하였으며,

○ 안 제39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하였고,

○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4 (강진희·윤치용의원 외 3인 발의)

○ 심의일자 : 2014. 4. 14 (제1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의2에서 다문화가족의 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고자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 한것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4. 14 (제1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발생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및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구성 및 임무를,

○ 안 제6조에서는 통합지휘소와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연락관 파견 등에 대하여,

○ 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출동·조치

- 긴급복구 복구체계 전환 등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현장 지휘체계 및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시기 및 주요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강화, 단계별 통합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4. 14 (제1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 안 제5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은「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리원칙,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3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4. 14 (제1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 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현지조사,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의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4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4. 4. 14 (제1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운영, 대상사업의 협의, 홍보 등을 규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안전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것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추진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범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장

예산 · 결산 심의사항

제1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절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절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절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8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9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0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1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절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1 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6. 22.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2. 7. 3. ~ 7. 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90,289,865,430원
- 세출결산액 : 152,444,017,008원
- 세계잉여금 : 37,845,848,422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523,710,435,136원
  - 부 채 : 4,967,531,696원
  - 순 자 산 : 518,742,903,440원
- 재정운영
  - 수 익 : 163,593,621,685원
  - 비 용 : 137,745,585,170원
  - 운영차액 : 25,848,036,515원

4. 심의의결 요지

□ 세입부문

○ 2011년도 세입예산현액 1,885억2,70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2억8,98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31억 9,261만원에 수납액은 1,848억8,876만원이고, 지출액은 1,515억 9,883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3억3,44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11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4,518만원임.

○ 지방세의 경우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이월된 재산세가 많은데,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징수 특별방안을 강구하여 체납되는 세금이 없도록 특별 관리해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1,885억2,70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4억4,402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831억9,26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5억9,8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3억3,445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4,518만원임.

○ 행정서비헌장 추진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미집행과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부서별로 1명을 추천 받는 등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과 포상금액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울산외국어고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금 지급 여부의 법적·행정적 검토와 매번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파악 시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람.

○ 뿐만 아니라, 부서별 공공요금 집행과 관련하여 월별 사용량 등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정확한 추계와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좀 더 나아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함.

○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 가입은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 대

비가 목적이므로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봉사 점수 관리와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노숙 및 행려자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인데, 광역시 차원의 노숙자 현황이 파악된다면 쉼터 조성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구 차원에서 전반적 도로, 건물 상황 등을 장애인단체와 함께 조사하여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구가 필요함.

○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과 관련하여 물품 지원, 부대시설 설치 등 민원 요구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시설이나 단체, 동, 의원 등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이와 더불어, 구민 창안과 관련된 예산이 미집행 되었는데,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시기를 정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구정 발전과 연계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2 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6. 21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2. 7. 10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정 일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5건	562,350,000		531,659,848	30,690,152	
일반 회계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318,474,000	09.15	318,473,150	850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지급	26,181,000	12.21	26,180,700	300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정자동 278-1, 822㎡) 손실보상 청구 소송결과 울산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15,030,000	03.22	15,030,000	0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지급
〃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7,043,000	06.03	7,042,608	392	어물동 41, 41-2번지 무단점용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195,622,000	01.27	164,933,390	30,688,610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초소, 공동 방제단 운영비

4. 심의의결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5억6,235만원 중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 5건에 5억3,165만9,848원을 지출하였으며, 3,069만15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1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3억1,847만3,150원,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지급에 2,618만700원, 대설 피해 복구비 지급에 1,503만원,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704만2,608원,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1억6,493만3,390원을 집행하였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9. 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2. 9. 10.(제1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2. 9. 24.(제10차 본회의)

2.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2년 예산액 (2회추경)	%	기정 예산액 (1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90,910,951	100.0	185,557,385	100.0	5,353,566	5,727,329
일반회계		185,648,616	97.24	180,295,050	97.16	5,353,566	5,569,458
특별회계		5,262,335	2.76	5,262,335	2.84	0	157,87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6,555	0.09	166,555	0.09	0	4,997
	폐기물처리시설	3,803,592	1.99	3,803,592	2.05	0	114,10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579	0.01	9,579	0.01	0	287
	기반시설	347,390	0.18	347,390	0.19	0	10,422
	주차장	935,219	0.49	935,219	0.50	0	28,057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90,910,951	-	-	-	7,117,069	7,117,069	190,910,951	5,727,329
일반회계		185,648,616	-	-	-	3,034,692	3,034,692	185,648,616	5,569,458
특별회계		5,262,335	-	-	-	4,082,377	4,082,377	5,262,335	157,87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6,555	-	-	-	2,997	2,997	166,555	4,997
	폐기물처리시설	3,803,592	-	-	-	3,803,592	3,803,592	3,803,592	114,1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579	-	-	-	1,467	1,467	9,579	287
	기반시설	347,390	-	-	-	4,711	4,711	347,390	10,422
	주차장	935,219	-	-	-	269,610	269,610	935,219	28,057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5,356만원이 증액된 1,909억 1,095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39억, 세외수입 7,180만원, 지방교부세 2억 5,260만원, 보조금 11억 2,91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53억 5,356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억 5,230만원, 교육 분야에 20억 6,33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 5,174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7,215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 5,927만원, 보건 분야에 1억 5,578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억 6,62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53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60만원, 기타에 6억 4,43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8억 8,9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더불어 제대로 된 통합관리 및 실효성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함.
‘구정소식지와 화보집 발송 우편요금’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추계에 의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당초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여 계획성 있는 공공요금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함.
‘직원 맞춤형 연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른 연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직원 연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함.
‘울산외고 설립지원’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을 다루는 기관에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평등권에 있어

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요구할 것을 당부 드리며, 울산외고 옹벽 복구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이를 확인·점검한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함.

‘좋은 아버지 학교 심화과정 운영’의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성립전 예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명촌문화센터 주민쉼터 비품 구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주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함.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의 경우에는 효율성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적임자 선정과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국장 상근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규칙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함.

대부분 지하시설의 경우 방수처리를 하긴 한다지만 지반 침하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한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고, 누수로 인한 습기와 곰팡이 등 공기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하여 시설물 자체의 관리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염포동주민센터 신축’의 경우에는 지하에 대한 부분을 지상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함.

기존 염포동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일부 산림청 부지의 매입과 경사도 높은 부분에는 지하 주차장 조성, 지상에는 복합 문화센터로 조성하는 방법과 복권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는 등 그 동안 소외되었던 주민들을 위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중앙도서관 옥상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쉼터 조성을 통해 도서

관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보수 외의 벤치형플랜트 화분 등의 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후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여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은 좋으나 계획 추진 시 보다 확실한 근거에 의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림.

또한, 우리 구의 인구밀집지역인 농소3동 지역의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상태인데,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는 효문초등학교의 여건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지만 향후, 대체부지 물색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단체인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아동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등 다른 단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람.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파라솔 설치 등 환경개선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향후, 인근 부지 매입 등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경로당 냉방비 한시지원’의 경우에는 시비 지원 예산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혹서기 계절을 감안하여 냉방비 등이 조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삭감보다는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근무자의 현장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매곡산업단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일원에는 상업적 광고물이 많은데, 사무국과 협의하여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산업단지 또는 신설되는 공장지역,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시대를 보완·추가하는 등 우리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곡 교량 일원의 현수막 게시대 철거 관련 민원이 있으므로 현수막 게시대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교재비, 홍보비 등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교재비 예산 절감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걸맞는 교육 내용과 특화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마찬가지로 장소 확보 문제로 인하여 금회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데, 장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분양 또는 비어 있는 상가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방안 모색이나 장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기대만큼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으므로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며, 빈점포를 빌려 특정시간을 이용하여 물품을 저가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 지역 중소상인들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불법 상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당부 드림.

그리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및 의무 휴무일'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내의 입점 상인들도 생계가 어려운 영세상인이며, 중소상인이므로 그 분들 또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대형마트 외에 영업 규제와 의무 휴무일 지정을 원하는 우리 지역 중소상인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람.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과 관련한 '교통영향성 검토 용역'에 있어서 농소권 주민들이 상안 들을 이용하는 농기계의 출입 문제 검토와 맞은편 국도7호선으로 나오는 방향에도 1개차선 정도 확보해서 우회전 차량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교통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 시 주변 건물주들의 협조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오토밸리 2공구가 개설 예정인데 호계철길사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접속도로나 교차로 설치 방안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삭감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학로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협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기관간의 신뢰 회복 측면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력을 당부 드림.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전거 동호인과 더불어 차량이나 도보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면 함.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금번처럼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미불용지 보상'의 경우 고질적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당초예산에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길 바람.

또한, 우리 북구에서는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주차장실태조사 용역'과 구정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고, 인구 4만 명의 농소3동 지역에 상인들이 편안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필요하므로 농소3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공설시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체력진단 및 단련실 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삭감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체력진단 장비 7대를 관리 전환 받아 사용한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 개소 후 그 동안 체력진단장비 활용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림.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의 이행, 예산 소요내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함께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합목적성, 구체적 추진방향과 계획,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하여 주시길 권고함.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4 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2. 11. 20.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2. 12. 17.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3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12년 당초)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86,958,678	100	169,220,611	100	17,738,067	5,608,760
일반회계		182,134,875	97.42	164,200,950	97.03	17,933,925	5,464,046
특별회계		4,823,803	2.58	5,019,661	2.97	△195,858	144,71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7,837	0.07	130,789	0.08	7,048	4,135
	폐기물 처리시설	3,914,023	2.09	3,803,592	2.25	110,431	117,421
	기반시설	8,384	0.00	347,387	0.21	△339,003	252
	주차장	763,559	0.41	737,893	0.44	25,666	22,907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186,958,678	-	663,280	0.35	5,948,405	6,611,685	186,958,678	5,608,760
일반회계		182,134,875	-	663,280	0.36	1,837,003	2,500,283	182,134,875	5,464,046
특별회계		4,823,803	-	-		4,111,402	4,111,402	4,823,803	144,71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7,837	-	-	-	3,000	3,000	137,837	4,135
	폐기물처리시설	3,914,023	-	-	-	3,914,023	3,914,023	3,914,023	117,421
	기반시설	8,384	-	-	-	8,384	8,384	8,384	252
	주차장	763,559	-	-	-	185,995	185,995	763,559	22,907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3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7억 3,8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9억 3,392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585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57억 2,900만원, 세외수입 34억 494만원, 지방교부세 19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

6,099만원, 보조금 54억 9,81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3.22%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에 있어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전년대비 152.43% 증액되었음. 또한 국비·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7.48% 증액되었음.

○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은 물론 각종 사용료 수입,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비·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3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억 3,8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요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억 3,25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억 8,526만원, 환경보호분야에 8억 4,435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24억 3,996만원, 보건분야에 8억 86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억 2,82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수송 및 교통분야에 32억 9,42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억 1,30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 ‘자막 프롬프터 구입’의 경우 사용빈도가 낮아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활용도 측면에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통일기행 수행공무원 여비’와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의 경우 매년 시행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자문위원들의 새로운 임기 도래 시 추경예산을 편성

할 때 국내 경비 수준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경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하여도 일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주민등록증감별기(효문동)'와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공사'의 경우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되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음.

○ '퇴직자지원&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집기구입'의 경우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계 중에 있고, 향후 추경 편성 시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의 경우에는 투명한 보조금 사용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실질적 경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북구 생활체육회의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강습회 개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 권고함.

문화원 사업지원 '해외문화 탐방'과 '장수체육대학 운영'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사업별 취지와 성격에 맞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태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므로 장애인들의 자활훈련을 겸한 사업 발굴 등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짐은 물론 국비·시비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구 스스로 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취업과 더불어 좀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겪고 있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행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

업에 있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향후에는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이전 경비 등의 경우 좀 더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절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12. 7.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2. 12. 17.(제12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2. 12. 24.(제16차 본회의)

2.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2년 예산액 (3회추경)	%	기정 예산액 (2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05,560,068	100.0	190,910,951	100.0	14,649,117	6,166,802
일반회계		200,294,727	97.44	185,648,616	97.24	14,646,111	6,008,842
특별회계		5,265,341	2.56	5,262,335	2.76	3,006	157,96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9,555	0.08	166,555	0.09	3,000	5,087
	폐기물처리시설	3,803,598	1.85	3,803,592	1.99	6	114,108
	기반시설	347,390	0.17	347,390	0.18	0	10,422
	주차장	935,219	0.45	935,219	0.49	0	28,05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579	0.00	9,579	0.01	0	287

3.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205,560,068	-	-	-	13,504,709	13,504,709	205,560,068	6,166,802
일반회계		200,294,727	-	-	-	9,420,326	9,420,326	200,294,727	6,008,842
특별회계		5,265,341	-	-	-	4,084,383	4,084,383	5,265,341	157,96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9,555	-	-	-	2,997	2,997	169,555	5,087
	폐기물처리시설	3,803,598	-	-	-	3,803,598	3,803,598	3,803,598	114,108
	기반시설	347,390	-	-	-	4,711	4,711	347,390	10,422
	주차장	935,219	-	-	-	271,610	271,610	935,219	28,05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579	-	-	-	1,467	1,467	9,579	287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6억 4,911만원이 증액된 2,055억 6,00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26억 1,600만원, 세외수입 22억 3,551만원, 지방교부세 2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6억 2,157만원, 보조금 49억 5,7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46억 4,911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문화및관광 분야에 8억 8,504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6억 4,477만원, 보건 분야에 1,22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6,51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 2,237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2억 6,951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6억 6,309만원, 예비비에 63억 8,56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526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3,252만원, 교육 분야에 887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944만원, 기타에 3억 4,26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요구사항으로,

'객원기자 운영 활성화'의 경우에는 활동비 등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원고료 상향, 소양 교육과 간담회 실시 등 객원기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객원기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구민 창안 시상금'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

여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주민 참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성립전 예산'으로 각종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또한, 각종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승인 후 집행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라도 사업 시행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공사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과정이나 완료시에도 의원들에게 설명하여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절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4. 1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3. 4. 23.(제1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5. 6.(제8차 본회의)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3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12,542,826	100.0	186,958,678	100.0	25,584,148	6,376,285
일반회계		207,382,551	97.57	182,134,875	97.42	25,247,676	6,221,477
특별회계		5,160,275	2.43	4,823,803	2.58	336,472	154,80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3,140	0.08	137,837	0.07	25,303	4,8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2,084	0.05	0	0.00	112,084	3,363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	1.84	3,914,023	2.09	11	117,421
	기반시설	8,384	0.00	8,384	0.00	0	252
	주차장	962,633	0.45	763,559	0.41	199,074	28,879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212,542,826	-	-	-	2,432,478	2,432,478	212,542,826	6,376,285
일반회계		207,382,551	-	-	-	2,054,935	2,054,935	207,382,551	6,221,477
특별회계		5,160,275	-	-	-	377,543	377,543	5,160,275	154,80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3,140	-	-	-	3,000	3,000	163,140	4,8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2,084	-	-	-	0	0	112,084	3,363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	-	-	-	0	0	3,914,034	117,421
	기반시설	8,384	-	-	-	8,384	8,384	8,384	252
	주차장	962,633	-	-	-	366,159	366,159	962,633	28,879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5억 8,414만원이 증액된 2,125억 4,282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12억, 세외수입 70억 9,812만원, 지방교부세 13억 5,000만원, 보조금 159억 3,6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55억 8,414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억 5,56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66만원, 교육 분야에 1,54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4억 6,305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4,859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77억 4,231만원, 보건 분야에 8억 3,30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8,583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억 4,10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7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억 1,853만원, 기타에 6억 9,56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4억 4,5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구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부설주차장 재포장 공사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일원 진입로 부분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행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청사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청사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대회의실의 무대와 조명 등 예식장 시설도 개선하여 어려운 계층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복지업무의 특성상 민원 고충과 각종 시책의 변화, 새로운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업무가 과다한 실정이므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그 어려움과 고충을 수시로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하는 등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 처우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사회복지의 경우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이 많으므로 수혜대상에 대한 질적 서비스 강화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 수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장애인과 노인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행정적인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바우처 사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수시 점검함은 물론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당부 드림.

동천 유지관리사업의 둔치변 초화류 식재는 초화종자의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식재 후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동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폭이 넓고, 경사도가 높아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연암배드민턴장 시설의 경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으므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개선을 권고함.

○ 특히, 예산 심의 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책사업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신규 자체사업 등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7 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6.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3. 6. 21. ~ 6. 2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27,903,348,110원
- 세출결산액 : 182,660,190,124원
- 세계잉여금 : 45,243,157,986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552,041,030,805원
  - 부 채 : 6,340,704,134원
  - 순 자 산 : 545,700,326,671원
- 재정운영
  - 수 익 : 188,316,756,429원
  - 비 용 : 161,597,030,156원
  - 재정운영결과 : 26,719,726,273원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 2,234억3,6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9억33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181억7,137만원에 수납액은 2,224억7,263만원이고, 이월액은 78억2,583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2억6,5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3,071만원이며, 이월액은 29억6,600만원임.

○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체납된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 징수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2,234억3,67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26억6,019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181억7,13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15억4,9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2억6,534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1,085만원임.

○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 예산을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복지 예산의 경우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많으므로, 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적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림.

○ 뿐만 아니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은 물론 좀 더 현실적인 추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당부 드림.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8 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6.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3. 7. 1.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정 일자	지출액	이월액	잔 액	지출사유
계	2건	1,229,018,000		564,778,020	663,028,800	1,211,180	
일반 회계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329,434,000	02.24	329,283,080	-	150,920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금 지급 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 공사	899,584,000	11.02	235,494,940	663,028,800	1,060,260	공공시설(29개소) 및 사유시설(9개소) 피해복구비 시비지원(40%)에 대한 구부담비율(60%)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복구

4.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2억2,901만8,000원 중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등 2건에 5억6,477만8,02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6,302만8,800원을 이월하고, 121만1,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2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에 3억2,928만3,080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 공사에 2억3,549만4,940원을 집행하였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9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8. 2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3. 9. 3.(제1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9. 16.(제10차 본회의)

2.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3년 예산액 (2회추경)	%	기정 예산액 (1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19,862,457	100.0	212,542,826	100.0	7,319,631	6,376,285
일반회계		214,582,182	97.60	207,382,551	97.57	7,199,631	6,437,465
특별회계		5,280,275	2.40	5,160,275	2.43	120,000	154,80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3,140	0.07	163,140	0.08	0	4,8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2,084	0.05	112,084	0.05	0	3,363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	1.78	3,914,034	1.84	0	117,421
	기반시설	8,384	0.00	8,384	0.00	0	252
	주차장	1,082,633	0.49	962,633	0.45	120,000	32,479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219,862,457	-	36,000	-	2,302,700	2,338,700	219,862,457	6,376,285
일반회계		214,582,182	-	36,000	-	1,834,943	1,870,943	214,582,182	6,437,465
특별회계		5,280,275	-	-	-	467,757	467,757	5,280,275	154,80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3,140	-	-	-	3,000	3,000	163,140	4,8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2,084	-	-	-	0	0	112,084	3,363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	-	-	-	0	0	3,914,034	117,421
	기반시설	8,384	-	-	-	8,384	8,384	8,384	252
	주차장	1,082,633	-	-	-	456,373	456,373	1,082,633	32,479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1,963만원이 증액된 2,198억 6,245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7억 3,000만원, 세외수입 12억 1,032만원, 지방교부세 8억 8,00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 보조금 19억 9,9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73억 1,963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7,931만원, 교육 분야에 1,02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억 6,285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5,06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4억 160만원, 보건 분야에 2억 2,59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2,491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88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억 9,61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억 4,52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25만원, 예비비에 2억 1,999만원, 기타에 3억 1,9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을 통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빔프로젝트 구입의 경우 3층 회의실 등 기 설치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음.
청사 갤러리 미술품 구입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작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우려되므로, 해당 부지 내 여유 공간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로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노동역사관을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운영할 경우 주

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쉽게 찾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동역사관의 위치, 내용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이용 등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교통시설물에 있어 횡단보도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 시 보행자의 식별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다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당사해양낚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어촌계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자연 상태로 조성 시 운영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당사해양낚시공원 시설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예산 심의 시 매번 지적되나 잘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불명확한 추계 또는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많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0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3. 11. 20.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12. 16.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4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13년 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06,246,386	100	186,958,678	100	19,287,708	6,187,392
일반회계		204,626,862	99.21	182,134,875	97.42	22,491,987	6,138,806
특별회계		1,619,524	0.79	4,823,803	2.58	△3,204,279	48,586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5,791	0.07	137,837	0.07	△2,046	4,07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41,300	0.26			541,300	16,239
	기반시설	10,074	0.00	8,384	0.00	1,690	302
	주차장	932,359	0.45	763,559	0.41	168,800	27,971

※ 전년도 예산액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914,023천원 포함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206,246,386	10,800	53,024	0.02	2,208,887	2,251,111	206,235,586	6,187,392
일반회계		204,626,862	10,800	53,024	0.02	2,187,361	2,229,585	204,616,062	6,138,806
특별회계		1,619,524	-	-		21,526	21,526	1,619,524	48,586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5,791	-	-	-	3,000	3,000	135,791	4,0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41,300	-	-	-	-	-	541,300	16,239
	기반시설	10,074	-	-	-	10,074	10,074	10,074	302
	주차장	932,359	-	-	-	8,452	8,452	932,359	27,971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4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2억 8,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4억 9,198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427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9억 2,300만원, 세외수입 12억 6,71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8만원, 보조금 187억 8,83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으며,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23.9% 증액되었음.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세입과목 편제로 신설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집행으로 감소됨.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의 기타 사용료 세입에 있어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음. 각종 프로그램의 진단 등을 통해 기타 사용료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세 출

○ 2014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억 8,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요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4억 2,973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1억 689만원, 문화및관광분야에 49억 4,90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9억 8,213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억 6,134만원, 기타에 32억 1,54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교육분야에 2,718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1억 9,045만원, 보건분야에 3억 2,061만원, 농림해양수산에 21억 4,757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 15억 8,148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24억 7,659만원, 예비비에 3억 1,29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수행’을 위한 의원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였음.

○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의 경우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

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음.

○ ‘직업상담원 인건비’의 경우 인생이모작이음센터가 민간위탁되므로 전액 삭감하고, 시비에 대한 세입 부분을 연동하여 삭감함.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의 경우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전년도 대비 증액분을 삭감하였음.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의 경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 12. 2. 심의보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의 경우 예산의 집행과 정산 부분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타 구에서 유류를 주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 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바람.

세대공감창의놀의터 건립의 경우 당초와 달리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주민들의 기대 수요가 높은 시설인 만큼 아동들의 안전, 예산 등 부수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매곡 도서관 건립의 경우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므로 향후 건립비와 운영비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도서관 건립 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을 감안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모에 맞는 시설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바람.

의용소방대 훈련 및 경진대회 지원의 경우 소방서 관할 단체이며, 구 차원의 지원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행정에서 적극 노력 바람.

특히,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의 경우 선진지 견학 보다는 예산 편성 목적인 방재교육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보조금 카드 사용 등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민간이전 경비의 관리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많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 카드 사용과 정산 부분의 공통 서식화, 경비의 사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2014년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한 성과목표 작성 등이 부실함. 대상사업 과제별 검토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토록 하고, 성인지 예산에 있어 질 높은 교육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 과제 발굴이 필요함. 성인지 예산에 맞는 사업 개념 정립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바람.

○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성과상여금, 퇴직예정자 배우자 시상품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 바람.

국제교류에 있어 각종 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민·관 교류 부분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에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과 기준을 정하여 추진 바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관내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추진 바람.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의 경우 확산 방지 노력이 중요하므로 예찰 활동 강화 및 내년 4월까지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시고, 안전한 등·하교 지도 단체에 대하여 격려 바람. 또한, 양정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어린이 안전 쉼터 마련도 검토 바람.

천곡문화센터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변 지역의 차량 통행에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공공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주차장 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 바람.
학교급식지원에 있어 국·시비 지원 보다는 구비 부담이 많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 11 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3. 12.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3. 12. 16.(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12. 23.(제17차 본회의)

2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3년 예산액 (3회추경)	%	기정 예산액 (2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24,302,240	100.0	219,862,457	100.0	4,439,783	6,729,067
일반회계		219,020,187	97.65	214,582,182	97.60	4,438,005	6,570,606
특별회계		5,282,053	2.35	5,280,275	2.40	1,778	158,46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3,141	0.07	163,140	0.07	1	4,89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2,084	0.05	112,084	0.05	-	3,363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	1.74	3,914,034	1.78	-	117,421
	기반시설	10,161	0.00	8,384	0.00	1,777	305
	주차장	1,082,633	0.48	1,082,633	0.49	-	32,479

3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224,302,240	-	-	-	8,524,384	8,524,384	224,302,240	6,729,067
일반회계		219,020,187	-	-	-	8,054,850	8,054,850	219,020,187	6,570,606
특별회계		5,282,053	-	-	-	469,534	469,534	5,282,053	158,46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3,141	-	-	-	3,000	3,000	163,141	4,8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2,084	-	-	-	-	-	112,084	3,363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	-	-	-	-	-	3,914,034	117,421
	기반시설	10,161	-	-	-	10,161	10,161	10,161	305
	주차장	1,082,633	-	-	-	456,373	456,373	1,082,633	32,479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3,978만원이 증액된 2,243억 224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20억, 세외수입 7억 8,695만원, 지방교

부세 3억,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3억 2,09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19억 6,8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44억 3,978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495만원, 보건 분야에 2,691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억 8,906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2억 8,039만원, 예비비에 61억 8,39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3,674만원, 교육 분야에 75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574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2,633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6억 3,31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9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71만원, 기타에 5억 6,43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사업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많은 만큼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비비 운영이 필요함. 우리 구 재원이 열악한 만큼 향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홈골 전망데크는 물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 매곡천 쉼터 정비사업은 하천 보호와 유속을 고려한 친환경 녹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천곡2교 인도교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산불 개인진화장비(근무복) 구입의 경우 불미스런 사례로 계획

이 취소되었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 바람.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의 미개최로 위원 참석수당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 기능적 측면에서 축소되긴 하였으나, 운영위원회의 의미를 살려 사업계획 공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노력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12 절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4. 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4. 4. 11.(제1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4. 4. 21.(제7차 본회의)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4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24,733,043	100.0	206,235,586	100.0	18,497,457	6,741,991
일반회계		222,606,290	99.05	204,616,062	99.21	17,990,228	6,678,189
특별회계		2,126,753	0.95	1,619,524	0.79	507,229	63,80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5,791	0.06	135,791	0.07	-	4,07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41,300	0.24	541,300	0.26	-	16,239
	기반시설	10,074	0.00	10,074	0.00	-	302
	주차장	1,439,588	0.64	932,359	0.45	507,229	43,188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224,733,043	-	-	-	2,122,552	2,122,552	224,733,043	6,741,991
일반회계		222,606,290	-	-	-	2,101,026	2,101,026	222,606,290	6,678,189
특별회계		2,126,753	-	-	-	21,526	21,526	2,126,753	63,80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5,791	-	-	-	3,000	3,000	135,791	4,0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41,300	-	-	-	-	-	541,300	16,239
	기반시설	10,074	-	-	-	10,074	10,074	10,074	302
	주차장	1,439,588	-	-	-	8,452	8,452	1,439,588	43,188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4억 9,745만원이 증액된 2,247억 3,304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억 3,84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4억 4,387만원, 보조금 88억 7,401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으로 59억 7,11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84억 9,74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5,27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8,293만원, 교육 분야에 1,37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 31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2억 7,846만원, 보건 분야에 6억 6,78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억 77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억 9,60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 80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억 1,38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8,672만원, 예비비와 기타에 1억 3,049만원이 각각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국·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사업수요는 많으나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과 관련,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내 기존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없어짐으로 인해 강사들의 자긍심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구.어물보건진료소 철거와 관련 공사시행시 원가분석 등 사업비

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강구 바람.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여름부터 운영 예정인 카누, 오리배 체험시설 운영시 안전사고 등 운영상 미숙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도로편입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조속한 보상실시로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5 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2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3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4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5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6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7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8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1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2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기간 : 제13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 11. 21. ~ 2012. 11. 29.]

라. 감사장소 : 북구 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윤 치 용

○ 부 의 장 : 이 수 선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김 종 구, 진 상 록

○ 사무직원 : 박 아 영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윤종오		구정업무 전반 및 감사 요구 자료 참고
		부구청장	이종환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총무국	총무국장 총무과장 주민참여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서관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장영대 홍성욱 이해균 이태희 이상련 박경란 윤기현 이병국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일자리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심순보 이차범 윤일호 안희수 허정행 윤채걸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건설방재과장 도시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농수산과장	임용균 하종섭 박경규 손기익 장경석 송철주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황병훈 공영옥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김 익 수		구정업무 전반 및 감사요구 자료참고
		농소2동장	김 주 한		
		농소3동장	정 순 상		
		강동동장	엄 상 국		
		효문동장	한 상 길		
		송정동장	하 헌 주		
		양정동장	변 덕 임		
		염포동장	노 재 은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제13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 11. 21. ~ 2012. 11. 29.]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 시 /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2. 11. 2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기획홍보실** ○ **보건소**	
2012. 11. 22.(목)	10:00	〃	○ **총무국** • 총무과 • 주민참여과 • 회계과	
2012. 11. 23.(금)	10:00	〃	○ **총무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2. 11. 24.(토)			**휴회**	
2012. 11. 25.(일)			**휴회**	
2012. 11. 26.(월)	10:00	〃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2012. 11. 27.(화)	10:00	〃	○ **복지경제국** • 경제일자리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2. 11. 28.(수)	10:00	〃	○ **건설도시국** • 건설방재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2. 11. 29.(목)	10:00	〃	○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별첨 1」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09	22	22	106	111	108	31	9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 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작성요령 :「별첨 2」참조
- 감사범위 : 2011. 10. 1. ~ 2012.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2. 9. 30. 현재

○ 제출기한 : 2012. 11. 5.(월)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32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0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별첨 3」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6급 전문위원 진상록외 5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별첨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6급 전문위원 진상록・사무직원 박아영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속기사 허순자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 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 안내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409	
공 통 사 항		22	
기 획 홍 보 실		22	
총 무 국	소 계	106	
	총 무 과	14	
	주민참여과	24	
	회 계 과	16	
	문화체육과	22	
	도 서 관 과	10	
	세 무 과	7	
	민원지적과	13	
복지경제국	소 계	111	
	복지지원과	12	
	사회복지과	41	
	경제일자리과	12	
	환경위생과	25	
	환경미화과	21	
건설도시국	소 계	108	
	건설방재과	27	
	도시녹지과	23	
	교통행정과	12	
	건축주택과	17	
	농 수 산 과	29	
보 건 소		31	
의 회 사 무 과		9	

(전부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현황
※ 사업비 100만원이상, 담당별, 사업성격별, 사업추진 기간순으로 작성·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공사 전·후 사진 각 2장 이상(1천만원 이상)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공정률</th><th>시공업체</th><th>예 산
확보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table>
<tr><th></th><th>용역종류</th><th>용역비</th><th>착수일자</th><th>완료일자</th><th>용역결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2012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1. 10. 1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해당동</th><th>통보일자</th><th>공사명</th><th>공사개요</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11. 10. 1~2012.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table>
<tr><th rowspan="2">단체명</th><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단체명 구분 표지 첨부)
<u>※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u>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table>
<tr><th rowspan="2">환수일</th><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환수대상</th><th rowspan="2">환수사유</th><th rowspan="2">금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성명(업체,기관,단체명)</th><th>주소</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table>
<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차량명</th><th rowspan="2">차량번호</th><th rowspan="2">구입일</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상태</th><th colspan="3">수리내역</th><th rowspan="2">유류비</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자</th><th>내역</th><th>비용</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운행일지 사본 1부 제출(2011.11월, 2012.3월, 2012.8월)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성별</th><th>나이</th><th>주소</th><th>사역기간</th><th>사역목적</th><th>단가(원)</th><th>채용방법</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구 ○○동</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작성기간 : 2011. 10. 1 ~ 2012. 9. 30
- <u>근로 조건 및 근로계약서 해당사업별로 각 1부만 사본 제출</u>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국외 포함)
<table>
<tr><th>기간</th><th>지역</th><th>인원</th><th>목적</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td><td></td></tr>
</table>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2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 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 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2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	…															
의회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2.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2.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
홍보실</td><td>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 별도 제본된 책자로 제출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3. 구정연구동아리 운영실적, 정책연구모임 운영실적과 내용
4. 수요포럼 운영 실적
5.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6. 구민창안제도 운영실적
7.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2. 9월 30일 현재)
<table>
<tr><th>구 분</th><th>총계</th><th>법령</th><th>조례</th><th>기타 규정</th></tr>
<tr><td>설치근거별</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총계</th><th>심의</th><th>의결</th><th>자문</th><th>협의</th></tr>
<tr><td>성격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② 위원회 위원 현황
<table>
<tr><th rowspan="3">위원회명</th><th rowspan="3">위원장</th><th colspan="7">위 원 수</th><th rowspan="3">임 기</th></tr>
<tr><th rowspan="2">계</th><th rowspan="2">남</th><th rowspan="2">여</th><th rowspan="2">당연직
임명직</th><th colspan="3">위 촉 직</th></tr>
<tr><th>공무원</th><th>사구의원</th><th>민간위원
(시민단체)</th></tr>
<tr><td>총계</td><td>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td><td></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③ 위원회 개최현황
<table>
<tr><th rowspan="2">위원회명</th><th rowspan="2">회의주기</th><th rowspan="2">개최횟수
(서면)</th><th rowspan="2">회의록</th><th colspan="3">예산집행내역</th></tr>
<tr><th>예산액
(천원)</th><th>인원
(명)</th><th>집행액
(천원)</th></tr>
<tr><td>총계</td><td></td><td>0</td><td></td><td>0</td><td>0</td><td>0</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u>※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u>
④ 2011. 10. 1~2012. 9. 30.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위원회명</th><th>설치일자</th><th>설치근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대 집행내역
<table>
<tr><th rowspan="2">소관부서</th><th rowspan="2">위원회명</th><th colspan="4">집행내역</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시</th><th>장소</th><th>참석인원</th><th>소요금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
홍보실</td><td>8.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실적 및 성과
9.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세부 사업별)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업개요(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시공업체</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10.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2011년도, 2012년도)
11.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2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및 연구회, 시민위원 교육자료
(제본된 책자로 제출)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지역 토론회 회의록 및 순위
12.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3.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14.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승진점수가산,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5. 우리 구 채무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6.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7.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2011. 10. 1 ~작성기준일까지의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동안 사건완료 건도 포함
18.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
19.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20.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21.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2.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실적</td><td></td></tr>
</table>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
1. 청사내 직원 휴식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수, 교수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3. 해외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실적
4.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6. 여성공무원 보건 휴가 현황(2011, 2012년)
7. 5급 공무원 전보내역
<table>
<tr><th>대상자</th><th>부서명</th><th>근무기간</th><th>비 고</th></tr>
<tr><td rowspan="4"></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 현재</td><td></td></tr>
</table>
8.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 연월차 휴가 현황, 출장 현황 및 출장비 지출 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직급</th><th>계약기간</th><th>업무</th><th>채용방법</th><th>월평균급여</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포함
9.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1, 2012년)
10.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11.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1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13. 여름방학 컴퓨터교실 운영실적
1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
</td><td></td></tr>
</table>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2. 9. 30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2. 9. 30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실국	부서명	계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계										
본 청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2. 9. 30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실국	부서명	업무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 이하		240일 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 청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참여과																		
		:																		
	:	:																		
의 회	의 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주민
참여과</td><td>
1. 주민참여조례 시행 이후 세부 추진실적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포함)
2. 주민참여학교 운영 실적
(참여자치아카데미, 통장학교, CB학교)
3.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보조금 지원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 표기 - 동별 취합)
4.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직업 표기, 연령 표기), 위원의 타 단체 가입 현황, 여성위원 현황, 사무국장 현황, 주민자치위원장 현황
5.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
(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현황), 회의록 제목(안건)
6.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
7. 민주평통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자부담 포함)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
8.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9.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상황
10. 지역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정산내용, 활동일지
11.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12.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세부 사업별로 작성)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업개요(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시공업체</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주민
참여과</td><td>13.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14. CB 공모사업 현황
15.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table>
<tr><th rowspan="2">설립일</th><th rowspan="2">기업명</th><th rowspan="2">주생산품</th><th colspan="3">투 자 비</th><th rowspan="2">종사자수</th><th rowspan="2">월평균 매출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6.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장학금 지급실적,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금액, 향후계획
17.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정산서 별도 제출)
- 2012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1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9.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20.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21. 희망의 인문학강좌 운영 실적
22.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현황
23.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24.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 추진상황
- 9. 30까지 추진실적과 중간점검 실적</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회 계 과</td><td>
1. 공개입찰 계약현황 -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table>
<tr><th>발주부서</th><th>계약
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입찰참여
업체수</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관급공사 계약현황 - 2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수의계약 현황 - 1천만원 미만(1백만원 이상)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5.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체불임금 없는 관공사 조례시행이후 추진실적 및 임금지불서약서
사본
7.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8.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9. 공유 재산 취득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table>
<tr><th rowspan="2">연
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지목</th><th>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건물
<table>
<tr><th rowspan="2">연
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건축면
적(㎡)</th><th>건축연면적
(㎡)</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10.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실적
11.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12. 청사 환경개선 추진실적
- 사업명, 기간, 내역, 소요예산 등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회 계 과</td><td>13. 구청사 개보수 내역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기간</th><th>사업내역</th><th>사업비</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14. 구청사 냉방기 가동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15.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1, 2012년 월별 비교)
16. 보건소 옆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매입현황과 현재 활용 계획</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문화
체육과</td><td>
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 문화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3.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현황
4.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개최현황
(회원수 등 현황, 개최일시, 예산지원 내역, 집행내역 등)
5. 인문학 서재 몽돌 운영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현황
6. 천곡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7.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
8. 강동사랑길 세부 조성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자재비, 노무비, 홍보비 등), 개통전 월 이용자와 개통후 이용자 비교
9. 강동해변 물놀이장(바다 수영장 포함) 운영실적
10.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관리현황
11.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12.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현황(추진사항)
13.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4. 운동장별 대여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5. 북구청소년 통일축구대회
(개최일시, 참여인원, 예산지원 내역, 집행내역 등)
16.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17. 2011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18. 생활체육회 운영비
- 보조금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정산서 별도 제출
19.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현황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 체육과	20.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현황 21.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운용 현황 22.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2011, 2012년 월별 비교)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평균 이용자수 - 도서(장서) 보유현황 - 인력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운영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년수, 봉사내역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실적, 도서 대출현황, 이용자 현황,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정산서 별도 제출) 5. 독서릴레이 성과(독서 기록, 사업 실효성) 6.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추진 성과 - 도서 대출 현황 - 독서감상문 참여 현황 - 주민 홍보 현황 -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전략 7.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8. 한마음 순회문고 운영 실적 9. 5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1, 2012년 월별 비교) 10. 명촌도서관 증축 관련 -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 낙찰관련 서류(참여업체 현황 및 낙찰율 관련 자료)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세 무 과</td><td>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table>
<tr><th colspan="2">체 납 자</th><th colspan="3">결손내역</th><th rowspan="2">결손처분
일자</th><th rowspan="2">결손사유</th></tr>
<tr><th>성명</th><th>주소</th><th>세목</th><th>부과연도</th><th>결손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 지적과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실적 5.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 실적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중단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7.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8.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10.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1.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12.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13.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복지
지원과</td><td>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체별 구분 작성, 정산서 별도 제출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일시,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5.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6.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현황 및 지원현황(금액 등)
7.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2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현황
- 금년도 사업실적(2010, 2011, 2012년도 비교 작성)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 청소년자활지원관 참여 청소년현황(명단), 사업성과,
일일 업무현황, 월별 사업현황, 봉사자현황
8.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추진상황
9.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10.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지원 내역
11. (사)행복발전소 기부금 및 물품 기탁내역
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과 회의록</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 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회관 시설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6.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7.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근무시간 등 8. 2012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9. 북구 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10.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현황 11.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12.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록 13.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정산서 별도 제출 14.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현황 15.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16.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관련사업 17. 다문화가족 현황(자녀연령 등), 예산지원, 지원사업현황, 중점 추 진시책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18.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대상지역 선정기준, 향후시설 확충 계획 19.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 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20.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내역 21.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상세 작성 22. 어린이집 점검 내용 23.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 등 3개소에 대한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
복지과</td><td>
24. 행복만남 어린이집·경로당 사업
2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26.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 내역
27.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내역
28.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 월별 상담실적
<table>
<tr><td>상담내용별</td><td>1월</td><td>2월</td><td>3월</td><td>.....</td></tr>
<tr><td>성적</td><td></td><td></td><td></td><td></td></tr>
<tr><td>친구</td><td></td><td></td><td></td><td></td></tr>
<tr><td>가정</td><td></td><td></td><td></td><td></td></tr>
<tr><td>가출</td><td></td><td></td><td></td><td></td></tr>
<tr><td>부적응</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상담내용별은 예시이므로 실제 상담내용별로 구분 작성
- 상담 후 처리결과(상담일지 참조)
<table>
<tr><td>상담일지별</td><td>1월</td><td>2월</td><td>3월</td><td>.....</td></tr>
<tr><td>법률연계</td><td></td><td></td><td></td><td></td></tr>
<tr><td>학교연계</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상담내용별은 예시이므로 실제 상담내용별로 구분 작성
- 사례별 지속상담(10회 이상)관리 내담자수
<table>
<tr><td>사례별</td><td>내담자수</td><td>처리결과</td><td>비고</td></tr>
<tr><td></td><td></td><td><예>
상담종료...</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긴급위기상담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여부와 사례
- 센터 종사자 현황
<table>
<tr><td>종사자명</td><td>근무년수</td><td>자격증</td><td>학력</td><td>업무분장</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과 연계나 지원사업 여부(상담 등)
29.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30.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
복지과</td><td>
31.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 신청대상자 현황 및 지정인원
- 기초노령지급에 따른 인력지원내역(인원, 사역기간, 소요예산)
32.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지원현황, 자립생활 지원현황,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33.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기본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2011~2012년도)
- 직원현황(작성일 현재)
<table>
<tr><th>성명</th><th>나이(성별)</th><th>부양가족수</th><th>장애유형</th><th>장애등급</th><th>월 평균임금</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2011~2012년도)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2011~2012년도)
- 자원봉사 현황(2011~2012년도)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2011~2012년도)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2011~2012년도)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현황
-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34.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운영 규정
- 시설 종사자 및 근로자 업무분장표
- 근로자 월급명세서 : 1개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운영위원회 회의별 참석자 명단(참석사인 포함)
- 보조금 정산서
35.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현황 ※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th><th colspan="3">지체</th><th colspan="3">지적장애</th><th colspan="3">정신장애</th><th colspan="3">.....</th><th colspan="3">....</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2012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2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36.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동산 2011년도 예산지원, 사업실적, 정산서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37. 2012년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 어린이집 이용수, 미이용 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38.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현황(일, 월 평균) 39.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40.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현황, 사업비 내역 41. 장애통합 어린이집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제 일자리과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처리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자료, 명단, 소속 7.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실적, 상담실적, 상담 후 조치결과 (조례 제정 이전과 비교 데이터 포함) 8. 종합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실적 9.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일자리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10. 2012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인력 분석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11. 일자리 창출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실적 12. (예비적)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0, 2011, 2012년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현황 (기준 오염표 비교)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9.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10.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현황, 사업내용 11.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실적 12.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결과 보고 - (2010, 2011, 2012년도 작성) 13. 소하천별 수질조사(생태환경) 현황 - 환경 개선 및 보존사업 14.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현황, 추진결과 (수질개선효과 등 결과치 분석내용) - 사업일, 대상, 사업내용 포함 ※ 수성천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상황 별도 작성 15.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EMS) 추진내역 16.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위치표시) 17. 관내 음식점 남은 음식 줄이기 추진실적 - 음식물 싸주기, 모범 식단, 도시락용기 보급 등 ※ 모범음식점 포함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8. 게임장 현황 및 단속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9.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20.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도표) 최근 3년(2010년 ~ 2012년)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21. 위생관리 도우미 운영현황 및 실적 22.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3.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기타현황 24. 그린마을 추진실적, 성과 25.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실적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
미화과</td><td>
1. 기본 현황(2012.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2년도) 및 담당구역현황
3.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관련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포함(과태료 부과내역 등)
8.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0.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1~201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1~201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현황(2011~2012)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현황(2011~2012)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2.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0, 2011, 2012 년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table>
<tr><th>구 분</th><th>계</th><th>1월</th><th>2월</th><th>…</th><th></th></tr>
<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
미화과</td><td>14. 음식물폐기물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민원발생 내용 등
15. 음식물줄이기사업 정책 실패(2011. 대우아파트 시범사업) 이후 추진현황
16.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 교환판매장 관련
- 위탁 실적현황 (기간, 업체명, 위탁금액)
- 입찰계약서, 입찰조건, 인건비, 소요인력
- 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매출실적, 예산지원 현황, 이용자수)
- 교환판매장 수익 비교현황(2009, 2010, 2011, 2012작성)
- 재활용품 선별장 수익현황
- 재활용품 수거실적(2009, 2010, 2011, 2012년 작성), 처리내역
- 선별장내 구청 자산 목록(구입시기, 내구연한, 구입비 등)
- 재활용품별 가격 산정단가(폐지, 공병, 플라스틱, 캔 등)
17.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8.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9.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현황 (동별)
20.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망 관리내역
<table><tr><th>동 명</th><th>거점망
관리장소수</th><th>관리단체</th><th>지정일</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21. 중산목욕장 건립 추진현황</td><td></td></tr>
</table>

(건설도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건설
방재과</td><td>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th><th>내 용</th><th>처리결과</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불용지 보상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8. 공용자전거 구입내역(단가, 구입대수), 부서별 이용실적,
현재 이용실태, 관리현황(분실대수, 현재대수)
※ 휴일 관리방법 포함
9.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현황
(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현황)
10.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공사 전·후 사진 2장
11.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12. 동천 보 현황
13. 동천 하상정비공사 현황(준설모래 처리현황 포함)
14. 동천강변내 각종 식재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생존률
15.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6.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 추진상황, 당초계획과의 변경된 사항, 향후 계획 등)
17.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8.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9.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현황(조직도), 운영실적, 예산집행실적 등</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설 방재과	20. 제설장비 현황 및 설해대비 추진실적 21.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22.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 구 자체 판단 위험 취약지역 포함 23.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2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25.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현황 26.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27. 옥동~농소 2구간 도로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 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현황, 민원현황 및 지원실적 3.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6.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7.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현황, 산불 발생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8.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9. 숲길 관리 작업단 운영현황 10. 숲길 스토리텔링 조성사업 실적 11.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12.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13. 공원 현황 (위치,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14. 정다운 공원 이름 만들기 실적 15. 울타리 없는 공원 만들기 실적 16. 공원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17.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9.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20. 가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 투입 인력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 녹지과	21. 도심녹화사업,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계획 22. 가로수 식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포함 23.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현황 (세부 소요예산, 자문회의 개최결과, 회의록 사본, 국·시비 보조금 신청 내역 및 확보내역 등)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교통
행정과</td><td>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현황
2. 주정차단속 실적 및 민원해소 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단속)
※ 행정처분 실적 포함
3. 통합관제system 활용 후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
<table>
<tr><th>구분</th><th>건수</th><th>과태료부과액</th><th>비고</th></tr>
<tr><td>주차,정차 표기</td><td></td><td></td><td></td></tr>
</table>
4.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5.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6. 짜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내집주차장 설치 현황
7.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현황 및 단속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현황
<table>
<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소재지</th><th>차고지
면 적</th><th>용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속현황, 행정처분 실적
<table>
<tr><th>단속일자</th><th>단 속
차량대수</th><th>행정처분 실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8.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실적 등
9.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10. 관내 차선규제봉(탄력봉) 설치현황
<table>
<tr><th>설치일</th><th>대상지</th><th>설치내역</th><th>소요예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1. 저소득층 자동차 무료 점검행사 실적
12. 과태료 체납현황, 징수(정리)실적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 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 건축허가 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6.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현황 7. 명성요양원 건축허가 개요,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개설 관련 검토사항 8.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그간 세부 진행사항, 소송 대응 방안 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0.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11.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12.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실적 13. 공동주택 주민공동체사업 추진현황, 실적 14.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2. 9. 30 현재) 15. 평창리비에르 지반침하에 대한 재난대비 분석·평가 여부, 대책수립 현황 및 추진계획 16.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7. 주민참여형 아름다운거리 조성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 (일시, 지원내용, 수급자, 지원금액)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관내 저수지 유료낚시터 현황 8.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9.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현황, 계절별 작물재배 현황, 물량수 포함 - 유기질성분 비료 생산농가, 생산량, 지원실적, 평가현황 11.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 실적 12.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성과, 시장대비 가격 비교 13.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14.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5. “구”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방안 추진현황(연수결과 포함) 16.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17.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18.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9.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20.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21.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22.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23.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24.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 이용 현황, 수익금 현황 25.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세부현황(예산집행내역 포함) - 당사해양낚시공원 등 사업 전반 26.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농가수익증대, 판매실적, 육우 품질 향상 여부 등 포함) 27.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현황 28. 강동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29.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 학교별 세부지원내역(정산서 별도 제출)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각종 간담회 포함)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진료실적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고혈압 치료제 구입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수(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9.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10.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임산부 지원현황 포함 11. 2자녀·3자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12. 산모, 신생아 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예산집행/신청자수) 13. 암치료비 지원 실적 14.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현황, 대상자선정 기준 15.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인 출산 지원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6.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12세까지 영유아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현황(병의원 포함), 시행 이전과 비교실적, 이용자홍보실적, 관리대상자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7.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추진실적 18.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9.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20.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21.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22. 행복플러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23.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현황(건강생활실천사업 포함) 24. 정신보건사업 추진상황 25.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 홍보실적, 사업현황 26.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추진현황 27.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8.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 2012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실적 포함 29.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30. 노인 의치 지원사업 31.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1, 2012년 월별 비교)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 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현황 4. 의원 결의안, 자유발언, 서면(구두 포함) 질의 현황 5.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 현황 6. 의원 정기회, 임시회 출석 현황 7. 의회 방청 현황 8. 의회 견학 현황 9. 언론 홍보, 보도 현황	

제2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2. 11. 21. ~ 2012. 11. 29.(9일간)

4.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 치 용	이 수 선	안 승 찬 이 홍 걸 강 진 희 정 윤 석 이 혜 경	김 종 구 진 상 록	박 아 영

②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2. 11. 2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ㅇ **증인선서** • 국·소장, 실·과·동장 ㅇ **기획홍보실** ㅇ **보건소**	
2012. 11. 22.(목)	10:00	〃	ㅇ **총무국** • 총무과 • 주민참여과 • 회계과	
2012. 11. 23.(금)	10:00	〃	ㅇ **총무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2. 11. 24.(토)			휴회	
2012. 11. 25.(일)			휴회	
2012. 11. 26.(월)	10:00	〃	ㅇ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2012. 11. 27.(화)	10:00	〃	ㅇ **복지경제국** • 경제일자리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2. 11. 28.(수)	10:00	〃	ㅇ **건설도시국** • 건설방재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2. 11. 29.(목)	10:00	〃	ㅇ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ㅇ **의회사무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09	32	
공 통 사 항	22		
기 획 홍 보 실	22	1	
총 무 국	106	16(동장 8)	
복 지 경 제 국	111	6	
건 설 도 시 국	108	6	
보 건 소	31	2	
의 회 사 무 과	9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40	50	90
공 통 사 항	(7)	(4)	(3)
기 획 홍 보 실	9	3	6
총 무 국	45	15	30
복 지 경 제 국	40	14	26
건 설 도 시 국	36	14	22
보 건 소	5	1	4
의 회 사 무 과	5	3	2

6.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항의 변경 또는 폐기 시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도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참여에도 적극 노력 바람.
- 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형식적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 행정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 구성과 구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은 물론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③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 확립

-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북구 전체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할 주민의 혈세가 보조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어 전체 단체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며,

- 지원된 보조금은 단체별 일괄 정산이 아닌 사업별(인건비, 일반 운영비의 경우 분기별) 정산으로 보조금 정산 체계를 재검토하고, 공공성과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칙 확립이 필요함.

④ 1인 1전화 내실 운영

- 직원이 자리에 없다거나 출장 시에는 사무실 전화가 휴대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주민들은 직원 중 업무를 누가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 연락처를 보면 신속하게 해당 업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방향 모색

- 2012년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 많이 발전한 해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연간 한번 정도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동별 주민들이 모여 구 전체 사업을 선정하는 제도와 동별 지역회의의 특성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동별 예산 축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예산제에 더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고,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방향 모색, 위원들의 숫자는 적더라도 본인의 정확한 의사와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리드 교육 양성자와 주민참여 예산을 4년 동안 한 시민위원의 역량을 자산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 모색과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모색, 모임 구축의 적극적 방안을 모색 바람.
- 또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며,
- 향후,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위원회 설치, 시민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 바람.

② 재정 운영의 효율화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자 손실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상태임. 조기집행의 장점·단점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③ 기간제근로자 구민 채용 확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단순 사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많은 북구 주민이 확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항의 변경 또는 폐기 시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도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참여에도 적극 노력 바람.
- 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형식적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 행정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 구성과 구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은 물론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③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 확립

-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북구 전체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할 주민의 혈세가 보조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어 전체 단체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며,
- 지원된 보조금은 단체별 일괄 정산이 아닌 사업별(인건비, 일반운영비의 경우 분기별) 정산으로 보조금 정산 체계를 재검토하고, 공공성과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칙 확립이 필요함.

건의사항

①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검토

-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관리, 보수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시설공단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유로 잠정 보류하였음. 타 지방자치단체 공단 운영의 순기능, 장점·단점 등을 파악하여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②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 주민들은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조시스템을 구축한 공동의 대책 수립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유사 성격의 업무에 대하여는 한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

③ 구정 업무의 조정 역할 강화

- 행정은 주민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될 필요가 있음. 기획홍보실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이므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④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방향 모색

- 2012년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 많이 발전한 해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연간 한번 정도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동별 주민들이 모여 구 전체 사업을 선정하는 제도와 동별 지역회의의 특성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동별 예산 축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예산제에 더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고,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방향 모색, 위원들의 숫자는 적더라도 본인의 정확한 의사와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리드 교육 양성자와 주민참여 예산을 4년 동안 한 시민위원의 역량을 자산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 모색과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모색, 모임 구축의 적극적 방안을 모색 바람.
- 또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며,
- 향후,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위원회 설치, 시민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 바람.

⑤ 재정 운영의 효율화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자손실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상태임. 조기집행의 장점·단점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⑥ 언론 홍보 강화

-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코스트코 관련 등 언론 대응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음. 공정 보도를 위한 자료 제공 등 언론에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정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총 무 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경력 검증 철저

-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전문경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각종 경력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인력 채용이 요구됨.

② 1인 1전화 내실 운영

- 직원이 자리에 없다거나 출장 시에는 사무실 전화가 휴대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주민들은 직원 중 해당 업무를 누가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 연락처를 보면 신속하게 해당 업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바람.

건의사항

① 방사능 관련 자체 대책 검토

- 원전이 있는 경북 월성과 우리 구 신명 지역은 매우 가까운 거리이며, 우리 구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능 누출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법적인 한계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각종 데이터 비축이나 자료 비치 등 우리 구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바람.

② 기간제근로자 구민 채용 확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단순 사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많은 북구 주민이 확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③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확대

- CCTV 통합관제센터에 어린이들의 견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장과 교사, 녹색어머니회 등 견학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견학을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관제센터가 주민들에게 최대한 활용되도록 검토 바람.

④ 생활민원바로처리 홍보 및 신고 시스템 구축

- 주민들과 아이들이 많이 걷는 보도나 자전거도로, 차로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은 우선 처리가 필요하며, 동 자생단체 등 주민들 스스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생활민원바로처리에 대한 주민 홍보와 더불어 구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생활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바람.

⑤ 표창의 위상 제고

- 민간인 표창이 많으면 표창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다른 구·군의 표창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⑥ 내실 있는 인사 운영과 여성에 대한 배려

- 직원들의 업무 숙지와 창의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업무에 익

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인사주기가 빠른 편이므로 고충상담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잦은 인사이동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 찾아가는 인사상담과 인사 고충상담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성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 바람.
- 모성 보호와 여성 배려 차원에서 보건 휴가의 적극적인 사용 및 6층 여성공무원 휴게실에도 청소 도구를 비치하고, 설문 등을 통해 간이침대나 쇼파 등을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⑦ 공무원 교육에 대한 변화 모색

- 직급별 리더십 교육에 있어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함. 직급에 따라 변화를 주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좀 더 나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2. 주민참여과

시정요구

①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철저

- 민주평통북구협의회에 있어 자부담 사용에 대한 카드 종류가 많음. 자부담이라 하더라도 사용 카드의 경우에는 1개만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가 필요하며, 민주평통북구협의회의 지원 보조금에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침과 사용내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침에 맞지 않는 경비 사용과 과다 지출 등 불투명하게 사용된 부분이 많으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적극 검토 바람.

② CB 관련 업무 추진 철저

- CB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만큼 향후,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등 우수한 직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③ 마을기업 발굴·육성 철저

- 마을기업이 안정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마을기업의 발굴·육성 시에는 안정적인 매출과 경제성이 있는지,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지역 특산품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 바람.
-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헌을 위한 것이므로 자립심을 갖추는 노력에 대하여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평가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조사 관계에 근거하여 행정 지도하여 주시고, 향후 발전 방향으로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도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 교육 방향의 개선과 확대 추진

- CB 양성 교육이나 마을리더 교육의 경우 마을공동체 복원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 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바람.
- 향후,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변경되므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좋은 아버지 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족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②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개선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작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과 일정을 해당 부서와 동에서 파악하여 함께 하고 격려·지원 바람.
- 또한, 사업에 대한 발표와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주민참여 기본 조례 활성화

-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함. 각종 시책 추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④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역할 강화

- 동별 사무국장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므로 개정된 조례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것은 사무국장이 상근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사무국장단 회의나 정보 공유 등 사무국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바람.

⑤ 제3대학 운영 개선

- 퇴직자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제3대학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원 확대와 학과를 증설하자는 주민 의견이 있으므로 제3대학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⑥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 지원

- 동별 자율방범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의 지원이 필요함. 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⑦ 교육진흥재단의 주민 참여 방안 강구

- 교육진흥재단과 관련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3. 회계과

시정요구

① 주민 의견 수렴 철저

- 구 강동동 주민센터의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어 혼란이 있었으나,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② 에너지 절약 홍보

- 청사 엘리베이터 사용 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부 운행하지만, 일반인들이 3층 이하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 바람.

③ 관용 차량 관리 철저

- 그렌져XG 차량의 경우 대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차량이 바뀐 후에도 수리 등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경과 되었으

으로 매각을 검토 바람.

- 관용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 상태를 보면, 동일 차량에 대한 작성자는 다른 데 운행거리 등이 똑같은 경우가 있음. 차량 점검과 운행일지 작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전산교육실은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사의 6층이 소외된 개념이 되지 않도록 옥상에 보행 시설 등을 검토 바람.
- 행정자료실의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기사대기실의 경우에는 추위와 무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냉·난방기 설치를 검토 바람.
- 또한, 청사의 청소 노동자들을 위하여 지하휴게실이 있는 데, 향후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문화예술회관 주변 청사 진·출입로에는 양쪽으로 주차되어 주변이 혼잡하므로 기존 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청사의 주차 방향이 사선으로 일방통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지주식 일방통행 표시 또는 바닥에 화살표나 진입금지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청사 외곽 도로의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한 차선을 사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는 일방 통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예식장 시설 개선

- 대회의실을 이용한 예식장의 경우 무대 인테리어, 조명장치 등

이 좋지 않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설 리모델링과 조명 시설 등을 개선하여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용적인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신축 건물의 소극장 등록기준 검토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소극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의 소규모 공연장 등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소극장의 등록기준에 맞는지 검토 바람.

4.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북구문화원 보조사업 내실 운영

- 북구문화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있어 식비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의 쇠부리보존회 풍물경연대회는 대부분 상금으로 쇠부리보존회 경연팀에게 사용되었는데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북구문화원의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총회시 다른 구의 인력을 고용하였고, 문화유적답사는 다른 단체와 사람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사 관련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북구문화원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내용과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② 쇠부리축제 내실 운영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상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

적으로 정산 서류가 미흡한 상태임.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북구 업체 위주로 하는 등 쇠부리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축제 경비는 사업 완료 후 바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바람.

③ 구민체육대회 내실 운영

-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동별 유니폼으로 조끼나 티셔츠를 사용하는데, 많은 수량을 하여야 하고, 좋은 품질이 아닌 경우도 있음. 동별 형광 조끼를 제작 주문하고, 행사 후 수거해서 재사용한다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구민체육대회의 경비사용에 있어 동별 뒤풀이 비용이나 생활체육 관계자 뒤풀이 비용, 기수단·공연팀 운영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경기용품은 해마다 구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향후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행사 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므로, 구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먹는 방식으로 개선 바람.
- 동별 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행사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구민체육대회 개회식 행사 시작이 지연되었음. 주민들을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내빈들로 인해 행사 진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 어르신들과 아이들,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행사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④ 생활체육회 보조금 사용 철저

-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임원 단복과 직원 단복의 축소가 필요하며, 식대 사용에 있어서 과다 지출한 부분이 있음. 장수체육대학의 경우에는 행사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청

소년체련교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생활체육회의 경우에는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으므로 사업별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관행을 깨고 혁신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⑤ 체육시설물 관리 철저

- 국민체육센터 누수와 오토밸리 2층 헬스장 오염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화봉풋살구장은 무단 이용 및 청소년 비행과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각종 체육시설물 이용 시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달천운동장 시설 개선

- 달천운동장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용 주민이 많지 않아 실질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용 주민수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용율이 낮다면, 다른 시설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강동사랑길 주민 안전대책 마련

- 강동사랑길은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며, CCTV 설치나 단체 협조를 받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요소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강동사랑길을 이용하는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람.

- 강동사랑길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물론 아이들도 찾는 곳이므로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등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우선임. 일상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③ 역사 인물 재조명과 문화재 관리 철저

- 우리 구의 역사 인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축적하고, 역사적 자료를 고증하여 우리 구의 인물을 알리고 그 뜻을 기리는 사업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박상진 의사 생가에 대하여는 연못 복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 마애여래좌상 일원과 유포석보, 상안동 지석묘, 중산동 고분군 등 우리 구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의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마애여래좌상 일원은 강동사랑길, 추억의 학교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문화재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정비 차원에서 검토 바람.

④ 달천철장 공원화사업 검토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인데, 2010. 9. 10. 주민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농소3동 전체 주민 의견으로 현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요구하였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⑤ 투게더콘서트 운영 개선

- 주민과 함께 하는 투게더콘서트의 경우 무더운 시기에 공연을 하는데 같이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시기조정이 필요함. 장소 확보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기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5. 도서관과

시정요구

① 명촌도서관 시설 보완

- 명촌도서관 4층 교육관의 출입문, 자료실에는 휠체어 장애인 통행 시 불편하고 위험함.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검토하여 보완 바람.

② 도서관 자원봉사 경력자 우선 활용

-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이 필요함.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도서관 자원봉사 경력이 충분히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학교도서관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관내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음. 학교에는 교육 경비도 지원되는 만큼 도서관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구비 절감 차원에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②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내실화

-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선정 후에는 도서의 비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함.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취지, 책 선정과정과 선정이유 등 선정된 한 책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서를 비치하고 향후, 다양한 계층이 한 책 읽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나 주제를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구립도서관 발전방향 모색

- 구립도서관을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게 하는 힘은 자원봉사자에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견학 실시,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립도서관의 운영주체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리 매김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편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바람.
-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이 도서관 운영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향후에는 구립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등 도서관 전문가들이 모여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매곡도서관 위치 선정 만전

- 매곡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지역으로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위치 선정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치가 필요함. 매곡지역 도서관의 위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향후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⑤ 사서도우미 역량 강화

-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세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아리 형태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인원 증원 등 좀 더 전문화할 수 있는 과정을 검토 바람.
-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작은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 발굴이 쉬우므로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이 구립도서관에 편중되지 않게 운영 바람.

⑥ 작은도서관 지원

- 구립도서관의 이정표와 함께 작은도서관 이정표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구립도서관은 강사 관련 정보가 많으므로 인기 강좌 등 강사 뱅크 데이터를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 바람.

6. 세무과 : 해당없음

7.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불부합 토지 개선

- 지적 전산화 이후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의 오차 발생으로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임야와 일반지역 등 배율 차이로 인한 불부합 토지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연차적으로 지적 재조사와 검수 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 바람.

복지경제국

1. 복지지원과

시정요구

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자원봉사자 단체나 동아리 회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의 공간 마련과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보관

실 설치를 검토 바람.
- 자원봉사 홈타운 사업에 있어 사업 충실화 및 리더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회원들이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시 마대, 집게 등 장비 지원을 검토 바람.
- 자원봉사들의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확대를 검토 바람.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 운영에 있어 장애인 관련 계획 수립 시에는 당사자들의 자립, 사회적 적응,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여성가족분과에 있어서도 실무분과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여성단체 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여성운동분야 활동가들이 참여해 여성 정책에 좀 더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실무분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상호 소통되면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보훈단체 보조금 사용 철저 및 예우 강화
-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 운영비가 당초 계획대로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라며, 보훈단체 사무실을 통합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공공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검토 바람.
-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이므로 예산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배를 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 대표들과 논의를 한 후 합동 충혼탑의 건립을 검토 바람.

②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내실 운영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실시한 바 있는 데, 향후에는 홍보 부스의 확대 등 예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내실 운영

-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의 경우 다른 지역 사례의 교류 또는 사례 발표와 토론, 분반활동을 통하여 인적 교류, 정보 교류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④ 지역자활센터 행정 지도 강화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자활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자립준비적립금의 경우 일부 참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립준비적립금 내용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설명 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 메아리학교 사건의 재단 비리는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구청이 점검 시에도 운영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바가 있고, 성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관리 소홀로 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② 노인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부진한 사업

은 축소하고, 보육교사도우미, 노인복지관 사업 등 잘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③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 지도 강화

- 보행기를 이용하는 노인 등 경로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경로당 이용이 쉽도록 시설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온 분들은 낯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분들도 경로당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람.

④ 보육 정책 개선

-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취약 보육에 대하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 바람.

건의사항

①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은 언어의 문제와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바람.

② 여성과 아동 정책의 내실 운영

- 노동자의 근로 형태와 조건이 변경되므로 여성과 가족, 아동을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향후,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나 성별 영향분석에 근거하여 이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검토 바람.

- 성평등 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조례에 근거하여 성평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여성발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여성발전기본정책 수립 시에는 분과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연계가 필요함.

③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사업 강화

- 학교 주변이나 아동 센터 주변에 아동폭력의 사각지대가 많음. 예방 차원에서 위험한 지역의 방범 순찰 활동이 필요한데, 자율방범대, 자생단체, 파출소 및 지구대 등과 연계한 순찰 활동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④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

- 아동센터는 학교와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 관계자가 없음. 아동센터와 학교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 포함이 필요하며, 아동센터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⑤ 아동급식 내실 운영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이용에 있어 한식도 이용하지만, 편의점 이용이 많음. 쉽게 찾고 이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이용하지만, 이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매월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행정 지도 바람.
-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지급에 있어 재정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월 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⑥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관련 작업장이므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하여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람.

⑦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지원

- 가정 폭력으로 인해 노출된 여성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해마다 상담 건수가 늘고 있음.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사업,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며, 마당이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⑧ 장애인 업무 내실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있어 각종 설계도와 현장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 장애인 관련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중요하므로, 장애등급별 세분화된 통계 자료를 구축 바람.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중요하므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 바람.
- 주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시설 규모가 적다 보니 중중장애인이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 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에 적극적으로 설치 건의 바람.
- 장애인 부모들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보육에 있어 삶의 피로도가 높음. 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 바람.

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있어서 시설이나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많이 나고 있음. 낮은 처우를 받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소한의 임금 보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 바람.

⑩ 보육 정책 내실 운영

- 보육교사들의 수당 등 처우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여서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임.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의 선진지 견학 기회를 마련 바람.
- 다른 구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으므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영유아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확대 정책과 내실 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함. 조리 종사원 등 처우 수준이 낮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시비 또는 우리 구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람.

3.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의무 휴업 추진 내실화

-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 추진 과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향후,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 과정의 매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무 휴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② 석유제품 관련 점검 및 단속 강화

-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휘발유 가격이 비싼 편임. 유류 계량기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휘발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 바람.

③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완

-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있어 용역 관련 기초자료가 부실하므로 강동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바람. 강동권에는 각종 소중한 자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용역 자료가 되지 못함. 강동권의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부족하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용역이라는 의견들이 있음. 주민들이 만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하므로, 좀 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바람.

건의사항

①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업무 추진 내실화

- 아파트단지 주변에 주민 편의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외지 사람들이 장사한다거나 기업형 노점상 등 무분별한 노점 난립과 시장이 들어서고 있음.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사회질서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
- 호계공설시장의 경우 상설적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시장을 상설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바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무등록시장이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비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간담회 등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농소3동 지역에 무허가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그 만큼 주민들 수요가 많다는 것임. 쇠부리체육센터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 가능 유무를 파악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② 공장 승인 부지 관리 철저

- 천곡동 산149-1번지 일원은 공장 부지를 조성하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일부분은 산사태로 훼손됨. 향후 공장 승인의 취소 요건에 대한 부분과 복구 명령 시에는 현장 복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인근 지역에는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이용 방해 등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주민 불편도 있으므로 통행로를 우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③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관련 검토

-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하여 관내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사측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 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력업체 관계자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 관련 등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대자동차의 책임성 있는 관계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④ 사회단체보조금 내실 운영

-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있어 사업 추진 내용이 미진하고, 교재비 중복 제작, 홍보비 과다 등 보조금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 바람.

4.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마을 상수도 안전장치 강화

- 마을 상수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을 상수도의 덮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일제 점검한 후 취약한 곳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강화 바람.

②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환경 관리 철저

- 강동산하지구에 침사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업을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 지역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데, 행정에서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환경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함. 앞으로, 강동권에는 개발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침사지 관리 상태 등 공사 현장의 환경유해 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어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악취 등 민원 해소와 수질 개선

- 명촌 메가마트 뒤쪽 일원의 개사육으로 인하여 동천강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악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여성들에게는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 바람. 또한, 최근 율동과 양정 힐스테이트 일원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많았는데,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바람.

- 명촌천 일원과 명촌배수지 일대에는 침전물이 많고 악취가 심함. 퇴적물이 쌓여 있고 부유물질이 많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오래된 퇴적물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는 등 준설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시티병원 옆 소하천에 급격하게 퇴적물이 쌓이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오수관로 점검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람.

②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 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기업체, 단체에 담당구역을 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단체 상황에 따라 주기적인 활동 유도와 격려, 지원이 된다면 구 전체를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살릴 수 있음. 단체별 구간과 하천 살리기 담당 단체, 기업 등이 자기 지역 내에서 주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특히, 공동주택 인근 하천은 가까운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도록 유도하여, 주민 참여형으로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탄소포인트제 활용 방안 확대

-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탄소포인트가 사장되지 않고, 환경 보호와 에너지도 절약함은 물론 개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그린카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 활용 방안을 마련 바람.

④ 그린 리더 활동 활성화

-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린 리더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향후, 그린 리더 활동에 대한 동별 파악과 더불어 적극적 계획과 행정적 지원, 격려를 통하여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나눔장터 내실 운영

- 나눔장터에 있어 행사의 변화가 없다 보니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최 목적을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음. 나눔장터 행사 시 환경미화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홍보하는 방안과 행사 수익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등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쓰레기 투기 행위 개선

-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의 운영에 있어 투기자를 역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상습 투기자에 대하여는 역추적 적발하여 투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③ 고물상 관리 철저

- 효문역 일원에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산 먼지와 비가 올 경우에는 중금속 침전물이 유출되고 있음. 진장동·명촌동 일원 등에도 고물상이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 고물상에 대한 신고필증이 나갈 때 부지 울타리 조성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민원 예방을 위하여 조합 등에서 교육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활성화

- 분리수거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분리수거 시 제대로 정

리되지 않은 채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와 혼합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경고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곳도 있으며, 가로수에 분리수거망을 설치한다거나 공원 주변의 분리수거함이 지저분하여 쾌적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거수거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방법을 모색 바람.

- 헌옷 수거함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거함이 있는데, 헌옷 수거함 주변에는 늘 쓰레기가 많은 상태임.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과가 아니더라도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등 헌옷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수거함의 정비가 필요함.
-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함에도 깨끗하지 못하여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지저분한 거리 환경의 개선을 위한 계몽 및 캠페인 활동과 주민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거리를 깨끗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 바람.
- 버스승강장에 맞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재떨이의 용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쓰레기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드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운동을 벌여나가는 정책 연구가 필요함.

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마련

- 각종 축제, 행사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이 많음.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각종 행사의 준비 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③ 공동주택의 재활용 현황 파악

- 경쟁사회에서 타 지역에 우리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의 재활용 자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하여도 고민이 필요하며, 아파트별·동별 재활용의 품목현황과 판매 현황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④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개선

- 도로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함. 탈부착하는 작업복의 경우 착용을 잘 안할 수도 있으며, 사각지대나 날씨가 흐릴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나타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형광색이 잘 나타나는 원단을 사용한 작업복과 색상 등이 필요함. 향후, 환경미화원 작업복 검토 시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복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자원순환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은 중요함. 환경미화원들은 작업의 특성상 교통사고와 각종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많음.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사전 예방에 관해서도 교육 바람.
- 아산로의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가 높은 위험한 도로임. 현대자동차 담장쪽으로는 위험하므로 청소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적인 조치에 대하여 검토 바람.

건설도시국

1. 건설방재과

시정요구

① 도로변 시설물 정비

- 관내 도로 중앙선과 학교 주변, 구청 일원 등에 탄력봉이 훼손

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경우가 있음.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불법 좌회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거 또는 관리가 필요하며, 관계부서 협조를 통하여 도로변 탄력봉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② 제설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

- 제설함은 주민 통행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가 필요하며, 각종 쓰레기 등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등 잠금장치와 내용물에 대하여도 점검 바람.
- 동 주민센터 제설 장비에 있어 주민들이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자 해도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기본적인 장비가 많아야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충분한 제설 장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③ 울산외고 진입로 정비 철저

- 울산외고 진입로에 있어 경계석 및 목재 파손, 훼손된 표지판 방치, 잡초, 쓰레기 등 전반적으로 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울산외고 진입로 일원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 조성과 향후, 다른 사업 시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장기적 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동천강 관리 철저

- 동천강 하상과 저수호안의 자생 버드나무의 밀도가 커 치수적인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하천의 안정성 확보와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수목에 대한 간벌 등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사이 화단에 식재한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며, 태풍 시 가로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드러나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음.

- 동천강 내 보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지난 태풍 이후에 완전한 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
- 내황교 하부도로는 차량 이용이 많은 편임. 하부도로 부분에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에 개설 건의 등 검토 바람.
- 동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유입수 오염이 심각하므로 동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소하천 수질개선 방안 마련
- 내황축구장 주변 둔치 일원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으므로 둔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자전거 정책 내실 운영

- 자전거 보관대의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며, 도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 바람.
- 녹색자전거 사업의 취지는 좋았으나 관리 부족으로 실패하였음.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 낭비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바람.

② 원전 관련 재난 대비

- 우리 구와 인접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 교육 등 행동 매뉴얼을 숙지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관계부서 또는 중앙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외국의 원전 피해 사례와 대응 시나리오 등 자료 확보와 방사능 측정 장비를 도입하여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③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설치
  - 유황사우나 뒤쪽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
  - 비둘기유치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 협성아파트 뒤쪽 철길 지하도 주변
- 도로변 헌 옷 수거함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쓰레기 투기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전수 조사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거함 자진 철거 등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동아파트 5단지 앞 샛길 보안등 설치 재검토
- 벽산블루밍아파트 도로(대동아파트 인접)에 토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한 행정적 안내 등 관계부서와 협조 처리
- 벽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인도 폭이 좁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며,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스베이와 인도를 개선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곡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 검토
- 매곡 고향의 강 사업에 제외되는 구간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
- 금천마을 앞 하사정 건너가는 길이 비로 인해 유실되지 않는 방안 마련
- 폭우 시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되므로 간이 배수장 설치 재검토
- 동천강 잠수교, 보 훼손 및 어로 확보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천강 마스터플랜에 의해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아이파크 2차 일원 도로 개설 중단 지점의 가로등 전기 절약 조치
- 이화천 교량 아래 부분 추가로 설치한 징검다리 끝부분 경사로에 난간이 없으므로 개선 요망
- 화봉파출소 옆에서 화봉마이스터고등학교 일원 도로는 등산객 등 주민 이용이 많음.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 장애인들에게는

위험하므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 설치 검토
- 송정초등학교 일원 인도가 끊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도를 반대편으로 옮기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한 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방안 검토
- 휴먼시아사거리 일원 도로 표지판에 화봉초등학교 안내 표시

2.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완충녹지 관리 강화

- 효문역 858번지 일원 완충녹지를 점용한 고물상이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과 완충녹지 관리 감독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 조치와 완충녹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완충녹지의 점용 부분이나 용도 변경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② 도로변 화단 관리 철저

- 도로변 화단이 각종 쓰레기, 잡초, 시설물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화단의 관리 주체에 대한 파악 등 재조정 과정을 거쳐 관리에 대한 대책과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 바람.

건의사항

① 우량 산림의 보호

- 천곡동 산149-1번지 일원 공장 승인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방치된 현장이 있음. 옹벽 공사 부실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난개발 방지와 우량 산림, 산지 보호를 위하여 가

급적 친환경 산지 전용허가 방침을 적용 바람.

② 산림 방제 및 예찰 활동 강화

- 약제를 사용하여 훈증 처리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타포린이 벗겨지는 등 밀폐하여 훈증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찰 활동을 강화 바람. 향후, 숲가꾸기 사업이나 소나무재선충 사업 시 피해목 제거와 훈증 작업뿐만 아니라 고사목, 감염의심목에 대하여도 충분히 방제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피해목 훈증 장소는 경고성 간판이나 안내문 설치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주차장 옆 등에서 훈증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바람.
- 특히, 재선충 방제 관련 포장지가 낡거나 찢긴 부분은 재포장하는 방안 등 일반 등산객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바람.

③ 나무를 살리는 운동 전개 및 등산로 정비

- 소나무에 주사약 투입을 위해 구멍을 뚫은 후 방치된 채로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나무를 훼손할 수가 있으므로 검토 후 밀봉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일손이 부족하다면 그린 리더, 봉사 단체,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살리는 캠페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나무 옆에 돌탑을 쌓게 되면 나무가 고사되거나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며,
- 등산로에 돌출된 나무뿌리의 보호를 위하여는 등산로를 일부 변경하는 방안 등 대책이 필요함.
-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등산로에 골이 패인 부분들이 있는데, 등산객과 아이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일제 점검 후 정비 바람.

④ 주민 참여형 공원 조성

- 공원에 울타리를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민들이 관리하

는 주민 참여형의 공원 조성 체계를 구축 바람. 주민들에게 공원을 과감히 맡겨보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관리해 나가게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공원을 통해서 마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⑤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 완비 노력 강화

-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 동천제방겸용도로 등 울산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그 밖에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바람.

⑥ 기타 건의사항

- 옥동~농소간 도로 구간 하부 천마산 등산로 통행로 설치
- 연암·화봉 일원 4차선 도로변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유아차, 휠체어 전동차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가로수 관리 방안 강구
- 무룡산 첫 관문인 터널문 명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공원을 공연 등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공원 관리 철저
  - 한솔근린공원
    - ▶ 수도시설 보수와 보도블럭 정비, 화단 관리 철저
    - ▶ 저녁 운동시간에는 보안등을 켤 수 있도록 개선
  - 희망공원
    - ▶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검토와 공연장 활용방안 강구
    - ▶ 수도시설 보수 등 시설물 개선과 숲 뒤편 방치된 의자 조치
    - ▶ 인근 하천과 조리 시설에 위생 관리를 위한 소독 철저
  - 어린이교통공원 관련 시설물 안내 간판 보수
- 가을꽃전시회와 결합되는 문화, 음악의 소규모 공연 행사 연계 추진 검토

- 잦은 태풍으로 산림이 훼손된 산사태 지역과 도복된 나무 일제 정비
- 천마산 등산로 108 계단이 오래 되어 훼손, 망실된 곳이 많으므로 일제 정비

3.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 공영주차장의 경우 운영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음. 공영주차장별 달리 운영되는 시간의 조정과 주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계약 바람.

② 주·정차 및 대형 차량 등 단속 철저

- 재래시장 주변에는 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명촌·진장 지역은 음식점 밀집지역이다 보니 대형 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는데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단속 강화와 주차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야간에는 대형차, 중기 등이 주택가 일원에 많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 교통 정체 또는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하여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철저

-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가 학교마다 재질, 모양 등이 다른 상태임. 휀스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정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일관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교통 과태료 징수율 제고

- 교통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대중 교통의 활성화

- 보건소와 연계하여 담배 연기 없는 버스승강장이 되도록 하는 노력과 각종 광고지, 전단지 등으로 지저분하므로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바람.
- 화봉사거리와 벽산아파트 일원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주민들은 승강장에 기다리게 되고, 택시는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음. 주민 혼선이 있으므로 개선 검토 바람.
- 화봉동 일원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낡아 있으므로 표지판 정비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소에 대한 부분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인근 지역에는 무료 주차장이 있으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화나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② 기타 건의사항

- 극동스타클래스 앞 버스정류장을 막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시설 개선
- 연암동 벽산아파트 앞과 건너편 지역에 바람막이형 버스승강장 설치
- 롯데마트 건너편 버스승강장 미설치 지역 바람막이형 버스승강장 설치
- 진장 하나로마트 앞 버스승강장이 누수로 인해 불편하므로 보수
- 안전한 통학로 확보

· 호계초등학교 일원
  ▶ 각종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중복, 훼손된 표시 개선
  ▶ 횡단보도 등 퇴색, 파손된 탄력봉 개선
  ▶ 등·하교시간 불법 주차 단속
  ▶ 호계초등학교 일원 통학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신호등 설치
  ▶ 표지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
· 신천초등학교 일원
  ▶ 보호구역에 대한 표시 개선과 아이들 등교 시 신호등 시간 조정
  ▶ 파손된 중앙분리 시설물에 대한 정비
  ▶ 정문 앞 불법 유턴으로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개선 조치
  ▶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합관제센터 견학의 교통행정적인 편의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 송정초등학교 일원
  ▶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표지판이 부족하며, 시설물 정비
· 화봉초등학교 일원
  ▶ 도로변 스쿨존 표시 등 시설물 설치
    ※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각종 표지와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학교 주변에서 단체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는 방안 검토

- 천곡초등학교 주변 버스승강장 BIS 설치 검토
- 주정차 단속 기간제와 관련하여 연속적 업무가 가능하도록 검토

4.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대단위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대단위 아파트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민이기도 하고, 납세자가 되므로 대단위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행정 지

원을 강화 바람

②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

- 현수막은 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하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향후,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에서 형평성 있게 대처 바람.
- 지난 7월경 구명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 가로수와 교통시설물 등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였음. 불법 광고물 단속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람.
-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물 단속의 경우에는 사전 계도가 필요하며, 위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이 필요함. 또한, 해당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와 다른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광고물 관리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

-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시 면밀히 점검함은 물론 많은 입주민들을 고려하여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하자 부분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실 운영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시 적극홍보를 통하여 1회성이 아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바람.

② 아름다운 건축 문화 선도

-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에 있어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고, 구체적 설명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름다운 건축 문화를 선도 바람.

③ 양정·염포지역 주거 환경 개선

- 양정 B-02지역 재개발사업에 있어 진행률이 저조한 상태임. 다른 지역에 비해 양정·염포 지역은 노후 주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함. 다른 지역보다 더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 바람.

④ 평창리비에르 관련 행정 지원

- 평창리비에르 아파트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 그간 분양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왔고, 임대 아파트로 인해 공동주택 지원 등을 받지 못하였는데, 향후 분양 등기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바람.

5.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치어 방류사업 내실 운영

- 저수지 치어 방류사업 후 치어를 관리하는데 있어 우수기에 치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망 종류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주민에게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치어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치어가 성장했을 때 낚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조사료 생산 지원

-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의 생산을 늘려야 하며, 유휴지 조사 등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육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바람.

②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 방안 강구

- 로컬푸드 유통 사업에 있어 1회성이 아니라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농민과 도시 가정이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상설적인 장터 개설이 요구됨.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농촌과 도시 가정을 이어주는 사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학교 급식, 공공 기관·기업체 등 단체 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도시 농업과 귀농 지원 검토

- 친환경급식 관련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 연구용역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 퇴직자들의 고용 문제에 있어 도시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농업과 귀농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바람.
- 자투리땅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 등 동네 곳곳에서 도시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농촌체험마을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에 있어 체험의 다양화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자생

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바람.

⑤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현재 북구 지역에는 여성어업인이 많은데, 해녀의 집에 대하여는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여성어업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 바람.

⑥ 기타 건의사항

- 우가포 해안 우수로의 배출구가 자주 막혀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주변 현황을 파악한 후 시설 개선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의 경우 교육청과 연계 검토
- 강동 수산물에 대하여 협약식 체결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매출로 인한 수익은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 검토

보 건 소

시정요구

① 금연 환경 조성 철저

-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 금연 표지판은 있으나 재떨이로 사용되는 휴지통이 있어 제대로 된 금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버스정류장 내 금연 환경 조성과 어린이공원이 청소년들의 금연 장소가 되지 않도록 금연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도서관 등에는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함.
- 금연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닌 사례 위주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함.

- 민원인 출입이 많은 구청사 출입문 주변은 금연이 필요한 지역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는 특별히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출산장려금 상향 검토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다른 구·군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기 바람.

②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

-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문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우리 북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

③ 조례 관련 후속 조치 강화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등 추진성과는 미흡함. 위원회 구성 등 다른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 자살예방 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닌 밀착교육이나 소규모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람.
-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등 조례와 관련된 행정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④ 예방 접종 홍보 강화

- 독감 예방 접종 등 주민들이 적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

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와 예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의회사무과

시정요구

① 내실 있는 의회 운영

- 의원들의 회기 출석에 있어 지난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정례회 회기동안 일부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5대 의회 의원 모두가 초선이지만 많은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조례안과 결의안 발의, 자유발언, 구정 질문 등 다른 구·군 의회에 뒤지지 않게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의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합심이 필요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의장단과 간부공무원과의 주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② 중요 행사 등 안내

- 지역 내에서 불의의 사고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원들이 꼭 참석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의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바쁘더라도 참석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바람.

③ 회의록, 영상 등 관리 철저

-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이나 영상 등이 외부로 나가게 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임의

로 외부에 유출되게 되면, 의정 활동 등이 왜곡될 수 있음.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건의사항

① 조례입법연구회 내실 운영

-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에 있어 조례 제정 등은 의원 입법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며,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함. 향후에는 의원 간담회와 조례입법연구회 개최일시를 분리 운영 검토 바람.

② 의원 연수 내실 운영

- 의원 연수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안이나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의정 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제3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11. 10. 1. ~ 2012.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409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특히, 사회복지 시책 추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

성, 녹색성장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38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87건으로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3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제4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140	50	34	15	1	90	46	39	5
기획홍보실		9	3	0	3	0	6	3	2	1
총무국		45	15	12	3	0	30	10	18	2
	총무과	9	2	2	-	-	7	7	-	-
	주민참여과	11	3	2	1	-	8	1	7	-
	회계과	6	3	1	2	-	3	1	2	-
	문화체육과	10	5	5	-	-	5	-	3	2
	도서관과	8	2	2	-	-	6	1	5	-
	세무과	-	-	-	-	-	-	-	-	-
	민원지적과	1	-	-	-	-	1	-	1	-
복지경제국		40	14	7	7	0	26	13	12	1
	복지지원과	6	2	-	2	-	4	1	3	-
	사회복지과	14	4	2	2	-	10	3	7	-
	경제일자리과	7	3	3	-	-	4	2	1	1
	환경위생과	6	2	2	-	-	4	4	-	-
	환경미화과	7	3	-	3	-	4	3	1	-
건설도시국		36	14	11	2	1	22	14	7	1
	건설방재과	7	4	2	2	-	3	1	1	1
	도시녹지과	8	2	2	-	-	6	4	2	-
	교통행정과	6	4	3	-	1	2	1	1	-
	건축주택과	8	3	3	-	-	5	2	3	-
	농수산과	7	1	1	-	-	6	6	-	-
보건소		5	1	1	0	0	4	4	0	0
의회사무과		5	3	3	0	0	2	2	0	0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기획홍보실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항의 변경 또는 폐기 시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실시 : 2회 - 부서별 점검 : 1. 21. ~ 1. 25. - 보고회 개최 : 6. 28. ○추진율이 저조한 대부분의 공약사항이 시, 타기관 추진사업이거나, 예산문제 등 제반여건의 한계로 추진이 미진함.(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행률을 제고하도록 추진) ○“열린구청장실” 공약사항 메뉴에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게시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의 변경사항은 공약사항별 추진상황에 상세히 게시하고 있음. ○공약사항 조정내역 홈페이지 게시계획수립(2013. 2. 8.) - 향후 공약변경 및 폐기공약 발생시 게시토록 하겠음.	추진중
	②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참여에도 적극 노력 바람. • 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형식적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 행정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 신설 및 정비 시 사전협의를 통해 여성위원 참여율 30% 이상으로 위촉 권고 및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여성비율 부적합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 위촉 및 정비 시 권고율 반영하도록 조치. 전체 여성비율 37.7%로 상반기 임기만료로 인한 12개 위원회 정비시 7개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30% 이상이었으며, 5개 위원회의 여성비율도 상향되었음. 위원 위촉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참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에 맞는 위원 구성과 구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은 물론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여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거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운영 상시 점검하고 있음. ○ 위원 위촉 시 사전협의를 통해 위원회 고유기능 및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위원 위촉 추진 및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며, 개별 위원회 목적 및 주요기능에 근거한 운영으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음.	
	③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 확립 •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북구 전체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할 주민의 혈세가 보조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어 전체 단체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며, • 지원된 보조금은 단체별 일괄 정산이 아닌 사업별(인건비, 일반운영비의 경우 분기별) 정산으로 보조금 정산 체계를 재검토하고, 공공성과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칙 확립이 필요함.	○ 보다 심도있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위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9월에는 심의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10월 개최 예정인 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사업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산체계는 1차 사업부서, 2차 기획홍보실 총괄평가 후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년도 사업비 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매년 부서별 담당자 및 단체별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검토** •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관리, 보수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 시설공단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유로 잠정 보류하였음. 타 지방자치단체 공단 운영의 순기능, 장점·단점 등을 파악하여 지방시설 공단 설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 우리구 공공시설물중 공단운영 가능 대상물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지침(12.9.10시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적어 현재로써는 잠정 보류된 상태임. ○ '2013년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8월말까지 "울산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가능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잡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유사 성격의 업무에 대하여는 한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행정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주민참여과는 지역공동체 육성과 마을만들기 육성사업을 비롯 CB활성화 교육, CB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마을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형성 하였으며,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참여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임. ○ 경제일자리과는 사회적기업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등과 더불어 새로이 적용되는 협동조합의 (협동조합기본법 12.12.1.시행) 다양한 설립과 운영과 관계된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상호 업무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로써는 불가하나,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 기구개편시 검토해 보겠음.	불가 (장기검토)
	③ 구정 업무의 조정 역할 강화 • 행정은 주민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될 필요가 있음. 기획홍보실은 구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이므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주요시책을 기획 하고,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등 구정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하는 고유업무처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리에 대해서 관여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 향후, 구정주요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주·월간업무계획보고회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④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방향 모색 • 2012년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 많이 발전한 해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연간 한번 정도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동별 주민들이 모여 구 전체 사업을 선정하는 제도와 동별 지역회의의 특성화, 지역행사 등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동별 예산축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예산제에 더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고, 찾아가는 예산 학교의 방향 모색, 위원들의 숫자는 적더라도 본인의 정확한 의사와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리드 교육 양성자와 주민참여 예산을 4년 동안 한 시민위원의 역량을 자산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 모색과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모색, 모임 구축의 적극적 방안을 모색 바람. • 또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며, • 향후,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위원회 설치, 시민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 바람.	○ 2013. 3. 22 참여예산 연구회원 및 시민위원 리더와 함께 인천 연수구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예산학교, 동지역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 2013. 3. 4 「주민참여예산 8년의 운영 성과 및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좀 더 발전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음. ○ 올해는 제5기 시민위원을 모집하여 기본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시민위원 및 임기만료된 기존 리더를 대상으로 3일간의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신설된 지역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교육방식 또한 단순 강의보다는 참여형 토론수업으로 진행하여 시민위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북구 홈페이지 하단의 소통과 공감 배너에 '주민참여예산제' 탭을 추가하였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⑤ 재정 운영의 효율화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자 손실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상태임. 조기집행의 장점·단점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조기집행은 상·하반기 경기변동 흐름을 보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시책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이전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예산과목은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시설비, 민간이전경비, 물건비 등 민간경제와 관련된 사업비의 57%를 상반기에 집행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안행부에서는 2013년도 조기집행이 아닌 균형집행으로 시책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음.	완결
	⑥ 언론 홍보 강화 •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코스트코 관련등 언론 대응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음. 공정 보도를 위한 자료 제공 등 언론에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정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출입기자 간담회 정례화 (월 1회 이상) 및 출입기자단과의 유대강화를 통해구정 주요 시책 및 행사에 대해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구정홍보에 노력 하겠음.	완결

□ 총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경력 검증 철저** •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전문경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각종 경력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인력채용이 요구됨.	○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경력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후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확인토록 하는 등 인력채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결
	② 1인 1전화 내실 운영 • 직원이 자리에 없다거나 출장 시에는 사무실 전화가 휴대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주민들은 직원 중 해당 업무를 누가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 연락처를 보면 신속하게 해당 업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바람.	○ 지난해 5월, 1인 1전화시스템 도입 이후 직원 부재시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공문으로 전 실·과·소·동으로 안내 하였으며, ○ 북구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창에서 직원 이름이나 담당업무 검색하면 연락처나 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구청 대표 전화 시에도 교환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하고 있음.	완결
건의사항	**① 방사능 관련 자체 대책 검토** • 원전이 있는 월성과 우리 구 신명지역은 매우 가까운 거리이며, 우리 구에서도 방사능 누출 사태에 대한 대책을 필요가 있음. 법적 한계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각종 데이터 구축, 자료 비치 등 우리 구 자체적으로 대처방안을 적극 모색 바람.	○ '12. 6월 휴대용방사능 측정장비(2대)를 구입, 원자력 발전소와 근접한 정자, 산하, 신명 3개소를 선정하여 월2회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자료관리하고 있음. ※특이사항 있을시 울산지방방사능측정소에 정밀의뢰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12. 9월 울산지방방사능측정소 방문(소장면담), 주민들의 관심도를 감안하여 방사능관련 정보제공, 교육등에 적극 협조 당부 ○'12. 11월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배부한 갑상선 방호약품 129만정을 농소1·2·3동, 송정동, 강동동에 분산 관리 ○'12. 11월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행동매뉴얼**』 2,000부를 제작, 8개동에 배부하여 주민교육등에 활용하는 등 방사능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② 기간제근로자의 구민 채용 확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단순 사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많은 북구 주민이 확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557명 중 479명(86%)의 북구 주민이 채용되었음. ○ 또한, 2013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단순사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북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채점기준표에도 북구 주민에게 높은 배점(30점)을 부여하도록 안내하였음.	완결
	③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확대 • CCTV 통합관제센터에 어린이들의 견학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장과 교사, 녹색어머니회 등 견학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견학을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통	○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2013년 신학기 이후 초등학생 및 학부모단체, 초등학교 교감단 등 13건 327명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합관제센터가 주민들에게 최대한 활용되도록 검토 바람.	○또한, 체험을 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내 비상벨이 설치된 모형 CCTV를 설치하였고 통합관제센터가 주민에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와 견학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였음.	
	④ 생활민원바로처리 홍보 및 신고 시스템 구축 • 주민들과 아이들이 많이 걷는 보도나 자전거 도로, 차로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은 우선 처리가 필요하며, 동 자생단체 등 주민들 스스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생활민원바로처리에 대한 주민 홍보와 더불어 구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생활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바람.	○2012년 12월 지역신문사 5개사에 대하여 1면 광고를 통해 생활민원바로처리팀 운영 상황을 홍보하였고, 홍보 전단지 20,000부, 명함지 20,000부도 제작하여 주민 및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배부·부착하였음. ○구청 홈페이지 생활민원 신고 창구 개설 팝업 홍보도 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생활민원모니터링 탭을 설치하여 구청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완결
	⑤ 표창의 위상 제고 • 민간인 표창이 많으면 표창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다른 구·군의 표창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12년도 타 구·군의 표창 수여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 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으로 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에 의한 표창 수여로 표창의 명예성과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⑥ 내실 있는 인사 운영과 여성에 대한 배려** • 직원들의 업무 숙지와 창의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업무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인사주기가 빠른 편이므로 고충상담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잦은 인사이동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찾아가는 인사상담과 인사 고충상담은 내실있게 운영하고, 여성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바람.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창의성이 미흡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인사 시 고충상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고 있음. ○ 또한, 여성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불이익은 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4년간 남녀 공무원 승진비율을 보면 46:54로 여성공무원의 승진임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향후에도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보장되도록 공정하게 인사를 실시하겠음.	완결
	⑦ 공무원 교육에 대한 변화 모색 • 직급별 리더십 교육에 있어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함. 직급에 따라 변화를 주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좀 더 나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 2012년에는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았음. 향후에도 직원교육 시,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기법 개발을 통해 공무원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록 하겠으며, ○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집합형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완결

□ 주민참여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철저** • 민주평통북구협의회에 있어 자부담 사용에 대한 카드 종류가 많음. 자부담이라 하더라도 사용 카드의 경우에는 1개만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가 필요하며, 민주평통북구협의회의 지원 보조금에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침과 사용내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침에 맞지 않는 경비 사용과 과다 지출 등 불투명하게 사용된 부분이 많으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적극 검토 바람.	○2012. 12월 단체별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1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와 자부담카드 1개만 사용”, “행사개최 시 참여자 인원을 고려한 보조금 집행” 권고 등 향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단체에 통보하였음. (주민참여과-14175호) ○또한, 단체 예산 실무자(집행담당자) 교육을 실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2012. 12월)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료
	② CB관련업무 추진 철저 • CB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만큼 향후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등 우수한 직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시간제 계약직(6급 1명, 8급 1명)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료
	③ 마을기업 발굴·육성 철저 • 마을기업이 안정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마을기업의 발굴·육성 시에는 안정적인 매출과 경제성이 있는지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2013년 마을기업 선정 시 신청단체에 대한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적합하지 못한 단체 및 마을기업은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지역 특산품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바람.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겠음.	추진중
	•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헌을 위한 것이므로 자립심을 갖추는 노력에 대하여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평가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조사 관계에 근거하여 행정 지도하여 주시고, 향후 발전 방향으로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도 검토바람.	○마을기업이 사업 종료 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지원과 컨설팅을 통하여 자립형 마을기업 으로써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하고 있음. ○또한 현재 마을기업을 준비 중인 단체에 대하여도 구성원끼리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제안·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통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음.	
건의사항	**① 주민 교육 방향의 개선과 확대 추진** • CB 양성 교육이나 마을리더 교육의 경우 마을공동체 복원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 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바람	○주민이 CB학교 등의 교육을 수료한 후 '우리마을 동아리 지원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등의 공동체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향후,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변경되므로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좋은 아버지	○각종 CB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운영시간 조정을 통해 직장인들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족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또한 좋은 아버지학교의 경우에도 제1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므로 2013년에는 연2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②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개선 •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과 일정을 해당 부서와 동에서 파악 하여 함께 하고 격려·지원 바람. • 또한 사업에 대한 발표와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2013년 마을만들기 사업은 2월 중 공모를 시작하여 3월에 심의, 선정을 끝내고,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참여주민들이 시간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사항을 동 주민센터와 공유하여 마을만들기 참여단체 행사 시 함께 참여하여 지원, 격려하고 있음. ○관련단체 상·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수행단체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추진중
	③ 주민참여 기본조례 활성화 •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함. 각종 시책 추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구정시책의 다양한 홍보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참여 포인트 시스템 홈페이지”에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공사), 행사, 교육 일정 등을 게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부서별 각종 사업, 행사 등의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단계에 구체적 주민참여 방안을 명시하고, 참여주민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13. 2.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④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역할 강화** • 동별 사무국장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므로 개정된 조례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무국장이 상근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사무국장단 회의나 정보 공유 등 사무국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바람.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역량을 높이는데 사무국장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사무국장 간담회 ‣일 시 : 2012. 12. 27.(목) ‣참석인원 : 11명(사무국장 8, 공무원 3) ‣내 용 : 사무국장의 역할 교육 및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등을 논의 - 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일 시 : 2013. 6. 21(금) ‣참석인원 : 27명(사무국장 8, 동 담당자 8, 박람회 관계자 11명) ‣내 용 : 주민자치사업 컨설팅 및 박람회 참여 준비 논의	추진중
	⑤ 제3대학 운영 개선 • 퇴직자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제3대학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원 확대와 학과를 증설하자는 주민 의견이 있으므로 제3대학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바람.	○제3대학 정원은 조례에 의거, 학과별 최대 50명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학과의 증설은 지속적인 수요층 발생, 학과의 지역사회 공헌도, 주민의 견수렴, 전문가의 조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하여야 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중
	⑥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 지원 • 동별 자율방범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의 지원이 필	○2011년 대비 2013년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100% 증액되었음. 특히, 우리 구 자율방범대원들의 최	완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요함. 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대 숙원이였던 방범차량 지원을 2012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증액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노고가 많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겠음. 또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이 이뤄지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⑦ 교육진흥재단의 주민참여 방안 강구 • 교육진흥재단과 관련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바람.	○ 교육진흥재단 모금사업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2. 10월 ~ 11월에 홍보전단 7,000부를 제작하여, 매곡산단 등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음. 또한, 향후에도 축제, 행사는 물론 자생단체 행사 시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교육진흥재단 사업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⑧ 동주민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 동주민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람.	○ 동주민센터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중심이 되도록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농소3동의 “주민자치회”시범실시로 주민자치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주민 만남의 날 정례화” 등으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구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음.	추진중

□ 회계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주민 의견 수렴 철저** • 구.강동동 주민센터의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어 혼란이 있었으나,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구.강동동주민센터 처분 방안에 대해 검토하던 중 당시 우정청의 강력한 매입 의사가 있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로 인해 혼란이 있었음.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될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여부에 만족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에너지 절약 홍보 • 청사 엘리베이터 사용 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부 운행하지만, 일반인들이 3층 이하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 바람.	○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배부하는 계단걷기 캠페인 홍보물을 부착하였고 엘리베이터 외부에는 3층 이하는 계단 이용을 권장하는 문구 부착 완료.	완결
	③ 관용 차량 관리 철저 • 그랜져XG 차량의 경우 대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차량이 바뀐 후에도 수리 등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매각을 검토 바람. • 관용차량의 운행일지 작성 상태를 보면, 동일차량에 대한 작성자는 다른 데 운행거리 등이 똑같은 경우가 있음. 차량 점검과 운행일지 작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이전 구청장 전용 차량인 그랜져XG 차량은 지난 3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6,766천원) ○ 차량점검 및 운행일지 작성에 대해 차량 관리 해당부서별 교육 실시 - 연비계산 등 임의 운행일지 작성 금지 - 차량운행 후 주행거리 및 유류 잔고확인 운행일지 작성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전산교육실은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 청사 6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옥상에 보행시설 등을 검토 바람.	○일반주민 및 직원들을 위해 옥상에 캐노피 및 별도의 목재 보행공간 조성 완료.	완료
	• 행정자료실은 지하에 있는데, 직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현재 청사 내 사무공간이 부족 하여 적당한 장소가 없으며, 향후 실 재배치 등 조정이 있을 경우 검토 하겠음.	추진중
	• 기사대기실의 경우에는 추위와 무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냉·난방기 설치를 검토바람.	○냉·난방기 설치완료.	완료
	• 청사 청소 노동자들을 위하여 지하 휴게실이 있는데, 향후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기존 폐지 등 창고와 인접하여 사용 중이던 휴게장소를 공익요원대기실을 비우고 폐지창고와 분리하여 조성하였으며, 공익요원 대기실은 1층 구)건설방재과 창고로 이동.	완료
	• 문화예술회관 주변 청사진·출입로에는 양쪽으로 주차되어 주변이 혼잡하니 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청사의 주차 방향이 사선으로 일방통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지주식 일방통행 표시 또는 바닥에 화살표나 진입금지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2013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8월~9월 중 공사 시행할 계획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청사 외곽 도로의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한 차선을 사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는 일방 통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예식장 시설 개선 • 대회의실을 이용한 예식장의 경우 무대 인테리어, 조명장치 등이 좋지 않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설 리모델링과 조명 시설 등을 개선하여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용적인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13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9월 공사 시행할 계획임.	추진중
	③ 신축 건물의 소극장 등록기준 검토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은 소극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의 소규모 공연장 등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소극장의 등록기준에 맞는지 검토 바람.	○공연장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주예술단체 유치 공모에 선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기준 이상의 무대, 객석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및 염포동주민센터 시청각실은 상주예술단체 유치 기준에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소극장 등록기준은 바닥면적 50㎡이상, 좌석수 50석 이상으로 모두 충족됨.	완결

□ 문화체육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북구문화원 보조사업 내실 운영** • 북구문화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있어 식비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의 쇠부리보존회 풍물경연대회는 대부분 상금으로 쇠부리보존회 경연팀에게 사용되었는데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북구문화원의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총회시 다른 구의 인력을 고용하였고, 문화유적답사는 다른 단체와 사람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사 관련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북구문화원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내용과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용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식비로 과다한 지출이 지양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음. ○ 문화원 총회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고용을 자제토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유적답사시 다른 단체에서 답사를 다녀온 인사에 대한 중복을 사전에 확인하여 문화유적답사를 운영토록 하겠음. ○ 향후 북구문화원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음.	완결
	② 쇠부리축제 내실 운영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상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산 서류가 미흡한 상태임.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북구 업체 위주로 하는 등 쇠부리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축제 경비는 사업 완료 후 바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바람.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 및 정산서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되도록 북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③ 구민체육대회 내실 운영** •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동별 유니폼으로 조끼나 티셔츠를 사용하는데, 많은 수량을 하여야 하고, 좋은 품질이 아닌 경우도 있음. 동별 형광 조끼를 제작 주문하고, 행사 후 수거해서 재사용 한다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구민체육대회의 경비사용에 있어 동별 뒤풀이 비용이나 생활체육 관계자 뒤풀이 비용, 기수단·공연팀 운영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경기용품은 해마다 구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향후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행사 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므로, 구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먹는 방식으로 개선 바람. • 동별 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행사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구민체육대회 개회식 행사 시작이 지연되었음. 주민들을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내빈들로 인해 행사 진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 어르신들과 아이들,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행사와 장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생활체육회에 시정요구 공문발송 및 행정지도 (문화체육과-112(2013.01.03)호) <주요내용> - 동별 유니폼을 형광조끼로 제작하여 여러 해 사용 - 동별·생활체육회 뒤풀이 비용 과다 지출 자제 - 경기용품 여러해 사용으로 예산절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 개회식 행사 시간 준수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방안 검토 ○향후 체육진흥협의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준비회의 개최시 개선사항에 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임.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인들을 배려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④ 생활체육회 보조금 사용 철저 •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임원 단복과 직원 단복의 축소가 필요하며, 식대 사용에 있어서 과다 지출한 부분이 있음. 장수체육대학의 경우에는 행사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체련교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생활체육회의 경우에는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으므로 사업별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관행을 깨고 혁신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생활체육회에 시정요구 공문발송 및 행정지도 (문화체육과-112(2013.01.03)호) <주요내용> - 시민생활체육대회 임·직원 단복 비용 축소, 식대사용 절약 - 장수체육대학 운영 개선, 청소년체련교실 참여 학생 다양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장수체육대학은 장거리 외출이 사실상 힘든 어르신들을 모시고 1년에 한번 정도 경관이 수려한 곳에서 건강생활 강의, 체조, 산책이나 관광명소 탐방 등을 하는 행사로 행사 운영은 현행대로 하고 참여대상 어르신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 ○청소년 체련교실은 개인별 접수 원칙으로 단체 접수는 일절 받지 않음. 그러나 방학시기, 친구들의 소개 등으로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흔함. 이를 통제하는 것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관내 학교에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⑤ 체육시설물 관리 철저** • 국민체육센터 누수와 오토밸리 2층 헬스장 오염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화봉풋살구장은 무단 이용 및 청소년 비행과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각종 체육시설물 이용 시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토밸리복지센터 2층 헬스장 관리는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좀 더 청결한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화봉풋살구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달천운동장 시설 개선** • 달천운동장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용 주민이 많지 않아 실질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용 주민수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용율이 낮다면, 다른 시설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달천운동장은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배구/족구),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낮은 편이나, 2010년 준공된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불가(장기검토)
	② 강동사랑길 주민 안전대책 마련 • 강동사랑길은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며, CCTV 설치나 단체 협조를 받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침	○ 강동사랑길은 전체가 넓은 지역으로 CCTV 설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우범지역에방범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해요소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강동사랑길을 이용하는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람. • 강동사랑길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물론 아이들도 찾는 곳이므로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등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우선임. 일상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강동사랑길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 보수 및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음	
	③ 역사 인물 재조명과 문화재 관리 철저 • 우리 구의 역사 인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축적하고, 역사적 자료를 고증하여 우리 구의 인물을 알리고 그 뜻을 기리는 사업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박상진 의사 생가에 대하여는 연못 복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 마애여래좌상 일원과 유포석보, 상안동 지석묘, 중산동 고분군 등 우리 구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의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마애여래좌상 일원은 강동사랑길, 추억의 학교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문화재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정비 차원에서 검토 바람.	○ 2013년4월 (사)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에서 박상진의사 생가 내 연지복원에 대한 검토 결과 복원공사 비용은 2억원 정도로 추정함. ○ 문제점으로 예전에 생가의 연못과 연결된 도랑과 논이 사라져 입수와 출수가 없으므로 수질문제가 발생하고, ○ 우수시 안마당과 건물후면에서 유입되는 토사문제로 정기적인 준설이 필요함. ○ 예전에 헛간이었던 문간채가 방으로 복원되어 연못의 습기영향으로 부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복원비용 및 문제점 등을 감안해 (사)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의견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문화재 환경정비를 위하여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문화재 주변 풀베기 등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마애여래좌상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4월 1차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14년 당초예산 확보를 울산시에 요청하였으며, 강동사랑길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	
	④ 달천철장 공원화사업 검토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인데, 2010. 9. 10. 주민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농소3동 전체 주민 의견으로 현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요구하였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달천철장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2013년6월 완료하였음. ○그 동안 2차례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음 ○금년 7월말 달천철장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예정이며, ○2013년6월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민들의 문화거점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하겠음	추진중
	⑤ 투게더콘서트 운영 개선 • 주민과 함께 하는 투게더콘서트의 경우 무더운 시기에 공연을 하는데 같이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시기 조정이 필요함. 장소 확보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기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투게더의 근본 취지는 공연장의 비수기를 활용하여 무더운 여름을 즐기는 야외 행사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원이나 시원한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불가

□ 도서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명촌도서관 시설 보완** • 명촌도서관 4층 교육관의 출입문, 자료실에는 휠체어 장애인 통행 시 불편하고 위험함.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검토하여 보완 바람.	○ 열람실(4층 교육관) 출입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문이 열리도록 경첩 설치 : 휠체어 출입 시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2013.1.3.) ○ 자료실 입구에 경사대 설치 : 휠체어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완료.(2012.12.12.)	완결
	② 도서관 자원봉사 경력자 우선 활용 •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이 필요함.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도서관 자원봉사 경력이 충분히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도서관과-4630(2011.12.29)호「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수립 시행. ○ 자원봉사 경력자에게 자원봉사자 가산점 부여, 자원봉사 경력자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음.	완결
건의사항	**① 학교도서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관내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음. 학교에는 교육 경비도 지원되는 만큼 도서관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구비 절감 차원에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울산 북구의 책 사업 추진 관련 후보도서 선호도조사, 독서릴레이 등 관내 학교에 홍보 및 참여요청으로 많은 학교가 행사에 동참하였음. ○ 독서의 달 행사시 관내 학교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 행사 추진. ※ 농소3동도서관 : 동천고 염포양정도서관 : 염포초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한도시 한책 읽기 사업 내실화** •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선정 후에는 도서의 비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함.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취지, 책 선정과정과 선정 이유 등 선정된 한 책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서를 비치하고 향후, 다양한 계층이 한 책 읽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나 주제를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도서관과-843(2013.1.24.)호 2013년도 울산 북구의 책 사업 운영계획수립, 이에 의거하여 세부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음. ○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주민추천도서 참여에 535명이 참여하여 전년대비 435%증가(2012년 123명 참여) ○ 후보도서로 선정된 도서는 각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북구청 민원실, 문화예술회관 등에 도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형마트 2개소에 추진위원들과 함께 취지 설명 및 후보도서 선호도 조사 실시 : 3. 30.(토) ○ 선호도조사결과 : 10,623명 참여 (2012년 3596명대비 195%증가) ○ 선정된 도서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구청, 각 구립도서관에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울산 북구의 책' 선정을 널리 알림. ○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각 구립도서관에서 2013 울산북구의 책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독서퍼즐 및 독서퀴즈를 진행할 계획임.	추진중
	③ 구립도서관 발전방향 모색 • 구립도서관을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게 하는 힘은 자원봉사자에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견학 실시,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내실	○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및 전문과정, 구립도서관 발전방향모색 워크숍, 북스타트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등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으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에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립도서관의 운영주체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리 매김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편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바람.	힘쓰고 있음. ○도서관별 도서수선 등 자원봉사자 활동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소3동도서관의 경우 올해 증축으로 자원봉사자실을 확보할 예정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이 도서관 운영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향후에는 구립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등 도서관 전문가들이 모여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 도서관별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여 구립도서관 간의 교류협력 및 운영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249명의 자원봉사자가 6개 구립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문화프로그램 개설, 도서관주간, 독서의달 행사 등 실제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도서관별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문 개정 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2013. 5. 24.전문 개정함.	
	④ 매곡도서관 위치 선정 만전 • 매곡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지역으로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위치 선정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치가 필요함. 매곡지역 도서관의 위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향후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건립 위치 선정 시 도서관의 장기적 발전 방향, 주민의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위치 선정에 반영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⑤ 사서도우미 역량 강화 •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세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아리 형태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인원 증원 등 좀 더 전문화할 수 있는 과정을 검토 바람.	○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및 전문과정 : 매년 과정운영 후 설문조사 실시 및 도서관별 자원봉사자 동아리 의견을 반영하여 개설하고 있음. ○ 지난해에도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가 사서도우미 과정에 다수 참여하였음. ○ 2012년도 사서도우미 전문과정부터 작은도서관에서 신청하는 수요의 100%를 반영하였으며, 구립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과도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2013년도 정원 50명 중 10명)	추진중
	•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작은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 발굴이 쉬우므로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이 구립도서관에 편중되지 않게 운영 바람.	○ 제5기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도서관별 실습 및 견학시 개설을 원하는 과목 수요조사로 10월 전문과정 개설 예정임. ○ 향후에도 구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별 참여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 사서도우미 과정과 별도로 세부적 전문교육을 위한 기적의도서관에서 북스타트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이 4월에 1회 시행되었고, 10월에 2회 운영될 예정임. ○ 염포양정도서관에서는 올 3월~6월 동화구연지도사 2급 과정을 운영하였고, 독서지도사 과정을 5월에서 8월까지 운영중임.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⑥ 작은도서관 지원 • 구립도서관의 이정표와 함께 작은 도서관 이정표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구립도서관은 강사 관련 정보가 많으므로 인기 강좌 등 강사 뱅크 데이터를 구축하여 작은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 바람.	○ 이정표 설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정보화시대에 맞게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지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등록시켜 주민들이 도서관을 쉽게 찾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명, 강사정보 등에 대한 DB를 2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설명회 시 제공하였으며, 올해 편성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사 및 단체에 소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완결

□ 민원지적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불부합 토지 개선 • 지적 전산화 이후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의 오차 발생으로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임야와 일반지역 등 배율 차이로 인한 불부합 토지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연차적으로 지적 재조사와 검수 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 바람.	○ 도면전산화 이후 발견된 오류사항(중첩·공백 등)에 대해서는 KLIS 연속지적도 정비 추진계획(2012.02.03) 및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계획(2012.09.12)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 또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57백만원 교부금 결정통지를 받은 상태이며(2013. 6. 28.) ○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제반사항으로 조례제정 및 위원회구성을 완료하였고, 7월중순 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8월초 주민설명회 및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추진중

□ 복지지원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자원봉사자 단체나 동아리 회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의 공간 마련과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보관실 설치를 검토 바람.	○ 자원봉사센터 공간(자원봉사자실 등) 부족으로 2013년 이전 계획에 있음. - 10월말 완공 예정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하반기에 이전 할 예정이며, - 공간으로는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문서고 등이 있으며, 이전 시 자원봉사 단체가 사용할 공간(케비넷 등)도 확보할 예정임.	추진중
	• 자원봉사 홈타운 사업에 있어 사업 충실화 및 리더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회원들이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시 마대, 집게 등 장비 지원을 검토 바람.	○ 홈타운 사업 다양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연계 사업 및 홈타운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특히 2013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 홈타운 연합으로 “함께해서 즐거운 행복나눔(국수나눔)”을 추진 중에 있음.(총 3회) - 또한 홈타운 활동 시 물품 지원에 적극 지원하고 있음.(매월 홈타운별 마대 2개씩 배부)	
	• 자원봉사들의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확대를 검토 바람.	○ 2013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당초 13단체, 10,000천원을 지원하였으나, ○ 제1차 추경시 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 운영에 있어 장애인 관련 계획 수립 시에는 당사자들의 자립, 사회적 적응,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여성가족분과에 있어서도 실무 분과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여성단체 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여성운동 분야 활동가들이 참여해 여성 정책에 좀 더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실무분과 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상호 소통되면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현재 장애인분과 14명 중 지체장애인 정○○위원과 장애인부모회에서 추천받은 전 북구 대표 김○○위원 등 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및 여성가족분과 등 해당 실무분과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실무협의체 위원 전원이 실무과 위원(6개분과, 81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보훈단체 보조금 사용 철저 및 예우 강화** •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 운영비가 당초 계획대로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라며, 보훈단체 사무실을 통합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공공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검토 바람. •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이므로 예산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배를 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 대표들과 논의를 한 후 합동 충혼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일시 : '13. 1. 25.(금) 11:00 - 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수시 지도점검 실시 ○보훈단체 8단체 성격이 각각 달라, 단기간 내에 통합 운영은 곤란한 상황으로, 향후 여건이 성숙될 경우 장기 검토할 사항임. ○2013.1.1.부터 6·25 참전자 에게만 지급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을 2→3만원으로 인상하여 월남전 참전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도 대비 사회단체보조금을 5%정도 인상하는 등 국가보훈대상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탑의 건립을 검토 바람.	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향후 구 재정을 감안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음. ○충혼탑 건립 관련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 일시 : '13. 4. 10.(수) 11:00 - 내용 : 합동 충혼탑 건립 건의 - 향후계획 : 복지지원과-14681 (2013. 7.2.)호에 의거 부지 선정 및 건립 규모, 모형 등 검토, 사업계획 확정 후 예산 확보 계획.	
	②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내실 운영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향후에는 홍보 부스의 확대 등 예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13.6.8.(토)에 제2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하여, 1만여명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고, 박람회 행사에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 북구 조성에 기여하였음. ○2012년도에는 총 26,000천원의 예산으로 49개 부스를 운영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총 40,000천원의 예산으로 60개 부스를 운영하여, 부스 운영 지원금 확대, 부스 종류 다양화, 희망나눔 음악회 경품 추첨, 포토존 설치 등 작년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사 종료 시까지 많은 주민들이 부스 및 음악회에 참여함. ○특히, 학생들의 체험홍보부스 15개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소 이상 견학시 자원봉사 2시간 인정으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③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내실 운영 •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의 경우 다른 지역 사례의 교류 또는 사례 발표와 토론, 분반활동을 통하여 인적 교류, 정보 교류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2012년 워크숍의 경우 2011년 워크숍 수행 후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리더간의 정보 공유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2013년 10월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시 리더간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분반 토론, 사례 발표 등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추진중
	④ 지역자활센터 행정 지도 강화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자활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자립준비적립금의 경우 일부 참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립준비적립금 내용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설명 바람.	○지역자활센터는 '12.06.30.기준 총 14개 사업에 91명이 참여하고 있음.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2%저리로 창업시 융자하고 있으며, 자활기업 생산품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전단지 배부, 박락회 등 행사 때 홍보박스운영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수익금이 발생하여 매년 적립이 가능한 사업장은 매년 매출액 정산 시 본인의 납입금액을 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도 수시로 담당직원이 안내하도록 조치함. ○자립준비적립금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신규 참여할 시 안내하고 있으나 사업단별로 적립여부가 달라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추진중

□ 사회복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 메아리학교 사건의 재단 비리는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구청이 점검 시에도 운영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바가 있고, 성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관리 소홀로 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2013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사회복지과-4373)에 의거 4월(4.10~4.24)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한 1차 지도·점검 실시하여 15건에 대해 행정지도(주의 6, 시정 9)하였으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등 14개 시설에 대해 2차 지도·점검(7. 8. ~ 7. 31.)을 실시할 예정임.	추진중
	② 노인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부진한 사업은 축소하고, 보육교사도우미, 노인복지관 사업 등 잘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평가를 통해 2012년과 비교하여 환경가꾸기사업의 경우 169명에서 130명으로 축소하고, 보육교사도우미(60명→80명) 및 지역아동센터도우미사업(11명→22명)은 확대 추진하고 있음.	완결
	③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지도 강화 • 보행기를 이용하는 노인 등 경로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경로당 이용이 쉽도록 시설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온 분들은 낯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분들도 경로당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람.	○2012년 냉천경로당 등 32개소 및 2013년 시례경로당 등 2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편의제고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경로당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개방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④ 보육 정책 개선** •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취약 보육에 대하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 바람.	○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향후 자체의 예산확보 및 광역시와 협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또한 현재 영아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요청 시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 도우미를 배치・운영하고 있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은 언어의 문제와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바람.	○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기관 선정하여 개소 준비중임 - 위탁운영기관 심사 : ‘13. 5. 14. - 위탁기관 : (사)통도사 자비원 - 위・수탁협약 : ‘13. 6. 11 - 개소식 : ‘13. 7월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후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추진중
	② 여성과 아동 정책의 내실 운영 • 노동자의 근로 형태와 조건이 변경되므로 여성과 가족, 아동을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업무량의	○ ‘13. 7월 조직개편으로 드림스타트팀(아동복지업무) 신설로 아동과 여성(가족)・청소년 업무로 분리되어 늘어나는 여성・아동 업무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증가는 물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운영할 수 있게 됨.	
	• 향후,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나 성별 영향분석에 근거하여 이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검토 바람.	○ 성별분리 통계는 구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성별 분리 통계 자료 수집으로 통계지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성평등 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조례에 근거하여 성평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여성주간행사, 여성발전위원회, 북구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성인지력 향상 주민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성평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여성발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여성발전기본정책 수립 시에는 분과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연계가 필요함.	○ 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여성발전기본정책 수립시 분과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음.	
	③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강화 • 학교 주변이나 아동 센터 주변에 아동폭력의 사각지대가 많음. 예방차원에서 위험한 지역의 방범 순찰 활동이 필요한데, 자율방범대, 자생단체, 파출소 및 지구대 등과 연계한 순찰 활동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2013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 아동여성안전 캠페인 등을 개최하였으며, 추후 사업 활성화 도모코자 2012년 우수 지역연대 선진지를 견학코자 함. 또한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하여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학교별로 홈페이지 게재 등 활용도를 모색하고, 연계하여 순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찰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④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 • 아동센터는 학교와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 관계자가 없음. 아동센터와 학교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 포함이 필요하며, 아동센터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북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임기만료(2013.1.16.)에 따른 재구성시 지역아동센터와 업무연계가 필요한 강북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실장을 새롭게 위촉하였음.	완결
	⑤ 아동급식 내실 운영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이용에 있어 한식도 이용하지만, 편의점 이용이 많음. 쉽게 찾고 이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이용하지만, 이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매월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행정 지도 바람.	○ 편의점 본사에 급식카드 이용내역을 요청하여, 구매빈도가 높은 상품들을 파악, 아동급식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를 공지할 계획이며, 급식카드 사용 아동들에게 월별 SMS문자 발송으로 건강우려 및 인스턴트 자제 안내 등 개별적인 지도를 하고 있음.	추진중
	•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우리 구는 현재 도시락 배달 업체가 없어 중구 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부식)을 배달하고 있음.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부서에 요청 및 적극 협력하겠음.	
	•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지급에 있어 재정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월 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	○ 2012년 겨울방학 급식비는 미리 지급 되었으며,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2013년 2분기부터 분기지급으로 변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선 바람.	경하였으며, 매분기초 급식비 지원하고 있음.	
	⑥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관련 작업장이므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하여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람.	○'12. 6. 27.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 초빙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종사자에 의한 교육을 지양하고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음.	완결
	⑦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지원 • 가정 폭력으로 인해 노출된 여성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소와 운영되고 있는데, 해마다 상담건수가 늘고 있음.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사업,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며, 마당이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검토 바람.	○현재 각종 여성피해보호 시설이 시에서 8개소 설치·운영중이며 그중 가정폭력 시설은 정원대비 이용수급이 원활한 상태로 필요시 언제든 입소 가능함. 또한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 전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엔 공유재산 취득 타당성이 미약하며, 설치에 따른 운영비(최소인력 2명)등을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구 자체 시설확보는 사실상 어려움.	완결
	⑧ 장애인 업무 내실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있어 각종 설계도와 현장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물 등 대상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전, 사용승인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였음.(9회, 11건)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장애인 관련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중요하므로, 장애등급별 세분화된 통계 자료를 구축 바람.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 구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자료는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중요하므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 바람.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예산 확보하여 11명을 추가 모집예정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 장애인행정도우미: 10명 - 장애인복지일자리: 19명 -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1명, (울산우편집중국) - 특수학교연계형일자리: 5명 (메아리학교)	
	• 주·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시설규모가 적다 보니 중중장애인이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 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 적극적으로 설치 건의 바람.	○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은 3개소, 단기보호시설은 1개소이며, 2013년 하반기 염포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설치예정임. 설치 완료시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요청하였음.	추진중
	• 장애인 부모들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보육에 있어 삶의 피로도가 높음. 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 바람.	○ 2013년 신규 바우처 사업인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하반기 중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문화행사 프로그램 추진계획임.	
	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있어 시설이나 기관에 따라 임금격차가 많이 나고 있음. 낮은 처우	○ 열악한 환경에서 모두가 누리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이 절실하나 현재 구 재정여건상 자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를 받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소한의 임금 보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 바람.	체적 지원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울산광역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⑩ 보육 정책 내실 운영 • 보육교사들의 수당 등 처우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여서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임.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의 선진지 견학 기회를 마련 바람. • 다른 구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으므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영유아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확대 정책과 내실 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함. 조리 종사원 등 처우 수준이 낮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국·시비 또는 우리 구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람.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12명절 휴가비, 근로자의 날 당직교사 수당 지원을 기 실시하고 있으며, '13. 7월 우수 장기 근속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 예정임. 이와 별도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현재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소로서 전국 평균은 물론 광역시내 타구·군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이를 해소코자 효문분교 내 유휴교실 활용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있음. 또한, 영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음. ○우리 구 공공형어린이집은 10개소로 정원별로 월 96만원~8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종사원(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우리 구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방식과 같이 국·시비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겠음.	추진중

□ 경제일자리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의무 휴업 추진 내실화** •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 추진 과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향후,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 과정의 매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무 휴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실태조사 - 기간 : 2012. 10. 30. ~ 11. 09. - 대상 : 대형마트·SSM, 소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 내용 : 기본현황, 매출액 등 ○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회 (대형마트·SSM 관계자, 중소상인 대표자) ○ 조례 개정 : 2013. 5. 2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내용(2013. 1. 23) 반영	완결
	② 석유제품 관련 점검 및 단속 강화 •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휘발유 가격이 비싼 편임. 유류 계량기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휘발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 바람.	○2012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관내 주유소 13개 업소 시료 채취 후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적합 판정)하였고, 동 기간동안 주야간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였음(4개소) ○향후에도 관련기관(경찰서, 한국석유 관리원)과 지속적인 단속실시 예정.	완결
	③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완 •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있어 용역 관련 기초 자료가 부실하므로 강동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바람. 강동권에는 각종 소중한 자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용역 자료가 되지 못함. 강동권의 인	○용역개요 - 용역명 :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기 간 : 2012. 7. 25. ~ - 용역비 : 42,377천원 - 용역기관 :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 ○추진상황 - 2012. 9.11. : 사업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1차)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부족하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용역이라는 의견들이 있음. 주민들이 만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하므로, 좀 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바람.	- 2012.10.25. : 공청회 및 의견수렴(2차) - 2012.11.19. : 중간보고회 - 2013. 2.13. : 최종보고회 (최종보고 시 미흡한 점 보완) ※ 용역결과 관련부서별 추진가능 여부 검토 중임.	
건의사항	**①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업무 추진 내실화** • 아파트단지 주변에 주민 편의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외지 사람들이 장사한다거나 기업형 노점상 등 무분별한 노점 난립과 시장이 들어서고 있음.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사회질서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 • 호계공설시장의 경우 상설적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시장을 상설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바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무등록 시장이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비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간담회 등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농소3동 지역에 무허가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그 만큼	○ 아파트 주변의 요일장은 대부분 노점상으로 외지 상인만의 차별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관련부서에 노점상 단속 협조 요청 <경제일자리과-6892(2013.3.4.)> ○ 호계공설시장의 상설화 계획 - 시기 :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완료 시점 - 범위 : 아케이드 내부터 시범실시 후 확대 검토 ○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 등록이 가능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국·시비 보조사업 발굴은 상인회와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쇠부리체육센터 주변 부지는 절대농지로 관련법 검토, 구 재정 상황, 시장성 등의 여건을 고려한 장기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주민들 수요가 많다는 것임. 쇠부리체육센터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 가능 유무를 파악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② 공장 승인 부지 관리 철저 • 천곡동 산149-1번지 일원은 공장부지를 조성하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일부분은 산사태로 훼손됨. 향후 공장 승인의 취소 요건에 대한 부분과 복구 명령 시에는 현장 복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인근 지역에는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이용 방해 등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주민 불편도 있으므로 통행로를 우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37조 의거 2013. 2. 7.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하였으며, 산지전용 허가부서(도 시녹지과)에서 2013. 2. 25(1차), 3. 21(2차) 원상회복 명령조치 및 6. 14. 검찰에 사건 송치함. ○ 진입로 차단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거됨.	완결
	③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관련 검토 •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하여 관내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사측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 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력업체 관계자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 관련 등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대자동차의 책임성 있는 관계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 노사민정협의회에 현대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으나, 사측 참여 여부는 현대차 본사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본사의 입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불가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④ **사회단체보조금 내실 운영** •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있어 사업 추진 내용이 미진하고, 교재비 중복 제작, 홍보비 과다 등 보조금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 바람.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예산 집행 사항을 점검하여 보조금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완결

□ 환경위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마을상수도 안전장치 강화** • 마을 상수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을 상수도의 덮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일제 점검한 후 취약한 곳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강화 바람.	○마을상수도 32개소에 대한 배수지내 출입제한 안전휀스 및 시건장치를 신규(교체) 설치 하였음.	완결
	②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환경 관리 철저 • 강동산하지구에 침사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업을 하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 환경유해 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공사현장의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리부서인 도시녹지과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침사지 보강 등을 요청하여 조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우수기 월 1회 이상 개발사업구역내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관리 철저토록 지속 행정지도 추진하고 있음.	완결
건의사항	① **악취 등 민원해소와 수질 개선** • 명촌 메가마트 뒤쪽 일원의 개사육으로 인하여 동천강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악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여성들에게는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 바람. • 최근 율동과 양정 힐스테이트 일원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많았는데,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바람.	○동천변에 위치한 개사육장은 동천 제방겸용 도로예정부지로 시 종합건설본부에 조기보상을 통한 시설 철거토록 건의하였으며, 산책로 이용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먼저 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고, 잔반처리 및 분뇨 적정관리 등 악취와 소음예방 위해 현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국가공단 악취 저감을 위하여 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무인악취포집기 2대를 설치하여 악취배출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악취시료 분석 결과 배출허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공정개선을 유도하는 등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음.	
	• 명촌천 일원과 명촌배수지 일대에는 침전물이 많고 악취가 심함. 퇴적물이 쌓여 있고 부유물질이 많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오래된 퇴적물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는 등 준설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소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저질개선제를 '12년부터 명촌배수지 일원에 투입하여 악취 저감 및 배수지 바닥 퇴적물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태화강 준설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명촌배수지 일대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 과다 소요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 시티병원 옆 소하천에 급격하게 퇴적물이 쌓이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오수관로 점검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람.	○ 시티병원 옆 구거(도랑)은 '13. 4. 10일 구거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준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건설방재과와 합동으로 주변 지역 오수관로의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거 주변 오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임.	
	②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 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기업체, 단체에 담당구역을 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단체 상황에 따라 주기적인 활동 유도와 격려, 지원이 된다면 구 전체를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살릴 수 있음. 단체별 구간과 하천 살리기 담당 단체, 기업 등이 자기지역 내에서 주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 바	○ 2012년도 1사 1하천 살리기 참여단체는 25개(기업체 7, 단체 18)이고, 하천 지정구간은 25개소(동천 7개소, 강동해변 3개소, 이화천외 14개소하천)이며, 1사 1하천 살리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단체 등은 환경정화 장소와 시간, 참여인원을 알려 주시면, 마대・장갑・집게 등 청소도구를 지원함.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람. 특히, 공동주택 인근 하천은 가까운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도록 유도하여, 주민 참여형으로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탄소포인트제 활용 방안 확대 •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탄소포인트가 사장되지 않고, 환경보호와 에너지도 절약함은 물론 개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그린카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 활용 방안을 마련 바람.	○ 에너지 절감에 따라 발생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개인별 은행계좌를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오토밸리 수영장 등 북구 체육시설 사용시 이용요금의 5% 감면 실시.	완결
	④ 그린리더 활동 활성화 •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린리더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향후, 그린리더 활동에 대한 동별 파악과 더불어 적극적 계획과 행정적 지원, 격려를 통하여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2013년도 그린리더 녹색생활 실천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 동별 지역특화사업 추진, 기후 학교 운영, 그린리더 초급교육, 친환경교실 운영, 그린리더 월례회 개최, 녹색성장 우수지역 견학, 그린리더 합동 워크숍 및 힘다지기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완결

□ 환경미화과

<table>
<tr><th>구 분</th><th>시정·건의 요구사항</th><th>처리내용</th><th>처리
결과</th></tr>
<tr><td rowspan="3">시정
요구</td><td>① 나눔장터 내실 운영
• 나눔장터에 있어 행사의 변화가 없다 보니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최 목적을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음.
나눔장터 행사 시 환경미화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홍보하는 방안과 행사 수익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등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td><td>o 테마가 있는 나눔장터 검토 추진
- 1회 : 교복 등 나눔행사/4월
- 2회 : 피크닉용품 나눔행사/6월
- 3회 : 유아용품 나눔행사/9월
- 4회 : 방한용품 나눔행사
o 다양한 부대행사 및 홍보관 운영
- 정신보건홍보관, 아토피 비누만들기
- 전통놀이 한마당
- 건전지, 종이팩-친환경화장지 교환행사
- 테마관 운영 등
o 기부문화 활성화
- 팝콘 판매, 기부물품 판매 수익금
.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
- 나눔장터 판매자 성금 기부
. “아름다운 기부코너” 운영</td><td>추진중</td></tr>
<tr><td>② 쓰레기 투기 행위 개선
•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의 운영에 있어 투기자를 역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상습 투기자에 대하여는 역추적 적발하여 투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바람.</td><td>o 쓰레기 상습투기자 단속 강화
• 감시카메라 운영현황
<table><tr><th>구 분</th><th>기 존</th><th>2013년 신규</th><th>비고</th></tr><tr><td>운영대수</td><td>12대</td><td>18대(18개소)</td><td></td></tr><tr><td>운영방식</td><td>필요시 장소이동</td><td>·HD 고화질방식 18대 ·음성송출 5대 시범운영</td><td></td></tr></table>※임차기간 : 2013. 6. 11.~2014. 2. 28.
• 감시카메라의 기능을 보완하여 예방과 단속 병행실시
• 상습투기자 과태료 부과로 무단투기 근절 추진</td><td>추진중</td></tr>
<tr><td>③ 고물상 관리 철저
• 효문역 일원에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산 먼지와 비가 올 경우에</td><td>o 고물상 신고제 시행
• 대 상 : 1,000㎡ 이상의 고물상</td><td>추진중</td></tr>
</table>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는 중금속 침전물이 유출되고 있음. 진장동·명촌동 일원 등에도 고물상이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 고물상에 대한 신고필증이 나갈 때 부지 울타리 조성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민원 예방을 위하여 조합 등에서 교육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 시행일 : 2011. 7. 23.(신고기한 : 2013.7.23.) o 고물상 관리 계획 • 신고대상 : 15개 업소 • 추진사항 - 관내 고물상에 대한 신고 독려 등 공문 발송 : 38개소(4월) - 영업실태 조사 및 점검 : 3회(2~4월) - 고물상 울타리 조성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생활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청결 의무 이행 독려 : 38개소 - 간담회 개최 : 18명(북구재활용협회/2013.3.12) • 향후계획 - 사업장 청결상태 미흡업소에 대한 정비 요청 - 신고대상 고물상에 대한 조속한 신고 안내 등	
건의사항	**①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활성화** • 분리수거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분리수거 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와 혼합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경고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곳도 있으며, 가로수에 분리수거망을 설치한다거나 공원 주변의 분리수거함이 지저분하여 쾌적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거수거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	o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 수립 (환경미화과-1493, 2013.1.24.) • 주민환경의식 강화 추진실적 -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 2회 - 주민환경교육 실시 : 18회 1,475명 - 환경시설 체험투어 : 1회 80명 - 클린-환경 나눔장터 : 2회 5,300명 - 재활용 선별체험 실시 : 8회 173명 - 재활용거점관리단체 간담회 : 1회 24명 • 재활용 거점수거 환경정비 - 안내표지판 보수 : 37개소 - 재활용수거용 그물망 구입 : 6,000매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한 시설의 설치 또는 방법을 모색 바람. • 헌옷 수거함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거함이 있는데, 헌옷 수거함 주변에는 늘 쓰레기가 많은 상태임.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과가 아니더라도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등 헌옷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수거함의 정비가 필요함. •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 함에도 깨끗하지 못하여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지저분한 거리 환경의 개선을 위한 계몽 및 캠페인 활동과 주민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거리를 깨끗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 바람. • 버스승강장에 맞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재떨이의 용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쓰레기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드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운동을 벌여나가는 정책 연구가 필요함.	- 분리수거용기 제작 : 50개 o 무단설치 헌옷수거함 관리 철저 • 관련부서 정비 협조공문 발송 : 환경미화과-1444(2013.1.23) • 일제정비 계획 수립 : 2013. 2.. 18. • 추진결과 - 총조사개수 : 115개 - 자진철거 46개, 강제철거 60개, 보존 9개 o 홍보영상물 제작 • 제작 : 7월(상영: 8~12월) • 효과 :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각종 교육 시 불법투기 예방 및 환경의식 높이고자 함. ※ 주민이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적극적 참여와 캠페인을 통해 걷고 싶고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데 청소행정 적극 지원 o 버스승강장 쓰레기통 점진적 교체 추진 • 설치장소 : 67개소 • 승강장내 쓰레기통 정비 - 2012. 11. : 24개소(승강장외 이동) - 2013. 하반기 교체계획 : 5개소 ※ 재떨이 제거 모형의 쓰레기통 설치는 담배꽁초 투기 시 쓰레기통 화재 발생 위험으로 점진적 교체 검토 중	
	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마련 • 각종 축제, 행사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이 많음. 음식물을	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1회용품 사용 자제 협조(환경미화과-1486, 2013.1.23.)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남기지 않게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각종 행사의 준비 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 각 실·과·소·동 행사 계획 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마련 추진 통지 - 예상인원을 파악하여 음식 준비 과다 자제 등(방안 마련 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지원) - 쇠부리축제 외 3개 행사 · 음식물수거통 : 11개 지원 · 분리배출 수거용기 : 10개 지원 • 1회용 컵 사용 자제 : 불가피하게 1회용 컵 사용 시 회수 후 재활용 분리배출(재활용 그물망 제공) o 나눔장터 및 각 실·과 행사시 홍보물배부 • 전단지 : 110장, 포스트잇 : 1,410개, 리플렛 : 1,790부, 부채 : 490개 o 구청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설치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 6월~9월 운영 o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타 지자체 견학 등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환경행정업무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RFID 시스템 견학 - 일자 : 2012. 12월 - 지역 : 양주, 서울 동대문구, 김천	
	③ 공동주택의 재활용 현황 파악 • 경쟁사회에서 타 지역에 우리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의 재활용 자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하여도 고민이	o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조사 실시 • 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2개소 • 조사방법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필요하며, 아파트별·동별 재활용의 품목현황과 판매 현황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1차 : 실태조사표에 의한 서면조사 (전수조사/환경미화과-927, 2013.1.15.) - 2차 : 현지방문조사(6개소 표본조사) • 향후 조치계획 - 재활용 분리배출실태가 미흡한 공동주택 : 지도점검 및 환경교육, 재활용 배출에 대한 관심도 제고	
	④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개선 • 도로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함. 탈부착하는 작업복의 경우 착용을 잘 안할 수도 있으며, 사각지대나 날씨가 흐릴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나타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형광색이 잘 나타나는 원단을 사용한 작업복과 색상 등이 필요함. 향후, 환경미화원 작업복 검토 시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복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ㅇ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완료) • 1차구입 : 70벌(2012.11.) • 2차구입 : 100벌(2013. 1.) • 3차구입 : 200벌(2013. 5.) ※ 개선된 야광조끼 착용으로 안전성 확보 - 기간제근로자도 야광조끼 착용으로 청소 업무에 동질성과 안전성 동시 확보	완결
	• 자원순환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은 중요함. 환경미화원들은 작업의 특성상 교통사고와 각종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많음.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사전 예방에 관해서도 교육 바람.	ㅇ 환경미화원 정기적 교육실시 • 상반기 안전교육 실시 - 일자 : 2013. 4. 22.(월) 15:00~17:00 - 강사 :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강사 - 장소 : 재활용홍보관 2층 • 교육내용 - 산재예방법 및 안전교육, 교통사고 미연방지 - 민원응대 방법 및 경험담 토론 등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 하반기 교육 : 10월 ※ 수시교육 : 주1회 반장, 운전원 등 청 시 안전교육 등 실시	
	• 아산로의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가 높은 위험한 도로임. 현대자동차 담장 쪽으로는 위험하므로 청소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적인 조치에 대하여 검토 바람.	o 청소 시 안전 확보 조치 : 아산로 일원 • 차량통행이 적은 휴일, 토요일 - 노면수거차량 활용 정비 : 2대 • 차량통행이 많은 평일 - 야광조끼 착용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 실시	

□ 건설방재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도로변 시설물 정비** • 관내 도로 중앙선과 학교 주변, 구청 일원 등에 탄력봉이 훼손 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경우가 있음.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불법 좌회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거 또는 관리가 필요하며, 관계부서 협조를 통하여 도로변 탄력봉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012년 상반기 538개소에 대하여 철거 및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13년도 하반기 중 관내 탄력봉에 대하여 재점검 후 정비토록 하겠음.	추진중
	② 제설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 • 제설함은 주민 통행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가 필요하며, 각종 쓰레기 등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등 잠금장치와 내용물에 대하여도 점검 바람. • 동 주민센터 제설 장비에 있어 주민들이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자 해도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기본적인 장비가 많아야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충분한 제설 장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관내 설치된 제설함(251개소)에 대하여 내용물(염화칼슘, 모래) 및 잠금장치를 점검하여 2013. 1. 9.자로 정비 완료하였음. ○2012. 12. 28.자로 동별 염화칼슘(25kg, 100포)을 배부하여 자체 제설 작업이 시행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설삽 등 제설장비는 추가 제공 요청 시 지급할 예정임.	완결
	③ 울산외고 진입로 정비 철저 • 울산외고 진입로에 있어 경계석 및 목재 파손, 훼손된 표지판 방치, 잡초, 쓰레기 등 전반적으로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울산	○울산외고 진입로에 방치된 경계석, 목재, 표지판 등을 2013. 1. 22.수거 및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로 개설 사업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외고 진입로 일원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 조성과 향후, 다른 사업 시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장기적 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④ 동천강 관리 철저 • 동천강 하상과 저수호안의 자생 버드나무의 밀도가 커 치수적인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하천의 안정성 확보와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수목에 대한 간벌 등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사이 화단에 식재한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며, 태풍 시 가로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드러나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음. • 동천강 내 보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지난 태풍 이후에 완전한 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 • 내황교 하부도로는 차량 이용이 많은 편임. 하부도로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에 개설 건의 등 검토 바람. • 동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유입수 오염이 심각하므로 동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소하천 수질개선 방안 마련	○동천 하상 내 잡목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하여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는 부분만 일부 정리 완료 하였으며, 동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지장수목을 관리토록 하겠음. ○화단에 식재된 연산홍이 고사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잔디 식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가로등 기초 복구 완료. ○2013. 4. 1.자로 징검다리 복구 완료. ○아산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 내황교 하부도로 연결 완료.(울산광역시) ○농소지선관거 사업 2012년 4월 완료. 생활하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오수 차집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 예정임. ○내황교 하부 쉼터조성공사를 시행,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장기검토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 내황축구장 주변 둔치 일원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으므로 둔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13. 6. 22자로 준공하여, 현재 주민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음.	
건의사항	**① 자전거 정책 내실 운영** • 자전거 보관대의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며, 도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 바람. • 녹색자전거 사업의 취지는 좋았으나 관리 부족으로 실패하였음.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 낭비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바람.	○ 자전거보관대는 연암중학교 및 울산외고 각 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보관대의 방치자전거는 수시로 철거하고 자전거 도난 문제는 현재 인력 및 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어려운 사항임. ○ 향후 자전거 사업 추진시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불가
	②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설치 -유황사우나 뒤쪽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 -비둘기유치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협성아파트 뒤쪽 철길 지하도 주변	○ 보안등 설치 : 2등 - 설치장소 : 호계동 369-1, 492-4 - 설치일자 : 2013. 3. 20. ○ 협성노블리스에서 국도7호선 방향 철길밑은 전주가 없어 설치불가. ※국도7호선 가로등과 협성노블리스 옹벽의 가로등을 철길밑 방향으로 현재 일부 비추고 있음.	완결 불가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도로변 헌 옷 수거함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쓰레기 투기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전수 조사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거함 자진 철거 등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무단설치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 철거기간 : 2013. 5. 1. ~ 5. 31. - 철거내용 : 자진 46개, 강제 60개 ※ 향후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접수 사항에 대하여 강제철거.	완결
	• 대동아파트 5단지 앞 샛길 보안등 설치 재검토	○설치등수 : 3등 - 설치장소 : 도로변 입구 1등 대동아파트 옹벽 2등 - 설치일자 : 2013. 6. 20.	완결
	• 벽산블루밍아파트 도로(대동아파트 인접)에 토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한 행정적 안내 등 관계부서와 협조 처리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일부 토공작업을 진행하여 중단된 상황으로 건축주에게 공사 조속 추진 또는 건축허가 취하시 원상복구토록 관련 부서에 독려토록 하겠음.	추진중
	• 벽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인도폭이 좁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며,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스베이와 인도를 개선	○2013.7.22. 시 교통정책과에서 버스베이 복원 및 자전거 도로 정비 완료할 예정임.	완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곡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 검토	○다른 하천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강제 압송에 의한 방류 등의 방법은 유지 관리비 과다 소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불가
	• 매곡 고향의 강 사업에 제외되는 구간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매곡교 상류 지역에 저수호안 및 산책로 추가 설치(L=480m) 설계 변경 완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금촌마을 앞 하사정 건너가는 길이 비로 인해 유실되지 않는 방안 마련	○ 현재 만들어놓은 하천횡단 시설물은 정상적인 농로가 아니며, 마을 주민들이 단순히 하천골재를 이용하여 성토한 임시적인 농사용 진입로이며, 비가 오면 당연히 하천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매번 쓸려가고 있는 실정임. 본구간은 금천, 어물천 합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하천시설물(치수용 보) 설치시 하천범람 위험이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설치 계획도 없음.	불가
	• 폭우 시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되므로 간이 배수장 설치 재검토.	○ 당 아파트 서쪽 구거는 천곡천을 통하여 동천으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으며, 강우시 본류인 동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지류인 천곡천과 구거의 수위도 동반 상승됨. ○ 본 지역의 침수 문제는 인근 지역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만 해결 가능한 사항으로 약60억원 정도 소요되는 배수장 건립하기보다 당 아파트 구거와 연결된 천곡천 유로 정비를 통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음.	불가
	• 동천강 잠수교, 보 훼손 및 어로 확보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천강 마스터 플랜에 의해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상안잠수교 파손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중에 있음. 동천은 북구의 중심하천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음.	장기검토
	• 아이파크 2차 일원 도로 개설 중단 지점의 가로등 전기 절약 조치.	○ 개설중단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소등 완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이화천 교량 아래 부분 추가로 설치한 징검다리 끝부분 경사로에 난간이 없으므로 개선 요망.	○ 2013. 6월 난간 설치 완료.	완결
	• 화봉파출소 옆에서 화봉마이스터고등학교 일원 도로는 등산객 등 주민 이용이 많음.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 장애인들에게는 위험하므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 설치 검토.	○ 2013. 6. 26. 교통행정과에서 인도 설치를 완료하였음.	완결
	• 휴먼시아사거리 일원 도로 표지판에 화봉초등학교 안내 표시.	○ 화봉초등학교 안내 표지는 표기 오류로 인한 정정이 아닌 신규 표기이므로 원인자가 도로표지판 관리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로 건의할 사항임.	불가
	• 우가포 해안 우수로의 배출구가 자주 막혀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주변 현황을 파악한 후 시설 개선	○ 우수관로 정비공사 대상지가 사유지로,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공사 추진 불가.	불가
	③ 원전 관련 재난 대비 • 우리구와 관련, 원전이 있는 월성과 우리 구 신명지역은 매우 가까운 거리로, 원전사고 발생시 재난 안전관리 방안을 적극 모색 바람.	○ 방사능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방사능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항시 유지하고, 원전피해사례, 행동 매뉴얼, 등을 숙지시키고 확보된 민방위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 도시녹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완충녹지 관리 강화** • 효문역 858번지 일원 완충녹지를 점용한 고물상이 있는데, 불법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과 완충녹지 관리 감독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 조치와 완충녹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완충녹지의 점용 부분이나 용도 변경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불법행위 현황 - 위치 : 효문동 896외 2필지 4,614㎡ - 불법내용 : 완충녹지내 고물상 운영 - 조치내용 ・원상회복계고 :'12.12.20~'13.1.21 (1차) ・명령 불이행시 사법기관 고발 조치 : '13. 1. 31('13. 5월 벌금형 처분받음) - 완충녹지 점용 허가 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음.	완결
	② 도로변 화단 관리 철저 • 도로변 화단이 각종 쓰레기, 잡초, 시설물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화단의 관리 주체에 대한 파악 등 재조정 과정을 거쳐 관리에 대한 대책과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 바람.	○ 원칙적으로 관내 화단관리는 구에서 하겠으며, 동 단위 단체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화단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와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음.	완결
건의사항	**① 우량산림의 보호** • 천곡동 산149-1번지 일원 공장 승인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방치된 현장이 있음. 옹벽 공사 부실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난개발 방지와 우량 산림, 산지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친환경 산지 전용허가 방침을 적용 바람.	○ 공사중단으로 2013. 2월에 공장승인 허가가 취소되어 2013.2.25일, 3.21일자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사업 관련자를 2013.6.14일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 하였음. ○ 향후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토록 할 것이며, 친환경적으로 산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산림방제 및 예찰 활동 강화** • 약제를 사용하여 훈증 처리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타포린이 벗겨지는 등 밀폐하여 훈증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찰 활동을 강화 바람. 향후, 숲가꾸기 사업이나 소나무재선충 사업 시 피해목 제거와 훈증 작업뿐만 아니라 고사목, 감염의심목에 대하여도 충분히 방제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향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작업 시 훈증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숲가꾸기 사업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통해 양정동, 염포동, 어물동 일원에 가시권 내에 있는 6개월 이상 경과된 훈증처리목 663개소를 4.8~6.20일까지 제거 및 파쇄처리 하였음. ○ 시기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방제 작업을 하겠음.	완결
	• 피해목 훈증 장소는 경고성 간판이나 안내문 설치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주차장 옆 등에서 훈증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바람. • 특히, 재선충 방제 관련 포장지가 낡거나 찢긴 부분은 재포장 하는 방안 등 일반 등산객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바람	○ 숲가꾸기 사업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시행지 9개소에 대하여 경고성 안내입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6개월 경과되고 훼손된 훈증막 391개소에 대해서는 훈증막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였으며, 훈증무더기는 산림내 낮게 깔아 자연부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완결
	③ 나무를 살리는 운동 전개 및 등산로 정비 • 소나무에 주사약 투입을 위해 구멍을 뚫은 후 방치된 채로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나무를 훼손할 수가 있으므로 검토 후 밀봉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일손이 부족하다면 그린 리더, 봉사 단체,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살리는 캠페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소나무는 천공구멍이 생기면 내부에서 송진이 나와 내부공백이 단기간에 채워짐 또한 송진이 외부 병해충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공구멍을 통한 2차 피해 우려가 없어 주입구를 막을 필요가 없음.(나무병원 및 산림청근무 전문가)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나무 옆에 돌탑을 쌓게 되면 나무가 고사되거나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며,	○ 나무 옆에 돌탑이 쌓인 구간을 전수조사하였으나 관내에는 나무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없었으며 현수막을 부착하여 주민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 등산로에 돌출된 나무뿌리의 보호를 위하여는 등산로를 일부 변경하는 방안 등 대책이 필요함.	○ 관내 등산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등산로변에 나무뿌리가 노출되어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점검하여 보호 구간이 발생 시 등산로 노선변경 검토하겠음.(단, 산주 부 동의시 불가)	
	•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등산로에 골이 패인 부분들이 있는데, 등산객과 아이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일제 점검 후 정비 바람.	○ 관내 등산로 6개 구간에 대해서 상반기 등산로 정비 사업을 통해 흙막이, 횡단배수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산림작업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음.	
	④ 주민참여형 공원 조성 • 공원에 울타리를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민들이 관리하는 주민 참여형의 공원 조성 체계를 구축 바람. 주민들에게 공원을 과감히 맡겨보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관리해 나가게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공원을 통해서 마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33개소 공원 중 화봉공원외 6개소를 시범적으로 통정회등 주민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결과에 따라 전체 공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완결
	⑤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 완비 노력 강화 •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이 조속히 완비	○ 1차적으로는 조합에서 보수・정비하여야 하나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 동천제방겸용도로 등 울산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그 밖에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바람.	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다소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고 있음. ○ 계속적으로 조합측에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독촉하겠으며, 소규모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보수정비는 구에서 하겠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추진토록 독려하겠음.	
	⑥ 기타 건의사항 • 옥동~농소간 도로 구간 하부 천마산 등산로 통행로 설치	○ 등산로 단절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공사는 201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2014년 이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시에 지역주민, 우리 구와 협의하여 등산로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에 암거박스 설치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어 2014년도 도로개설시 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진중
	• 연암·화봉 일원 4차선 도로변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유아차, 휠체어전동차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가로수 관리 방안 강구	○ 가로수 뿌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화봉로 등 1개 노선 가로수 6본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시에서는 2015년도까지 시내전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를 하고 있음.	완결
	• 무룡산 첫 관문인 터널문 명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의견 수렴하여 무룡산 오름문으로 명칭변경 완료 : 2013. 1월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공원을 공연 등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관내 공원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어 있으며, 화동못에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7월 말까지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공원을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음.	완결
	• 공원 관리 철저 - 한솔근린공원 ▶ 수도시설 보수와 보도블럭 정비, 화단 관리 철저 ▶ 저녁 운동시간에는 보안등을 켤 수 있도록 개선 - 희망공원 ▶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검토와 공연장 활용방안 강구 ▶ 수도시설 보수 등 시설물 개선과 숲 뒤편 방치된 의자 조치 ▶ 인근 하천과 조리 시설에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 철저	○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시 정비 완료(2013. 4) 하였음. ○ 보안등과 방치된 의자는 2012. 11월 보수 및 철거를 완료하였고 ○ 하천 등에 대한 방역은 보건소에 협조 하였음.	완결
	• 어린이교통공원 관련 시설물 안내 간판 보수	○ 누리공원 · 교통관련 안내 간판 정비완료(2013. 2)	완결
	• 가을꽃전시회와 결합되는 문화, 음악의 소규모 공연 행사 연계 추진 검토	○ 전시회 기간동안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소규모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 잦은 태풍으로 산림이 훼손된 산사태 지역과 도복된 나무 일제 정비	○ 금년도 초에 동대산임도, 대안임도, 송정저수지 절개면에 대하여 8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및 임도에 대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을 활용하여 도복된 나무는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음.	
	• 천마산 등산로 108 계단이 오래 되어 훼손, 망실된 곳이 많으므로 일제 정비	○ 천마산 108계단 구간에 대해 산주가 계단 설치 및 정비를 반대하고 있어 계단 보수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2011년 기 개설한 108계단 하단부에서 정상까지 가는 우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정표 3개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완결

□ 교통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 공영주차장의 경우 운영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음. 공영주차장별 달리 운영되는 시간의 조정과 주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계약 바람.	○ 유료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하여 평일(토요일 포함) 운영, 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운영으로 동일하고, ○ 화봉, 연암, 상방복개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08:00~20:00 이며, ○ 양정복개천, 염포신전 공영주차장은 현대자동차 직원 출·퇴근시간을 감안하여 05:00~20:00 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 여건상 운영시간 통일은 불가함.	불가
	② 주·정차 및 대형 차량 등 단속 철저 • 재래시장 주변에는 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명촌·진장 지역은 음식점 밀집지역이다 보니 대형 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는데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단속 강화와 주차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야간에는 대형차, 중기 등이 주택가 일원에 많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 교통 정체 또는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하여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지역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혼잡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시장, 상가지역의 물건 승·하차를 위한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는 탄력적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교통정체 또는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민원신고 접수 즉시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완결
	③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철저 •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휀스는 설치시기에 따라 디자인과 재질이 다르게 설치된 사항으로, 표준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휀스가 학교마다 재질, 모양 등이 다른 상태임. 휀스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정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일관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모델을 정할 경우 디자인이 낙후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음. 규격이 상이한 휀스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 토록 하겠음.	
	④ 교통 과태료 징수율 제고 • 교통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 교통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계좌 발급 및 통합고지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이외 재산 및 급여 압류를 확대하여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완결
건의사항	**① 대중 교통의 활성화**		
	• 보건소와 연계하여 담배 연기 없는 버스승강장이 되도록 하는 노력과 각종 광고지, 전단지 등으로 지저분하므로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바람.	○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2명)를 채용하여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완결
	• 화봉사거리와 벽산아파트 일원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주민들은 승강장에 기다리게 되고, 택시는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음. 주민 혼선이 있으므로 개선 검토 바람.	○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 결과 택시승차대 이설은 불가하며, 승객들의 택시승차대 승차 유도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완결
	• 화봉동 일원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낡아 있으므로 표지판 정비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소에 대한 부분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인근 지역에는 무료 주차장이 있으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 공영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내 표지판 교체 완료함.('13. 1. 31.) ○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10분 이내 인근상가 이용객에게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수탁자에게 교육하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화나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② 기타 건의사항		
	• 극동스타클래스 앞 버스정류장을 막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시설 개선	○ 철거 완료함.('13. 4. 25.)	완결
	• 연암동 벽산아파트 앞과 건너편 지역에 바람막이형 버스승강장 설치	○ 현재 시에서 버스정류소개선사업 추진으로 버스베이 철거중에 있으며 철거완료 후 바람막이형 버스승강장 설치 검토 토록 하겠음.	추진중
	• 롯데마트 건너편 버스승강장 미설치 지역 바람막이형 버스승강장 설치	○ 해당지점은 버스표지판과 버스정보시스템 및 가로수가 있으며, 전체 3m 중 장애인점자블록을 제외한 폭이 2m 미만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는 주민 및 장애인 통행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 진장 하나로마트 앞 버스승강장이 누수로 인해 불편하므로 보수	○ 보수 완료함.('13. 3. 4.)	완결
	• 안전한 통학로 확보 - 호계초등학교 일원 ▸ 각종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중복, 훼손된 표시 개선	○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영하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완결
	▸ 횡단보도 등 퇴색, 파손된 탄력봉 개선	○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영하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완결
	▸ 등·하교시간 불법 주차 단속	○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호계초등학교 일원 통학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신호등 설치	○호계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호계주공@ 202동 앞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관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설치 완료함.('13. 5. 30)	완결
	▸표지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영하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완결
	- 신천초등학교 일원 ▸보호구역에 대한 표시 개선과 아이들 등교 시 신호등 시간 조정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영하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신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보행안전을 위하여 신호등 주기 조정을 울산중부경찰서에 요청하여 완료함.	완결
	▸파손된 중앙분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도로 관리부서에서 정비 완료함.	완결
	▸정문 앞 불법 유턴으로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개선 조치	○신천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유턴 차량 단속을 울산 중부경찰서에 요청함.	완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합관제센터 견학의 교통행정적인 편의 제공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활성화 계획에 따라 초등학생 및 학부모단체, 초등학교 교감단 등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함.	완결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영하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송정초등학교 일원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판이 부족하며, 시설물 정비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추진중
	▸송정초등학교 일원 인도가 끊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도를 반대편으로 옮기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한 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방안 검토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 인근 아파트 및 학교와 협의 필요.	추진중
	- 화봉초등학교 일원 ▸도로변 스쿨존 표시 등 시설물 설치 ※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각종 표지와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학교 주변에서 단체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는 방안 검토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영하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완결
	• 천곡초등학교 주변 버스승강장 BIS 설치 검토	○천곡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BIS 설치 완료함.('12. 12. 14.)	완결
	• 주정차 단속 기간제와 관련하여 연속적 업무가 가능하도록 검토	○2013년 주정차 단속요원은 3월부터 10개월간 근무중에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였고, 고정식·이동식 및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완결

□ 건축주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대단위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대단위 아파트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민이기도 하고, 납세자가 되므로 대단위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행정지원을 강화 바람.	○공동주택의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미분양 주택 확인서 발급을 실시하여 미분양 공동주택 697세대 중 189세대가 분양 완료되는 등 미분양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향후 실수요자 위주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분양률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 하도록 하겠음.	완결
	②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 현수막은 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하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향후,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에서 형평성 있게 대처 바람. • 지난 7월경 구명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 가로수와 교통시설물 등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였음. 불법 광고물 단속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람. •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물 단속의 경우에는 사전계도가 필요하며, 위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이 필요함. 또	○구명운동과 관련한 현수막 단속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하여 향후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와의 간담회를 실시 ('12.12.6)하는 등 계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유도하였으며, ○또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말 전직원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Clean-광고 주민자율 봉사단을 '13. 3. 19일 60명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하고 불법광고물 근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한, 해당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와 다른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광고물 관리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절을 위한 주민 계도와 상업용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동별 월 1회 이상 활동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건의사항	**①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실 운영**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시 적극홍보를 통하여 1회성이 아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바람.	○ 공동체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2013년도에는 천곡벽산블루밍외 9개단지에 입주민 도예교실, 어린이 물놀이 마당, 엄마손 밥상, 요가교실 등 단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입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이해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및 사업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완결
	② 아름다운 건축문화 선도 •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에 있어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고, 구체적 설명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름다운 건축 문화를 선도 바람.	○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여 2~3년 주기로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을 개최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양정·염포지역 주거환경 개선** • 양정 B-02지역 재개발사업에 있어 진행률이 저조한 상태임. 다른 지역에 비해 양정·염포 지역은 노후 주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함. 다른 지역보다 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 바람.	○양정 B-02 재개발구역내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을 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 할 계획이며, ○2013년 2월경 주거환경이 열악한 염포·양정, 호계동 일대 총 9구역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7월에 대상단지 선정 계획임. (※염포·양정 : 5개 구역 신청)	추진중
	④ 평창리비에르 관련 행정지원 • 평창리비에르 아파트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 그간 분양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왔고, 임대 아파트로 인해 공동주택 지원 등을 받지 못하였는데, 향후 분양 등기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바람.	○'13년 10월경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1·2·3단지 통합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추진할 예정임.	추진중
	⑤ 공동주택과 관련 협조시스템을 구축한 공동의 대책수립 • 주민들은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조시스템을 구축한 공동의 대책 수립 필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주택분야 행정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주관부서에 적극 업무 지원하겠음.	추진중

□ 농수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치어 방류사업 내실 운영** • 저수지 치어 방류사업 후 치어를 관리하는데 있어 우수기에 치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망 종류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주민에게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치어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치어가 성장했을 때 낚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12.12월 강동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3명을 현장 면담하였음. - '12. 8월에 방류한 어류는 10cm이상으로 성장하여 강우시에도 유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치어 방류시 유실 방지망 설치(배수로 입구) - 추가로 저수지 입구에 낚시금지 표시판 설치완료	완결
건의사항	**① 조사료 생산 지원** •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의 생산을 늘려야 하며, 유휴지 조사 등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육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바람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는 물론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수수 수확장비(160백만원) 및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21백만원)를 지원함.	완결
	②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 방안 강구 • 로컬푸드 유통 사업에 있어 1회성이 아니라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농민과 도시 가정이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상설적인 장터 개설이 요구됨.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농촌과 도시 가정을 이어주는 사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학교 급식, 공공 기관·기업체 등 단체 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로컬푸드	○ 농민과 도시가정이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5개 대단위 APT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입지조건 분석과 입주자대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장터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북구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공급해 아이들 밥상 차림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공급률이 67% 증가해 배추, 시금치 등 지역농산물 공급물량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운동을 확산 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 61톤 정도 달하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공급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③ 도시 농업과 귀농 지원 검토** • 친환경급식 관련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 연구용역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 퇴직자들의 고용문제에 있어 도시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농업과 귀농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바람. • 자투리땅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 등 동네 곳곳에서 도시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013년 신규시책으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주민중심의 북구형 도시농업모델을 만들고자 권역별로 총 3개 단체를 선정하여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하였음. 사업비는 2천만원임. ○귀농 지원에 대해서는 도시농업 사업 중 도시농부 교육으로 도시민들에게 귀농 결심하기 전 영농활동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여건과 적성 등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토록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유관 기관(농림부, 울산시농업 기술지원센터)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완결
	④ 농촌체험마을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에 있어 체험의 다양화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바람.	○체험의 다양화를 위한 월별·계절별 농산물 체험 수확체험(딸기, 옥수수, 고구마 배 등), 만들기체험(엿, 강정, 인절미, 쿠키, 김장 등), 놀이시설(볏짚미로, 물놀이, 보트타기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함. ○체험마을과 행정 정례 간담회 개최(월1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구청 농소농협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홍보 ○2012년 체험객 20천명(유료 18천명, 무료2천명) ○참고: 양평 23개 체험마을 년간 체험객 30천명	
	⑤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현재 북구 지역에는 여성어업인이 많은데, 해녀의 집에 대하여는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여성어업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 바람.	○'11년부터 해녀의 집(탈의장) 운영비 개소당 월 10만원씩 계속 지원 중 ○참고로 당초계획은 '13년까지 관내 해녀의 집 4개소 건립예정이었으나, '14년 1개소(어물) 더 추가하여 건립예정 ○기타 잠수복, 테왁보호망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	완결
	⑥ 기타 건의사항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학교 급식 박람회의 경우 교육청과 연계 검토	○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요청(공문)을 두 차례 한바 있으며,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4곳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게 되었음. (강동초, 농소초, 약수초, 효문분교) ○10월에 예정된 급식박람회는 교육청·학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 추진토록 함.	완결
	• 강동 수산물에 대하여 협약식 체결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매출로 인한 수익은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 검토	○현재 경제일자리과에서 돌미역에 대한 생산자(어촌계) 법인등록 완료하고, 현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 등록 중에 있으며, '13. 4월 특허 출원 중인 포장지 어촌계(8개) 지원 완료.	

□ 보건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사항	**① 금연 환경 조성 철저** •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 금연 표지판은 있으나 재떨이로 사용되는 휴지통이 있어 제대로 된 금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버스정류장 내 금연 환경 조성과 어린이공원이 청소년들의 금연 장소가 되지 않도록 금연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도서관 등에는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함.	○금연 홍보물 부착 정류소 중 시설물 내 휴지통이 비치된 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과와 협의하여 이동 조치 완료.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28개소 금연구역 표지판 및 홍보물 설치 완료하였으며 보건소 자원봉사자(2인/1조) 활용하여 주 2회 공원 내 금연홍보 활동 중.	완결
	• 금연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닌 사례위주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함.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등록 대상자에게 개인 상담과 함께 6회 반복교육을 통하여 금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 소개 등의 교육 운영.(1개 사업장 20명 완료, 1개소 추진 중) ○중학교 2개교 하반기 소집단 반복교육 운영 예정.	
	• 민원인 출입이 많은 구청사 출입문 주변은 금연이 필요한 지역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는 특별히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청사, 도서관의 건물과 부지가 전면 금연구역화 됨에 따라 관련부서 공문발송, 금연 표지판 부착 및 구청사 내 흡연구역(2개소) 지정 완료.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계속 추진.	
건의사항	**① 출산장려금 상향 검토**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출산 장려금 지원에 있어 다른 구·군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기 바람	○2013년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 중구, 동구와 형평에 맞게 지원 · 2자녀 : 100,000원 · 3자녀이후 : 800,000원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 •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문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우리 북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	○ 임신·출산·양육부담경감 - 임신·출산 지원 -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구민인식개선 및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 출산축하카드 발송 - 임산부주차구역지정조례제정 - 가정의날(수,금)유연근무제운영 일과가정양립근무환경조성 - 미래둥이나눔장터운영	완결
	③ 조례 관련 후속 조치 강화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등 추진성과는 미흡함. 위원회 구성 등 다른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 자살예방 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닌 밀착 교육이나 소규모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람.	○ **선진사례 벤치마킹 완료** - 천안 및 부산 자살예방센터 - 금정구 정신보건센터 ○ **자살예방사업관련 노력을 강화함** - 울산최초 자살예방센터개소: '13.3월 - 자살예방 네트워크MOU체결 : 19기관 - 생명지킴이 양성: 2회 50명 - 응급개입**"생명 신호등"**구축 : '13.6월 ○ **자살예방위원회구성 및 운영** - 자살예방위원회구성: '13.3월/14명 - 자살실무자협의회구성: '13.3월/19명 ○ 자살 상담자 및 위기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 및 사례관리를 1:1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교육으로 아동 청소년 반별 "마음의 문열기 프로젝트" 운영과 자살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위험도가 높은 성인대상 “희망! 정신건강 학교”를 시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임.	
	•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등 조례와 관련된 행정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2013년 세부사업 계획서 수립 : 1월 ○추진내용 - 접수창구 설치 : 10개소 (구청 및 보건소 민원실, 동주민센터 8개소) - 등록실적 : 86건(2013.1.1.~7.15 현재) - 홍보 : 3회(지역사회 행사 연계 실시)	완결
	④ 예방 접종 홍보 강화 • 독감 예방 접종 등 주민들이 적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와 예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독감예방접종 전 해당 안내 홍보물 및 접종 쿠폰 배부를 통해 누락접종이 없도록 하며,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 계층은 개별 전화 및 문자 전송을 통해 적기 접종을 실시할 계획임.	완결

□ 의회사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내실 있는 의회 운영** • 의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합심이 필요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의장단과 간부공무원과의 주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의회 운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 일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장단과 간부공무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료
	② 중요행사 등 안내 • 지역 내에서 불의의 사고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원들이 꼭 참석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의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바쁘더라도 참석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바람.	○ 지역 내 주요행사 및 사건·사고 발생의 경우 빠짐없이 연락하고 참석을 독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완료
	③ 회의록, 영상 등 관리 철저 •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이나 영상 등이 외부로 나가게 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임의로 외부에 유출되게 되면, 의정 활동 등이 왜곡될 수 있음.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 발간 전의 회의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 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 하도록 하겠음.	완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조례입법연구회 내실 운영** •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에 있어 조례 제정 등은 의원 입법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며,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함. 향후에는 의원 간담회와 조례입법연구회 개최일시를 분리 운영 검토 바람.	○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 및 내용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지원토록 하겠음.	완료
	② 의원 연수 내실 운영 • 의원 연수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안이나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의정 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의원연수관련 다양한 정보를 의원들께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료

제5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3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세부계획

○ 감사기간 : 제14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 11. 21. ~ 2013. 11. 29.]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라.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윤 치 용

○ 부 의 장 : 이 수 선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공 영 옥, 진 상 록

○ 사무직원 : 박 아 영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윤종오		구정업무 전반 및 감사 요구 자료 참고
		부구청장	김종석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국	총무국장 총무과장 주민참여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서관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심순보 강수상 이해균 윤일호 한상길 박경란 박해성 이병국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일자리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최석두 이차범 윤채걸 안희수 허정행 김종구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과장 도시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농수산과장	임용균 하종섭 박경규 손기익 윤학순 김영기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황병훈 김주한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김 익 수 이 태 희 심 규 환 이 문 걸 손 호 준 하 헌 주 변 덕 임 윤 기 현		구정업무 전반 및 감사요구 자료참고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제14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 11. 21. ~ 2013. 11. 29.]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 시 /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3. 11. 21.(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기획홍보실** ○ **보건소**	
2013. 11. 22.(금)	10:00	〃	○ **총무국** • 총무과 • 주민참여과 • 도서관과	
2013. 11. 23.(토)			휴회	
2013. 11. 24.(일)			휴회	
2013. 11. 25.(월)	10:00	〃	○ **총무국** • 회계과 • 문화체육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3. 11. 26.(화)	10:00	〃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2013. 11. 27.(수)	10:00	〃	○ **복지경제국** • 경제일자리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3. 11. 28.(목)	10:00	〃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3. 11. 29.(금)	10:00	〃	○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398	22	21	102	111	104	29	9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 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작성요령 : 「별첨 2」 참조
- 감사범위 : 2012. 10. 1. ~ 2013.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3. 9. 30. 현재

○ 제출기한 : 2013. 11. 8.(금)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32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0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별첨 3」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6급 전문위원 진상록외 5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6급 전문위원 진상록·사무직원 박아영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속기사 허순자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 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398	
공 통 사 항		22	
기 획 홍 보 실		21	
총 무 국	소 계	102	
	총 무 과	14	
	주 민 참 여 과	24	
	회 계 과	13	
	문 화 체 육 과	21	
	도 서 관 과	10	
	세 무 과	7	
	민 원 지 적 과	13	
복지경제국	소 계	111	
	복 지 지 원 과	15	
	사 회 복 지 과	39	
	경 제 일 자 리 과	12	
	환 경 위 생 과	25	
	환 경 미 화 과	20	
건설도시국	소 계	104	
	안 전 건 설 과	28	
	도 시 녹 지 과	22	
	교 통 행 정 과	11	
	건 축 주 택 과	15	
	농 수 산 과	28	
보 건 소		29	
의 회 사 무 과		9	

(전부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공사 전·후 사진 각 2장 이상(1천만원 이상)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공정률</th><th>시공업체</th><th>예 산
확보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종류</th><th>용역비</th><th>착수일자</th><th>완료일자</th><th>용역결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2013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2.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해당동</th><th>통보일자</th><th>공사명</th><th>공사개요</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12. 10. 1. ~ 2013.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table>
<tr><th rowspan="2">단체명</th><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단체명 구분 표지 첨부)
<u>※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u>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table>
<tr><th rowspan="2">환수일</th><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환수대상</th><th rowspan="2">환수사유</th><th rowspan="2">금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성명(업체,기관,단체명)</th><th>주소</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table>
<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차량명</th><th rowspan="2">차량번호</th><th rowspan="2">구입일</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상태</th><th colspan="3">수리내역</th><th rowspan="2">유류비</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자</th><th>내역</th><th>비용</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운행일지 사본 1부 제출(2012.12월, 2013.7월)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성별</th><th>나이</th><th>주소</th><th>사역
기간</th><th>사역
목적</th><th>단가(원)</th><th>채용
방법</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ㅇ구 ㅇㅇ동</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작성기간 : 2012. 10. 1 ~ 2013. 9. 30
- <u>근로 조건 및 근로계약서 해당사업별로 각 1부만 사본 제출</u>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table>
<tr><th>기간</th><th>지역</th><th>인원</th><th>목적</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td><td></td></tr>
</table>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3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 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3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	…															
의 회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3.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3.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
홍보실</td><td>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 별도 제본된 책자로 제출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3. 구정연구동아리 운영 실적, 정책연구모임 운영 실적과 내용
4.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5. 구민창안제도 운영 실적
6.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3. 9. 30. 현재)
<table>
<tr><th>구 분</th><th>총계</th><th>법령</th><th>조례</th><th>기타 규정</th></tr>
<tr><td>설치근거별</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총계</th><th>심의</th><th>의결</th><th>자문</th><th>협의</th></tr>
<tr><td>성격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② 위원회 위원 현황
<table>
<tr><th rowspan="3">위원회명</th><th rowspan="3">위원장</th><th colspan="7">위 원 수</th><th rowspan="3">임 기</th></tr>
<tr><th rowspan="2">계</th><th rowspan="2">남</th><th rowspan="2">여</th><th rowspan="2">당연직
임명직</th><th colspan="3">위 촉 직</th></tr>
<tr><th>공무원</th><th>사구의원</th><th>민간위원
(시민단체)</th></tr>
<tr><td>총계</td><td>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td><td></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③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
<tr><th rowspan="2">위원회명</th><th rowspan="2">회의주기</th><th rowspan="2">개최횟수
(서면)</th><th rowspan="2">회의록</th><th colspan="3">예산집행내역</th></tr>
<tr><th>예산액
(천원)</th><th>인원
(명)</th><th>집행액
(천원)</th></tr>
<tr><td>총계</td><td></td><td>0</td><td></td><td>0</td><td>0</td><td>0</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u>※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u>
④ 2012. 10. 1~2013. 9. 30.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위원회명</th><th>설치일자</th><th>설치근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대 집행내역
<table>
<tr><th rowspan="2">소관부서</th><th rowspan="2">위원회명</th><th colspan="4">집행내역</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시</th><th>장소</th><th>참석인원</th><th>소요금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
홍보실</td><td>7.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성과
8.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세부 사업별)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업개요(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시공업체</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9.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2012년도, 2013년도)
10.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3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및 연구회, 시민위원 교육 자료
(제본된 책자로 제출)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 소규모 사업 주민 의견 수렴 자료
11. 주민참여예산제 2013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2.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13.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승진점수 가산,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4.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5.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2012. 10. 1 ~ 작성기준일까지의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17.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
18.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19.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20.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안행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1.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td><td></td></tr>
</table>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1.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수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3. 해외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 실적
4.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6. 여성공무원 보건 휴가 현황(2012, 2013년)
7. 5급 공무원 전보내역
<table><tr><th>대상자</th><th>부서명</th><th>근무기간</th><th>비 고</th></tr><tr><td rowspan="4"></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 현재</td><td></td></tr></table>8.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 연월차 휴가 현황, 출장 현황 및 출장비 지출 현황
<table><tr><th>부서명</th><th>성명</th><th>직급</th><th>계약기간</th><th>업무</th><th>채용방법</th><th>월평균급여</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포함
9.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2, 2013년)
10.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11.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1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13. 여름방학 컴퓨터교실 운영 실적
1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td><td></td></tr>
</table>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3. 9. 30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상근 인력					일시사역인부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3. 9. 30.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 인력									
	실국	부서명	계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계										
본 청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3.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실국	부서명	업무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 이하		240일 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 청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참여과																	
		:																	
	:	:																	
의 회	의 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주민
참여과</td><td>
1. 주민참여 조례 시행 이후 세부 추진 실적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추진 실적 포함)
2. 주민참여학교 운영 실적(참여자치아카데미, 통장학교, CB학교)
3.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 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보조금 지원 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 표기 - 동별 취합)
4.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직업 표기, 연령 표기), 위원의 타 단체 가입 현황, 여성위원 현황, 사무국장 현황, 주민자치위원장 현황
5.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 (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제목(안건)
6.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
7. 민주평통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 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자부담 포함)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
8.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 현황
9.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상황
10. 지역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정산내용, 활동일지
11.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12.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세부 사업별로 작성)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업개요(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시공업체</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주민
참여과</td><td>13.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14. CB 공모사업 현황
15.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table>
<tr><th rowspan="2">설립일</th><th rowspan="2">기업명</th><th rowspan="2">주생산품</th><th colspan="3">투 자 비</th><th rowspan="2">종사자수</th><th rowspan="2">월평균
매출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회의록, 재무제표, 등기부 등본 제출
16.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장학금 지급실적,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금액, 향후계획
17.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정산서 별도 제출)
- 2013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1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9.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20.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21. 희망의 인문학강좌 운영 실적
22.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 현황
23.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24.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 추진상황
- 9. 30.까지 추진 실적과 중간점검 실적</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회 계 과</td><td>
1. 공개입찰 계약 현황 -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table>
<tr><th>발주부서</th><th>계약일자</th><th>건명</th><th>사업량(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입찰참여업체수</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관급공사 계약 현황 -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수의계약 현황 - 1천만원 미만(1백만원 이상)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5.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체불임금 없는 관공사 조례 시행 이후 추진실적 및 임금지불서약서 사본
7.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8.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9.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지목</th><th>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건물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건축면적(㎡)</th><th>건축연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10.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회 계 과</td><td>11. 구청사 개보수 내역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기간</th><th>사업내역</th><th>사업비</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12.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13.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2, 2013년 월별 비교)</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문화
체육과</td><td>
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 문화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3.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 현황
4.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 개최 현황
(회원수 등 현황, 개최일시, 예산지원 내역, 집행내역 등)
5. 인문학 서재 몽돌 운영 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6.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
7. 강동사랑길 세부 조성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자재비, 노무비, 홍보비 등), 개통전 월 이용자와 개통후 이용자 비교
8. 강동해변 물놀이장(바다 수영장 포함) 운영 실적
9.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10. 달천철장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11.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현황(추진사항)
12.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3. 운동장별 대여 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4. 북구청소년 통일축구대회
(개최일시, 참여인원, 예산지원 내역, 집행내역 등)
15.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16. 2012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17. 생활체육회 운영비
- 보조금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정산서 별도 제출
18.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 체육과	19.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 20.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 운용 현황 21.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2012, 2013년 월별 비교)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 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 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정산서 별도 제출) 5. 독서릴레이 성과(독서 기록, 사업 실효성) 6.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추진 성과 - 도서 대출 현황 - 독서 감상문 참여 현황 - 주민 홍보 현황 -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전략 7.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8. 이동 도서관 운영 현황 9. 5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2, 2013년 월별 비교) 10. 명촌 도서관 증축 관련 -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 낙찰관련 서류(참여업체 현황 및 낙찰율 관련 자료)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세 무 과</td><td>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table>
<tr><th colspan="2">체 납 자</th><th colspan="3">결손내역</th><th rowspan="2">결손처분
일자</th><th rowspan="2">결손사유</th></tr>
<tr><th>성명</th><th>주소</th><th>세목</th><th>부과연도</th><th>결손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 지적과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실적 5.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 실적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7.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8.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9.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10.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1.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 12.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3.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복지
지원과</td><td>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체별 구분 작성, 정산서 별도 제출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일시,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5.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현황
6.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현황 및 지원 현황(금액 등)
7.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3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금년도 사업실적(2011, 2012, 2013년도 비교 작성)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 청소년자활지원관 참여 청소년 현황(명단), 사업성과, 일일 업무 현황, 월별 사업 현황, 봉사자 현황
8.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추진상황
9.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10.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11. (사)행복발전소 기부금 및 물품 기탁내역
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과 회의록
13. 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
14. 동 복지위원 현황 및 활동 현황
15. 동별 복지사업 추진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 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6.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7.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근무시간 등 8. 2013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9. 북구 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10.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 현황 11.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12.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정산서 별도 제출 13.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현황 14.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15.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16. 다문화가족 현황(자녀연령 등), 예산지원, 지원사업 현황, 중점 추진 시책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17.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대상지역 선정기준, 향후 시설확충 계획 18.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19.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내역 20.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상세 작성 21. 어린이집 점검 내용 22.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 등 3개소에 대한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
복지과</td><td>
2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24.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 활동 내역
25.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내역
26.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 월별 상담실적
<table>
<tr><th>상담내용별</th><th>1월</th><th>2월</th><th>3월</th><th>.....</th></tr>
<tr><td>성적</td><td></td><td></td><td></td><td></td></tr>
<tr><td>친구</td><td></td><td></td><td></td><td></td></tr>
<tr><td>가정</td><td></td><td></td><td></td><td></td></tr>
<tr><td>가출</td><td></td><td></td><td></td><td></td></tr>
<tr><td>부적응</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상담내용별은 예시이므로 실제 상담내용별로 구분 작성
- 상담 후 처리결과(상담일지 참조)
<table>
<tr><th>상담일지별</th><th>1월</th><th>2월</th><th>3월</th><th>.....</th></tr>
<tr><td>법률연계</td><td></td><td></td><td></td><td></td></tr>
<tr><td>학교연계</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상담내용별은 예시이므로 실제 상담내용별로 구분 작성
- 사례별 지속상담(10회 이상)관리 내담자수
<table>
<tr><th>사례별</th><th>내담자수</th><th>처리결과</th><th>비고</th></tr>
<tr><td></td><td></td><td><예>
상담종료...</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긴급위기상담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여부와 사례
- 센터 종사자 현황
<table>
<tr><th>종사자명</th><th>근무년수</th><th>자격증</th><th>학력</th><th>업무분장</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과 연계나 지원사업 여부(상담 등)
27.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28.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
복지과</td><td>
29.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 신청대상자 현황 및 지정 인원
- 기초노령지급에 따른 인력 지원내역(인원, 사역기간, 소요예산)
30.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31.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기본 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2012~2013년도)
- 직원 현황(작성일 현재)
<table>
<tr><th>성명</th><th>나이(성별)</th><th>부양가족수</th><th>장애유형</th><th>장애등급</th><th>월 평균임금</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2012~2013년도)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2012~2013년도)
- 자원봉사 현황(2012~2013년도)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2012~2013년도)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2012~2013년도)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 현황
-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32.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운영 규정
- 시설 종사자 및 근로자 업무분장표
- 근로자 월급명세서 : 1개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운영위원회 회의별 참석자 명단(참석사인 포함)
- 보조금 정산서
33.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th><th colspan="3">지체</th><th colspan="3">지적장애</th><th colspan="3">정신장애</th><th colspan="3">.....</th><th colspan="3">....</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3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34.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동산 2012년도 예산 지원, 사업 실적, 정산서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35. 2013년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 어린이집 이용수, 미이용 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36.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37.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38.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39. 장애통합 어린이집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제 일자리과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7.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실적, 상담 실적, 상담 후 조치결과 (조례 제정 이전과 비교 데이터 포함) 8. 종합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실적 9.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10. 20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11.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12. (예비적)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환경감시요원 단속 실적 및 각종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1, 2012, 2013년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 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9.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10.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 현황, 사업내용 11.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2.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 결과 보고 - (2011, 2012, 2013년도 작성) 13. 소하천별 수질조사(생태환경) 현황 - 환경 개선 및 보존사업 14.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현황, 추진결과 (수질 개선효과 등 결과치 분석내용) - 사업일, 대상, 사업내용 포함 ※ 수성천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상황 별도 작성 15.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EMS) 추진내역 16.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위치표시) 17. 관내 음식점 남은 음식 줄이기 추진실적 - 음식물 싸주기, 모범 식단, 도시락 용기 보급 등 ※ 모범음식점 포함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8.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 현황 포함) 19.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20.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도표) 최근 3년(2011년 ~ 2013년)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21. 위생관리 도우미 운영 현황 및 실적 22.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3.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기타 현황 24. 그린마을 추진 실적, 성과 25.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 실적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
미화과</td><td>
1. 기본 현황(2013.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3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3.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노면청소차량 운행 현황(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과태료 부과내역 등)
8.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0.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2~201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2~201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 현황(2012~2013)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12~2013)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2.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1, 2012, 2013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table>
<tr><th>구 분</th><th>계</th><th>1월</th><th>2월</th><th>…</th><th></th></tr>
<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
미화과</td><td>14. 음식물폐기물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민원 발생내용 등
15. 음식물줄이기사업 정책 실패(2011. 대우아파트 시범사업) 이후 추진 현황
16.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 교환판매장 관련
- 위탁 실적 현황(기간, 업체명, 위탁금액)
- 입찰계약서, 입찰조건, 인건비, 소요인력
- 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매출실적, 예산지원 현황, 이용자수)
- 교환판매장 수익 비교 현황(2010, 2011, 2012, 2013 작성)
- 재활용품 선별장 수익 현황
- 재활용품 수거 실적(2010, 2011, 2012, 2013년 작성), 처리내역
- 선별장내 구청 자산 목록(구입 시기, 내구연한, 구입비 등)
- 재활용품별 가격 산정단가(폐지, 공병, 플라스틱, 캔 등)
17.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8.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9.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20.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망 관리내역
<table><tr><th>동 명</th><th>거점망
관리장소수</th><th>관리단체</th><th>지정일</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td></tr>
</table>

(건설도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안전
건설과</td><td>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th><th>내 용</th><th>처리결과</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불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공용자전거 구입내역(단가, 구입대수), 부서별 이용 실적,
현재 이용실태, 관리 현황(분실대수, 현재대수)
※ 휴일 관리방법 포함
9.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 현황)
10.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공사 전·후 사진 2장
11.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2. 동천 보 현황
13. 동천 하상정비공사 현황(준설모래 처리 현황 포함)
14. 동천강변 내 각종 식재 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생존율
15.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6.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 추진상황, 당초계획과의 변경된 사항, 향후 계획 등)
17.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8.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9.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 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안전 건설과	20.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21.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22.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 현황 ※ 구 자체 판단 위험 취약지역 포함 23.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2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25.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26.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27. 옥동~농소 2구간 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28.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 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 현황, 민원 현황 및 지원 실적 3.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6.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7.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8.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9. 산림관리작업단 운영 현황 10.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11.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12.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13. 정다운 공원 이름 만들기 실적 14. 울타리 없는 공원 만들기 실적 15.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16.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8.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9. 가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 투입 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 녹지과	20. 도심녹화사업,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계획 21.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포함 22.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현황 (세부 소요예산, 자문회의 개최결과, 회의록 사본, 국·시비 보조금 신청 내역 및 확보내역 등)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교통
행정과</td><td>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 현황
2.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table>
<tr><th>구분</th><th>건수</th><th>과태료부과액</th><th>비고</th></tr>
<tr><td>주·정차</td><td></td><td></td><td></td></tr>
</table>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5. 짜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6.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table>
<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소재지</th><th>차고지
면 적</th><th>용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table>
<tr><th>단속일자</th><th>단 속
차량대수</th><th>행정처분 실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7.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8.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9. 관내 차선규제봉(탄력봉) 설치 현황
<table>
<tr><th>설치일</th><th>대상지</th><th>설치내역</th><th>소요예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0. 저소득층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실적
11. 과태료 체납 현황, 징수(정리) 실적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 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5. 건축허가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조치 현황 6. 명성요양원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개설 관련 검토사항 7.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그간 세부 진행사항, 소송 대응 방안 8.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9.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10.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실적 11. 공동주택 주민공동체사업 추진 현황, 실적 12.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3. 9. 30 현재) 13. 평창리비에르 지반침하에 대한 재난대비 분석·평가 여부, 대책수립 현황 및 추진계획 14.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5. 주민참여형 아름다운거리 조성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 (일시, 지원내용, 수급자, 지원금액)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관내 저수지 유료낚시터 현황 8.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9.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 현황, 계절별 작물재배 현황, 물량수 포함 - 유기질성분 비료 생산농가, 생산량, 지원실적, 평가 현황 11.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 실적 12.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성과, 시장대비 가격 비교 13.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 14.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 15.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16.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실적 17.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8.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 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19.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20.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21.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22.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23.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 이용 현황, 수익금 현황 24.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 세부 현황(예산집행내역 포함) - 당사해양낚시공원 등 사업 전반 25.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농가수익증대, 판매실적, 육우 품질 향상 여부 등 포함) 26.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 현황 27.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 상황 28.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 학교별 세부지원내역(정산서 별도 제출)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각종 간담회 포함)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진료 실적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 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 수 (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 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9.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10.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임산부 지원 현황 포함 11. 2자녀·3자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12. 산모, 신생아 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실적(예산 집행/신청자 수) 13. 암 치료비 지원 실적 14.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 현황, 대상자 선정 기준 15.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인 출산 지원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6.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 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시행 이전과 비교 실적, 이용자 홍보 실적, 관리대상자 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7.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추진 실적 18.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9.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20.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21.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22.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23. 정신보건사업 추진상황 2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추진 현황 25.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6.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 ※ 2013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 포함 27.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28. 노인 의치 지원사업 29.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2, 2013년 월별 비교)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 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 현황 4. 의원 발의 결의안,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5.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 현황 6. 의원 정기회, 임시회 출석 현황 7. 의회 방청 현황 8. 의회 견학 현황 9. 언론 홍보, 보도 현황	

제6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3. 11. 21. ~ 2013. 11. 29.(9일간)

4.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 치 용	이 수 선	안 승 찬 이 홍 걸 강 진 희 정 윤 석 이 혜 경	공 영 옥 진 상 록	박 아 영

②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3. 11. 21.(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기획홍보실** ○ **보건소**	
2013. 11. 22.(금)	10:00	〃	○ **총무국** • 총무과 • 주민참여과 • 도서관과	
2013. 11. 23.(토)			휴회	
2013. 11. 24.(일)			휴회	
2013. 11. 25.(월)	10:00	〃	○ **총무국** • 회계과 • 문화체육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3. 11. 26.(화)	10:00	〃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2013. 11. 27.(수)	10:00	〃	○ **복지경제국** • 경제일자리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3. 11. 28.(목)	10:00	〃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3. 11. 29.(금)	10:00	〃	○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③ 감사방법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398	32	
공 통 사 항	22		
기 획 홍 보 실	21	1	
총 무 국	102	16(동장 8)	
복 지 경 제 국	111	6	
건 설 도 시 국	104	6	
보 건 소	29	2	
의 회 사 무 과	9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16	31	85
공 통 사 항	(7)	(2)	(5)
기 획 홍 보 실	8	3	5
총 무 국	34	11	23
복 지 경 제 국	40	9	31
건 설 도 시 국	29	6	23
보 건 소	3	1	2
의 회 사 무 과	2	1	1

6.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각종 위원회 구성 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주민 참여 유도 및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② 비밀문서 관리 철저

- 동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 소홀이 있

음. 비밀문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 바람.

건의사항

①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

- 성인지 예산에 있어 협조 부서와의 관계 구축 등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이 부실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발굴이 부족함.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지속적 연구는 물론 공무원, 주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등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2015년부터는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성화

- 공무원들로 구성된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다양한 성과물이 도출되었음. 우리 구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창의정책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는 발전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

-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우리 구와 직접적 교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 정부, 울산광역시 등에서 하는 대형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될 때는 우리 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 각종 행사 시 내빈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내빈 위주의 행사는

행사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내빈소개 등 행사 의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목표를 세워야 함. 품목별 구매 목표가 법에서도 정해져 있으나 부서별 구매상황을 보면 목표를 채우는 부서가 없음. 품목별 목표 등을 설정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구정소식지 활용 철저

- 구정소식지는 구정 운영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것이지만, 단체장 사진, 발행횟수의 문제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객원기자 활용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미담 사례를 발굴, 게재하는 등 구정소식지가 계도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각종 위원회 구성 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주민 참여 유도 및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③ 비밀문서 관리 철저

- 동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 소홀이 있

음. 비밀문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 바람.

건의사항

①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

- 성인지 예산에 있어 협조 부서와의 관계 구축 등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이 부실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발굴이 부족함.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지속적 연구는 물론 공무원, 주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등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2015년부터는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성화

- 공무원들로 구성된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다양한 성과물이 도출되었음. 우리 구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창의정책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는 발전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의 동 지역위원회 운영에 있어 향후에는 조기에 구성한 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예산 부분이라도 구정발전에 관련된 사안이나 정책적 제안 등이 주민들에게서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조정회의는 원만한 토론 과정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

-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정산과 평가방법 등에 있어서는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음.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민간부문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매년 유사하므로, 내실 있는 새로운 계획 수립이 되도록 검토 바람.

⑤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

-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우리 구와 직접적 교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 정부, 울산광역시 등에서 하는 대형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될 때는 우리 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총 무 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신속한 결원 보충

- 결원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가중되고 있음. 업무 가중으로 인하여 직원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 각종 행사 시 내빈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내빈 위주의 행사는

행사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내빈소개 등 행사 의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②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강구

- 해외도시와의 우호교류 협력,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향후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우호교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포함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생활민원바로처리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

- 생활민원바로처리에 있어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자생단체, 봉사단체, 아파트 관계자 등에 대한 주민참여포인터 적용 방안 강구 등 실질적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④ 방사능 사고 대비 주민 홍보

- 우리 지역 인근에도 월성원자력이 있음. 방사능 사고에 우리 주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피 요령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바람.

⑤ 기념품 발굴 만전

- 주요 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을 구입하였음. 기념품은 절제된 가운데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을 나타내고 선전할 수 있는 기념품 발굴에도 적극 노력 바람.

2. 주민참여과

시정요구

①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 철저

-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있어 정산 서식과 운영비 사용에 있

어 동별 상이한 부분이 있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에는 보조금 카드 사용과 정산의 공통 서식화, 운행일지 작성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하여 개선 바람.

②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일부 동에서 특정 단체 인원이 편중된 경향이 있음.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바람.

③ 보조금 사용 철저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사용과 정산 부분에 있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간이영수증 사용 등 아직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음. 보조금 카드 사용 등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④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철저

-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사업계획 변경에 있어 이런 사업은 출발하는 단계부터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중요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 확립

- 새마을장학금과 외부 기업의 학자금 관계에 있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구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앙양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② 주민참여포인트제 확대

-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있어 봉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바람.
- 개별 보다는 단체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관내 기업이 주간 연속 2교대를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수요층을 조사하는 등 남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 문화회관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이 학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 해부터는 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 바람.

④ 교육경비 사용 내실화

- 교육경비 부분의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인 약수초등학교 아이돌봄교실 간식비 지원에 있어 경비의 결재방법 등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경비가 보다 유효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3. 회계과

시정요구

① 대회의실 시설 개선

- 대회의실 예식시설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조명과 무대장치 부분에서 부족한 상태임. 예식장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시설을 좀 더 개선 보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② 수의계약 운영 철저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수의계약은 해당 사업의 계약 목적과 법적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③ 공공시설 건립계획 수립 철저

- 공공시설물에 공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물 건립 시에는 장래의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 바람.
- 공공시설물 건립 시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 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향후 기존 건물이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시에는 기존 건물의 활용계획도 포함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건의사항

① 동주민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

- 송정동주민센터의 경우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많음.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 농소3동주민센터의 경우 당초 행정적인 수요 예측 잘못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렵긴 하지만, 인구 4만 명이 넘는 동인 만큼 행정 수요 또한 많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동 행정 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음. 동주민센터의 증축을 일부 반영시키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농소3동주민센터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바람.

②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개선

- 공공시설 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마련에 좀 더 노력하여 주

시고,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③ 업무용 택시 도입 검토

- 유류비, 수선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관용 차량의 확대 보다는 예산 절감 등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하여 연구 검토 바람.

4.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각종 보조사업 내실 운영

- 북구문화원과 생활체육회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내용과 성격,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하고 관리 감독 바람.

② 각종 행사 운영 철저

- 구민 전체가 함께 하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행사의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일정도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함.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투게더콘서트와 같은 행사 시 편파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명촌지역 테니스장 조성

- 명촌지역 주민들의 테니스장 수요가 많으므로 명촌주공아파트와 동천강 제방 사이 일원이나 또는 적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등 명촌 일원에 테니스장 조성을 검토 바람.

② 각종 사업 내실화

- 인문학 서재 몽돌에서 하는 행사 중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음. 훌륭한 분들이 참여한 좋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을 볼 때 남성 보다는 여성청소년이 적은 편임. 성인지적 관점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여성청소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역사적 기록의 발굴 축적

- 우리 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인 양성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와 향토사 연구회 같은 경우 전문인 양성을 통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 검토 바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소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더불어 기대 욕구 또한 많은 상태이므로,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⑤ 공공서비스 시설 종목과 프로그램 운영 진단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종목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⑥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지난 8월 투·융자심사 의뢰 이후 경과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 설명이 없었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람.

5.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

- 중앙도서관의 경우 유휴 공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층, 3층 로비에 탁자, 의자 등을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랑방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② 작은도서관 활성화

- 도서관 사업에 열정이 높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구 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와 주민 설득 노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북구 전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③ 매곡도서관 조기 건립

- 매곡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에 대한 주민 욕구가 높음. 많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6. 세무과

시정요구

① 지방세 부과 철저

- 중고차 매매상사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관련 마찰이 있었음. 관내 기업체의 편의를 위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듯이 이런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며, 구의 세수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7.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만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사업에 있어 상호 불일치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②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

-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지만, 아직도 일반 주민들의 경우 잘 모를 수 있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조기 적응을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복지경제국

1. 복지지원과

시정요구

① 정임석 열사 선양과 예우 강화

- 정임석 열사 추모회가 결성되어 4. 19. 추모제 행사를 하고, 구에서도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인의 뜻과 넋을 기리는

선양사업 및 묘지 관리 부분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음. 유족회와의 협의를 통한 사단법인 결성 지원 등 열사 선양 정책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자활센터 내실 운영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있어 연도별 참여자 수 유동이 많음.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인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 청소년자활지원관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들의 진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바람.
-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자활근로자나 자활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하여는 위로와 격려를, 대표 변경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② 보훈단체 예우 강화

- 보훈대상자들은 연로하신 분이 많아 해마다 그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음. 구 차원에서 예우를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상태임.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다른 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보훈대상자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우하는 등 적극 지원 바람.
- 조국을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회원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자녀 교육장으로도 활용 가능한 충혼탑이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③ 자원봉사 단체 지원 강화

-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고 활동하는 지역 자율 단체도 있음.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자율적 봉사 단체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 지원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④ 자활기업 육성 강화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기업으로의 발전이 더딘 상태임. 자활기업에 대한 다양한 업종 개발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자활기업의 육성 노력과 더불어 기존 자활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지속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자활기업이 임금 지급 문제로 적자를 유지하는 등 제대로 된 자활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 자활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자활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기업 진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⑤ 기부 문화 확산

- 함께 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기부 문화 확산 활동이 필요함. 관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에 동참,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철저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대부분이 특허권으로 인해 특정 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음. 새로운 대체 상품에 대한 개발 노력과 아울러 제대로 된 수익금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판매된 수익금이 특허권으로 인하여 실제 장애인에게 사용되지 못하였음.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일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일자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중 훈련생에 대한 임금 지급 부분과 근로장애인 본연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강화 바람.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 시설장이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정 바람.

② 안마바우처 사업 운영 개선

- 안마바우처 사업 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음. 장애인 이용 접근이 불가한 시설이거나 방문 거부, 불필요한 서류 징구 사례 등이 있으므로 안마바우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방문서비스 실시 등 시설이나 제도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③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의무대상시설에서도 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장애인 접근이 불가한 시설이 많이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공사 중인 구청사 일원에서도 장애인 점자블록 일원의 환경 개선과 보도 일원의 높낮이 조정, 경사로 설치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조치 바람.
- 장애인의 1층 식당 이용 등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 장애인 방문 통로 확보에 대한 기본조사가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④ 어린이집 점검 철저

- 어린이집 점검과 관련하여 미점검 어린이집이 타 구에 비해 많음. 어린이집 미점검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조치 바람. 제대로 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관리 감독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경로당 건립 방안 강구

- LH공사에서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이 있음. 노인들의 여가 공간 제공과 배려하는 차원에서 LH공사와 협약 등을 통하여 1층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회가 변화고 마을 공동체 형성의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된 상태임. 경로당에 대한 주민 욕구는 많으나 마을 공동체가 공동재산을 기부채납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시의 개발 단계부터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 기반에 있어 노인복지의 부분은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바람.

②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목표를 세워야 함. 품목별 구매 목표가 법에서도 정해져 있으나 부서별 구매상황을 보면 목표를 채우는 부서가 없음. 품목별 목표 등을 설정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③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개선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입사와 퇴사 인원이 많은 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와 사기 앙양, 교육 등을 통하여 이직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④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음. 사기 앙양 차원에서 구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임금 부분이 너무 상이하므로 임금 체계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요양보호사가 있는 시설의 임금지급 기준과 처우 개선을 위한 부분이 시설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며,
- 요양보호사를 동반한 보호대상자의 병원 이동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보호대책이 필요함.
- 중증환자인 1급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함.
- 요양보호사들에게 웃음 치료, 놀이 치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⑥ 안전한 귀가길 조성

- 아동이나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길 조성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 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음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⑦ 여성정책 기본시책 내실화

- 여성정책 기본시책에 있어 과제명과 사업내용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연도별 과제 설정과 사업 내용 등 여성정책 기본시책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과제별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좀 더 내실화하고, 제대로 된 시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사회적기업 보조금 사용 철저

-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중 특허권과 관련된 특정 물품에

대한 홍보비 등으로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음.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② 변전소 관련 대응 철저

- 우리 지역은 도시 팽창의 가속화와 더불어 공업시설이 많음. 전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적기, 적소에 변전소 등이 설치되어야 하나, 원만한 협의 부족으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유증 발생 우려도 있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③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 철저

- 풍력단지나 태양광발전소 조성 등 대안에너지 부분은 적극적 업무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또는 홍보 바람.
-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하는 시민햇빛발전소의 경우 사업자 변경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음. 합리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실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은 없는 지 재검토 바람.
- 나눔햇빛발전소 협약과 관련하여 풍력발전단지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경합 업체가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기적 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전통시장의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시설과 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 왔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충동을 일으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골목 상권 살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 우리 구와 조건이나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 우수사례를 견학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을 특성화 시키지 않으면 활성화 되지 않음. 새롭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관계 부서와의 협조 및 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새롭게 진단하는 등 시장을 특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 바람.

② 의무 휴업 시행과 의견 수렴 만전

-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과 관련하여 현재 타 구·군 동시 시행 협의 중에 있음.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 상인을 살리기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 바람.
-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에 있어 대규모 점포 내에는 입점 소상인들이 많은 상태이므로, 이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람.

③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용역 후속조치 방안 강구

- 지역 기업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용역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바람.

④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내실화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하여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음. 임금이나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동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기획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⑤ 송전선로의 지중화 노력 강화

- 무룡산, 동대산 일원의 송전철탑 설치는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에 문제가 있음. 송전선로의 지중화 가능 부분은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며, 구 차원에서도 관계기관에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⑥ 석유판매업소 단속 강화

-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었음. 유사석유 판매 행위는 그 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단속 바람.

4.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사업 미실시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

- 그린마을 사업 관련 정부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없어짐. 홈페이지 내용의 수정과 함께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 홍보 바람.

건의사항

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지도 점검 강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기준 면적 이하의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같은 경우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대규모 점포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②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 상안동 홈플러스 일원의 데크 설치 주변에 쓰레기가 많은 상태

임. 기업의 사회봉사 참여와 하천 주변 정화 활동을 위하여 홈플러스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 하천 정화 노력의 성과는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극적 권장을 통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바람.

③ 유해조수피해방제단 지원 강화

- 지형지물에 밝은 지역 인원으로 구성된 유해조수피해방제단이 지역 곳곳에서 신속한 방제활동을 함으로써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방제단과 협의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④ 공중화장실 청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 공중화장실 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이동시간도 많고,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낮은 편임. 위탁 업체에서 고용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등이 다른 위탁 업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므로 근로조건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⑤ 녹색생활실천 체험관 상시 운영 방안 강구

- 녹색생활실천 체험관 운영에 있어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전시관에 학생 등 환경 교육 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⑥ 자연부락 상수도 인입 노력 강화

- 대안마을 같은 자연부락의 경우 상수도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자연부락은 상수도 인입 시 개인 부담분에 대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등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 바람.

⑦ 기타 건의사항

- 강동동 활어직판장 내에도 관계부서와 협력을 통하여 옥외가격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미용업소에 대하여도 옥외가격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 바람.
- 음식점 등 영업 신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인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 바람.

5. 환경미화과

건의사항

①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전개

- 홈플러스 일원 새롭게 만든 정자 주변과 화봉지구 개발지역 내에 쓰레기가 많은 상태였음.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위한 주민 의식 함양과 더불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② 폐기물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과대한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사업장에서 적정 폐기물 보관 수준이 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특별히 관리 감독 바람.

③ 재활용선별장 근무여건 개선

- 재활용선별장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여성분이 많으며, 임금 수준 또한 낮은 편임.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있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개선과 복리후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생활쓰레기 대행구역 재조정 검토

-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의 권역별 수거비율에 대한 비중 차이가 상

당히 발생함. 대행구역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행구역 재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

- 재활용품 이물질 혼합 배출로 재활용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다세대 게시판 등에 홍보, 안내 바람.

⑥ 기타 건의사항

- 폐현수막을 이용한 쓰레기 마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청소전방지휘소가 현재 4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 통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마대 수거 후 소각 처리하는 가로변 낙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벽산아파트 앞 늘푸른공원 일원 재활용거점장소에 대하여는 장소 문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에 대하여 인근 상가와 협의 바람.

건설도시국

1. 안전건설과

시정요구

① 장애인 통행 환경 개선

- 우리 구에는 장애인이 많으며 특히,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은 편임. 연암, 화봉지역의 인도와 도로 부분에 대한 장애인 보행 환경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 장애인의 통

행이 어려운 곳이 많았음. 장애인들도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지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통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보도블록 교체 만전

-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더 사용가능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음. 구에서 보도블록 교체 사업 시행 시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자체설계 노력 강화

-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 부분에 있어 기술직공무원의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현장 상황에 밝은 기술직공무원이 법률적 부분을 포함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인력은 증원하는 등 공사부분의 구 자체설계 부분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③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강화

- 재난취약가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관계부서, 동과 연계하는 등 확대방안에 대하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노력 바람.

④ 제설장비 정비 만전

- 겨울 폭설을 대비하여 제설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설함 정비와 더불어 동주민센터 제설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비하여 주시고, 폭설 시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⑤ 매곡천 고향의 강 관리 강화

-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에 있어 비탈길과 하천 주변 환경이 정돈되지 못한 경우가 있음. 하천 일원을 구간마다 특징 있게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체력단련공간과 함께 안전시설의 설치도 필요함. 하천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 예산 투입 방안 보다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매곡천 일대 주민 이용 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화장실 설치 검토와 하천을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무지개아파트 일원 석축 및 레미콘 공장 일원의 잠수교 등은 폭우 시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다목적 광장 활용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
- 매곡천 주변은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⑥ 원동아파트 일원 침수 해소방안 강구

- 폭우 시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이 배수장 설치를 재검토 요청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해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 차원에서라도 관계부서와 협력하는 등 배수장 설치를 재검토 바람.
- 원동아파트 뒤편 천곡들 침수와 관련하여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천곡천 지류 변경을 건의한 바 있음. 원래 있던 지류에서 경지정리 과정에서 지류가 변경되었음. 호우 시 동천강 수위보다 천곡천 수위가 낮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침수이므로 천곡천 지류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⑦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이 될 수 있음.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통한 정책 연구나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오토밸리 1구간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오토밸리 2구간 도로 연결 시에도 자전거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⑧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내황교 하부 쉼터 테이블 일부에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투명 비닐 설치와 주변 공터 일원에 주차장 시설 설치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부분에서 미검사 현황이 많음. 미검사 시설은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안전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공원 관리 철저

- 공원 관리에 있어 여성·시민 사회단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CPTED) 관점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미흡한 점이 많았음. 특히, 공원 화장실에 여성 이용을 고려한 비상벨 설치, 공원 안내판 위치와 내용에 대한 정비, 가로등을 가리는 부분에 대한 나무 전지작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1공원 1단체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는 등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공원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주민들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시도를 통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 바람.

② 소나무 병·해충 방제 철저

- 소나무 관련 병·해충이 확산되는 주원인은 파쇄와 제거시기를

놓친 부분임.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기에 파쇄 함은 물론 방제활동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멍이 날 수 있는 비닐 멀칭 지역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어린이공원 부지 활용

- 명촌 진장지역 내 어린이공원 부지는 있으나 창고, 주차장, 건축자재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없는 상태임. 어린이공원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기타 건의사항

- 명촌, 진장지역 내 인도에 가로수 없는 부분과 훼손된 식재 구간에 대하여는 조합 측과 협의하여 보기 좋은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바람.
- 동아청구 사거리 일원 화단에 대하여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거나 또는 철거 등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등산로 일원 나무 보호를 위하여 나무 밑에 돌탑을 쌓지 않도록 주민 선도하고, 나무뿌리 보호를 위한 계단 설치 등 등산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 바람.
-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 실시.

3.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승용차요일제 추진 철저

-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있어 참여율이 너무 지지부진함. 교통 정체

해소와 에너지 절약 등 승용차요일제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함. 인센티브 부분도 적지는 않으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참여 독려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공서 출입 문제 등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 동아청구앞 사거리 일원에 택시 승강장은 있으나, 승강장이 아닌 장소에서 택시가 주민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를 막거나 유턴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주·정차 단속의 역효과도 있는 만큼 화단이 있는 주변 여건과 인도가 넓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택시 운전자들과 협의하는 등 버스 승강장과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유료 공영주차장의 투명한 운영

-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들의 수익과 지출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시간의 문제 등이 있음. 수탁자들에 대한 설득과 구의 결단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③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일원 주차장 추가 확보 노력 강화

- 현대자동차 직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문화회관 일원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주간 연속 2교대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는 남다름.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일원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도 노

력하여야 하겠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④ 교통사고 예방 노력 강화

- 원동현대아파트, 신천초등학교 일원 국도7호선 부분은 불법 유턴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임. 주민들이 요구한 CCTV의 타 기관 검토 협의와 아울러 인근 감시카메라 이설 요구 방안 등 구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명촌, 진장지역 내 인도에 차량 주차가 많음. 주민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단속 바람.
-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정비는 하고 있으나, 동대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있었음. 어린이들의 등·하교 지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 바람.
- 공영화물터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 주변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있음. 출근길 소형차들의 운전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 지도 단속 바람.
-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블루밍아파트와 대동아파트 진입로 부분의 T자 삼거리 지점, 블루밍아파트 일원 도로에 대형차들의 주차가 많아 횡단보도 이용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지도 단속 바람.

4.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건축허가 민원서비스 간소화

- 건축허가 민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미비서류의 재보완 사례들이

있음. 건축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으므로 인·허가에 대하여는 좀 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바람.

② 코스트코 관련 소송 대응 철저

- 행정의 코스트코 관련 대응은 행정을 주관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했음. 사업자들의 피해와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등 구청 또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음. 중소상인 살리기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향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강화

- 오래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구석에 위치한 경우가 많음. 너무 높은 관목으로 인하여 놀이시설 안이 보이지 않아 범죄의 위험성 등이 있고, 놀이시설 인근 낙엽저장시설 등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해요소들이 있음. 관목의 높이 조정 및 표지판 재정비 등 범죄 방어적인 디자인 설계(CPTED) 노력이 필요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 바람.

② 공동주택 관련 사업 내실화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있어 1회성 행사가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있음. 향후에는 장기적이고, 공동주택 전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 바람.
-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시범 아파트 조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파트 옥상 상자텃밭 권장이나 작은도서관, 놀이시설 등 아파트 공간 활성

화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관련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통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 공동주택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지원금에 대하여는 정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동주택 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에 구에서 특정사업을 계획하는 등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장기적 관점의 건축행정 실현

-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민원 문제 발생시에는 원활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지형이 바뀌고, 문화가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④ 도시재생 사업 적극 추진

- 재건축, 재개발 보다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특징 있는 마을을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기존의 주거지를 살기 좋게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일원 지반 침하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 보행이 많고, 차량 통행도 많으므로 재난을 대비하여 지속적 관리 바람.
-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은 울산 전체적인 사항이므로 허가 단계부터 시행사 교육이 필요하며, 타 구·군 등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 바람.

5. 농수산과

건의사항

① 친환경무상급식 내실화

- 어린이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이 우려되지 않도록 친환경무상급식에 있어 방사능 검사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내 학교에 방사능 안전 식재료에 대한 안내 또는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친환경무상급식에 있어 울산 전체가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방사능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음. 친환경무상급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의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 부분은 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반적인 주민 홍보, 교육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함.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산물 제공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바람.
-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공공청사부지 내 건립 장소 선정 등 논란 과정 속에서 건립되었음. 향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 스스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② 직거래 장터 활성화

-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대형마트, 슈퍼마켓연합회, 농민, 관계부서와 협력 등을 통한 직거래 부문의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특화된 물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바람.

③ 안전한 먹거리 사업 확대

- 농민들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수요자는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 받음은 물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사업, 꾸러미 밥상 등은 중요한 부분임.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토대로 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보 건 소

시정요구

① 약품 관리 철저

- 약품 사용에 대한 사전 예측을 면밀히 하여 향후 약품을 구입, 관리토록 하고, 사전 예측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① 정신보건사업 추진 강화

- 정신보건사업에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나,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없는 상태임.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 내에서도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음. 자살 우려 지역주민을 조기 발견하여 전문기관과 연결시켜 주는 게이트키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우리 지역 내 자살 사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② 기타 건의사항

- 우리 지역 내 한센병 환자가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출산장려금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바람.
- 내실 있는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체력단련실의 경우 보건소 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자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바람.

의회사무과

시정요구

① 내실 있는 의회 운영

- 비회기 중 연락체계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음. 사안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고, 중요한 사안이나 행사에 대하여는 의원에게 적극 안내 바람.

건의사항

① 조례입법연구회 내실 운영

- 조례입법연구회는 연구하는 성격이 되어야 함. 조례입법연구회에 대한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며, 의견 수렴 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제7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2. 10. 1. ~ 2013.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39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특히, 올 해는 행정 전반에 걸친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구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는 전국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6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85건으로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4년 2월 1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제8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116	31	19	12		85	28	52	5
기획홍보실		8	3	2	1		5	1	4	
총무국	총무과	6	1	1			5	4	1	
	주민참여과	8	4	4			4	4		
	회계과	6	3	3			3	1	1	1
	문화체육과	8	2	1	1		6	2	3	1
	도서관과	3					3		3	
	세무과	1	1	1						
	민원지적과	2					2	1	1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6	1		1		5	2	3	
	사회복지과	11	4		4		7		7	
	경제일자리과	9	3	2	1		6	1	5	
	환경위생과	8	1	1			7	6	1	
	환경미화과	6					6		6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9	1		1		8	2	5	1
	도시녹지과	4	2		2		2		2	
	교통행정과	6	1		1		5		3	2
	건축주택과	7	2	2			5	1	4	
	농수산과	3					3		3	
보건소		3	1	1			2	2		
의회사무과		2	1	1			1	1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기획홍보실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구정소식지 활용 철저** ○ 구정소식지는 구정 운영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것이지만, 단체장 사진, 발행횟수의 문제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구정소식지는 주요사업, 시책, 지역 소식 및 구민들의 다양한 모습과 미담사례를 홍보하고 있음. 구정소식지 발행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시 관련법령 숙지 및 북구 선관위와 유기적인 관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발행하겠음.	추진중
	○ 객원기자 활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미담 사례를 발굴, 게재하는 등 구정소식지가 계도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매월 구정소식지를 제작할 때 객원 기자와 함께 편집회의를 거쳐 내용, 구성을 확정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작은 소리도 가치를 부여하여 미담사례로 게재하겠음. 또한, 객원기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워크숍,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객원기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음.	
	②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각종 위원회 구성 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위원회의 회의개최 등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주민참여 유도 및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유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청구심의 위원회” 등과 같이 안건 미발생에 따른 것임. ○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분기별 위원회 현황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실시 등 주민참여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③ 비밀문서 관리 철저** ○ 동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 소홀이 있음. 비밀문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 바람.	○ 동주민센터 종합감사결과 직무교육 실시 협조(총무과) : 2013. 11. 27. ○ 보안교육 실시 - 일시 : 2014. 1. 28.(화) 10:00~12:00 - 대상 : 전 실·과·소·동 보안담당자 - 내용 :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요령 등 보안업무 전반	완결
건의사항	**①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 ○ 성인지 예산에 있어 협조 부서와의 관계 구축 등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이 부실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발굴이 부족함.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지속적 연구는 물론 공무원, 주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등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2015년부터는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성인지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부서, 성별영향부서, 사업부서와 공동으로대상사업 발굴 및 수혜대상자 통계 분석, 성과목표 설정 등의 실무형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겠음. ○ 또한, 자치단체 특화사업 선정을 위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기관의 자문으로 성평등 예산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성화 ○ 공무원들로 구성된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다양한 성과물이 도출되었음. 우리 구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창의정책 연구모임	○ 2013년에는 5개 연구모임이 자율적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음. ○ 2014년 창의정책 연구모임은 특화된 과제를 공통으로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직원들의 많은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는 발전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참여를 위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으며, ○ 연구결과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연구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업무추진능력을 배가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③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의 동 지역위원회 운영에 있어 향후에는, 조기에 구성한 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예산 부분이라도 구정발전에 관련된 사안이나 정책적 제안 등이 주민들에게서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조정회의는 원만한 토론 과정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예산교육 실시할 계획임. ○ 2014년 상반기부터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별로 지역위원회를운영할 예정임. 마을토론회 개최 횟수를 늘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위원회에서 단순 건의사업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음.	추진중
	④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 ○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정산과 평가방법 등에 있어서는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음.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심의 위원회의 민간부문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매년 유사하므로, 내실있는 새로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1명 중 민간위원은 5명이며,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주요 심의내용 등에 대해 민간위원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집중되지 않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운 계획 수립이 되도록 검토 바람.	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규사업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⑤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 ○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우리 구와 직접적 교감이 부족한부분이 많음. 정부, 울산광역시 등에서 하는 대형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될 때는 우리 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과 같이 우리 구 지역 내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개개인이 시공사와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건의 사항을 요청하고 있음. ○ 대형사업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우리구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등 우리 구 관계부서와 적극 대응하겠음. ※ 전 부서 협조 통지 : 기획홍보실-856(2014. 1. 16)	완결

□ 총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신속한 결원 보충** ○ 결원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가중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직원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2014. 1월 정기인사 시, 신규직원 등 30명을 충원하여 현재는 부서별 결원이 거의 해소된 상태임. 일부 기술직의 경우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 광역시 일방전출 등에 따라 결원이 있으나, 2014년 신규충원 반영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 복직하는 11명을 결원부서에 배치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 각종 행사 시 내빈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내빈 위주의 행사는 행사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으므로, 내빈소개 등 행사 의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각종 행사 추진 시 내빈소개 등 행사의전은 초청 내빈에 대한 결례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간략하게 진행하여 행사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②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강구 ○ 해외도시와의 우호교류 협력,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향후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우호교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포함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국제교류는 양도시간 우호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화시대에 지방도시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목적이므로 향후 민간 교류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완결
	③ 생활민원바로처리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 생활민원 처리에 있어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자생단체, 봉사단체, 아파트 관계자 등에 대한 주민참여포인트 적용 방안 강구 등 지속적인 노력	○ 통정회 직통 생활민원 핫-라인 운영 - 일 시: 2014. 1월부터 - 추진대상: 관내 통장 - 운영방법: 민원사항 발생시 카카오톡을 통한 신고·처리 - 추진사항: 카카오톡 계정신설, 동별 통장회의 참석 및 홍보 ○ 신고건에 대한 주민참여포인트 적용 - 주민참여 포인트 신규 추가 검토 요청(주민참여과) : 2012. 12월 - 우선적으로 기존 포인트 대상 중 유사분야 적용하여 신고건에 대한 포인트 부여, 향후 자체 신규항목 추가를 위한 규칙 개정 예정	완결
	④ 방사능 사고 대비 주민 홍보 ○ 우리 지역 인근에도 월성원자력이 있음. 방사능 사고에 우리 주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피 요령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바람.	○ 방사능 재난 대비 주민대피 요령 등 홍보물 1,000부 제작·배부 : 2013. 12. 24. ○ 방사선량 측정 : 매월 2회 (정자, 산하, 신명)	완결
	⑤ 기념품 발굴 만전 ○ 주요 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을 구입하였음. 기념품은 절제된 가운데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을 나타내고 선전할 수 있는 기념품 발굴에도 적극 노력 바람.	○ 국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학회, 협회 등 벤치마킹, 교육, 조사, 견학 등을 위하여 상호 방문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 대표 축제인 쇠부리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 주민참여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정 요 구	**①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 철저** ○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있어 정산 서식과 운영비 사용에 있어 동별 상이한 부분이 있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에는 보조금 카드 사용과 정산의 공통 서식화, 운행일지 작성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하여 개선 바람.	○ 자율방범대장 간담회 개최 - 일시: 2014. 2. 19.(수) 19:00 - 장소: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 - 내용: 보조금 카드 사용, 정산서식 공통화, 운행일지 작성 철저 지도 - 향후계획: 수시 지도점검 실시	완결
	②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일부 동에서 특정 단체 인원이 편중된 경향이 있음.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바람.	○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구성 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을 적극 활용하도록 동주민센터 통지: 주민참여과-1010(2014. 1. 22.) ○ 구청과 동주민센터 간 인적자료를 공유하는 등 위원 다양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③ 보조금 사용 철저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사용과 정산 부분에 있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간이영수증 사용 등 아직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음. 보조금 카드 사용 등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 - 일시: 2014. 1. 8.(수) 15:00 - 장소: 과 사무실 - 내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 - 향후계획: 수시 지도점검 실시	완결
	④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철저 ○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사업계획 변경에 있어 이런 사업은 출발하는 단계부터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중요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공사는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신축부지가 아닌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프로젝트임. 기존 건축물 용도와 신규 건축물에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들어설 실내 시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이러한 행정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향후에는 철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①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 확립** ○ 새마을장학금과 외부 기업의 학자금 관계에 있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구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2014년 새마을장학금 추천 시 새마을지도자의 의견 적극 반영 및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사)울산북구새마을회 통지: 주민참여과-1328(2014. 1. 28.)	완결
	② 주민참여포인트제 확대 ○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있어 봉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바람. ○ 개별보다는 단체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주민참여포인트제 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 시스템 홈페이지”에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공사), 행사, 교육 일정 등을 게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결
	③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관내 기업이 주간 연속 2교대를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수요층을 조사하는 등 남녀 격차를	○ 동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직장인(남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반 운영, 프로그램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동주민센터에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 문화회관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이 학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 해부터는 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 바람.	요청하였음: 주민참여과-1010 (2014. 1. 22.)	
	④ 교육경비 사용 내실화 ○ 교육경비 부분의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인 약수초등학교 아이돌봄교실 간식비 지원에 있어 경비의 결재방법 등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경비가 보다 유효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2013년도 교육경비 지원 후 10. 21. ~ 11. 15.까지 14일간 보조금 지원 대상인 30개 학교에 대하여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2014년도 교육경비는 시설 확충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에 비중을 두고,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도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진로교육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완결

□ 회계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대회의실 시설 개선** ○ 대회의실 예식시설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조명과 무대장치 부분에서 부족한 상태임. 예식장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시설을 좀 더 개선 보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대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2013. 8월 로비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사업비 79,442천원)를 시행완료 하였으며, 12월 추가적으로 커튼 교체 등 열악한 무대시설을 개선 하였음.	완결
	② 수의계약 운영 철저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수의계약은 해당 사업의 계약 목적과 법적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수의계약 관련 전부서 공문 통보 - 회계과-938(2014. 1.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에 의거 추정가격(관급자재,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설계 금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각종 설계 시 원가계산 등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하도록 지도하겠음.	완결
	③ 공공시설 건립계획 수립 철저 ○ 공공시설물에 공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물 건립 시에는 장래의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 바람. ○ 공공시설물 건립 시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 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향후 기존 건물이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	○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시 향후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물 공간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할 시에는 기존 건물의 활용계획도 포함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건 의 사 항	**① 동 주민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 ○ 송정동주민센터의 경우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많음.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 농소3동주민센터의 경우 당초 행정적인 수요 예측 잘못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렵긴 하지만, 인구 4만 명이 넘는 동인 만큼 행정 수요 또한 많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동 행정 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음. 동주민센터의 증축을 일부 반영시키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농소3동주민센터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바람.	○ 송정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 건은 교통행정과에서 한솔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임. ○ 농소3동 주민센터 부지인 상안동 380-8번지 일원을 제외한 인근의 토지는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음. ○ 동주민센터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소관부서인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녹지를 감하고 타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임. ○ 따라서, 인근부지 임대 및 교통행정과의 자투리땅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물색하는 등 장기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 공공시설 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마련에 좀 더 노력하여 주시고,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휴게시설은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토록 노력하겠으며, ○ 정규직화 문제는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각종 행사 시 긴급투입이 어려우며 특수성이 있는 청소의 경우(바닥왁스, 유리창 청소 등)는 별도 용역 발주가 필요하며 물품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및 청소기계 등 추가구입이 필요하여 용역 입찰 대비 예산이 증가됨. ○ 60세이하 고용안정은 있으나 60세 초과 노령자 일자리 퇴출 발생 등 (현재 60세 이상 10명 중 4명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청소용역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며 현재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입찰 시 고용승계토록 행정지도하여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행안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2011. 11 .8)	
	"계 속"	○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 계약서에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현재 상태로 유지하여도 고용 불안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최저임금 : 41,680원/8시간 제조부분보통인부 : 60,236원/8시간	완결
	③ 업무용 택시 도입 검토 ○ 유류비, 수선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관용 차량의 확대 보다는 예산 절감 등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하여 연구 검토 바람.	○ 업무용 택시제도는 2006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울산 동구에서는 2013. 8월부터 업무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구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농지, 임야 등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택시 콜이 어려운 곳이 다수이며, 우리는 동구에 비해 4.4배 정도 넓어	불가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이용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아울러 현재 관용차량이 각 부서마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용 택시도입은 차량유지비 이중지출의 우려가 있음. ○ 또한, 사업부서의 경우, 일회성 출장이 아니라, 여러 출장지를 순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향후 차량유지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유지관리비를 감하고 차량교체 시 차량유지비가 저렴한 경차 및 전기차 등을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절감토록 하겠음.	

□ 문화체육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각종 보조사업 내실 운영** ○ 북구 문화원과 생활체육회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내용과 성격,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 및 관리 감독 바람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물(사진, 책자등) 증빙을 철저히 하여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② 각종 행사 운영 철저 ○ 구민 전체가 함께 하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행사의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일정도 감안하여 조정하기 바람	○ 구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에 북구 구민의 대표인 북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향후, 체육대회 관련 행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음.	완결
	○ 투게더콘서트와 같은 행사시 편파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사진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건의사항	**① 명촌지역 테니스장 조성** ○ 명촌지역 주민들의 테니스장 수요가 많으므로 명촌주공아파트와 동천강 제방 사이 일원이나 또는 적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등 명촌 일원에 테니스장 조성을 검토 바람.	○ 동천강변 체육시설은 우수기 시 하천 범람 등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영구구조물(인조잔디, 휀스) 설치는 불가함. ○ 테니스장 설치 건은 향후 생활체육 활성화와 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가능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음.	불가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② 각종 사업 내실화** ○ 인문학 서재 몽돌에서 하는 행사 중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음. 훌륭한 분들이 참여한 좋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각종 언론보도, 동 자생단체회의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겠음.	추진중
	○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홍보물 배부는 물론 SMS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을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청소년이 적은 편임. 성인지적 관점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여성청소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신청대상자 자격 및 스포츠 관련 종목이 한정되어 있음. 향후, 여성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건의토록 하겠음.	
	③ 역사적 기록의 발굴 축적 ○ 우리 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인 양성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와 향토사 연구회 같은 경우 전문인 양성을 통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검토 바람.	○ 대학교수, 관내 학교장 및 역사담당선생님 등 향토사학자들께 자문을 받아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교육과 향토자료 수집 및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문화원, 향토연구사업회 등에서 발간하는 책자는 도서관,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④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소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더불어 기대 욕구 또한 많은 상태이므로, 조합측과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호계문화체육센터 부지는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근린공원(제4공원)으로 확정하여 협약식을 체결하여 추진 중으로 사업비 조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⑤ 공공서비스 시설 종목과 프로그램 운영 진단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종목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상·하반기 사전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기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결
	⑥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지난 8월 투·융자심사 의뢰 이후 경과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 설명이 없었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람.	○ 2014. 1. 14 구청장 동순회방문 시 달천철장 공원조성을 위한 시 재정투융자심사가 부적정으로 결정되었으나, 주민들의 숙원임을 감안 시 재정 투융자심사에 재상정할 계획임을 설명함.	완결

□ 도서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 ○ 중앙도서관의 경우 유휴 공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층, 3층 로비에 탁자, 의자 등을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랑방 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중앙도서관의 건물구조상 로비의 소음이 전체에 울려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로비에 소파, 탁자, 전시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작은도서관 활성화 ○ 도서관 사업에 열정이 높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구 차원에서도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와 주민 설득 노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북구 전역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운영의지가 높은 곳에 지원해주고 있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어 있는 농소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 주기적인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워크숍 실시로 작은도서관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매곡도서관 조기 건립 ○ 매곡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에 대한 주민 욕구가 높음. 많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매곡도서관은 9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 2015년 7월 착공,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1월말 건립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3월 국비신청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도서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 세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정 요 구	**① 지방세 부과 철저** ○ 중고차 매매상사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관련 마찰이 있었음. ○ 관내 기업체의 편의를 위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듯이 이런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며, 구의 세수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바람.	○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사전 추징 조항 등 안내를 하고 있으며, 추징 시 사전예고문 발송으로 민원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기타 세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행하는 등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 민원지적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만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사업에 있어 상호 불일치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지적-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있어 상호 불일치하는 행정정보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자료정비를 진행 중임.	추진중
	②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 ○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지만, 아직도 일반 주민들의 경우 잘 모를 수 있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조기 적응을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2013. 12월에 북구 전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 복지지원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정임석 열사 선양과 예우 강화** ○ 정임석 열사 추모회가 결성되어 4. 19 추모제 행사를 하고 구에서도 경비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인의 뜻과 넋을 기리는 선양사업 및 묘지관리 부분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음. 유족회와의 협의를 통한 사단법인 결성 지원 등 열사 선양 정책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 정임석 열사의 묘지가 있는 천곡동 산 17번지의 소유자 동의를 득한 후 묘지정비 사업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묘지 정비를 실시할 계획임. 우선 봉분정비 및 잔디를 보식하고 묘 주변을 확장하여 2~3면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묘비를 수정 제작하여 정임석 열사 선양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지역자활센터 내실 운영**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있어 연도별 참여자 수 유동이 많음.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인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한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기·수시 교육 실시 등 자활센터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겠음.	추진중
	② 보훈단체 예우 강화 ○ 보훈대상자들은 연로하신 분이 많아 해마다 그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고, 구 차원에서 예우를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상태임.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다른 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보훈대상자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우하는 등 적극 지원 바람.	○ 2013. 1. 1.부터 6·25참전자에게만 지급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을 월2만원에서 월3만원으로 인상하여 월남전 참전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부터는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임. ○ 사회단체보조금은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5%정도 인상하였고,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 3%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추진중
	○ 조국을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회원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교육장으로도 활용 가능한 충혼	○ 합동 충혼탑을 송정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박상진의사 생가주변 역사공원 부지에 건립하고자 역사공원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탑이 빠른 시일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조성계획 변경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역사공원 개발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합동 충혼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③ 자원봉사단체 지원 강화 ○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고 활동하는 지역 자율 단체도 있음.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자율적 봉사 단체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 지원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2012년 464개, 2013년 501개 단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등록 단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동 연계 및 실적 관리를 개인별, 단체별로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할인가맹점 할인 혜택,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의 인정,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향후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자원봉사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단체 등록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음.	완결
	④ 자활기업 육성 강화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 기업으로의 발전이 더딘 상태임. 자활기업에 대한 다양한 업종 개발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자활기업의 육성 노력과 더불어 기존 자활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지속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자활기업이 임금 지급 문제로 적자를 유지하는 등 제대로 된 자활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사업의 우선위탁과 생산품 홍보관 전시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것은 지역자활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 자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자활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기업 진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기부 문화 확산 ○ 함께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기부 문화 확산 활동이 관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에 동참,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직접적으로 독려는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웃돕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나 개인에 대한 언론보도를 더욱 강화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상식에 이웃돕기에 참여한 관내 기업체를 추천하는 등 기부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 사회복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정 요 구	**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철저**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대부분이 특허권으로 인해 특정 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음. 새로운 대체 상품에 대한 개발 노력과 아울러 제대로 된 수익금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2013. 7. 1. ~ 2016. 6. 30) 후 고래비누(한국전통문화연구소) OEM제작 재계약을 하지 않아 더 이상 고래비누는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고래비누를 대체할 새로운 수제비누 및 포장지 개발을 하고 있으며, 개발 후 판매 수익 배분은 구청과 수탁기관 서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음.	추진중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판매된 수익금이 특허권으로 인하여 실제 장애인에게 사용되지 못하였음.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일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일자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수탁기관인 (사)울산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받아 작업장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장애인 등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중 훈련생에 대한 임금 지급 부분과 근로장애인 본연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강화 바람.	○ 2012년 하반기(11.12~11.30) 지도점검에서 훈련생 임금 미지급부분과 근로장애인 본연의 업무 외 타업무 수행사항을 확인 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고 훈련생에 대한 급여기준도 마련함. 또한 근로 장애인 고유업무 외 타업무를 병행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정 요 구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 시설장이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정 바람.	○ 2012년에 직원 및 근로장애인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회 중 1회를 시설장이, 2회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3회 모두 전문외부강사로 교육을 실시하였음. ○ 앞으로도 정기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하겠음.	추진중
	② 안마바우처 사업 운영 개선 ○ 안마바우처 사업 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음. 장애인 이용 접근이 불가한 시설이거나 방문 거부, 불필요한 서류 징구 사례 등이 있으므로 안마바우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방문서비스 실시 등 시설이나 제도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근골격계 등 퇴행성질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바우처 사업은 재가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방문거부,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의무대상시설에서도 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장애인 접근이 불가한 시설이 많이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공사 중인 구청사 일원 에서도 장애인 점자블록 일원의 환경 개선과 보도 일원의	○ 구청사 일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은 청사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정 요 구	높낮이 조정, 경사로 설치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조치 바람.		
	○ 장애인의 1층 식당이용 등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 장애인 방문 통로 확보에 대한 기본조사가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13년 5월~12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1998. 4. 11. 이후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공동주택 등 616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는 2014년 1월중 보건복지부에서 통보예정, 통보 후 편의시설이 미비한 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추진중
	④ 어린이집 점검 철저 ○ 어린이집 점검과 관련하여 미점검 어린이집이 타 구에 비해 많음. 어린이집 미점검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제대로 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관리 감독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최근 미점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4년에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10개소 이상 점검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추진중
건 의 사 항	**① 경로당 건립 방안 강구** ○ LH공사에서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이 있음. 노인들의 여가 공간 제공과 배려하는 차원에서 LH공사와 협약 등을 통하여 1층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회가 변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의	○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임대(제공)하는 것으로 경로당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당 사업 취지와 반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경로당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된 상태임. 경로당에 대한 주민 욕구는 많으나 마을 공동체가 공동재산을 기부 채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시의 개발 단계부터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 기반에 있어 노인 복지의 부분은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바람.	부지가 확보되도록 관련 부서(도시녹지과)에 협조 요청하였음.	
	②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목표를 세워야 함. 품목별 구매 목표가 법에서도 정해져 있으나 부서별 구매상황을 보면 목표를 채우는 부서가 없음. 품목별 목표 등을 설정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2013. 12. 12. 『201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통지 및 협조요청』 공문을 각 실과 및 동 주민센터에 보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독려하였으며, 2014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목표액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③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개선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입사와 퇴사 인원이 많은 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와 사기 앙양, 교육 등을 통하여 이직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 바람.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나 환경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인건비 등의 지원이 대부분 시비보조금이므로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④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음. 사기 앙양 차원에서 구 차원의 지원과	○ 2013. 7월부터 구비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격수당을 월4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기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더불어 임금 부분이 너무 상이하므로 임금 체계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울산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음.	
	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요양보호사가 있는 시설의 임금 지급 기준과 처우 개선을 위한 부분이 시설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며	○ 관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급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 요양보호사를 동반한 보호대상자의 병원이동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보호대책이 필요함.	○ 보호대상자의 병원 이송 요청 시 사고 등에 대하여 보호자 사전 안내 및 동의 후 이송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 중증환자인 1급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함	○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인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적극 건의하겠음.	추진중
	○ 요양보호사들에게 웃음 치료, 놀이 치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년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 시 요양보호사의 정서안정,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웃음치료, 놀이 치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음.	
	⑥ 안전한 귀가길 조성 ○ 아동이나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길 조성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 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음에	○ 2013년도 시에서 귀가길 안전동행 시범서비스로 버스정류소 주변 5개소(북구 : 농소중학교, 호계필그린)를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따라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지정·구축하여 2013. 9. 25. ~ 11. 25. (2개월)까지 운영한 바,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달성하였음. 2014년도에는 아동·여성뿐만 아니라, 취약한 외국 노동자까지 보다 폭넓게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귀가길 환경조성이 되도록 하겠음.	
	⑦ 여성정책 기본시책 내실화 ○ 여성정책 기본시책에 있어 과제명과 사업내용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연도별 과제 설정과 사업 내용 등 여성정책 기본시책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과제별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좀 더 내실화하고, 제대로 된 시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수립지침이 시달되는 바, 해당부서에서 새로운 정책환경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실적인 적정한 과제가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경제일자리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정 요 구	**① 사회적기업 보조금 사용 철저** ○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중 특허권과 관련된 특정 물품에 대한 홍보비 등으로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음.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사회적기업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보조금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조치 완료	완결
	② 변전소 관련 대응 철저 ○ 우리 지역은 도시 팽창의 가속화와 더불어 공업시설이 많음. 전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적기, 적소에 변전소 등이 설치되어야 하나, 원만한 협의 부족으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유증 발생 우려도 있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변전소 및 철탑건립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 적극 중재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초기 단계에는 고시 및 공고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③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 철저 ○ 풍력단지나 태양광발전소 조성 등 대안에너지 부분은 적극적 업무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홍보 바람.	○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태양광은 그린빌리지 사업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정 요 구	○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하는 시민햇빛발전소의 경우 사업자 변경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음. 합리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실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은 없는지 재검토 바람.	○ 시민햇빛발전의 경우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 교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 나눔햇빛발전소 협약과 관련하여 풍력발전단지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경합 업체가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기적 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한국동서발전(주)의 경우 2014년 울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풍력발전단지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음.	추진중
건 의 사 항	**① 전통시장의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시설과 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 왔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충동을 일으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골목 상권 살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장부지 재포장, 냉·난방기 설치, 상징 게이트 및 문주간판 설치, 정자 시장 구조물 도색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우리구 대표시장인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내 상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기간을 거쳐 “시장 상설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골목상권 살리기와 중소유통사업자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상권살리기추진단” 구성을 검토 중에 있음.	추진중
	○ 우리 구와 조건이나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 우수사례를 견학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을 특성화 시키지	○ 시장상인회 견학 시 우리 구 여건과 비슷한 우수시장을 견학하여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않으면 활성화 되지 않음. 새롭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관계 부서와의 협조 및 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새롭게 진단하는 등 시장을 특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 바람.	부산 "번개시장" 등 특성화 된 시장의 성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장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음.	
	② 의무휴업 시행과 의견 수렴 만전 ○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과 관련하여 현재 타 구·군 동시 시행 협의 중에 있음.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 상인을 살리기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 바람. ○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에 있어 대규모 점포 내에는 입점 소상인들이 많은 상태이므로, 이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람.	○ 2013. 8. 26. 우리 구에서 구청·군수협의회에 5개 구·군 의무휴업 동시 시행을 제안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 ○ 동시 시행 합의 이후 우리 구 주도로 구·군 담당과장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의무휴업일 및 시행시기 협의함. ○ 2014. 1. 15.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2월 네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두 번째주 의무휴업일 지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14. 1. 21.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대형마트 임대점포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해당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추진중
	③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용역 후속조치 방안 강구 ○ 지역 기업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용역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바람.	○ 용역 후속 조치로 "근무형태 변경과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용역을 2013. 11. 1. 발주하여, 근무형태 변경이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우리 구 역할과 방안을 강구하여 2월 중 최종보고 예정이며,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 경제일자리과-1149호(2014. 1. 9)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추진 상황을 확인한 바 문화 여가프로그램 신설, 교통, 주차 등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우리 구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④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내실화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하여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음. 임금이나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동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기획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홍보 강화를 위해 구정소식지 자료 게재, 각종 교육시 홍보, 노사민정 간담회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 비정규직지원센터 추진 시 추진상황 사전 확인 및 적극 협조,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⑤ 송전선로의 지중화 노력 강화 ○ 무룡산, 동대산 일원의 송전철탑 설치는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에 문제가 있음. 송전선로의 지중화 가능 부분은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며, 구 차원에서도 관계 기관에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지중화의 경우 기존 철탑공사보다 사업비가 2배 이상 발생함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환경보호 및 도시지역 등 지중화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전력에 건의를 하여 공사 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⑥ 석유판매업소 단속 강화 ○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었음. 유사석유 판매 행위는 그 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단속 바람.	○ 2013. 12. 30. 기준 관내주유소 10개 업소에 대하여 시료 채취 후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적합 판정) 및 유사석유 판매 단속을 실시하였음. ○ 향후에도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완결

□ 환경위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사업 미실시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 ○ 그린마을 사업 관련 정부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없어짐. 홈페이지 내용의 수정과 함께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 홍보 바람.	○ 그린마을 육성사업 폐지 안내 홍보 및 구홈페이지 내용 삭제조치하였음. ○ 동주민센터, 울산북구새마을지회 등 폐지 안내	완결
건의사항	**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지도 점검 강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기준 면적 이하의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같은 경우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우리구의 도서관이 6개가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중 도서관의 경우 연면적 3,000㎡ 미만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나, 도서관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음.	완결
	○ 대규모 점포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 대규모 점포의 주차장에 대하여 2014년도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오염도 유지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②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 상안동 홈플러스 일원의 데크 설치 주변에 쓰레기가 많은 상태임. 기업의 사회봉사 참여와 하천 주변 정화 활동을 위하여 업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 2014. 1. 20.(월) 14:00 홈플러스 울산 북구점 부점장 면담 결과 홈플러스 주변을 반기별 1회에서 ⇒ 분기별 1회로 확대하여 정기적인 자율청소 실시	완결
	○ 하천 정화 노력의 성과는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극적 권장을 통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바람.	○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정화 활동 시 환경캠페인과 언론홍보 등을 활용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기업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이미지를 심어주기로 하였음. ○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담당구간 참여여부를 검토하기로 협의함.	
	③ 유해조수피해방제단 지원 강화 ○ 지형지물에 밝은 지역 인원으로 구성된 유해조수피해방제단이 지역 곳곳에서 신속한 방제활동을 함으로써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방제단과 협의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2014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선정 시 간담회를 통해 피해방지단 활동 애로상황 등 의견수렴 후 협회를 통해 방지단원에 탄환 등 일부 물품 지급예정임.	완결
	④ 공중화장실 청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 공중화장실 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이동시간도 많고,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낮은 편임. 위탁 업체에서 고용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등이 다른 위탁 업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므로 근로조건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 용역업체 청소 인력의 임금은 청소 용역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수당 및 퇴직금, 보험료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 향후 타 청소용역의 근로조건을 검토하여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겠음.	완결
	⑤ 녹색생활실천 체험관 상시 운영방안 강구 ○ 녹색생활실천 체험관 운영에 있어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전시관에 학생 등 환경 교육 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에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환경 교육 시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재활용선별장)와 협의하였음.	추진중
	⑥ 자연부락 상수도 인입 노력 강화 ○ 대안마을 같은 자연부락의 경우 상수도를 이용하는 데 많은	○ 대안마을상수도는 2014년 상반기 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관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어려움이 있음. 자연부락은 상수도 인입 시 개인 부담분에 대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등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 바람.	부설을 예정하고 있음. ○ 원지마을 등 시 상수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도 상수도본부 북부사업소와 연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관내 마을상수도 관리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수시교육,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하여 시 상수도 신청토록 적극적으로 독려중임.	
	⑦ 기타 건의사항 ○ 강동동 활어직판장 내에도 관계부서와 협력을 통하여 옥외가격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 정자활어직판장은 우리구와 정자어촌계간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며, 수산물(활어) 가격은 계절별, 월별, 어획(공급)량에 따라 변동이 크며 또한 판매 품목(어종)이 많아 매일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농수산과 소관)	완결
	○ 이·미용업소에 대하여도 옥외 가격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 바람.	○ 영업자 준수사항 기준에 의거 이·미용업소 66㎡이상 업소는 옥외 가격표시 완료하였으며, 65㎡ 이하 업소는 업소 내 가격표시 완료함.	
	○ 음식점 등 영업 신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인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 바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업무 협의토록 하겠음.	

□ 환경미화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전개** ○ 홈플러스 일원 새롭게 만든 정자 주변과 화봉지구 개발지역 내에 쓰레기가 많은 상태였음.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쓰레기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담당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식함양 및 청결활동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환경지킴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임. - 운영기간: 연중 - 운영방법: 깨끗한 북구 만들기 자원봉사 - 참여인원: 동별 신청접수자	추진중
	② 폐기물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과대한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사업장에서 적정 폐기물 보관 수준이 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별히 관리 감독 바람.	○ 2014년도 환경관련 통합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실시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추진중
	③ 재활용선별장 근무여건 개선 ○ 재활용선별장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여성분이 많으며, 임금 수준 또한 낮은 편임.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있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개선과 복리후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재활용선별장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3대 설치할 예정이며, 임금 및 복리후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추진중
	④ 생활쓰레기 대행구역 재조정 검토 ○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의 권역별 수거비율에 대한 비중 차이가 상당히 발생함. 대행구역 불균형이	○ 수집운반업체 평가조례에 의거 연 1회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심화되지 않도록 대행구역 재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 바람.	○ 2002년 이후 4개 업체에 현재 수거지역으로 대행하고 있으나 업체 간 업무량과 수입의 불균형이 있어 장기적으로 균형 대행구역이 가능하도록 원가산정 용역발주 시 과업에 포함하고 결과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겠음.	
	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 ○ 재활용품 이물질 혼합 배출로 재활용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다세대 게시판 등에 홍보, 안내 바람.	○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홍보전단지 20,000매를 제작하여 주민만남의 날 등을 통해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음.	추진중
	⑥ 기타 건의사항 ○ 폐현수막을 이용한 쓰레기 마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에 대하여 검토 바람.	○ 폐현수막 이용 쓰레기수거 공용마대 - 구입: 2014. 1월 - 수량: 5,000매(100리터) - 내용: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폐현수막 활용한 쓰레기 수거용 마대로 이용	추진중
	○ 청소전방지휘소가 현재 4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 통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청소전방 지휘소는 현재 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바, 권역별 분리운영이 청소업무 수행의 신속처리와 청소차량 및 장비 보관 등에 따른 분리운영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통합운영은 현시점에서 곤란함.	불가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 마대 수거 후 소각 처리하는 가로변 낙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가로변 낙엽의 다른 용도의 사용은 민간의 거름용도로 일부 제공하였으나, 만족도가 낮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추진중
	○ 벽산아파트 앞 늘푸른공원 일원 재활용거점장소데 대하여는 장소 문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에 대하여 인근 상가와 협의 바람.	○ 늘푸른공원 일원은 거점장소가 아니나, 인근상가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근 거점장소로 배출하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음.	추진중

□ 안전건설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장애인 통행 환경 개선** ○ 우리 구에는 장애인이 많으며 특히,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은 편임. 연암, 화봉지역의 인도와 도로 부분에 대한 장애인 보행 환경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이 어려운 곳이 많았음. 장애인들도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지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통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경계석 낮춤이 미시행되거나 보도폭이 협소하여 장애인 보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2014. 3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장애인 통행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보도블록 교체 만전** ○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더 사용 가능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음. 구에서 보도블록 교체 사업 시행 시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 우선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대상은 아니므로 안건 상정은 불가함.	불가
	② 자체설계 노력 강화 ○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 부분에 있어 기술직공무원의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현장 상황에 밝은 기술직공무원이 법률적 부분을 포함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인력은 증원하는 등 공사부분의 구 자체 설계 부분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 단순, 반복적인 사업에 한하여 자체설계를 추진해왔으며, 인력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인력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공사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자체 설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③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강화** ○ 재난취약가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관계부서, 동과 연계하는 등 확대방안에 대하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노력 바람.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서비스(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실시에 따라 현재 전수조사 중이며, 소방서(의용소방대)를 통해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소화기와 감지기(각 100대)를 설치할 예정임. ○ 또한, 동 및 관련기관(부서)와 협력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낙후시설 교체, 화재감지기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추진중
	④ 제설장비 정비 만전 ○ 겨울 폭설을 대비하여 제설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설함 정비와 더불어 동주민센터 제설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비하여 주시고, 폭설 시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폭설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제설장비는 점검하고 있으며, 충분한 염화칼슘을 보유(128톤)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유관기관 및 민간제설작업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⑤ 매곡천 고향의 강 관리 강화 ○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에 있어 비탈길과 하천 주변 환경이 정돈되지 못한 경우가 있음. 하천 일원을 구간마다 특징있게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체력단련공간과 함께 안전시설의 설치도 필요함. 하천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 예산 투입 방안 보다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과 함께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활용, 안전시설 설치공사 추진 - 사업내용: 계단설치 1개소, 안전난간 16경간, 안내표지판 설치 18EA 등 - 사 업 비: 16,496천원 - 사업기간: 2013. 12. 18. ~ 2014. 1. 13. ○ 2014년 매곡천 추가 정비사업 추진 - 사업내용: 기존공원 정비 1식,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매곡천 시설물 보완 1식, 체육시설물 설치 3개소 제방 정비 L=300m - 사 업 비: 670,000천원 - 사업기간: 2014. 1월 ~ 6월 ○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자생단체에서 매곡천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매곡천 일대 주민 이용 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화장실 설치 검토와 하천을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매곡천은 급류하천으로 홍수 시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으므로 둔치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하천구역 외 인근지역 설치를 검토하겠음. ○ 유지수 확보방안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지수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 무지개아파트 일원 석축 및 레미콘 공장 일원의 잠수교 등은 폭우 시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다목적 광장 활용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		
	○ 매곡천 주변은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매곡천 추가정비사업 시행 시 제방 사면 식생매트 설치 및 조경수 추가 식재 등 녹지공간을 추가 조성 예정임.	
	⑥ 원동아파트 일원 침수 해소방안 강구 ○ 폭우 시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이	○ 배수장 건립은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할 계획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해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 차원에서라도 관계부서와 협력하는 등 배수장 설치를 재검토 바람.		
	○ 원동아파트 뒤편 천곡들 침수와 관련하여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천곡천 지류 변경을 건의한 바 있음. 원래 있던 지류에서 경지정리 과정에서 지류가 변경되었음. 호우 시 동천강 수위보다 천곡천 수위가 낮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침수이므로 천곡천 지류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천곡천 유로 변경은 하천기본계획 변경해야 할 사항이며, 추진 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민 의견 수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현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구거와 연결된 천곡천 유로 정비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 하겠음.	
	⑦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통한 정책 연구나 공무원 창의 정책 연구모임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자전거도로 개설, 단절구간 연결, 자전거상해보험 가입, 무료수리 센터 운영 등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 추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전거활성화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추진 하겠음.	추진중
	○ 오토밸리 1구간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오토밸리 2구간 도로 연결 시에도 자전거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 도시개발과에 지속적으로 건의 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⑧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내황교 하부 쉼터 테이블 일부에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투명 비닐 설치와 주변 공터 일원에 주차장 시설 설치 검토 바람.	○ 내황교 하부 쉼터는 교량하부에 설치되어 비는 피할 수 있으며,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강바람을 찾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투명비닐 설치 시 오히려 민원발생 및 경관을 훼손할 수 있음. ○ 인근 야구장 주변 공터는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등 주변 여건상 내황교 하부 쉼터에서 120미터 인근에 위치한 명촌주차장 이용이 바람직함.	추진중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부분에서 미검사 현황이 많음. 미검사 시설은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안전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미검사 시설(71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5억원)으로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와 협의하고 있으며, 2014년내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도시녹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공원 관리 철저** ○ 공원 화장실에 여성 이용을 고려한 비상벨 설치, 공원 안내판 위치와 내용에 대한 정비, 가로등을 가리는 부분에 대한 나무 전지작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1공원 1단체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는 등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 - 2013년: 화봉공원 등 9개소 21개 CCTV 설치 완료 - 2014년: 온누리공원 등 15개소 45개 CCTV 설치(비상벨 포함) 계획 ○ 공원내 전정작업 - 녹지작업단으로 수시 정비	추진중
	○ 공원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주민들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시도를 통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 바람.	○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가꾸기 추진계획 수립: 도시녹지과-587 (2014. 1. 8.) - 도시공원별 관리단체 지정 운영 (7개동 29개 단체: 35개소) - 월 1회 환경정비 등 공원 관리 추진	
	② 소나무 병·해충 방제 철저 ○ 소나무 관련 병·해충이 확산되는 주원인은 파쇄와 제거시기를 놓친 부분임.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기에 파쇄함은 물론 방제활동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멍이 날 수 있는 비닐 멀칭 지역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우화기 이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파쇄 및 훈증 처리토록 도급 및 직영방제 조치 - 1월 중순부터 예찰방제단 사역하여 권역별 선단지 위주 방제활동 강화 - 구멍이 발생될 수 있는 훈증피복 지역은 도급업체 및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즉시 재시공 조치	추진중
건의사항	**① 어린이공원 부지 활용** ○ 명촌 진장지역 내 어린이공원 부지는 있으나 창고, 주차장, 건축 자재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없는	○ 진장·명촌지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어린이공원부지 조기시공 및 정비토록 협조요청: 도시녹지과-9025 (2013. 12. 19.)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상태임. 어린이공원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조성공원: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1 - 미조성공원: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3	
	② 기타 건의사항 ○ 명촌, 진장지역 내 인도에 가로수 없는 부분과 훼손된 식재 구간에 대하여는 조합 측과 협의하여 보기 좋은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바람.	○ 진장·명촌지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가로수식재 등 정비토록 협조 요청 : 도시녹지과-9025(2013. 12. 19.) ○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 화봉사거리 일원 화단에 대하여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거나 또는 철거 등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현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송정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및 새마을회) ○ 향후 계절별로 초화류 식재 및 관수작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료
	○ 등산로 일원 나무 보호를 위하여 나무 밑에 돌탑을 쌓지 않도록 주민 선도하고, 나무뿌리 보호를 위한 계단 설치 등 등산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 바람.	○ 2014년 산림관리작업단(6명)을 활용하여 관내 등산로(66구간, 158.9km)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나무 생장에 방해되는 돌탑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음. ○ 등산로 일원 전수 조사 시 나무뿌리 보호를 위한 계단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 조치	추진중
	○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 실시	○ 산업로 등 3개 노선 가로수 전지작업 및 환경정비 완료: 2013. 12월	완결

□ 교통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정 요 구	**① 승용차요일제 추진 철저** ○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있어 참여율이 너무 지지부진함. 교통정체해소와 에너지 절약 등 승용차요일제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함. 인센티브 부분도 적지는 않으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참여 독려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공서 출입 문제 등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동주민센터 각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자율참여를 요청하였음. 또한,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추진중
건 의 사 항	**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 동아청구앞 사거리 일원에 택시 승강장은 있으나, 승강장이 아닌 장소에서 택시가 주민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를 막거나 유턴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주·정차 단속의 역효과도 있는 만큼 화단이 있는 주변 여건과 인도가 넓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택시 운전자들과 협의하는 등 버스 승강장과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BYC 가게 앞에 인도를 철거하고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승강장과 고가도로와의 거리가 너무 짧고, 승강장에서 고가도로로 진행하는 택시와 시장 또는 고가도로 아래로 진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승강장 이설은 어려움.	불가
	② 유료 공영주차장의 투명한 운영 ○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들의	○ 주차요금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월별 지도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수익과 지출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시간의 문제 등이 있음. 수탁자들에 대한 설득과 구의 결단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고 하겠으며, ○ 주차시간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 지도를 실시하겠음.	
	③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일원 주차장 추가 확보 노력 강화 ○ 현대자동차 직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문화회관 일원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주간 연속 2교대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는 남다름.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일원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도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 현대자동차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일원에 추가로 확보계획이 확정되어 사업 진행 중임. ※ 사택문화회관 : 1,000대(2015년도)	추진중
	④ 교통사고 예방 노력 강화 ○ 원동현대아파트, 신천초등학교 일원 국도7호선 부분은 불법 유턴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임. 주민들이 요구한 CCTV의 타 기관 검토 협의와 아울러 인근 감시카메라 이설 요구 방안 등 구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CCTV 설치를 중부경찰서에 검토 요청(2013. 12. 23.)한 바, CCTV 설치는 어려우며,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속적 단속을 하겠다고 함.	불가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⑤ 기타 건의사항 ○ 명촌, 진장지역 내 인도에 차량 주차가 많음. 주민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단속 바람.	○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인 명촌·진장 지역에 대하여는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추진중
	○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정비는 하고 있으나, 동대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있었음. 어린이들의 등·하교 지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 바람.	○ 2013년도에 고원식횡단보도 및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2014년도는 안전휀스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공영화물터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 주변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있음. 출근길 소형차들의 운전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 지도 단속 바람.	○ 화물차량 원거리 차고지 수시단속으로 정비토록 하겠음.	추진중
	○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울산광역시내 타구에 비해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나 전체 체납에 대한 교통과태료 통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월급 및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음.	
	○ 블루밍아파트와 대동아파트 진입로 부분의 T자 삼거리 지점, 블루밍아파트 일원 도로에 대형차들의 주차가 많아 횡단보도 이용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지도단속 바람.	○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고지 부족, 원거리 차고지 등 사유로 차고지외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주민불편 해소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 건축주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건축허가 민원서비스 간소화** ○ 건축허가 민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미비서류의 재보완 사례들이 있음. 건축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으므로 인·허가에 대하여는 좀 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바람.	○ 건축 허가(신고포함)처리시 민원서비스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재보완 지양 및 처리기한 단축에 노력하겠음.	완결
	② 코스트코 관련 소송 대응 철저 ○ 행정의 코스트코 관련 대응은 행정을 주관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했음. 사업자들의 피해와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등 구청 또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음. 중소상인 살리기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향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코스트코 민사소송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접수한 상태이며, 소송 진행시 변호사와 적극 협의하여 소송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② 공동주택 관련 사업 내실화**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있어 1회성 행사가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있음. 향후에는 장기적이고, 공동주택 전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 바람.	○ 공동체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선정 시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및 주민들의 참여도와 사업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하겠음.	추진중
	○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 주민공동체활성화 사업 선정 시 공동주택 내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한 단지에 대하여 가점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방안, 시범 아파트 조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적용토록 하겠으며, 아파트공동체 리더 양성학교 수료생들을 활용하여 아파트내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파트 옥상 상자텃밭 권장이나 작은도서관, 놀이시설 등 아파트 공간 활성화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관련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입주민들이 공동체활성화를 이해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 및 사업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추진중
	○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통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 공동주택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지원금에 대하여는 정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교부시 주민민원이나 갈등유발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할 경우 사업취소 등 향후 조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 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추진중
	○ 공동주택 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에 구에서 특정사업을 계획하는 등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와 연계하여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 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교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③ 장기적 관점의 건축행정 실현 ○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 할 수 있게 사전에 협의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민원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이나 민원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민원 문제 발생시에는 원활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지형이 바뀌고, 문화가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발생시 상호간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재토록 하겠음.	
	④ 도시재생 사업 적극 추진 ○ 재건축, 재개발 보다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특징 있는 마을을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기존의 주거지를 살기 좋게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 바람.	○ 올해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용역을 실시하여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계획수립, 사업지구 발굴을 통하여 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⑤ 기타 건의사항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일원 지반침하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 보행이 많고, 차량 통행도 많으므로 재난을 대비하여 지속적 관리 바람.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지반침하 보수공사를 시행(예정)중에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은 울산 전체적인 사항이므로 허가단계부터 시행사 교육이 필요하며, 타 구·군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 바람.	○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은 허가단계부터 시행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타 구·군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토록 하겠음.	

□ 농수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① 친환경무상급식 내실화** ○ 어린이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이 우려되지 않도록 친환경무상급식에 있어 방사능 검사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내 학교에 방사능 안전 식재료에 대한 안내 또는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관내 학교 급식관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중 방사능 안전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생활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 친환경무상급식에 있어 울산 전체가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보조금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방사능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음. 친환경무상급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의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 부분은 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반적인 주민홍보, 교육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위해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방사능측정 장비를 상반기 중으로 도입할 계획임. 향후 도입이 완료되면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음.	
	○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함.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산물 제공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바람.	○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친환경 식자재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 감독을 통해 일반농산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공공청사 부지 내 건립 장소 선정 등 논란과정 속에서 건립되었음. 향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 교육 및 친환경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서는 주민들 스스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② 직거래 장터 활성화 ○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대형마트, 슈퍼마켓 연합회, 농민, 관계부서와 협력 등을 통한 직거래 부문의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특화된 물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바람.	○ 농민과 도시가정이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3개 대단위 아파트에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달곡교량 입구에 강동 농어민이 주축이 된 자치회를 구성하여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향후 입지조건 분석을 통하여 장터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③ 안전한 먹거리 사업 확대 ○ 농민들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수요자는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 받음은 물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사업, 꾸러미 밥상 등은 중요한 부분임.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토대로 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북구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공급되어 아이들 밥상 차림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배추, 시금치 등 지역농산물 공급 물량이 85톤 정도에 달하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공급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안전한 먹거리 사업 확대를 위해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추진중

□ 보건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정 요 구	**① 약품관리 철저** ○ 약품 사용에 대한 사전 예측을 면밀히 하여 향후 약품을 구입, 관리토록 하고, 사전 예측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약품별 소요량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적정량의 약을 구입하여 필요이상의 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약품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정리하여 이월, 구입, 사용, 현재 재고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요 약품관리 대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완결
건 의 사 항	**① 정신보건사업 추진 강화** ○ 정신보건사업에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나,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없는 상태임 - 최근 우리 지역내에서도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음. 자살우려 지역주민을 조기 발견하여 전문기관과 연결시켜주는 게이트키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우리지역 내 자살 사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임상심리상담사 2명을 채용함 - 2013년 100명의 게이트키퍼를 교육하였으며, 2014년은 심화교육을 통한 전문인력(마을 생명지킴이단)으로 양성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임.	완결
	② 기타 건의사항 ○ 우리 지역 내 한센병 환자가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현재 등록환자(음성) 62명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와 위탁협약체결 후 2개월에 1회씩 현지(성혜원) 이동진료를 통하여 진료 및 투약·검진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한센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전국 환우들과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한센인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의 사 항		47명 대상자들에 한하여 1인 월150,000원 씩 지급.	
	○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출산장려금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바람.	○ 2013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 중구, 동구와 형평에 맞게 지원 • 2자녀: 100,000원 • 3자녀이후: 1,000,000원 ○ 구민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확대 ○ 저출산 극복 홍보에 주력	완결
	○ 내실 있는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검토바람.	○ 예산 및 인력 확보 후 2017년 부터 본격적인 재활보건사업 실시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임.	
	○ 체력단련실 경우 보건소 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자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바람.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 내용 - 기초체력검사 및 운동처방 - 각종 운동기구를 이용한 체력 단련 및 건강증진 - 체력단련실 목표(1,000명)는 전년도 대비 30% 감소, 2014년 부터 체력단련실을 1/2로 분할 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운영	

□ 의회사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내실 있는 의회 운영 • 비회기 중 연락체계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음. 사안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고, 중요한 사안이나 행사에 대하여는 의원에게 적극 안내 바람.	○ 비회기 중 의회의 중요 사안 및 지역 내 주요 행사 등에 대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빠짐없이 연락하고 참석을 독려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조례입법연구회 내실 운영 • 조례입법연구회는 연구하는 성격이 되어야 함. 조례입법연구회에 대한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며, 의견 수렴 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 의원 간의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음.	완결

제 6 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제3절 5분 자유발언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제5절 주요의정활동사항
제6절 의정활동일지

제1절 결의안

1. 결의안 현황

의안 번호	본회의 의결일	의 안 명	결의안 발의자	처리 결과
177	제134회 제1차 정례회 (2012.7.16)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 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	안승찬의원	원안가결
191	제135회 임시회 (2012.9.14)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	안승찬의원	원안가결
193	제135회 임시회 (2012.9.24)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건설 촉구 결의안	안승찬의원	원안가결
214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12.17)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강진희의원	원안가결
230	제138회 임시회 (2013.3.4)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강진희의원	원안가결
266	제140회 제1차 정례회 (2013.7.2)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	안승찬의원	원안가결
289	제143회 임시회 (2013.10.24)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강진희의원	원안가결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 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4회 제1차정례회(2012. 7. 16)

○ 결의안 발의자 : 안승찬의원

지난 6월27일 검찰은 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조합의 고발에 대해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보장된 행정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를 직권남용이라 하며 기소한다면 어느 지방단체장이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문제는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이 드러났고 이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 북구는 18만 인구에 대형마트가 4개나 됩니다. 이는 인구대비 대형마트 비율이 4만5천명당 1개로 전국평균인 15만명당 1개, 울산평균 7만5천명당 1개에 비하여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게 되면 전국 최고의 입점비율이 되고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살리기 위해 행정을 펼친 윤종오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며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지방단체장의 소신행정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은 법리적 해석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윤종오 구청장은 정해진 절차와 권한에 따라 구청장으로서의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북구청장의 행정적 행위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를 직접 내주면서 건축허가가 일단락되었음에도 구청장의 행정적

권한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고 정치적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나 국회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는 대형마트의 편에서 잘못된 법적용이라 봅니다.

울산 북구의회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살리고 지역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규탄하며, 윤종오 북구청장의 불구속기소에 따른 향후 재판과정이 소신 있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지방단체장을 향한 정치적 탄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법이 정의와 사회적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5회 임시회(2012. 9. 14)

○ 결의안 발의자 : 안승찬의원

2010년 8월부터 시작된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논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건축심의 반려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처분, 그리고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진장유통단지조합의 고소와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 중소상인들과 코스트코간에도 끝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박한 생존권문제에 직면한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휴일 의무 지정과 코스트코 울산북구 입점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결국에는 입점을 하게 되자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의견을 무시하고 자율조정 기간인 지난 8월 31일 오픈식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진장동 유통단지에 롯데마트 등 3개나 있는 대형마트가 아닌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이나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 유치'를 울산시에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중소상인들의 코스트코 입점 반대와 진장유통단지에 다른 시설의 유치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2011년 8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북구청의 건축허가 반려가 잘못이라며 직접허가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다 진장유통단지조합과 코스트코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이라는 현실에서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

들여져 2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선례를 보더라도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 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 중임에도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언제 영업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모집을 하였으며,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더니 결국 오픈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상인들이 코스트코 측에 요구하는 자율협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② 일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코스트코는,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인한 울산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건설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5회 임시회(2012. 9. 24)

○ 결의안 발의자 : 안승찬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울산시 북구에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대안 변전소, 매곡변전소의 건립과 아울러 동대산, 무룡산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고압송전선로를 철탑 63기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첨부>

울산시광역시 북구의 대표적인 명산인 동대산과 무룡산에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무룡산과 동대산은 울산시민들이 즐겨찾는 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와 기획재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들을 개별로 접촉하면서 변전소와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변전소와 송전철탑 반대에 맞추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소와 강동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만들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만으로 주민과 북구의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지상으로만 검토하고 강행하려는 한국전력공사의 행위에 대하여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하여 45만 가구가 정전사태를 맞이했으며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고, 주민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송전설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밀양에서 70대 노인이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중장기적 지역발전과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지중화 정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상화보다 지중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송전탑, 변전소 등 전원설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정성 역시 논란이 있지만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인체에 해롭고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을 위한 산사면 절개는 산림을 훼손하고 폭우 시 산사태 및 수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하고 가꾸어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을 훼손하고 망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만 가능하지 주민의 동의 사항이 아니므로,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분쟁지역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상 송전철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은 채 경제성, 예산 운운하며 지상철탑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됩니다.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하여 볼 때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 건설은 그리 어렵고 까다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광명시나 인천 청라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은 대부분 지중화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주민들이 제기 하듯이 농소권은 오토벨리도로 공사와 함께 한다면 예산과 공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오토벨리

도로와 연계한 지중화도 시기 문제, 예산문제를 들어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한전 측의 무리한 송전철탑 건설공사 강행은 시민들의 반대와 그로 인한 갈등만 일으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2차 민원과 환경파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결코 한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동대산, 무룡산 송전철탑 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 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지 말고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건설하라.

하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권을 반영한 전원개발 촉진법을 즉각 개정하라

<별첨>

울산지역 전원개발 사업계획 및 현황['08년~'22]

준공목표	설 비 명	시설용량(규모)	사업구역(위치)	진행사항	비 고
'12년 4월	154kV **매곡변전소**	M,Tr60MVA×2	매곡349-4 (4,233.4㎡)	행정심판 인용에 대한 이행심판(6/30)	옥내형(지하1,지상3층,2,035㎡)
	154kV 매곡분기 T/L	ACSR410″×2B×4×3.6km XLPE2000″×4×0.7km	매곡~창평	지식경제부 사업승인('11.3.15)	일부 지중 철탑15기
'13년 12월	345kV **동울산변전소**	M,Tr500MVA×2	대안동940 일원(62,870㎡)	지식경제부 승인(7/13)	
	345kV 동울산2분기T/L	ACSR480″×4B×4×2km	경주~북구 일원	〃	철탑9기
	154kV 동울산분기 T/L	ACSR410″×2B×4×2.3km	대안~매곡	지식경제부 승인신청	철탑10기
	154kV 동울산효문1 II 분기T/L	ACSR410″×2B×2×10km	대안~효문 (당초 대안~방어진)	〃	철탑31기 (당초51기)
'14년 4월	154kV **무룡변전소**	M,Tr60MVA×2	신명동 인근 예상	미정	산하개발 등 필요전력
	154kV 무룡분기 T/L	ACSR410″×2B×4×2.5km	동울산효문T/L(9)~무룡변전소	예정경과지 조회	철탑8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7회 제2차정례회(2013. 12. 17)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의원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1차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2004년 9월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1만명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부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8년 만인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에 판정서를 송달하고 “최병승씨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시키고 밀린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주)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명령을 짓밟고 있습니다. 법의 명령을 이행치 않는 것에 반발하여 최병승씨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현재 목숨을 건 고공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해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고 현대차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민이기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없는 울산, 불법적인 비정규직이 없는 울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상자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이런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8회 임시회(2013. 3. 4)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의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제안으로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6일 '산업기술문화공간 건립 연구용역' 설명회를 갖고 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기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용역 결과, 박물관은 전시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 교류·문화, 수장·보존, 산업기술체험 공간 등으로 꾸며지며,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제품 발표회장 같은 공간도 마련된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10만㎡(약 3만평) 정도이며, 건축비 4천500억원 외에 부지매입비 및 산업기술 유물 수집 등에 5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간 240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50만명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뮌헨 '독일 과학기술박물관'(연면적 6만㎡)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다.

특히, 이 사업의 중장기 경제효과는 약 11조원에 달해 건설 투자액 1조원 외에도 박물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람객(연 300만명 가정) 소비지출 7조 7,000억원, 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의 홍보효과 1조8,000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박물관 건립지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현재 울산을 비롯해 대구, 포항, 구미, 창원 등지에서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지난 1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포항시도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내에 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 3만평이 확보된 점과 2014년 KTX 개통, 3만점에 이르는 포스코 역사관의 전시물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

미시도 글로벌 IT산업과 전자산업의 거점 등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울산시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2월 13일 “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으며, 30만명이 참가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박물관 울산 유치 공약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산업박물관 유치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완구 전 시장 시절인 2000년, 시는 산업수도인 울산에 산업박물관을 세워야 한다며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 전국에서 울산 입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까지 도출했다. 울산은 51년 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근대화의 눈부신 성장을 주도해 왔고, 반세기 동안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이른바 ‘3대 트로이카’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최대 공업도시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산업전진기지에서 살아온 울산시민은 조국 근대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다. 이에 산업역사를 주제로 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반드시 산업현장인 이곳 울산에 건립돼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의 메카인 울산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울산은 경북의 포항제철, 구미공단과 경남의 창원공단, 사천 항공산업, 거제 조선산업 그리고 전남의 광양 제철산업까지 아우르는 동남부 산업 대단지의 중심에 서 있다. 울산은 항만과 공항, 철도(KTX역), 고속도로 등이 전국으로 뻗어있어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외국바이어와 기술자들이 수 없이 방문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도 용이하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와 신라시대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를 끼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울산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들어서기에 최적지이다.

산업문화는 고유한 울산만의 역사이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는 산업수도 울산의 과거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극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실제 생산이 일어나는 현장성과 연계한 교육, 산업, 기술 등 복합 문화콘텐츠로써 울산의 살아있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날로 증

가하고 있는 연간 300만명의 산업관광객과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의 중심선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 또한 누구보다 앞장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북구청이 주도하여 다른 타구보다 월등히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으며, 주민들 또한 박물관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를 위해 19만 북구 주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1999년 정부와 대통령의 3차례에 걸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역사를 주제로 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있어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이 필수적이며, 울산이 다른 후보도시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발전의 역사와 역량, 눈부신 성과, 접근성, 상징성, 산업문화 연계성 등에 있어 울산이 최적지로 판명(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연구보고서) 되었음을 인정하라.

하나. 국회는 120만 울산시민들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산업 전진기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써 울산이 그 역할과 희생을 감수해 왔음을 기억하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울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국회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다가올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의 메카이자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유치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40회 제1차 정례회(2013. 7. 2)

○ 결의안 발의자 : 안승찬의원

지금 온 나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대통령 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과 정상회담 발언록 여당 유출 등 실질적인 선거개입에 대하여 각계 각층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또한 전국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과 전국적 촛불집회가 개최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불법 선거개입·국기문란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고, 국가기관의 잘못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65%를 넘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경찰은 수사를 축소·은폐하여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여론을 덮으려고 대통령 기록물인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행위로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높였다.

지난 6월 14일 발표된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대학생을 필두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수들, 예비 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까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규탄과 수사기관의 부실 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은 209개 시민·사회단체에서 6월 28일부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 촛불집회"를 열었고, 전국적으로 기자회견 및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 여론을 조작하고, 전 방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단행한 것과 경찰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축소·은폐하여 발표하고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며 탄압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를 군사독재 시대로 돌리려는 행위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을 덮고자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한 것은 국가 헌정질서를 유린함은 물론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인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정보 권력기관이 오히려 국가를 혼란케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그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여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우려하며, 국민이 직접 나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 하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된 입장과 그 실상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부실한 수사 발표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에 대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성역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경찰의 노골적인 축소 은폐 시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대통령 발언록 공개 등 모든 반민주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하여 그 진실과 입장을 국민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막강한 권력과 조직력, 정보력을 가진 국기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인 만큼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약속하여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한다.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43회 임시회(2013. 10. 24)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의원

"대선 공약"은 국민에 대한 가장 엄숙한 약속이자, 한 사회의 비전을 압축한 미래입니다. 그 어떤 약속과 무게를 비교할 수 없으며, "공약 파기"는 곧 정치적 신뢰의 파산임을 박근혜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대선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은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찌 "원칙과 신뢰"가 국정철학이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근혜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대선 공약과 공약가계부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소득 70%이하 차등(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3대 비급여 항목 제외로 뒤집혔으며,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비예산사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공약 국고보조율 20% 인상은 10% 인상에 그쳐 후퇴하였으며, 이 자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교 의무교육 예산을 지방에 100% 떠넘기는 것도 파렴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의무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예산의 85%이상이 경직적 경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역교육청의 재정을 파멸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파기된 공약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들과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약속이 얼마나 됩니까?
벌써 약속이 무너졌는데, 다시 약속을 한들 그 누가 믿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엔 ‘원칙과 신뢰’는커녕 ‘편향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공약 파기”를 넘어 “공약 사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주무부처 장관조차 정부안에 동의하지 못해, 사퇴까지 한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고집은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궁색한 변명과 정부안에 대한 자기합리화로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마치 공약대로 이행하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오히려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역시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일말의 책임성도 없는 공허한 빈말이자, 정치적 모면을 위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재정확보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약속한 공약을 축소·파기하는 무책임한 처사 대신에 현재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부자감세 철회, 적극적인 부자증세, 효율적인 세제 개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복지국가시대에 맞는 재정지출 구조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1.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의원 : 이홍걸의원
○ 질문일시 : 제135회 임시회(2012. 9.10)
○ 질문요지 :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하여

첫째, 우리구는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공공시설물 즉,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유사 규모의 타 기초단체와 비교할 시 결코 그 수에 있어서 적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에 대해?

둘째, 현재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익 창출 즉, 수익성 확보라는 묘를 살릴 방안에 대해?

셋째, 기존의 우리구 공무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T/F팀 결성을 통하거나 혹은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 설립 여부를 결정하실 의사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우리구는 잘 아시다시피 출범당시 인구 10만, 재정규모 450억으로 출발하여 현재 인구 18만 3천명, 재정규모 1천 900억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문화, 복지 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육, 문화, 복지관련 시설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단순 수치상의 성장뿐만 아니라 북구민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 또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15년 기간동안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격세지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규제로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기존 가용 인력을 줄여 재배치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기저하를 막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 틀 속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지방시설공단 설립”입니다. 공단은 설립전에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통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전문화등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경영 개선효과, 구민에 대한 대민서비스 역량강화 방안 등 타당성이 먼저 검토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것과 계획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구직영, 민간위탁, 공단설립 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장별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이 함께 충족 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타당성 검토와 병행하여 현재 공단을 운영중인 울산의 남구, 울주군을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분석 후 공단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구 재정력이 뒷받침 된다면 긍정적으로 공단설립을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단설립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조례제정 → 이사회 구성 → 임직원 채용→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설립 시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이러한 추진절차와 별도로 직원과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직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 설명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강진희의원
○ 질문일시 : 제135회 임시회(2012. 9.24)
○ 질문요지 :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에 대하여

첫째, 양정・염포 지역의 주차실태와 주차장 시설 현황,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 내외 주차실태와 주차장 시설 현황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양정・염포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1,161대이며, 현대자동차, 하이스코 등 기업체 부설주차장 18,975면을 제외한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64면, 노외주차장 2,270면,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 7,200면 총9,53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85.4%이며, 기업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우리 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 111.1%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차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 양정・염포지역 이면도로변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정・염포지역 거주자와 지역외 거주자의 비율이 4.5 대 5.5 정도로, 지역외 거주자의 차량 주차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외 거주자 차량의 경우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 주차한 차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대자동차 주차장 현황은 총14,762면으로 회사 내 부설주차장이 9,012면이 있고 명촌동과 효문동에 5,750면 규모의 직원주차용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내출입을 통제하고 공장 밖에 있는 명촌, 효문 부설주차장을 근로자들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에서 현장까지 이동의 불편과 주차장 진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차량이 양정・염포 주택지로 유입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양정·염포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및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올해들어 8월말까지 양정・염포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794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047건 이었습니다. 이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

으며 지난 9.3일부터는 울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127,401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1일4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동안 양정·염포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북구청에서 실시한 정책과 사업이 있다면?

▶ 구청장 답변

- 이 지역은 구 도심지로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지만, 유휴 국·공유지, 나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178면 조성,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55백만원을 지원 88면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올해에도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행에 불편함이 있던 신전시장 입구 도로정비 및 염포마을 공동주차장 확장으로 21면을 확충하는 등 주차난 해소와 차량 통행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양정·염포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북구청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우리 구에서는 향후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과 병행하여 개별주택의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공사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양정·염포 교통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감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정차금지 구역 설정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 및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지역이 넓은 만큼 향후 추가 개발 잠재력이 높으므로 인허가시부터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강진희의원
○ 질문일시 : 제139회 임시회(2013. 5. 6)
○ 질문요지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문제점과 대안 모색 관련

첫째,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는 여러 법률과 상충되는바 계약 방식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구청장 답변

- 우리 구에서도 현행 독립채산제가 예산은 절감되나 업체 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 계약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변경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지난 2월 25일부터 3월8일까지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에 대하여는 2013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후 통보되어 당해연도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방식 변경의 방향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추구하고 업체간 임금격차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원가산정 용역 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노동 조건, 노동 강도 등을 감안하여 노동자들의 기득권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업체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 위탁업체에 따라 미화원의 임금 격차가 심한데 업체별 관리직, 운전원, 미화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 구청장 답변

- 독립채산제 방식에서는 업체별 관리직, 운전원, 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된 제작비, 판매이익금, 처리비를 제외한 수집 운반비를 업체의 수익으로 가져가므로 임금을 업체별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독립채산제에서 업체별 임금격차가 심한 이유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봉투 판매량이 많은 업체는 수입이 많고,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지역에 봉투판매량이 적은 업체는 수입이 적어 임금수준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및 청소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5,6월 중에 업

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최근 3년간 구청 지도점검 실적 및 내용은?

▶ 구청장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점검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사항과 실제사항의 일치여부, 우리 시 환경자원사업소에 적법 반입여부, 수집·운반차량의 허가여부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4개 업체에 대해 총 19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최근 5년간 재해 발생 현황은?

▶ 구청장 답변

- 총 4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추돌 및 접촉사고 15건과 업무상 우측 족관절 부상 1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업체별 휴게공간 보유현황은?

▶ 구청장 답변

- 총 4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는 휴게실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휴게실과 샤워실 70.6㎡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규모가 작은 1개 업체는 휴게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휴게실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추가확보를, 휴게공간이 없는 업체는 신설하도록 조치하여 대행업체 직원의 복리증진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청소대행 업무를 폐지하고 직영체제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 구청장 답변

- 장기적으로 청소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계약 시 대행업체를 직영화 하는 방안,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과업으로 줄 계획이며 단계적 직영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질문의원 : 이수선의원
○ 질문일시 : 제140회 제1차 정례회(2013. 6. 20)
○ 질문요지 :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에 따른 구청장님의 대응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총 연장 16.9km중 우리 구 구간은 총 8.9km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정률은 현재 약 40% 정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지역은 천곡동 및 가대동 일원이며, 천마산 일원 도로개설 공사는 201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몇 차례 요구한 설계변경 등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2014년 이 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 시에 지역주민과 우리 구와 협의하여 등산로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에 암거박스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울산광역시장님의 답변이 있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등산로는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동안 울산 북구는 주민 참여와 소통을 구정 운영에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통과 박스와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통해 등산로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이혜경의원
○ 질문일시 : 제140회 제1차 정례회(2013. 7. 2)
○ 질문요지 :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조성에 대하여

첫째 1년여 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동대산과 강동 해상 풍력발전기 건설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동대산풍력발전은 2MW짜리 발전기 20기 정도를 설치하여 총 40M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5월부터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한국동서발전과 울산대에서 각각 계측기를 설치하여 1년간 바람자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바람자원 조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4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는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 해상풍력발전은 총 196MW 규모로 7MW짜리 발전기 28기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8,000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3월 강동지역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사업시행자인 SK건설, 한국전력기술과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계측기 설치 준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착공이 되면 2017년부터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동대산 일원 능선 10㎞에 건설 예정인 20~30기 풍력발전 건설로 인하여 동대산 자연습지와 생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 구청장 답변

- 전체적인 사업 구간은 10km에 이르지만 발전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개소 당 250㎡ 정도에 불과하고, 공사 시에도 이미 개설된 임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습지와 생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선로 신설로 인근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와 발전기 건설 공사기간 2~3년 동안 어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문제 등

계획이 있는지?

▶ 구청장 답변

-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해저와 지상 모두 지중화 하여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 보상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주민이 선정한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가동중단 약속을 받아내어 주민들이 안심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 구청장 답변

- 주민들이 안심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전폐쇄 및 가동중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전폐쇄 요청 및 정부에 대한 단계적 원전 폐쇄 요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위험천만한 핵에너지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방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풍력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소 건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기업체의 지붕을 활용한 녹색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곡, 중산 등 20개 기업체가 태양광설치를 동의하여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연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조성 중인 매곡 2·3차, 중산2차 산업단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녹색산업단지로 조성과 아울러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이홍걸의원
○ 질문일시 : 제142회 임시회(2013. 9. 3)
○ 질문요지 :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저류지 고유의 기능은 살리면서, 기 조성된 저류지 시설을 활용한 편익시설물을 시공,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 구청장 답변

- 먼저 화봉2지구 내 설치된 우수유출 저감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상 유수지로 결정되어 있으며, 저류지와 용어는 다르지만 큰 기능상 차이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2지구 내 유수지는 택지조성사업 시「자연재해대책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람근린공원 내 설치된 홍수피해 저감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에 이홍걸 의원님께서 유수지 고유의 기능을 살리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조성하자는데 대하여 저 또한 구민의 한사람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유수지 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용객의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제3호 규정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하므로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이 된 본 유수지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유수지 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차장만을 설치할 경우 1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주차장) 등이 선행되어야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수지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도시텃밭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저류시설은 이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양질의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이수선의원
○ 질문일시 : 제142회 임시회(2013. 9. 3)
○ 질문요지 : 농소2·3동 주민센터의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첫째,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할 것인지?

둘째, 지주가 임대를 거부하면 만성적인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셋째, 주차장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 구청장 답변

- 최근 몇 년간 농소2동과 농소3동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자치기능이 강화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한 행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 수의 증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주차 공간 부족이 이를 저해하지는 않을까 심히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먼저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소2동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추이와 이용 주민 수에 비하면 동 주민센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임대 중인 신천동 203-5번지 외 2필지, 1,974㎡(약 597평)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와 상당부분 매입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매입비는 약 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지가 확보되면 농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프로그램 증가로 인한 부족한 청사의 증축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여, 농소2동과 농소3

동 주민센터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 구청장 답변

- 농소3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상안동 380-8번지 주변 지역은 상업지역 주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2000년3월4일 울산광역시에서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현 부지만 완충녹지 지역에서 해제되어 동 주민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 완충녹지 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점용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도 점용 가능한 시설이긴 하지만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 등과 같은 토지에 한정돼 있어 주변지역의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인 현 상황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 그리하여 역대 구청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근의 쌍용아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간시간대에는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협의하였으나 그마저도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면서도 관련법에 저촉되어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 주민센터 바로 인근에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질의하신 이수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천곡문화센터가 올해 초 개관한 이후에 행정수요와 주민프로그램이 많이 분산되어 전보다는 주민편의가 한결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서면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의원 : 안승찬의원
○ 질문일시 : 제138회 임시회(2013. 2.18)
○ 질문요지 : 오토밸리로(송정IC ~ 농소2IC) 개설에 관련하여

1. 오토벨리로(화봉 IC ~ 송정 IC ~ 농소2 IC)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구청장 답변

- 2013년 2월 13일 시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농소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를 통하여 도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현재 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부서인 시 도시개발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구체적으로 도로 개설 주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토지 보상에서부터 농로,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구청장 답변

- 사업시행 부서인 시 도시개발과에 확인한 결과 도로개설 구간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경지 단절구간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통로박스와 부체도로가 설치 계획되어 있으며,
-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올해 4월부터 추진 예정으로 보상협의회 개최 등 보상가 책정 과정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원활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오토밸리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룡산, 동대산의 등산로를 관통하는 것으로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통로 박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구청장 답변

- 사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동대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교량과 통로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 또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로박스 및 교량이 설치될 부분에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충분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4. 우리 구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는 것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구 정책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의견은?

▶ 구청장 답변

- 오토밸리로의 자전거도로 설치는 제가 구청장 취임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항이고 그 결과 화봉에서 율동까지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출퇴근시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개설되는 구간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여부 검토 후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있으나,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5. 이번 공사 구간은 송정저수지와 하천이 많은 지역이라 각별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 구청장 답변

- 사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주변 소하천 등을 일제 조사하였고 지하배수의 경우는 상세검토 후 맹암거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또다시 보강토 옹벽 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부터 면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 가칭)송정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수변공원과 동해남부선 철길과 역사, 오토밸리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은?

▶ 구청장 답변

-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송정수변 공원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송정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이번에 개설되는 구간과 연계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 향후 오토밸리로가 개설 완료되면 송정수변 공원과 송정역 이용시 더욱 편리해 질 것이며,이용자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의원 : 윤치용의원
○ 질문일시 : 제139회 임시회(2013. 3.4)
○ 질문요지 : 지역 정주환경 조성과 대책 등에 대하여

1. 우리 구의 지역 주민들이 향후 경주시 일원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주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출범하였고, 출범당시에는 도로, 문화, 복지 등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구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19만의 인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쾌적한 주거문화도시가 형성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미래의 희망과 꿈을 창조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500여 직원들은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 “살고 싶은 1등 도시”에 걸 맞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구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과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하여 노사지역이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퇴직자 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중앙정부의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쾌적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내륙과 해안을 아우르는 생태휴양 복합도시로 동대산과 무룡산을 주축으로 하는 생태휴양공간과 천혜의 해안 자연경관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

업, 학교공원화사업, 도심벽면 녹화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공간을 계속 창출하고 있으며, 동대산 숲길, 천마산 테마 등산로 조성, 송정수변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동감 넘치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북구 건설”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문화・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입니다.

내실있는 문화・체육행사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기박산성 의병제, 무룡예술제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권역별로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 및 운동장을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체육 활성화로 문화체육에 대한 구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서관이 가장 많은 우리 북구는, 교육명품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비지원사업과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교육진흥재단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과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구주민자치대학, 작은도서관 활성화, 북구의 책 선정 사업,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사이버 외국어교실 운영 등 눈높이 맞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평생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 우리 구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현재 관내에는 국가미포, 매곡, 중산, 모듈화, 달천공단이 소재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현재 927개의 업체에 44,82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 소재 일부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 사유는 공장용지의 부족과, 상대적 고분양가, 금융 지원 세제혜택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조성중인 중산2차(14년) 매곡2, 3차(14년) 이화(15년) 단지 조성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구로 유입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공장 등록이나 창업 처리 기간을 최소화 하겠으며, 처리 기간을 1/2까지 줄

여 창업자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전담 노무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상담 및 기업 진단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경영컨설팅은 물론 직원 교육도 병행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서 고용, 노사안정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우수기업과 향토기업을 적극 발굴·시상하여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울산광역시와 협조하여 기업의 역외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 지역 내에도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류·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관광이 일상의 여가생활로 된 지금 우리 구에서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강동사랑길'을 개통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의 스토리가 숨쉬는 Green Rood 체험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토성도예를 통한 '도자기 체험', '대게잡이 체험', 해녀의 집을 활용한 '해산물 체험', 인문학 서재 몽돌을 활용한 '인문학과 강동바다 해맞이프로그램' 등 강동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가족형 문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당사해양낚시공원을 가족휴양지로 개발하여 바다와 가족이 함께 만드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해양레저 체험마을 조성사업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지역문화 콘텐츠인 박상진의사 생가, 관문성,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선조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화와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고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가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현대자동차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등 근무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에도 캠핑장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지역 주민들의 수요 파악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내 캠핑장 조성에 대한 계획과 의견은?

▶ 구청장 답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파악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현대차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레저욕구가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수요파악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우선, 부지선정에 있어서 캠핑장조성에 필요한 면적만큼 국공유지 확보뿐만 아니라, 제반시설을 갖추고 진입로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양정동이나 어물동의 경우 오토 캠핑장으로서는 불리한 입지 조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판지마을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캠핑동호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시범캠핑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명동 일원에 민간업자의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한 사업제안이 있었는데,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건전한 가족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5.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농소, 강동 일원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 구청장 답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개별적인 전원주택 외 대규모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대규모의 주택건설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2건), 도시개발사업(5건)과 공공기관(LH)에서 추진하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율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까지 총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전원주택단지의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절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이혜경의원
○ 발언일시 : 제134회 제1차 정례회(2012.7.16)
○ 발언요지 : 울산 중구, 남구, 울주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둘째, 넷째 의무휴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존경하는 18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혜경 의원입니다.

올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게 하여 몰락하는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대형마트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60%에 달하는 133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93%가 넘는 124개 지자체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과 이념을 떠나 중소상인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2년 1월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년간 전통시장은 178개가 문을 닫았고, 영세슈퍼마켓은 매년 4,000~5,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늘어났으며 대형마트의 사업체 수도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 매출은 2003년 36조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 2010년에는 24조원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3년 19조6000억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33조7000억원으로 전통시장보다 10조원가량 많았습니다.

또, SSM 매출은 2003년 2조6000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울산 북구는 인구 대비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입점율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마저 7월 입점을 예정하고 있어 대형마트 전시장이 되고 있고, 중소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산북구는

가장 먼저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개정되어 5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동구는 9월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구청장이 있는 중구, 남구, 울주군은 현재까지 논란을 거듭하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에 평균매출은 11.7% 증가, 평균고객은 11.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북구 SSM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상인은 둘째, 넷째 일요일 매출이 다른 일요일에 비해 70%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몇 달간의 의무휴업 시행으로 나온 결과에서도 보듯이 심야영업 규제와 의무휴업 시행은 유통재벌이 중소상인과의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 없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둘째, 넷째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구, 남구, 울주군은 하루 빨리 시행하여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취지인 중소상인 생존권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 7월 의회에서 중구, 남구, 울주군은 하루 빨리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의원
○ 발언일시 : 제134회 제1차 정례회(2012.7.16)
○ 발언요지 :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분 없는 의회 등원 거부사태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18만 북구 주민 여러분!
자랑스런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오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 의원입니다.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34회 제1차 정례회의 의미가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제5대 북구의회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회의라고 생각 했습니다.
둘째, 2011년 결산심사를 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 했습니다.

2011년 결산심사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4대 집행부인 윤종오 북구청장이 본격적으로 행정을 펼친 해이고, 이는, 결산심사 자체를 뛰어넘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산심사를 하는 제134회 제1차 정례회 때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마저 방기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분 없는 의회 등원 거부사태를 지켜보며, 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스러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전반기 때도 그랬듯이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의장단을 함께 구성하여 화합과 통합의 제5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부의장 선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 구·군은 의장단 선거로 시끄러울 때 북구의회는 모범적인 의장단을 구성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게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했기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의장 자리만 꿰차고,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버린 채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등원거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주민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주민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당리당략 때문에,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 져버린 새누리당 의원들은, 먼저 동료의원들과 주민들 앞에 깊이 사죄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5대 북구의회 하반기를 비정상적으로 시작하게 한 것에 대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의원
○ 발언일시 : 제137회 제2차 정례회(2012.12.17)
○ 발언요지 : 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예산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2012년 울산북구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 등의 이유로 실시된 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은 정부주도로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중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연말에 발생할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부처 및 공기업, 지방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말하며 조기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 예산 집행은 효율적 집행이나 재정 운영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당해 6월 이전에 예산의 60%를 지출하고,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기 집행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 주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획일적인 집행 독려는 예산 낭비와 탈법·불법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공기업이나 다른 지방단체에서 하듯이 우리 구 또한 조기집행예산에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실적으로 포상사업비도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우수함과는 달리 조기예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조기예산집행 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9억1천만원 정도 이자손실이 생겼습니다. 포상사업비를 빼더라도 6억6천만 원을 손해 본 것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3년간 손해 본 금액은 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자수입	1,983백만원	1,510만원	517만원	618만원	833만원(예상)
총예치금액	47,500백만원	36,500백만원	13,500백만원	19,500백만원	37,500만원

이러한 현상은 이번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도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2009년 이후 재정 조기집행으로 118억 원의 이자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전국적인 현상이며, 많은 사람들과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확인하면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후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주적인 재정 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6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 2013년 예산심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주민 요구사항으로 올라온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동마다 6천만원, 총 4억8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이 예산으로 동별 3개 이상의 사업을 한 것을 볼 때 6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인 것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 개선되기도 힘듭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 시비와의 매칭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교부세 의존,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이르기까지 “자치”라는 말이 무색할지경입니다. 재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방세 및 교부세 확대와 같은 요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는 국가 결정사항이므로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체증세에 대한 결정도 국민정서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손실 내지 추가부담이 없는 세외 수입 확대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이고 한해 조기예산집행이 아니면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보면 9억원의 돈을 손해 보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심의를 마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혈세가 주민들 위해 사용되고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앞서 말한 조기예산 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 “자치” 시대에 맞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의원
○ 발언일시 : 제137회 제2차 정례회(2012.12.17)
○ 발언요지 : 우리 구 문화재와 울산 북구 출신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철저한 보호 관리와 체계적인 홍보로 우리 구를 빛내고, 구의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자.

본의원이 2012년 울산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 문화재와 출신 인물에 대한 사진자료와 더불어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방향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문화제와 인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 홍보하여 지역 발전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구 출신 위인들이 계십니다. 문화유산으로는 신흥사(구) 대웅전, 박상진의사 생가, 대안동 쇠부리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강동화암주상절리, 곽암(미역바위), 관문성, 우가산 유포봉수대, 유포석보, 창평동 지석묘, 중산동 고분군, 상안동 지석묘, 중산동 취락 유적, 매곡동 생활 유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빛내는 역사적 인물로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 박상진의사,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에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 4.19혁명의 정임석열사. 임진왜란 때 기박산성 의병, 효자 송도선생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쇠를 발견하여 무기를 만들어 나라에 바친 구충당 이의립선생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역사적인 문화재와 인물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소중하게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 자료의 확보와 정리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며,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하여 형식적 관리와 추모행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문화제를 잘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길이길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우리 구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면서 우리가 후대에게 잘 보존하여 물려 줄 유산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은 형태의 보존도 중요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주민들이 그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문화재의 가치, 소중함을 알아야 보호도 되고 교육도 되면서 조상으로부터, 우리 그리고 후대에 후대를 이어 물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 문화제를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복원할 것은 복원하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자산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분의 주민이 중산동 관문성을 찾아 가보니 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중산동 관문성 안내판을 보고 찾아 갔지만 관문성을 알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 여기 저

기 돌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관문성이라 하더라고 안내 하는 정도입니다. 안내판을 붙였다면 최소한 그 장소에 설명판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흔적이라도 볼 수 있고, 위치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내판을 붙이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하여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찾는 사람들이 역사적 흔적과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출신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도 추모행사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민과 학생들이 그 분들의 삶을 알고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박상진 의사의 경우, 부유한 집안과 검사라는 직을 모두 버리고 투자하여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이십니다. 대한광복군의 총사령관이신 박상진의사의 자료를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 정리한다면 다른 독립운동하신 분들처럼 알려질 수 있고, 우리 구를 빛내는 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중들의 4.19 혁명에 참석하여 어린 나이에 순국하신 정임석 열사도 울산에서 유일한 4.19 혁명의 열사이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북구를 빛내는 분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정임석열사가 우리 구 출신이라는 것으로 4.19 민주화의 상징으로 울산에서 북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박상진 의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실 분입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기박산성의 의병에 대해서도 기박산성제만 아니라 의병들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 기박산성, 관문성으로 이어지는 견학과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 출신의 인물에 대하여 한분 한분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책도 만들고, 전시관에 전시도 하는 등 그 분들의 흔적과 삶을 우리 구 주민들이 배우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우리 구 문화재와 출신인물의 보존과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발판으로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수선의원
○ 발언일시 : 제137회 제2차 정례회(2012.12.17)
○ 발언요지 : 2013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19만 북구 구민 여러분! 이수선 의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예산액 1,692억원보다 10.48%증액된 1,869억이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에는 전년도 90억보다 37.43% 증액된 1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개설에는 전년도 예산 69억 2천만원보다 51.43% 감액된 33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이 1,869억 6천만원입니다. 북구 전체 도로 개설 관리운영 비용으로 총 예산의 1.8%인 33억 6천만원이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북구는 면적이 넓고 곳곳이 도시화 되면서 개발로 인한 소방도로의 개설욕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야할 도로 또한 해가 갈수록 늘어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이 10.48% 증액되고 있는데, 도로개설 관리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1.43% 감액된 69억에서 33억으로 대폭 감액되어 편성 요구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북구 지역은 급격하게 개발 발전되고 인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사업은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고 건설하여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문화와 관광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공연과 콘서트 등 각종 문화 행사가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구 전지역의 1년간 도로개설 관리운영비가 33억 6천만원인데 비해 명촌 공원과 신천 지역에 물놀이장 개설과 운영비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곳곳에서 물놀이장 개설 욕구가 팽배할 걸로 예상됩니다. 두 곳에 12억이면 8개동이면 48억이 소요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관리운영비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고 어느 지역은 만들어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인 구청장은 주어진 예산 범

위 내에서 어떤 예산이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으며 사업우선 순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013년도 예산이 2012년에 비해 10.48% 늘어난 1,869억인데 반해 도로개설 관리비용은 전년대비 51.43% 줄어든 33억 6천만원으로 전체예산 1.8% 수준의 아주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놀이장 개설비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구의 도시 인프라와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선심성 퍼주기식인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곳곳이 개발되고 있는 북구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수송 및 도로 교통이 북구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북구 발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혜경의원
○ 발언일시 : 제138회 임시회(2013.2.19)
○ 발언요지 : 시 행정에서 소외되는 북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북구 주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에 매진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 의원입니다.울산광역시 복지 문화 체육의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출범한 울산 북구는 10만 인구에서 지금은 19만에 육박할 만큼 괄목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신생도시 북구는 도로나 문화, 체육, 복지 등 사회적 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가 어디보다 높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문화적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만들어 운용한지 이미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화공간은 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 공동체문화공간, 주민사랑방, 공동육아의 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북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만드는 북구만의 특별한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였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로 작은도서관이 주민생활에 밀착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북구 행정은 부족한 재정에도 중심도서관이 없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2003년 기적의 도서관에 이어 권역별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립도서관 6개관을 건립하였으며,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권역별 도서관을 통해 마을 공동체문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현재 민간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뿐 아니라, 9개소에 시설개선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도서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에 있는 교육청 도서관이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 존재하고 있고, 연면적과 장서량, 사서 인력, 재정지원 등은 북구 중앙도서관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권역별로 들어서 있는 북구의 도서관은 규모면에서 볼 때 교육청 도서관과 비교하면 모두 작은 도서관에 속합니다. 북구에는 다른 구처럼 큰 규모의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구에 있는 도서관들은 유명작가를 초청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공간상의 문제로 주변의 학교강당을 빌려 행사를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또한 시립대표도서관이 북구 중심도서관으로 자료, 정보, 교육, 인적자원 육성 등 각 민간, 구립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어 대표도서관에 대한 북구민의 요구와 갈망이 높았습니다. 2011년 시립미

술관의 중구 결정에 이어 시립도서관의 남구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북구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은 큽니다. 박맹우 시장님 임기 11년 동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 문화 복지시설이 북구에는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태화강과 그 주변의 공원을 제외하고도 현재 남구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문수축구경기장을 비롯해 15개소, 중구에는 동천체육센터,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구에는 울산박물관, 울산과학관, 울산문화예술회관, 가족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중구에는 여성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향후 들어설 시립미술관까지 총 23개의 시설이 중구와 남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남부도서관은 2014년 법원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 법조청사를 리모델링해 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구에는 큰 규모의 시립대표도서관과 남부도서관이라는 두 개의 대규모의 도서관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 23개 중에 이미 들어선 시설은 제외하더라도 새로 건립되는 한 두개 이상은 북구나 동구에 있어야 지역 균형 발달의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시립대표도서관도 남구에 들어선다고 하니 북구 주민들은 소외감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 행정은 울산시민의 삶을 골고루 돌보고,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 살피고 고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평한 행정이고, 민선 시장의 역할입니다. 이번 시립도서관 부지선정 기준에서도 도서관 인프라, 도서관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주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접근성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고, 토론회 한번 없이 행정 편의적,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 또 한번 분노하는 것입니다.시장님! 향후 시 행정 집행에 있어 북구주민들이 '같은 세금 내고 왜 북구는 소외시키는가?' 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균형 있는 행정 집행을 기대하며 북구 주민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정윤석의원
○ 발언일시 : 제128회 임시회(2013. 3. 4)
○ 발언요지 :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정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북한 핵실험 규탄과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최근 자행한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 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 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남북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북한 핵실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고, 핵실험이 울산 북구 주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북구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수선의원
○ 발언일시 : 제139회 임시회(2013.5.6)
○ 발언요지 : 연암배드민턴장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수선 의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있어 연암배드민턴장 시설 개선비로 8억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해 예산의 낭비성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요청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의 수의 논리에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4월 30일, 지역 일간신문에서도 연암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연암배드민턴장은 2008년 무룡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을 포함한 사업비 5억 5천만원이 사용되어 실내 배드민턴장 6면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 지 5년도 안된 실내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8억을 들여 새로 신축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약간의 보수와 편의시설 향상을 주장하며 8억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회기 도중에 정회를 하고 현장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암배드민턴장은 철거할 만큼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았고, 배드민턴을 즐기기에 안전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천막 또한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바닥 또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보수와 시설 개선으로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잘 운영되고 있는 멀쩡한 배드민턴장을 5년도 안되어 철거하고 8억을 들여 신축할 게 아니고, 그 예산으로 다른 곳에 배드민턴장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구청장은 국민의 혈세를 예산낭비가 아닌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8억이나 되는 예산을 특정 동호회의 주장만 듣고, 예산 투입의 적기와 적정성은 무시한 채 선심성 사업으로 일방 통행하는 구청장의 요구와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북구의회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혀두고자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정윤석의원
○ 발언일시 : 제140회 제1차 정례회(2013. 7. 2)
○ 발언요지 : 이제는 동천강이다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정윤석 의원입니다.

태화강은 울산시민에게 긍지와 더불어 포근함까지 더해주는, 그야말로 울산의 젖줄입니다.한 때는 산업도시 울산의 성장통이기도 하였든 태화강이 친환경 생태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휴식처로 한껏 제 역할을 다하는 데는, 그 동안 울산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변화는 물론 울산시청 공무원 12명을 중심으로 연간 46억여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태화강관리단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와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이 큰 몫을 했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태화강의 제1지류인 동천강도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천강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백두대간의 토함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시·도 경계를 지나 울산시의 동측을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여 태화강에 합류되는 하천으로, 본류 전체 26.3Km 중 울산구역이 13.9Km이며, 평균 하폭은 110~250m에 이릅니다. 주요 유입 지천인 입실천, 약수천, 천곡천, 매곡천, 호계천, 상안천, 시례천, 창평천, 약사천의 9개 지천에 상안교, 동천교 등 13개의 교량과 천곡보, 신답보 등 7개의 보가 있는 동천강은 시례교에서 내황교까지 좌안은 북구, 우안은 중구지역입니다.

그러나, 양쪽의 둔치는 확연하게 달리 관리되고 있음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강변에 야외수영장 공사가 한창이고, 북구의 매곡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3.2km구간에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 하천 환경정비가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최근, 북구 상안동에 농소 수질복원시설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1,5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써 중구, 북구의 생활 오·폐수를 1급수로 정화하는 이 시설이 2016년 2월 준공되면, 건천인 동천강에 일일 약100,000톤의 청정수를 신답교로 펌핑하여 삼일교, 외솔교, 동천교, 내황교를 지나 태화강으로 흐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근간을 이루어왔고, 민생 정치의 요체로 비유되기도 한 바, 동천강 유지·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 그

리고, 후세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천강은 치수적으로 양호한 수질과 유지유량을 확보하고, 지천의 관리 및 생태계 복원,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쾌적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갈대 군락지 및 조류 서식지 보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역사 탐방로 조성계획과 문화유적지를 복원하여 역사성 회복과 역사, 문화이벤트를 계획하고, 꽃길·꽃단지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근감을 주는 주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의 산책로와 연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여가 활동 장소 제공과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출·퇴근 등 이동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동천강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울산광역시와 북구, 그리고, 중구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년간 연구한 울산발전연구원의 참여와 역할도 요구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의원
○ 발언일시 : 제143회 임시회(2013.10.24)
○ 발언요지 : 역사의 진실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조국의 미래가 있다.

먼저 이번 울산광역시 북구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윤종오 구청장과 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준비위원장과 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 북구 주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12번째 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의 지혜와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주민자치의 역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광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올바르게 기록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진실된 역사로,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의 한 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며,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모두가 나서서 함께 싸워, 이 날의 주권을 지켜 온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특히,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는 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임진왜란 당시 기박산성의 의병과 일제 식민지시대 나라를 구하고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박상진의사의 자랑스런 역사가 남아 있는 고장입니다. 또한 해방 이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애국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왔습니다. 4. 19 혁명에서부터 1980년 광주민주화 항쟁, 1987년 민주화 대투쟁, 1991년 직선제 개헌 투쟁, 2000년대 광우병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촛불집회까지 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며, 역사를 발전시켜 온 동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와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역사 교재로 사용되는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축소·왜곡하고, 친일인사를 항일인사로, 친일·독재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세력으로 둔갑시키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등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아이들의 역사교과서로 채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친일의 역사를 미화,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영익 위원장은 친일의 역사를 미화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영웅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인

을 '짐승과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도덕적 수준이 낮아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하하는 등 망언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치욕이며, 심각한 역사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진실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100일 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원의 진실 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일삼고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를 탄압하는 등 국민과 역사의 발전,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며, 말 그대로 민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왜곡과 국민들이 하는 올바른 소리에는 귀를 닫는 불통의 정치와 깨끗한 정치를 하려는 정당과 단체는 탄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독재 권력이 해 온 정치 방식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 힘 있는 강대국에 의존하며, 충신과 반대세력은 무참히 탄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도 봉건왕족은 백성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민생에 대한 호소는 듣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청나라, 러시아, 일본에 의존하며,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난 의병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집권세력 중 친일매국세력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잘 보고 두 번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아 올바른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된 역사와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혜경의원
○ 발언일시 : 제143회 임시회(2013. 10.24)
○ 발언요지 :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국민을 위협하는 원전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혜경 의원입니다.

밀양은 오늘도 촌로들이 길바닥에서, 산에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공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반대해 온 밀양 송전탑 문제는 8년째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밀양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기존 345kV보다 높은 765kV의 초고압전류가 흐르는 140m(아파트 45층)높이의 송전철탑입니다. 송전선로는 울산 신고리에서 북경남사이 총 길이 90.5㎞로, 161기의 송전 철탑 중 밀양시 4개 면 부북면(7기), 상동면(17기), 산외면(7기), 단장면(21기)에만 52개 초고압 송전탑이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며 세워집니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선로라고 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로 주민들은 동의 없이「전원개발촉진법」과「전기사업법」에 의해 토지가 강제수용 당하고, 정든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건강권 피해, 환경파괴, 농사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고, 촌로들은 정든 고향땅을 잃는 안타까움과 한전, 시공사, 용역업체의 무례하고 위협적인 행동과 국가 공권력의 위협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4개면 22개 마을주민 70%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어, 9. 11테러를 겪은 미국인들의 수치인 15%보다 4배 높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전과 정부의 태도에 밀양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전류에 따른 건강문제, 재산피해, 자연경관 파괴 우려에 따른 송전탑 건설반대에 국민들의 66%가 공감하고 있고, 63.4%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지중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한전은 전력난을 핑계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제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 8월 가동계획을 세웠던 신고리 3호기 발전전력이 없어도, 내년도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생산량의 1.7%(140만㎾)에 불과하고, 이것은 영남권의 수요 관리와 다른 발전소 가동을 높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

는 수준입니다. 현재 고리 1,2,3,4호기 와 신고리 1,2호기 총 6기에서 보내는 345kV를 송전선로를 통해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추가 송출하더라도 송전용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철의 전력 수급과 밀양 송전선로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은 올 연말이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고리 3호기 가동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전력난이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6일, JS전선이 납품한 신고리 3,4호기 전력/제어/계장 케이블 화염시험에 실패하여 부품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최소 2년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지난 4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이 위조부품으로, 재시험이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가동 중인 동일 모델이 없어 안전등급 케이블의 기기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세계 어디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체선정과, 기기검증, 제작, 활성화에너지추출, 정상상태 방사능조사, 열적노화시험, 사고방사성조사, 냉각재 상실사고시험, 성능시험과 재시공, 테스트, 운영허가, 연료장착, 시험운전을 고려하면 빨라도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측은 밀양송전선로 공사를 차질 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는 2014년 8월 최대수용 전력량은 8,033만kW에 설비용량은 8,700kW, 설비예비력 667kW로 설비예비율은 8.3%입니다. 신고리 3호기(140만kW)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예비전력은 527만kW로 예비율은 6.6%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과 여름에 의무적으로 실시된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로 생긴 평균 291만kW를 합치면 예비전력은 818만kW이고, 예비율은 10.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원전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이 안되는 고리 2호기, 영광 2호기, 월성 2호기의 발전량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558만kW, 예비율 6.9%입니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와 계획예방정비 원전 3기를 제외하더라도 내년 여름과 겨울의 전력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400만kW를 안정적인 예비전력이라며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했고,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화염시험 실패 후, 갑자기 전력수급 마지노선을 500만kW라고 하며 전력난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이 전력난을 핑계로 신고리 3호기 가동과 송전탑 건설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시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원전정책을 중단할 때 원전 확대 정책을 고집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수주를 따냈다며 자랑했던 원전이 신고리 3호 기종입니다. 신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서둘러 가동해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하고, 공사 준공시점에 가동되지 않으면 매달 공사비의 0.25%의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하는 조항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2015년 9월까지 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의 무리한 가동으로 인해 생길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신고리와 월성사이 반경 30㎞이내에 400만명이 살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까지 지어지면 총 12기의 원전이 있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밀양 송전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처리에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며, 환경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바다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수입 중단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을 위한 케이블 교체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력난을 핑계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절차와 공정을 생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명분 없는 밀양철탑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의원
○ 발언일시 : 제144회 제2차 정례회(2013.11.20)
○ 발언요지 :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과 김종석 부구청장 이하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에 머리를 삭발하고 보니,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삭발한 저를 보고 “머리를 왜 삭발했냐?”고 묻는 사람들보다 “고생 많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에게 전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의원에 당선되면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풀뿌리주민운동’한다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닌 것을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가졌던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작은도서관 운동과 책 읽는 북구 만들기, 전국으로 처음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북구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운동,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아동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북구,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실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해 보고,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 예산 심의도 누구보다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반기 의장 임기를 끝으로 평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선거 때 한 약속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울산 북구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북구 발전과 지방자

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감이 되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감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채, 오늘 제144회 정례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큰 일이기에, 해외순방 중에 남의 나라에서 전자결재로 15년 동안 활동해 온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 시키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내용은 저와 통합진보당 110여 명의 지방선출직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처분과 진보당 해산 결정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삭발하고, 서울시청 앞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선전전, 108배 등 저와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습니다. 차디찬 서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민주화 운동, 평화통일 운동을 해 온 기억들이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나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와서도 의원단 삭발과 시청 앞 농성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고생과 함께 정상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뿐 아니라, 우리 북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0여 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전국의 통합진보당 의원 11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조례와 정책을 다 열거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 온 일들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만 해도 올해 최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비롯하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국가에서 선정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올해 12번째로 전국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것, 수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것, 전국 최초의 친환경급식 실현과 책 읽는 북구 만들기 사업,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된 주민과

의 소통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장애인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의원상을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등 대부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이번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만들어 온 지난 15여 년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상대를 탄압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까? 일방통행식 정치,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검찰 내부의 찍어 내기 사정과 역사왜곡,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내란음모 공안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등으로 정치권은 분열되어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후퇴되며 탄압 받고 있습니다.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저희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110여 명의 공직자는 잘못된 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지방지체도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 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주민들과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에 민주주의도, 지방자치제도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평가 받고 심판 받고 싶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평가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 생각합니다. 잘했다면 다시 뽑아 주시고, 못했다면 낙선으로 심판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의원
○ 발언일시 : 제144회 제2차 정례회(2013. 11. 20)
○ 발언요지 : 민주주의 파괴, 진보정당 해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자랑스런 통합진보당의 북구의회 의원 강진희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오늘로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115명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도 삭발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민 접촉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지방의원이, 그것도 여성의원이 삭발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결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노동자·서민·중소·영세상인들의 희망인 진보정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쓰러져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을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5일, 저는 이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어떤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 박근혜정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제3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날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거쳐 1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제3당인 공당입니다. 6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2명의 구청장과 115명의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통합진보당의 공직자들은 지금도 지역주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어떤 당의 의원들보다 실력 있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단식도 마다않고,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는 투쟁현장이라면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의원활동을 했던 지난 3년 6개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원이 아니었다면 감히 만나지 못했을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청사에서 청소를 하시는 청소노동자들, 가로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시는 환경미화원들... 차별 받는 장애인과 장애 자녀를 키우며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장애인 부모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한부모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망과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며, 저희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정책과 가치를 알리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통합진보당은 북구 주민들을 만나게 해 준 소중한 핏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정당을 해산할 권리,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정당은 정치적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정당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부와 권력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판

단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권리인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박근혜정부야말로 위헌정부입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종북으로 몰고 해산시킨다면...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 유신이 종말을 맞고,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박근혜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를 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정사상 유례 없는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것인데, 새누리당은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해산하겠다고 맞장구치고 나서는 것을 보니 지금이 과연 2013년인지... 1970년대 유신시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에 동조하고 박근혜 정권을 찬양하면 민주주의고, 비판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당이든 시민사회든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이 친박 아니면 종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일구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노동자·서민·중소·영세상인의 희망인 진보정당을 지켜주십시오. 저 또한, 통합진보당의 자랑스러운 의원으로서 최선두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정당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혜경의원
○ 발언일시 : 제144회 제2차 정례회(2013. 11. 20)
○ 발언요지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진보당 14년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려분!

이혜경 의원입니다.

진보당 14년은 노동자, 서민의 위한 길이었습니다. 결코 민주주의에 반하거나 헌법적 민주 질서를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단 몇 분 만에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법 등 노동악법 통과 되었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들은 농민, 학생, 여성 등과 함께 2000년 노동자 서민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14년 동안 진보당은 한국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저 또한 지난 3년 5개월 지방정치 활동에서 한번도 주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민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발로 뛰어다니며 수도 없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 되고, 차별받고, 서러움 당하는 곳을 먼저 찾아 다녔습니다. 한부모동별간담회를 만들어 한부모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한부모 가족간에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북구 한부모가족센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편의시설 점검을 하여 개선하였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조례도 장애인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관심에 한국장애인인권 포럼 울산지부에서는 장애정책 우수의원 상을 3년 연속 주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등과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에서 우리나라 특히, 울산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반대와 함께 핵발전을 대신할 친환경에너지와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지고 핵발전 반대에 참여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고민하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반대하여 유통상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 법령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울산전역에 실시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이 좋다. 우리 마을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서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정당한 정규직화 요구 투쟁에 함께하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울분과 차별에 분노하며 같이 해왔습니다. 저의 그동안 활동은 우리 모든 진보당 의원들의 활동이었고, 진보당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1% 부자들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절대 다수 노동자 서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이기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며 의원활동을 해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래 자주,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어민, 도시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를 위해 존재한다.' 라는 강령대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활동했습니다.

2000년 진보당이 내세운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중요 정책이 되었고,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제기하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대통령의 공약이 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병원비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제기와 경남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시행하기도 하였고,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와 보험 확대 적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인정한 부유세 신설과 해외투기자본 감시 등 경제 민주화를 선도해왔습니다. 재벌 횡포에 맞선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제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 운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이자제한법 발의, 신용회복상담을 통해 서민경제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진보당은 진성당원제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당 운영을 결정하고 당직, 공직자후보를 선출하여 금권 부정선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치 세력화를 앞장서서 실행하여 여성할당제를 30% 도입하고, 여성 비례대표 50%, 비례 1순위는 여성으로 공천하여 다른 당이 따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시행하고, 주민소환법을 제

정하여 비리, 부정 공직자를 소환하는 공직 비리 척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사, 고령농에도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밭작물 직불금제도 시행, 전국 최초로 울산 북구 관급공사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연말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였던 것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두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헌신적인 활동과 민중의 삶을 지키려는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창당 10년 만에 제3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보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국민들이 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경제 민주화와 정당 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진보당의 활동을 강제로 중단 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인정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몇 명 소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의원
○ 발언일시 : 제144회 제2차 정례회(2013. 12. 16)
○ 발언요지 :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 원년입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희 의원입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예산은 중앙에 비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만큼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이 활성화되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는 ‘건전성’, ‘효율성’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정 규율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을 남성과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구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2013년 성인지 예산서와 2014년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점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9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로 총 40개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97억 3,8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869억 5,867만 8천원의 5.2%를 차지합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지자체 성인지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03% 인데, 우리구는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2014년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2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로 총 32개이며, 올해에 비해 8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387억 4,7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안 2,062억 4,638만 6천원의

18.8%를 차지합니다. 2013년 5.2%에서 18.8%로 무려 13.6%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14년 새롭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사회복지과의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308억 4,100만원을 제외하면 79억 6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안의 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성인지 예산 중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9.6%나 됩니다. 사업의 개수와 예산의 크기만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이 잘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이 주민참여과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문화체육과는 2개에서 1개로, 복지지원과도 4개에서 2개로, 사회복지과는 12개에서 8개로, 도시녹지과는 1개에서 0개로 줄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수 사업인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제외하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기획홍보실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먼저 성인지 사업명을 적고, 사업개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성인지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목표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데, 사업 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가 제시되지 않거나 부실한 통계자료가 반영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합니다. 큰 틀에서 성평등 문제와 관련이 높은 사업,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 성별분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실례로 남성 이용률이 적은 도서관에선, 남성 이용자에게 '이곳에 왜 왔는지', '어떤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 더 올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도서관 이용률이 남녀의 학습 격차를 낳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 하나임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음 연도에 새 책을 비치할 때 남성 수요에 맞는 책을 구입하여 성별 차이를 조율해 나갔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공체육관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을 설문조사함으로써, 체육관의 불편한 탈의실 때문에 사설 피트니스센터를 다니는 여성이 많음을 파악하여, 시설 개보수 기간에 여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탈의실 개선에 주력하였다

고 합니다. 또한, 남녀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 빈도를 조사해 상당수의 놀이터에서 여자 아이들이 놀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고, 특히 여자 아이들이 놀이터가 외지고 어두컴컴할수록, 입구와 계단 모양이 불편할수록 해당 놀이터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에 따라 놀이터 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교육, 문화, 체육 관련 사업들에 대해 성별 수혜분석을 하고, 성별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한다면, 쉽게 성인지 예산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한낱 늘어난 하나의 업무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도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산 구분)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별분리 통계는 성인지 예산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따른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의 성과관리 예산서보다 한층 더 강화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012. 7. 1 ~ 2014. 6.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 중	불 가
계	15	15	7	6	1
2012	4	4	3	1	
2013	10	10	5	4	1
2014	1	1		1	

2.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2. 7. 3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주차장 상실 해결 건의(추진중)	임양경	• 산하동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주차장 상실문제 해결 요청 ◦ 산하천~신명IC간(중로1-90호선) 도로공사로 까사디마레 레스토랑 앞 주차장이 상실되어 영업위기에 처함 ◦ 이에 대체주차장 마련 등의 실질적인 방법 강구해 줄 것을 요구	• ´12. 7. 11. : 민원사항 통보(건설방재과) • ´12. 7. 11. : 건설방재과 →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 ´12. 7. 26. : 건설방재과→민원인 회신 ☞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향후 도로확장 공사 시 도로 기능유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임 ☞ 대체 주차장 설치 요구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인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설치된 공연장은 우리구에서 대부받아 관리하고 있음.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2. 7. 11 휴먼시아 사거리 관련 건의 (완료)	최종배외 194명	• 휴먼시아 2단지 중간 지점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건의	• ´12. 7. 18. : 민원사항 통보(교통행정과) • ´12. 7. 18. : 교통행정과 → 중부경찰서 이첩 ※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쌍용예가 측에 협의 설치 예정
´12. 10. 31 대로 2-33 교차로 CCTV설치 요청의 건 (완료)	달천 아이파크2차 입주자 대표	◦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는 교통사고 등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 아파트 주변 대로 2-33로 인근의 달천고 교차로, 205동 옆 교차로, 304동옆 교차로(총 3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12. 11. 1. : 민원사항 통보(주민참여과) • ´12. 11. 13. : 주민참여과 → 교통행정과 이첩 ☞ 방범용 CCTV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상에 설치하는 CCTV는 관할 경찰서 소관으로 관계부서(교통행정과)에 이첩함을 통보
´12. 11.12 음식물 쓰레기통 교체 요청의 건 (완료)	효성・삼환 APT 관리 사무소장	◦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이 음식물 쓰레기 운반 및 수거 중 파손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손된 음식물 쓰레기통 5개를 교체해 줄것을 요청함.	• ´12. 11. 13. : 민원사항 통보(환경미화과) • ´12. 11. 13. : 환경미화과 → 의회 및 민원인 회신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교체에 관해서는 기 발송 공문(환경미화과-15966, 2012. 10. 4.)과 같이 구청지원 중지함.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교체는 업체가 수거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시 파손했을 경우에만 교체되며, 교체를 원할 시 해당 업체(춘산환경)으로 문의할 것을 통보함.
´13. 1. 18 중산782-6 번지 진입로 개설요청 (불가)	조영완	◦ 북구청에서 중산동 1200-43번지(국유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장(한양부분정비) 및 주택의 진입로가 사라져 생계가 막막하니, 북구청에서 진입로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13. 1. 21. : 민원사항 통보(건설방재과) • ´13. 1. 25. : 건설방재과 → 의회 및 민원인 회신 ☞ 중산동 782-6번지는 1940년 분할된 토지를 매입(1974.2.10. 매매) 과정에서 진입로를 생각했어야 할 뿐 아니라 지목을 변경(1996.8.3., 전→대)하는 과정에서도 공부상 진입로 없이 지목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현재 중산동 782-6번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지자체에서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며,「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주가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 3. 5 효성・삼환아파트 후문 외곽 차도 진입로 확장 개선 요청 (추진중)	효성・삼환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 7번 국도에서 우회전 차량 진입 시 진입 폭이 좁고, 안내 표지판 및 진입 유도선이 없어, 교통사고 우려 및 운전 불편을 호소하므로 진입로를 확장・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13. 3. 5. : 민원사항 통보(건설방재과) • ´13. 3. 13. : 건설방재과 → 의회 및 민원인 회신 ☞ 해당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였고, 20미터 이상 도로의 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와 인수・인계절차가 지연되고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있는 실정이므로, 진·출입로 확장 건은 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
´13. 3. 22 천곡웰빙 아파트 입구 인도 신설 요청 (추진중)	천곡웰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 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마을회관까지 인도가 없어 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인도를 신설을 요청함. - 구간 : 웰빙아파트입구 ~ 천곡마을회관	• ´13. 3. 22. : 민원사항 통보(건설방재과) • ´13. 4. 1. : 건설방재과 →민원인 회신 ☞ 인도(보행자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도로소1-69호선)를 전폭 개설함이 타당하나 천곡마을회관 일원 도로 확장 시 마을회관 철거 후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 소방도로 확장 관련 사업 시행 여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운선순위에 따라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13. 3. 29 천곡 웰빙 아파트 앞 야산 간벌 작업 요청 (추진중)	천곡웰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 웰빙아파트 앞 야산에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 산불 발생 시 재난이 우려되므로, 사전 간벌 작업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함.	• ´13. 4. 1. : 민원사항 통보(도시녹지과) • ´13. 4. 3. : 도시녹지과→의회 및 민원인 회신 ☞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시행이 불가함. 2012년도에 상기 지역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위한 동의를 산주에게 요청하였으나,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재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차 금년에도 산주에게 산림사업을 위한 동의를 요청 중에 있음.
´13. 5. 20 천곡성당 신축공사 관련 피해대책 수립요청 (완료)	삼성코아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장	◦ 아파트 인근에서 공사 중인 천곡성당 신축으로 사생활 노출(차단벽, 차단녹지 조성 요구) 및 성당활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함.	• ´13. 5. 21. : 민원사항 통보(건축주택과) • ´13. 5. 28. : 건축주택과 →민원인 회신 ☞ 천곡성당 건축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대책 이행과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13. 6. 14 천곡 2교 보행자 인도교 설치 건의 (추진중)	원동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천곡 2교(원동현대 앞) 보행로의 경계석이 쉽게 이탈 될 뿐 아니라, 경계석 미설치 부분은 차량이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도교(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건의함.	• ´13. 6. 17. : 민원사항 통보(건설방재과) • ´13. 6. 27. : 건설방재과 →민원인 회신 ☞ 천곡 2교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인도교를 확장 설치하여야 하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우선 순위에 따라 인도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임.
´13. 7. 22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협조 요청 (완료)	천곡초등학교장	◦ 천곡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보모회 공동회의 결과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 ´13. 7. 23. : 민원사항 통보(주민참여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 학교 정문에서 제일교회 앞 이면도로 방지턱 보수 및 도색 - 제일교회 앞 문방구 부근 인도 설치 - 학교 정문과 열린장터 앞 원형감시카메라 설치 - 천곡문화센터 앞 교차로 신호등 설치	☞ ´13. 8. 8. : 안전건설과 →의회 및 민원인 회신 과속방지턱 정비와 보수는 금년 하반기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 ´13. 8. 8. : 안전건설과 →민원인 회신 연차적으로 소방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우선순위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음 ☞ ´13. 7. 25. : 교통행정과 →의회 및 민원인 회신 현재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CCTV카메라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13. 8. 1. : 교통행정과 →의회 및 민원인 회신 중부경찰서 소관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한 바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음. 참고로 작동은 하지 않고 있으나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신호기 작동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임.
´13. 8. 13 중산행복샘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건의 (완료)	한국목욕업 중앙회 울산광역시 지회장 김병욱	◦ 중산 행복샘은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인한 보상차원의 하나로 중산동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임. ◦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확인을 거친 후 중산동 주민 이외의 입	• ´13. 8. 19. : 민원사항 통보(회계과) • ´13. 8. 22. : 회계과 → 의회 및 민원인 회신 ☞ 조례(의원발의)로 기존 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제142회 북구의회 임시회 때 심의・의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장고객은 다른 목욕장과 같은 금액인 6,000원의 입욕료를 받아야 함.	결을 거칠 예정임을 통보함.
´13. 9. 2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조성사업 반대 서명서 제출 (완료)	김형철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 반대 서명서 주요 내용 - 생활환경이 살기 좋은 달천마을에 “모바일테크노벨리<자동차, 선박부품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명제로, 19만여 평의 땅을 공장부지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신청 접수 - 이 사업이 시행 시 자자손손 후대에게 물려줘야할 아름다운 자연환경 파괴와 생존 환경이 악화 괴멸될 것이 자명하므로 끝까지 반대투쟁을 할 것을 결정, 서명함.	• ´13. 9. 5. : 민원사항 통보(경제일자리과) • ´13. 9. 11. : 경제일자리과 → 시 진달(투자지원단) • ´13. 9. 16. : 경제일자리과 → 의회 회신 ☞ 시 투자지원단 회신 내용 - 주민의견에 대하여 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활용은 물론,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완료될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관계 기관(북구청 등)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시 산업단지 조성반대 민원을 충분히 의견 개진토록 할 것임.
´13. 10. 8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건 (완료)	평창 리비에르 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2012. 11. 29.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건물+토지) 받았으나,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 ´13. 10. 8. : 민원사항 통보(도시녹지과) • ´13. 10. 16. : 도시녹지과 → 의회 및 민원 회신 ☞ 아파트 부지(체비지) 관련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만 완료하였고, 토지는 집단 체비지인 관계로 조합에 체비지 대장상 등재의 방법으로 소유권 변경 등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이 이를 시행하지 않음. - 이에, 등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 감독청인 북구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함.	논의는 현재 조합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재단채권확인의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소송 완료 후 그 판결에 따라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음을 회신.
´14. 1. 6. 농소1동 3통 (시장1리) 노인정 주 통행로 차단 해결 요청 (추진중)	농소1동3통 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외 10인	◦ 호계동 936-279번지 일원 마을회관 및 노인정의 통행 골목길은 개인 소유지(호계동 679-24 번지)로 약 40년 이상 농소 중학교 학생 등 하굣길, 주민 통행로 및 노인정 어르신들 주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입을 주장하다, 2013. 12. 31부로 철망으로 통행로를 차단하였음. 이에 해결 요청함.	• ´14. 1. 6. : 민원사항 통보(안전건설과) • ´14. 1. 16. : 안전건설과 → 민원 회신 ☞ 호계동 679-24번지 일원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아닌 개인사유지로 강제철거 및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한편 우리 구에서도 지주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회신.

제5절 주요의정활동사항

□ 2012년 하반기

01.『조례입법 연구회』운영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는 2010년 11월 5일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월1회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등을 제·개정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02. 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제134회 제1차 정례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제135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 제136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심의의결 하게 된 것에 대해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조례입법 연구회를 통해 북구의 조례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여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회기운영 현황**(2012. 7. 1 ~ 12. 31)

구 분	계		임시회		정 례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12년	4	70	2	20	2	50

☞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34회 2012. 7. 2~ 7.16	15	15		1	6	1		1			2	4
제135회 2012. 9.10~ 9.24	15	20	1		12			2		2		3
제136회 2012.10.15.~10.19	5	11			5	1			1			4
제137회 2012.11.20~12.24	35	20	2		7	2		1	1		3	4
합 계	70	66	3	1	30	4		4	2	2	5	15

0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정책대안 제시

북구의회는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사전 자료 수집을 위해 민원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왔다. 특히 북구의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 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촬영한 자료 사진들을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부서에 보여주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한 지적을, 잘된 부분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심도있는 사례 및 정책연구를 통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한 차원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04. 제135회 임시회 현장활동 실시

당사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등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 당사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및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복구 보강공사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35회 임시회회기중 북구 관내 및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 사업장

에 대해 사업진행사항 점검 등 의원들이 직접 현장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대상사업이 제대로 추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대상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점검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05. 제136회 임시회 현장활동 실시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관내 사업장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현장활동 등 5개소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36회 임시회 회기중,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 관내 및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진행사항 점검 등 의원들이 직접 현장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대상사업이 제대로 추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대상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점검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중산목욕장 건립공사 등 사업 완공 후 주민들이 시설 이용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6. 제136회 임시회 현장활동 실시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관내 사업장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방문활동 등 4개소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36회 임시회 회기중,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 관내 및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진행사항 점검 등 의원들이 직접 현장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옥동~농소2 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준공후 주민들이 시설 이용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7. 태풍 ‘볼라벤’ 피해점검 현장활동 실시

제15호 태풍‘볼라벤’피해점검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제15호 태풍‘볼라벤’의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관내 시설물 및 지역들에 대해 현장활동을 펼쳤다.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태풍‘볼라벤’의 영향으로 관내 시설들에 대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상황에 대해 대책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의원들은 강동 당사마을 낚시공원 사업현장과 정자항 등을 둘러보고 강풍으로 인한 어민들과 어선들의 안전상황 점검 등 피해 상황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였다. 이어 화봉동 오토밸리 옹벽붕괴 사고현장과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가 피해상황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태풍 폭우의 영향으로 동천강 수의 증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동천강을 운행하는 차량의 피해는 없는지 동천강 주변을 둘러보았다.

08. 태풍 '산바' 피해점검 현장활동 실시

제16호 태풍'산바'피해점검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9월 17일 오후 1시 30분 제16호 태풍'산바'의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관내 시설물 및 지역들에 대해 현장활동을 펼쳤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태풍'산바'의 영향으로 관내 시설들에 대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의원들은 진장동 침수피해 지역과 화봉동 오토밸리 옹벽붕괴 사고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9. 3/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식당운영 배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9월 25일 오전 11시 20분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3/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식당에서 직접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식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씩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들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10. 4/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천강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4/4분기 자원봉사활동으로 10월 15일 오전 11시 동천강 하천변에서 지난 태풍으로 쌓여있는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4/4분기에는 동천강 하천변에서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행정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북구의회는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현장 체험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11.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외 1개소 방문 추석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는 9월 24일 오후 1시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인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푸른희망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6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의원들은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2. 북구의회, 2013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노력에 동참

북구의회는 9월 10일 오전 11시 다목적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의 의정비는 2009년부터 5년 연속 동결함으로써 의원별로 연 3,887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비 변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울산 북구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동결키로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됐다.

특히, 내년도 의정비는 지난 2년간의 공무원 보수인상율인 8.61%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는 서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과 함께 전 의원이 구민의 삶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5대 하반기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펼쳐나갈 것을 북구의회 전 의원이 다짐하면서 의정비를 동결에 동참하였다.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은 의정비 동결에 만장일치의 뜻을 모아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구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 의원이 뜻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3. 월성원자력방문, 월성1호기 폐쇄 촉구서 전달

주민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북구의회는 11월 20일 오후2시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월성1호기와 관련하여 폐쇄 촉구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북구의회의 월성원자력 방문 월성1호기 폐쇄 촉구서 전달은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 요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북구의회는 월성1호기 폐쇄 촉구서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71%는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59%가 반대하고 있으며, 월성1호기는 2012.11.20 설계수명을 만료하는 시점에서 올해만도 벌써 네 번째 고장을 일으켰으며, 사소한 원인으로도 노후 원전이 멈추는 상황에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며 고리1호기에 이어 또 다시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의회는 경주 월성원전과 불과 10km 거리에 인접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들을 대표하여'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012. 11. 20일로서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촉구서를 전달'하였다.

14. 남창한우프라자 시설 벤치마킹 및 '13년 한우공동판매장지원사업 현장 설명회 참석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답사 실시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25일 오전 10시 온양읍 남창한우프라자와 언양한우 직판장 시설 벤치마킹 및'13년 한우 공동판매장 지원사업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13년 한우 공동판매장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구의회 의원들과 한우협회 북부지부장을 비롯한 울산 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창한우프라자와 언양한우직판장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아울러 한우직판장 시설 설치 및 향후 전망 등 사업 설명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2013년 상반기

01.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민족고유의 명절에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북구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불편사항을 직접 확

인하고자, 2월 6일 관내 복지시설인 양정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평화노인요양센터, 연암꾸러기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생필품을 설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의원들은 먼저 양정동에 위치한 양정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본 후 가전제품을 전달하고, 이어 연암동에 위치한 평화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린 뒤, 마지막으로 연암 꾸러기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가전제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시설 이용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북구의회 의원들은“이번 위문품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설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02.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 「제5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성과로 수상영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이 2월 26일 대전광역시 선샤인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13년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5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는 대전광

역시 염홍철 시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김인배 회장 및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정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노력뿐 아니라, 특히 주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실현에 이바지한 공'으로 제5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별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교류 및 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차원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직된 단체로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03. 무룡산 환경정화활동 실시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기위해 앞장서

북구의회는 1/4분기 행정현장 체험활동으로 2월 27일 무룡산 정상 등산로변에서 쓰레기 수거 및 산불조심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는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 및 현장체험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을 직접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새봄을 맞아 많은 주민들이 찾는 무룡산 정화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행정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체험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북구의회는 앞으로도 분기별 1회 이상씩 현장에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현장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04. 안양시의회 북구의회 방문견학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이라 평가받는 주민참여예산제 벤치마킹 목적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손정욱) 의원 4명은 4월 18일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북구의회 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들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북구의회 방문은 국내 비교시찰의 일환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시설 및 의회를 방문·견학하여 의정활동 정보수집과 교류를 위해 북구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다.특히 안양시의회 의원 일행은 우리 북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하여 견학 및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였다.

05. 중국 비성시 국제교류대표단 북구의회 방문

세계와 교류하는 북구의회

중국 안장성 비성시 국제교류 대표단이 5월 10일 북구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북구청의 국제교류일환으로 비성시 인민정부 이화민 부시장과 공무원 및 기업체 대표 등 모두 7명이 5월 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북구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일정동안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10일 울산쇠부리축제 개막식에도 참석하여 축하를 건넸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비성시는 1,277㎢ 면적에 인구 97만여명이 살고 있다. 지난 2011년 비성시의 방문을 시작으로 두 도시 간 교류가 본격화됐으며, 북구는 지

난해 9월 윤종오 구청장과 윤치용 의장, 이수선 부의장이 중국 비성시를 방문,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협력강화에 나서고 있다.

06. 재활용선별장 체험활동

소중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에 조금만 더 관심을

북구의회 의원들은 6월 20일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중 북구 재활용선별장을 찾아 재활용선별 작업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재활용홍보관에서 재활용품 수거체계와 처리방식,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재활용선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재활용선별체험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재활용품들을 직접 선별하면서 “현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걸 느꼈다.”며 재활용품 배출 시 주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자원이 올바르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당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07. 북구의회 지역내 우수시설 및 산업현장 견학 실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하는

북구의회는 6월 27일 제14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현장활동의 일환인 지역내 우수시설 및 산업현장 견학으로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승선체험 및 현대자동차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크루즈선 도입으로 많은 관광객들

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남구의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승선체험을 통해 강동해안관광사업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우리구의 대표적인 기업체인 현대자동차 견학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간 2교대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 2013년 하반기

01. 북구의회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 실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의회체험 프로젝트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 북구지회(회장 류영호) 주관으로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가 8월 27일 15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회원 10명 및 호계고등학교 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이날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은 '수준별 이동수업 폐지의 건'을 의제로 정하고 회의를 열고 모의의회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솔직히 잘몰랐으나, 직접 체험해보니 의회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02. 친환경 농산물 수확 자원봉사 실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북구의회는 9월 3일 오전 11시부터 북구 중산동에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자재로 납품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수확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단배추와 상추을 직접 수확하면서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걸 느꼈다.”며, “이처럼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직접 소비하는 로컬푸드체계가 북구에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03. 북구의회 의정비 6년 연속 동결결정

어려운 경제상황을 서민과 함께

울산 북구의회(의장 윤치용)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의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의 의정비는 2009년부터 6년 연속 동결함으로써 의원별로 연 3,887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비 변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울산 북구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동결키로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됐다. 특히, 2014도 의정비는 지난

2년간의 공무원 보수 인상율 6.3%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열악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였다.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은 의정비 동결에 만장일치의 뜻을 모아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구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 의원이 뜻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04.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전달

민족 최대의 명절에 주변 이웃들을 돌아봐

북구의회는 9월 16일 오후 1시 관내 복지시설인 굿실버 전문요양원, 천곡 지역아동센터, 하늘아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학습교구를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하며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위문품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05. 북구의회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자원봉사 실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의회는 10월 24일 오전 11시 20분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에는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했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어르신들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북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06. 북구의회 2013 울산광역시 장애인정책 우수의회 수상

몸이 불편한 장애인여러분들의 마음은 편해지도록 더욱더 노력

북구의회가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주관하여 11월 14일 오후3시 울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울산광역시 의정모니터링 백서발간 및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회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평소에도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발벗고 나섰던 북구의회 강진희의원과 이혜경의원이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

다.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한해동안 5개 시·구·군 의회의원들의 장애인정책 조례 발의 건수 및 장애인정책 제언 및 장애인인권 개선활동 등의 실적을 평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우수의회로 선정하였다. 이날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북구의회 강진희의원과 이혜경의원은 “상받을 만한 일을 한게 없어 부끄럽다.”며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더욱더 노력하라는 당부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14년 상반기

01.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은 1월 1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11월까지 공약이행 현황을 평가한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및 지방자치의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참다운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상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선거공보물을 참고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공약이행 자체 평가표를 바탕으로 공약 완료도와 주민소통사례를 합산·평가하여 , 광역의원 27명, 기초 지방의원 5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윤치용 의장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민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기대에 부합하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으나,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며 ”이 상을 받은 것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남은 6개월의 임기동안 더욱더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02.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전달

민족 고유의 명절에 주변 이웃들을 돌아봐

북구의회는 1월 27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설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하며 "작업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위문품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설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04. 친환경 농산물 수확 자원봉사 실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북구의회는 2월 18일 11:00 북구 상안동 친환경작목반 농가를 찾아 친환경농산물인 딸기수확 일손돕기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친환경 딸기를 직접 수확하면서 "현장에서 땀흘리며 농업에 힘쓰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걸 느꼈다."며 "북

구의 모든 먹거리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로 생산될 때까지 북구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05. 북구의회 AI방역초소 현장방문
북구지역 사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AI방역초소 2곳을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재 전국 AI발생현황과 북구의 방역대책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울산은 다행히 AI 미발생 지역으로 북구청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울산에 유입되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자 중산동과 신명동 두 곳에 AI방역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북구의회 의원들은 현장근무자들에게 "도로변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다."고 격려하며, "울산에 AI가 유입되어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더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부하였다.

03. 결혼이주여성 모의투표 실시 및 북구의회 견학
우리도 당당히 한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관내 결혼이주여성 30명은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주관으로 3월 5일 10:30 북구의회를 찾아 북구선관위로부터 6.4지방선거 관련 선거교육을 받고, 북구의회 견학을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중 국적미취득자

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면 국내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날 북구의회를 찾은 결혼이주여성은 북구선관위로부터 투표요령 및 선거 관련 교육을 받고, 북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소개받고 의장과의 질의응답,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체험을 실시하였다.

06. 북구의회 세월호 희생자 합동추모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4월 25일 북구청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윤치용의장과 의원들은 이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사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노란리본에 각자의 바램을 담은 글을 남겼다. 이날 추모에 참가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절대 벌어지면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직 채 피지도 못한 꽃 같은 생명들이 희생당해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북구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6절 의정활동일지

2012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1(일) 09: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체육대회	○북구 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참석	
7. 1(일) 10:0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체육대회	북구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7. 2(월)~ 7.16(월)	북구의회 본회의장	정례회	○제1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	
7. 2(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설명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부지 선정 설명회	
7. 2(월) 19:30	월드메르디앙@	선포식	○금연아파트 선포식 참석	
7. 3(화) 13:30	북구문예회관	기념행사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7. 5(목) 15:00	양정힐스테이 트@	개관식	○책누리 작은도서관 개관식	
7. 7(토) 14:30	쌍용아진 1차@	개관식	○책놀이터 작은 도서관 개관식	
7. 11(수) 17:00	북구청 3층	보고회	○(구)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7. 13(토) 10:30	벽산블루밍@	개관식	○다울림 작은도서관 개관식	
7. 16(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7월 의원간담회	
7. 18(수) 12:00	송죽가든	협의회	○농소지역 7월 기관단체장 협의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18(수) 14:00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설명회	○제1기 어른신 동화구연 교육과정 수료식	
7. 24(화) 18:00	원조할매집	월례회	○구군 의장단협의회 월례회	
7. 26(목) 10:00	판지마을 경로당	개강식	○판지마을 한글교실 개강식	
7. 26(목) 11:00	중앙도서관	축 제	○중앙도서관 청춘북카페 '쉼표' 오픈식	
7. 28(토) 11:30	강동산하해변	개장식	○물놀이시설 개장 테이프 커팅식	
7. 28(토) 18:00	정자해변	축 제	○2012강동해변물놀이축제 '강동해변 가요제'	
8. 8(수) 10:00	나정해수욕장	체험행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다체험 행사	
8. 8(수) 14:00	7765부대 2대대	초청행사	○통합방위협의회 부대초청행사	
8. 15(수) 10:00	박상진생가 내	추모제	○고헌 박상진의사 순국 91주기 추모제	
8. 16(목) 19:00	북구문예회관	음악회	○2012년 울산 북구 평화통일 음악회	
8. 20(월) 09:00	북구청 지하 충무상황실	을지훈련	○2012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참석	
8. 21(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8월 의원간담회	
8. 21(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	
8. 30(목) 15:00	북구의회 의장실	접 견	○베드남 롱쑤엔시 방문단 접견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30(목) 14:30	기적의도서관 다목적실	워크숍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주민워크숍	
9.1(토) 10:00	북구청광장	나눔장터	○2012년 제3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9. 3(월) 11:00	북구청3층 상황실	회 의	○북구민주평통 3분기 정기회의	
9. 3(월) 11:30	중울산농협 진장지점	개점식	○중울산농협 진장지점 개점식	
9. 10(월)~ 9. 24(월)	북구의회	설명회	○제135회 북구의회 임시회(15일간)	
9.10(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9월 의원간담회	
9. 11(화) 14:30	경주교육 문화회관	연 수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연수	
9. 12(수) 15:30	농소3동주민센터	설명회	○농소하수처리장 건립 주민설명회	
9. 12(수) 17:30	북구청광장	음악회	○제2회 화합.열정 한마음음악회	
9. 13(목) 12:00	효문마을회관	개관식	○효문마을회관 개관식	
9. 15(토) 10:00	농서초등학교 체육관	한마음대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9. 22(토) 18:00	북구청 야외특설무대	축 제	○북구청소년예술제 "제9회 끼의 왕을 찾아라"	
9. 24(월) 11:20	북구노인복지관	자원봉사	○북구의회 2분기 의원자원봉사활동	
9. 24(화) 15:00	산하동 615	준공식	○강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준공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5(금)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10월 의원간담회	
10.5(금) 18:30	오토밸리 체육관	한마음대회	○바르게살기운동 영호남 한마음 대회	
10.6(토) 09:00	효문운동장	체육대회	○북구청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10.6(토) 13:00	북구문예회관	강연회	○상상보다직업의 세상 강연회	
10.6(토) 17:30	북구청광장	음악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을밤 평화음악회	
10.7(일) 09:30	정자항 남방파제	걷기대회	○제1회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10.8(월) 16: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보고회	○음식물자원화시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0.8(월) 19:00	중산문화센터	간담회	○중산목욕장 운영에 따른 주민 간담회	
10.9(화) 14:00	북구사회복지관	준공식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준공식	
10.13(토) 11:00	오토밸리 체육관	증진대회	○제13회 장애인복지증진대회	
10.14(일) 09: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3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0.15(월) ~ 10.19(금)	연암초등학교	경로잔치	○제136회 북구의회 임시회(5일간)	
10.15(월) 14:00	동천강 일대	자원봉사	○북구의회 4분기 의원자원봉사활동	
10.16(화) 12:00	농소운동장	단합대회	○2012 하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격려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16(화) 16: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북콘서트	○2012년 울산북구의 책 북콘서트	
10. 17(수) 16: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심포지엄	○통일정세심포지엄 및 울산평화포럼	
10. 19(목) 16:00	시의회 대회의실	시상식	○2012 장애인정책우수의원 시상식	
10. 19(금) 16:00	21세기병원 옆	개소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개소식	
10. 21(일) 11:00	무룡정	궁도대회	○제3회 고헌 박상진의사배 궁도대회	
10. 22(월) 17:30	다운동고래막	월례회	○구.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10. 24(수) 10:00	중앙도서관	개강식	○사서도우미전문과정 개강식	
10. 26(금) 18:00	오토밸리 체육관	축 제	○청소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	
10. 27(토) 10:00	명촌강변 주차장	걷기대회	○북구주민 걷기대회	
10. 27(토) 13: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글짓기대회	○효사상 고취 글짓기 대회	
10. 30(화) 11:00	오토밸리 체육관	위로연	○보훈가족 합동 고령회원 위로연	
10. 27(수)~ 10. 28(목)	정자동 638-3	개소식	○해녀의 집 개소식	
11. 3(토) 10:00	북구청광장	축 제	○제5회 농도한마당 축제	
11. 9(금) 10:00	간절곶 스포츠파크	체육대회	○제8회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10(토) 09:00	화봉게이트볼장	체육대회	○제8회 생활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	
11. 18(일) 11:00	오토밸리 체육관	체육대회	○제11회 생활체육회장배 탁구대회	
11. 20(화)~ 12.24(월)	북구의회	정례회	○제137회 북구의회 제2회 정례회 (35일간)	
11. 24(토) 11:30	보건소 지하주차장	행사격려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행사 격려	
11. 27(화) 11: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졸업식	○제3대학 6기 졸업식	
11. 30(금) 14: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발표회	○찾아가는 한글교실 발표회	
11. 30(금) 16:00	양정작은 도서관	개관식	○양정작은도서관 개관식	
12. 2(일) 10:00	오토밸리 체육관	체육대회	○제11회 생활체육회장배 동대항 배구 대회	
12. 6(목) 18:30	북구청2층 대회의실	발표회	○제7회 북구청 어린이집 작은 발표회	
12. 11(화) 13:30	북구의회 의장실	전달식	○북구의회 적십자회비 전달식	
12. 17(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12월 의원간담회	
12. 17(월) 18:40	북구노인복지관	송년행사	○북구노인복지관 송년행사	
12. 20(목) 10:00	북구노인복지관	종강식	○2012년 북구어르신행복대학 종강식	
12. 20(목) 11:00	북구의회 본회의장	모의의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의의회 참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2. 21(금) 11:00	북구문예회관	발표회	○2012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12. 21(금) 10:10	오토밸리 체육관	대 회	○북구자원봉사자대회	
12. 21(금) 19:30	북구문예회관	연주회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2. 24(월) 14:00	시청본관 2층 대강당	행 사	○울산여성자원봉사자대회	
12. 26(수)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종무식	○2012년도 북구의회 종무식	
12. 26(수) 17:00	중산문화센터	설명회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주민설명회	
12. 27(목) 11: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퇴임식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12. 27(목) 14:00	명촌문화센터	개관식	○명촌어린이도서관 개관식	
12. 27(목) 15: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보고회	○2012년 북구 마을한마당 성과보고회	
12. 27(목) 19: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행 사	○지역아동센터 후원자의 밤 행사	
12. 28(금) 14: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보고회	○2012 평생학습도시 성과보고회	
12. 28(금) 19:30	북구문예회관	연주회	○북구여성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12. 28(금) 19:30	오토밸리 체육관	기념행사	○2012 북구생활체육 유공자 시상 및 체육인의 밤 행사	
12. 31(월) 11: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종무식	○2012년 북구청 종무식	

2013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 8(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북구의회 1월 의원간담회	
1. 8(화) 14: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신년인사회	○ 2013년 북구청 신년인사회	
1. 15(화) 19:00	농소새마을금고	이.취임식	○ 농소1.2동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1. 21(월) 11:30	북구문예회관	정기총회	○ 적십자봉사회 정기총회	
1. 22(화) 12:00	들속가든	정기총회	○ 자연보호협의회 정기총회	
1. 22(화) 15:00	천곡문화센터	개관식	○ 천곡문화센터 개관식	
1. 28(월) 18:00	완도참전복	월례회	○ 구.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1. 30(수) 10:00	새마을북구지회	정기총회	○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정기 총회	
1. 31(목) 10:00	농소농협	정기총회	○ 농소농협 정기총회	
1. 31(목) 14:00	명촌문화센터	개소식	○ 명촌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개소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 4(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	
2. 19(화)~ 3. 4(월)	북구의회	임시회	○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14일간)	
3. 12(화) 10:30	노인회북구지회	정기총회	○ 노인회북구지회 정기총회	
3. 18(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북구의회 3월 의원간담회	
3. 18(월) 14:3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정기총회	○ 제17차 북구 외식업지부 정기총회	
3. 19(화) 15:00	약수경로당	개강식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개강식	
3. 19(화) 13:30	북구청2층 대회의실	발대식	○ 클린광고 주민자율봉사단 발대식	
3. 19(화) 16:00	보건소	위촉식	○ 자살예방위원 위촉 및 자살예방센터 현판식	
3. 20(수) 12:00	장날마당	월례회	○ 농소지역기관장협의회 월례회	
3. 20(수) 14:00	양정소공원	준공식	○ 양정소공원 준공식	
3. 20(수) 11:30	당사초소 군부대 앞	식목행사	○ 제68회 나무심기행사	
3. 23(토) 11:00	화암주상절리	기원제	○ 수난의용소방대 안전기원제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 31(일) 11:00	강동농협	수여식	○유포장학회 제20차 장학금 수여식	
4. 1(월) 19:30	중산문화센터	설명회	○중산행복샘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	
4. 7(일)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20회 북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4. 8(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	
4. 10(수) 10:30	창평 미곡처리장	기원제	○제12회 북구 배 풍년기원제	
4. 10(수) 16:30	북구청3층 상황실	수여식	○교육진흥재단 중고교생 장학금 수여식	
4. 17(수) 10:30	제전 해녀의집	개소식	○제전 해녀의 집 개소식	
4. 19(금) 10:00	무룡운동장	대 회	○저탄소녹색생활화 실천다짐대회	
4. 19(금) 11:00	정임석열사묘역	추모행사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행사	
4. 21(일) 10:00	호계초등학교 체육관	바둑대회	○제8회 복조리 찰메쌀배 바둑대회	
4. 214일) 11:00	화봉초등학교	체육대회	○제6회 송정동 생활체육대회	
4. 23(화)~ 5. 6(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39회 북구의회 임시회(14일간)	
4. 23(화) 11:00	기백이제	위령제	○제14회 기박산성 의병제	
4. 23(화) 14:00	북구청3층 상황실	위촉식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추진단 위촉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 25(목) 14:00	장애인복지관	이취임식	○(사)울산신체장애인복지회장 취임식	
4. 27(토) 13:00	태화강 고래배경기장	친선경기	○울산태화강 고래배경주대회 친선경기	
4. 28(일) 09:30	메카볼링장	체육대회	○제14회 북구청장기 볼링대회	
5. 4(토) 13:00	북구문예회관	심포지엄	○2013년 울산쇠부리축제 학술심포지엄	
5. 1(일) 11:00	북구청광장	개관식	○제9회 북구 봄꽃뜨레 이야기 개관식	
5. 5(일) 10:00	북구청광장	기념식	○제91회 어린이날 기념식	
5. 7(화) 16:00	북구문예회관	보고회	○달천천장공원조성 용역 보고회	
5. 8(수) 10:00	북구노인복지관	기념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효사랑카네이션축제"	
5. 10(금) 19:00	북구청광장	개막식	○제9회 쇠부리축제 개막식	
5. 11(토) 10:30	북구청광장	경연대회	○제9회 쇠부리 불매소리 풍물경연대회	
5. 15(수) 14:00	KBS홀	기념행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5. 19(일) 09:00	무룡테니스장	체육대회	○제16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5. 19(일) 11:00	무룡정	체육대회	○제13회 북구청장기 궁도대회	
5. 24(금) 09: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정기총회	○북구미용업지회 정기총회 및 위생교육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 25(토) 13:20	북구청광장	축 제	○ 제6회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	
5. 25(토) 17:00	북구자원 봉사센터	발대식	○ 청소년봉사단 '하자' 발대식	
5. 26(일) 11:00	오토밸리 체육관	체육대회	○ 제10회 구청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5. 28(화) 14: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선포식	○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	
5. 30(목) 15:3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수료식	○ 주민자치 아카데미 수료식	
5. 31(금) 10:00	화봉 게이트볼장	체육대회	○ 제12회 북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6. 2(일) 09: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 제10회 북구청장기 축구대회	
6. 2(일) 10:00	동천초등학교	체육대회	○ 제7회 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6. 3(월) 10:00	북구청3층 상황실	설명회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기본계획설계 설명회	
6. 4(화) 09: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	
6. 4(화) 10:30	무룡운동장	대 회	○ 2013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6. 5(수) 14:00	중산문화센터	설명회	○ 우리동네 하하발전소 사업설명회	
6. 5(수) 15:30	북구문예회관	수료식	○ 다문화정착 지도자교육 수료식	
6. 6(목) 09:30	울산대공원 현충탑	기념식	○ 제58회 현충일 기념식 참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 8(토) 10:00	농소운동장	개장식	○ 농소운동장 야구장 개장식	
6. 8(토) 11:00	북구청광장	박람회	○ 제2회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박람회	
6. 8(토) 15:00	동천초등학교	체육대회	○ 제8회 구청장기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6. 12(수) 13:30	북구청3층 상황실	협의회	○ 2013년 화랑훈련 관련 통합방위협의회	
6. 13(목) 11:30	중앙도서관	수료식	○ 제3기 작은도서관운영자 교육과장 수료식	
6. 19(수) 10:00	중앙도서관	개강식	○ 제5기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개강식	
6.20(목)~ 7.2(화)	북구의회	정례회	○ 제14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13일간)	
6. 20(목)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북구의회 6월 의원간담회	
6. 20(목) 13:00	재활용선별장	자원봉사	○ 북구의회 2분기 의원자원봉사활동	
6. 25(화) 14:00	신천물놀이장	개장식	○ 신천물놀이장 개장식	
6. 26(수) 15:00	명촌물놀이장	개장식	○ 명촌물놀이장 개장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3(수) 10:00	북구문화 예술회관	교육	○2013 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	
7.6(토) 14:00	중산디아채 아파트	개관식	○ 햇살작은도서관 개관식	
7.8(월) 14:00	북구문화 예술회관	기념식	○ 제18회 여성주간기념행사	
7.9(화) 10:40	코아루 아파트	졸업식	○ 느티나무엄마학교 5기 졸업식	
7.10(수) 12:00	장날마당	회의	○ 농소기관단체장 월례회	
7.11(목) 10:30	신천초교앞	준공식	○ 신천초등학교 앞 인도교 준공식	
7.11(목) 11:30	중앙도서관	개강식	○ 제5기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개강식	
7.12(금) 19:00	송정동주민 센터3층	기념식	○ 송정동주민회 창립 기념식	
7.13(토) 14:00	쌍용아진 2차아파트	개관식	○ 꿈꾸는 작은도서관 시설리모델링 개관식	
7.14(일) 09:00	달천운동장	체육대회	○ 농소3동 생활체육회장기 축구대회	
7.18(목) 10:30	신천하나로 마트 2층	수료식	○ 농소농협 제23기 주부대학 수료식	
7.19(금)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교육	○ 노인회북구지회 노인지원봉사자 보수교육	
7.19(금) 17: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회의	○ 북구민주평통 정기회의 및 출범식	
7.19(금) 20:00	명촌근린공원	공연	○2013년 투게더 콘서트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20(토) 20:00	상안초교	공연	○2013년 투게더 콘서트	
7.24(수) 10:30	호계새마을금고	수료식	○새마을금고 제17기 주부가요교실 졸업식	
7.24(수) 16:00	보훈회관	개소식	○울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식	
7.25(목) 08:30	양정농협	개소식	○양정농협 이전 개소식	
7.26(금) 10:00	북구의회	회의	○제141회 북구의회 임시회	
7.26(금) 16:00	당사해양낚시공원	개장식	○당사 해양낚시공원 개장식	
7.26(금) 20:00	한솔근린공원	공연	○2013년 투게더 콘서트	
7.27(토) 11:30	산하해변	개장식	○강동해변 물놀이장 개장식	
7.27(토) 20:00	산하해변	공연	○2013년 투게더 콘서트	
8.7(수) 10:30	나정해수욕장	행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다체험	
8.10(토) 11:00	오토밸리복지센터	교육	○2013 생활체육회 임직원 및 실무자 강습회	
8.10(토) 13:30	기적의도서관	행사	○기적의 도서관 하룻밤보내기 체험행사	
8.13(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회의	○8월 조례입법연구회	
8.13(화) 15:00	북구문화예술회관	워크숍	○구정발전협의회 및 공무원 공동 워크숍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15(목) 10:00	박상진의사 생가	추도제	○박상진의사 순국 92주기 추도제	
8.15(목) 11:00	농소초교	체육대회	○농소1동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8.15(목) 11:40	신천초교	행사	○제10회 냉천마을 내고향 큰잔치	
8.15(목) 13:00	강동초교	체육대회	○제51회 강동동민 축구대회 및 척사대회	
8.19(월) 09:00	북구청 지하상황실	회의	○2013 을지연습 관련 통합방위협의회	
8.23(금) 10:00	중산문화센터	행사	○우리마을 영어말하기 대회	
8.23(금) 14:00	평생학습 누림터	창립식	○북구마을기업협의회 창립식	
8.28(수)~ 8.29(목)	삼척,영덕	연수	○2013 하반기 북구의회 의원 및 직원 연수	
8.30(금) 18:00	농소3동 주민센터	취임식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이.취임식	
9.3~9.16 (14일간)	북구의회	회의	○제142회 북구의회 임시회	
9.4(수) 18:30	중구	회의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9.5(목)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행사	○농소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하나로대행진	
9.6(금) 14:30	오토밸리 컨벤션홀	워크숍	○2013 노사민정 공동워크숍	
9.7(토)	신전체육공원	행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한마음 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10(화) 18:00	동천고교	행사	○농소3동 도서관 작가(홍명진)의 만남	
9.12(목) 16:00	월드메르디앙@ 뒤	기공식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 기공식	
9.14(토)~ 9.15(일)	동천체육관 외	격려	○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 격려	
9.16(월) 11:00	북구의회, 굿실버요양	위문	○북구의회 간담회 및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9.27(금) 16: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행사	○2013년 울산북구의 책 북콘서트	
9.27(금) 19:30	북구청 광장	공연	○UBC행복음악회	
9.28(토) 16:00	판지구이 단지입구	개장식	○판지 오토캠핑장 개장식	
9.28(토) 17:00	호계역광장	축제	○100년의 호계역과 홈골의 나눔소리 축제	
9.28(토) 19:00	엠코타운	축제	○신천엠코타운 입주민 한마당 큰잔치	
10.10(목) 16:00	북구청2층	발대식	○주민자치박람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10.11(금) 14:00	농소중학교	시화전	○제1회 북구 아름다운 골목길 시화전	
10.11(금) 16:00	북구청3층	회의	○교육진흥재단 임시 이사회	
10.11(금) 18:00	농소3동 주민센터	취임식	○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장 취임식	
10.15(화) 14:00	중앙도서관	수료식	○제2기 어르신동화구연 교육과정 수료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16(수) 10:00	북구청광장	개관식	○주민자치박람회 전시관 개관식	
10.16(수) 18:20	북구청광장	개막식	○주민자치박람회 개막식	
10.17(목) 13:00	북구청광장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	
10.18(금) 17:30	북구청광장	음악회	○노사민정 화합열정 한마음음악회	
10.19(토) 10:00	평창리비에르 2차 옆	걷기대회	○제4회 태화강 억새밭 걷기대회	
10.19(토) 11:00	호계 희망공원	윷놀이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윷놀이 및 노래자랑대회	
10.19(토) 14: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전시회	○제3회 (사)한국난문화협회 영남권 한국춘란 전시회	
10.19(토) 18:00	북구문화 예술회관	축제	○청소년예술제 '제10회 끼의 왕을 찾아라'	
10.20(일) 11:00	송정초교	경로잔치	○송정동 경로잔치	
10.22(화) ~ 10.24(목)	북구의회	회의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10.22(화) 15:00	북구문화 예술회관	경로잔치	○농소2동 경로잔치 및 농이예술단 축하공연	
10.24(목) 11:30	노인복지관	자원봉사	○제4분기 의원자원봉사활동	
10.25(금) 12:00	효문운동장	체육대회	○환경미화원 시군구 합동단합대회	
10.26(토) 09:00	정자항 남방파제	걷기대회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26(토) 11:00	천곡중학교 체육관	경로잔치	○ 농소3동 어르신 위안잔치 한마당 행사	
10.26(토) 14:00	달곡마을 교량하부	개장식	○ 강동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식	
10.27(일) 09:30	메카볼링장	체육대회	○ 제14회 북구생활체육회장기 볼링대회	
10.28(월) 15:00	천곡동 962번지	개장식	○ 천곡저수지 편의실설 개장식	
10.31(목) 17:00	북구청 광장	행사	○ 2013 자원봉사자대회	
11.1(금)~ 11.7(목)	이즈미트시	자매결연	○ 터키 이즈미트시 자매결연체결	
11.8(금) 10:00	염포동 신청사	개청식	○ 염포동주민센터 신축이전 개청식	
11.8(금) 19:00	북구문화 예술회관	연주회	○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1.10(일)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체육대회	○ 제12회 생활체육회장기 동대항 배구대회	
11.12(화) 11: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위로연	○ 2013년 보훈가족 합동 위로연	
11.12(화) 15:00	만석골저수지	준공식	○ 만석골저수지 순환산책로 준공식	
11.13(수) 11:00	무룡산 정상	제막식	○ 무룡산 정상석 제막식 및 산불방지 기원제	
11.15(금) 14:00	매곡초교 앞 도서관	개관식	○ 뚜벅이 작은도서관 개관식	
11.18(월) 18:00	남구	회의	○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19(화)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워크숍	○ 작은도서관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11.20(월) ~ 12.23(월)	북구의회	회의	○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34일간)	
12.2(월) 11:00	보건소	이웃돕기	○ 새마을북구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12.2(월) 19: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송년행사	○ 북구적십자봉사회 송년행사	
12.3(화) 19:30	북구청 2층	송년행사	○ 지역아동센터 후원자의 밤 행사	
12.6(금) 14:00	북구청 2층	수료식	○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료식	
12.11(수) 10:30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개원식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개원식	
12.11(수) 18: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송년행사	○ 바르게 북구협의회 회원한마음 다짐대회	
12.12(목) 14:00	당사해녀의 집	개소식	○ 당사해녀의 집 개소식	
12.13(금) 10:30	보건소 3층	개소식	○ 북구치매지원센터 개소식	
12.13(금) 15:30	북구청 2층	시상식	○ 통일염원 한마음 글짓기대회 시상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2.16(월) 13:30	시티병원 대회의실	송년행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년행사	
12.16(월) 19:30	북구문화 예술회관	연주회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2.17(화) 15: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송년행사	○인생이모작 이음센터 '개원기념 송년마당'	
12.19(목) 15:00	북구장애인 보호작업장	송년행사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송년행사	
12.20(금) 13:30	북구청 2층	회의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국제컨퍼런스	
12.20(금) 19: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송년행사	○북구생활체육 유공자 시상 및 체육 인의 밤 행사	
12.26(목) 14:00	북구청 2층	심포지엄	○자살예방 심포지엄	
12.26(목) 19:00	MBC컨벤션 1층	송년행사	○2013 북구 보육인의 밤 행사	
12.27(금) 14:00	세대공감창의 놀이터부지	기공식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기공식	
12.27(금) 19: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취임식	○북구검도연합회장 이취임식 및 검도인의 밤 행사	
12.31(화) 11:00	북구청 2층	종무식	○북구청 종무식	

2014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7(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1월 의원간담회	
1.7(화) 14:00	북구청 2층	신년회	○북구청 신년인사회	
1.15(수)~ 1.17(금)	속초시	연수	○2014 상반기 북구의회 의원 및 직원 합동연수	
1.22(수) 10:00	노인복지관	개강식	○제11회 어르신행복대학 개강식	
1.23(목) 11:30	보훈회관 2층	정기총회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2014년 정기총회	
1.25(토) 10:30	연암 배드민턴장	개장식	○연암배드민턴장 보수개장식	
1.27(월) 11:00	명성요양원 외 1	위문	○설맞이 복지시설 방문	
2.3(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회의	○2월 조례입법연구회	
2.10(월) 13:00	북구문화 예술회관	기념식	○종합사회복지관 개관10주년 기념식	
2.12(수) 10:00	중구청 신관3층	개청식	○중구의회 신청사 이전 개청식	
2.12(수) 14:00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식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2.14(금) 11: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취임식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16(일) 10:00	연암 배드민턴장	취임식	○북구연합회 배드민턴클럽 회장 이취임식	
2.18(화)~ 2.28(금)	북구의회	임시회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11일간)	
2.18(화) 10:50	북구의회	간담회	○2월 의원간담회	
2.18(화) 11:30	상안동 농가	자원봉사	○1분기 의원 자원봉사활동	
2.25(화) 12:00	구내식당	캠페인	○닭오리 소비촉진 행사	
2.27(목) 14:00	오토밸리 복지센터	개관식	○울산노동역사관 개관식	
3.4(화) 10:00	북구청 2층	입학식	○제3대학 제7기 입학식	
3.7(금) 14:00	호계시장 앞	준공식	○호계시장 아케이드 준공식	
3.11(화) 14:00	어물진료소	개소식	○어물보건진료소 개소식	
3.12(수) 14:30	북구청2층	협약식	○2014년 어린이집-경로당(1.3세대) 협약식	
3.14(금) 10:00	보훈회관 2층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제17차 정기총회	
3.17(월) 11:00	북구의회	간담회	○북구의회 3월 의원간담회	
3.17(월) 15:00	효문초교	개원식	○국공립 효문어린이집 개원식	
3.24(월) 11:00	화봉동 한우프라자	준공식	○울산축협 북구지점 한우프라자 준공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24(월) 14:00	동천 명촌둔치	환경정비	○새봄맞이 일제대청소의 날	
3.25(화) 10:30	상안동 야산	식목행사	○제6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3.30(일) 11: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9회 화봉연암강동 축구연합회 축구대회	
3.31(월) 11:30	보훈회관	정기총회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4.6(일)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축구연합회 회장기 축구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	
4.6(일) 11:00	호봉사 충혼비	위령제	○제61회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4.6(일) 14:00	외국인센터	개소식	○울산외국인센터 개소식	
4.9(수) 14:00	쇠부리 문화거리	기공식	○쇠부리문화거리 조성사업 기공식	
4.11(목)~ 4.22(화)	북구의회	임시회	○제146회 북구의회 임시회(12일간)	
4.11(금) 13:30	북구청 2층	교육	○2014년 어린이집 원장 교육	
4.18(금) 15:00	당사직판장	체육대회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4.19(토) 11:00	열사묘역	추모식	○정임석열사 추모행사	
4.20(일) 11: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3회 북구청장기 족구대회	
4.23(수) 10:30	매곡천 야외공연장	추모식	○제15회 기박산성 의병추모행사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26(토) 10:00	송정호수 공원 일원	체육대회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준공식 및 걷기대회	
5.18(일) 11: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체육대회	○제13회 구청장배 탁구대회	
5.18(일) 12:30	현대자동차 문예회관	체육대회	○제7회 생활체육회장배 배드민턴대회	
6.7(토) 18:00	쇠부리 문화거리	준공식	○쇠부리문화거리 준공식	
6.14(토) 10:00	북구청 광장	박람회	○제3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6.15(일) 10:00	강동해변	체육대회	○제8회 몽돌마라톤대회	
6.17(화) 14:00	북구청 2층	기념식	○울산북구의책 선포식	
6.18(수)~ 6.19(목)	충주시	견학	○북구의회 의원 선진지 견학	
6.20(금) 19:00	북구청 광장	개막식	○제10회 울산쇠부리축제 개막식	
6.25(수) 11:00	경로당	준공식	○황토전 경로당 준공식	
6.27(금) 10:30	화봉 게이트볼장	체육대회	○제14회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	
6.28(토) 10:30	노인복지관 3층	체육대회	○북구생활체육회장배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6.29(일) 09:00	무룡테니스장	체육대회	○제17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6.29(일) 10:00	호계초교	바둑대회	○제9회 복조리찰메쌀배 바둑대회	

부록

1. 역대 의장단 명단
2. 초대의원 명단
3. 초대의원 사진
4. 제2대의원 명단
5. 제2대의원 사진
6. 제3대의원 명단
7. 제3대의원 사진
8. 제4대의원 명단
9. 제4대의원 사진
10. 제5대의원 명단
11. 제5대의원 사진
12.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13. 역대 구청장 명단
14.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15.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10.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17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재 건	1961. 2. 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8.7.3 ~2010.6.30	
제5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안 승 찬	1963. 5.29	2010.7.1 ~2012.6.30	
제5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윤 치 용	1966.11.18	2012.7.1. ~2014.6.30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25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문 석 주	1962. 8.27	2008.7.3 ~2010.4.21	
〃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인 목	1961.12.30	2010.4.22 ~2010.6.30	
제5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정 윤 석	1960. 9.20	2010.7.1 ~2012.6.30	
제5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이 수 선	1961.12.7	2012.7.1. ~2014.6.30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운영・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운영・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 소 동(읍)

한 성 두

진 장 동

정 석 수

효 문 동

이 병 우

양 정 동

진 한 걸

염 포 동

조 승 수

제2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1 ~2000.2.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1998.7.1 ~2002.6.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헌	1957.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7.1 ~2002.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7.1 ~2002.6.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0.6.8 ~2002.6.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14	1998.7.1 ~2002.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제2대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윤 두 환**

농 소 3 동

의장 **박 춘 환**

양 정 동

의장 **진 한 걸**

강 동 동

부의장 **박 광 식**

□ 의 원

농 소 1 동

김 수 헌

농 소 2 동

강 혁 진

효 문 동

류 재 건

송 정 동

김 진 영

염 포 동

윤 종 오

제3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2.7.1 ~2006.6.30	전반기 의장
2	〃	염포동	하인규	1959. 9.17	2002.7.1 ~2006.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2동	김재근	1958. 9.11	2002.7.1 ~2006.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1동	이재경	1956. 4.25	2002.7.1 ~2006.6.30	후반기 부의장
5	의원	농소3동	김대영	1960. 2. 2	2002.7.1 ~2006.4.1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강동동	윤임지	1952.10.15	2002.7.1 ~2006.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2002.7.1 ~2006.6.30	
8	〃	양정동	류인목	1961.12.30	2002.7.1 ~2006.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3대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김 진 영**

염 포 동

의장 **하 인 규**

농 소 2 동

부의장 **김 재 근**

농 소 1 동

부의장 **이 재 경**

□ 의 원

농 소 3 동

김 대 영

강 동 동

윤 임 지

효 문 동

류 재 건

양 정 동

류 인 목

제4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재건	1961. 2. 5	2006.7.1 ~2010.6.30	전반기 의장
2	〃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문석주	1962. 8.27	2006.7.1 ~2010.4.21	후반기 부의장
5	〃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인목	1961.12.30	2006.7.1 ~2010.6.30	후반기 부의장
6	의원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병석	1966. 9.25	2006.7.1 ~2010.6.30	
7	〃	농소2동, 농소3동	이은영	1966.10.16	2006.7.1 ~2010.3.22	
8	〃	비례대표	이영희	1963. 7.22	2006.7.1 ~2010.6.30	

제4대의원 사진

□ 의장단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의장 **류 재 건**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의장 **윤 임 지**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문 석 주**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류 인 목**

□ 의 원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박 병 석

농소2동, 농소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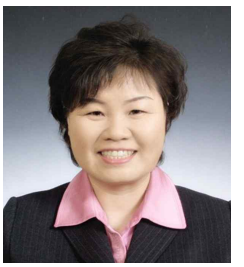

이 은 영

비례대표

이 영 희

제5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안승찬	1963. 5. 29.	2010.7.1 ~2014.6.30	전반기 의장
2	〃	농소2동, 농소3동	윤치용	1966. 11. 18.	2010.7.1 ~2014.6.30	후반기 의장 전반기 운영위원장
3	부의장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정윤석	1960. 9. 20.	2010.7.1 ~2014.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이수선	1961. 12. 7.	2010.7.1 ~2014.6.30	후반기 부의장
5	의원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강진희	1970. 5. 12.	2010.7.1 ~2014.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이홍걸	1961. 2. 10.	2010.7.1 ~2014.6.30	
7	〃	비례대표	이혜경	1969. 3. 21.	2010.7.1 ~2014.6.30	

제5대의원 사진

□ 의장단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의장 **안 승 찬**

농소2동, 농소3동

의장 **윤 치 용**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정 윤 석**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이 수 선**

□ 의 원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강 진 희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이 홍 걸

비례대표

이 혜 경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 이전)

연번	직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원	울산시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5.7.1 ~1997.7.14	제5대 경남도의회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31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4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5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헌	1936. 4.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3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 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10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 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29	1997.7.15~1998.6.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22	1998.7.1~2002.6.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15	2002.7.1~2006.5.24	
4	민선제3대	강 석 구	1960. 9.18	2006.7.1~2010.6.30	
5	민선제4대	윤 종 오	1963. 8. 14	2010.7.1~2014.6.30	
6	민선제5대	박 천 동	1966. 3. 20	2014.7.1~현재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 ~1998.9.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 ~2001.1.15	〃
3	〃	〃	최종식	1952.10.20	2001.1.16 ~2004.3.5	
4	〃	〃	송태호	1955. 1.10	2004.3.6 ~2006.1.11	
5	〃	〃	이상헌	1955. 2. 6	2006.1.12 ~2007.7.26	
6	〃	〃	홍장희	1956. 7.22	2007.7.27 ~ 2009.7.19	
7	〃	〃	윤규태	1959. 5.10	2009.7.20 ~2010.7.22	
8	〃	〃	이차범	1955. 9.17	2010.7.23 ~2011.12.31	
9	〃	〃	강걸수	1957.11. 5	2012.1.1 ~2014.8.6	
10	〃	〃	이태희	1959. 3.23	2014.8.7 ~현재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2001.1.15	
4	〃	〃	김찬수	1955. 9.28	2001.1.16 ~2003.1.27	
5	〃	〃	이상찬	1971.12.25	2003.1.28 ~2006.1.8	
6	〃	〃	박민수	1957. 4.27	2006.1.12 ~2008.7.20	
7	〃	〃	윤규태	1959. 5.10	2008.7.21 ~2009.7.19	
8	〃	〃	김규석	1956. 7.26	2009.7.20 ~2011.2.13	
9	〃	〃	김종구	1956.10. 2	2011.2.14 ~2012.12.31	
10	〃	〃	공영옥	1955.4.15	2013.1.1 ~2014.6.30	
11	〃	〃	김남희	1964.1. 5	2014.8.7 ~현재	

의 정 백 서 제9집

제5대 후반기

인 쇄 : 2014년 11월 일
발 행 : 2014년 11월 일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우)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1004-1)
편집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TEL : 052-241-8975
FAX : 052-241-8979
인쇄사 : 신정종합인쇄사(T.052-273-1070)